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 042-481-4052, FAX : 042-472-3221
www.forest.go.kr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16.1

산 림 청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16. 1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 구현"

목 차

〈 기획조정관실 소관 〉 ····· 1
1. 중기사업계획 및 2017년도 예산 편성 ····· 3
2. 재정사업 성과관리 ····· 5
3.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 추진 ····· 8
4. 산림행정 효율성 향상 ····· 11
5. 산림행정 평가 및 성과관리 ····· 13
6. 산림행정 조직 및 정원관리 ····· 16
7. 산림관계 법령 재정비 ····· 18
8. 산림분야 규제개선 ····· 20
9. 민원만족도 제고 ····· 22
10. 산림행정의 투명성 향상 및 자체감사 운영 내실화 ····· 24
11.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기강 확립 ····· 26
12. 현장중심의 산림사업 업무 정보화 ····· 28
13. 산림공간정보 활용 강화 ····· 32
14.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확대 ····· 35
1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38
16. 산림통계 품질관리 강화 및 수요자중심 통계 제공 ····· 42
17. 정책홍보 ····· 46

〈 해외자원협력관실 소관 〉 ····· 51
1.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활성화 지원 강화 ····· 53
2. REDD+ 시범사업이행으로 신기후체제 선제대응 ····· 57
3. 양자협력국가 맞춤형 산림협력 내실화 ····· 60
4. AFoCO 확대설립으로 아시아 지역 산림협력 주도 ····· 63
5. 다자간 산림협력 내실화 및 산림분야 협상 적극 대응 ····· 66
6. UNCCD 국제논의 대응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 70
7. ODA 신규·후속사업 발굴로 산림협력 강화 ····· 73
8. 한·중·일 FTA 등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 76

9.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로 임산물 수출확대 ····· 80
10.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유치 추진 ····· 84

〈 산림자원국 소관 〉 ····· 87
1. ‘산림 미래포럼’ 운영 등 개청 50주년 준비 ····· 89
2. 산림분야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91
3. 산하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경영성과 제고 ····· 93
4. 기후변화 대응·적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 95
5. 현장 및 성과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및 성과 확산 ····· 99
6.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경제림 육성기반 구축 ····· 102
7. 종묘 생산 ····· 109
8. 조림 ····· 119
9. 숲가꾸기 ····· 146
10. 공공산림가꾸기 ····· 161
11. 남북 산림협력 사업 ····· 169
12. 산림생명자원관리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175
13.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 180
14. 목재문화 및 이용 활성화 ····· 184
15.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구축 및 국산재 이력관리 ····· 187
16. 산림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 ····· 192
17. 임업기계화 촉진 ····· 197
18.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 201
19.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 204
20.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 208
21. 사유림경영 주체 육성 및 기반 구축 ····· 219
22.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 ····· 222
23.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상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225
24.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정비 ····· 228
25.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 230
26. 임업재해보험 내실화 및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 ····· 235

27.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관리 ····· 238
28. 국민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 ····· 247
29. 명상숲 조성·관리 ····· 250
30. 산림경관 개선사업 추진 ····· 254
31. 전통마을숲 복원 ····· 258
32.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반 강화 ····· 260
33.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 및 관리 강화 ····· 262

〈 산림이용국 소관 〉 ····· 265

1.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산지규제 제도개선 추진 ····· 267
2.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 270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강화 ····· 273
4.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관리 강화 ····· 275
5. 국유림 경영계획 운영 및 제도 내실화 ····· 278
6. 국유림이용 활성화 정책사업 추진 ····· 284
7. 지방산림청의 활력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 ····· 288
8. 산림경영임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 290
9. 국유림 대부지 등 사후관리 강화 ····· 300
10. 산림복지법 시행 및 신규제도 준비 ····· 308
11.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313
12.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조성·운영) 패러다임 변화 ····· 319
13.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 기반 구축 ····· 322
14. 산림치유분야 전문인력 양성 ····· 327
15.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 인프라 확대 ····· 330
16. 산촌의 6차산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 332
17.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338
18.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운영 ····· 342
19.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관리 ····· 344
20. 산림문화자산 발굴·보전 및 산림문화 확산 ····· 346
21. 산림레포츠 활성화 ····· 348
22.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350

23.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 356
24. 국립등산학교 건립 ····· 362
25.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관리 ····· 364
26.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운영 ····· 367
28.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 369

〈 산림보호국 소관 〉 ····· 373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 375
2.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확립 ····· 379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 내 · 외 보전기반 구축 ····· 382
4.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기반 구축 ····· 387
5.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 390
6. 산불예방대책 추진 ····· 396
7. 산불상황관리 및 지상진화 ····· 401
8. 헬기 진화역량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 406
9. 산불방지 기반 구축 ····· 410
10. 산사태방지 추진기반 구축 ····· 412
11. 산사태 예방 · 대응 체계 확립 ····· 417
12.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 422
13. 산사태발생지의 신속·정확한 조사 및 복구 ····· 428
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 431
15.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 유지 ····· 436
16.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저지 ····· 439
17. 솔잎혹파리 피해 안정화 ····· 441
18. 기타(돌발·외래 등)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 ····· 443
19.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 구축 ····· 445
20. 훼손 · 단절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 ····· 448
21. 백두대간 보호·관리체계 강화 ····· 451

〈 부 록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 ····· 455

기획조정관실 소관

1. 중기사업계획 및 2017년도 예산 편성

목 표

◇ 숲을 활력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산림자원관리·산업발전·산림이용 및 보전의 선순환 구조 정립

가. 편성여건

ㅇ 사업수 총량 관리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합리한 제도 재설계 등 범정부차원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세출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

* 재정지출효율화방안 마련 지시(대통령 지시시항 '14.10.22)

ㅇ 국회 예산심의 강화를 위한「국가재정법」개정에 따라 '17회계연도 국회 예산 제출시기가 앞당겨 짐('16예산편성 : 9.12 → '17예산편성 : 9.2)

나. 기본방향

ㅇ 현 정부 4년차로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산림자원 육성·관리,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R&D,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분야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16~'20 중기사업계획 수립

ㅇ 정책여건변화, 중점추진과제 이행 등으로 '15~'19년 계획 수립 이후 변동이 발생한 사업의 투자계획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

2) 2017년도 예산편성 추진

ㅇ 국정과제, 안전분야 예산편성을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 지속 발굴 및 보조사업 내실화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별 투자성과, 집행실적, 정책체감도 등을 점검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

* 투자우선순위 및 사업별 재원규모 조정, 실행주체·전달체계 개선, 보조율 조정 등 사업 재설계를 통한 성과 극대화 유도

3) 2016년도 예산집행 및 배정 관리

○ 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및 배정 관리를 통해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라. 추진일정

○ '16~'20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 제출 : 2016. 1. 31.

○ '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부처별 지출한도 확정 통보 : 2016. 4월중

○ '17예산안 지자체·지방청 요구 및 민간단체 의견수렴 : 2016. 4월중순

*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자체 요구 및 검토 : 2016. 5월중순

○ '17년도 예산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 : 2016. 5월말

○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2016. 6~8월

○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 2016. 9. 2.

○ '17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안) 통지 : 2016. 10. 15.

○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2016. 12월까지

2. 재정사업 성과관리

목 표

◇ 재정성과관리 강화로 재정지출의 책임성·투명성·효율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고 세출구조조정 추진

가. 정책여건

ㅇ 4대 부문 구조개혁(공공개혁-재정개혁)의 성공적인 이행과 재정 건전성 유지 강조

ㅇ 재정 건전성의 확보 등을 위해 평가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압박 및 세출구조조정은 더욱 강화될 전망

- '16년부터 통합재정사업평가를 도입하여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환류방식 개선

나. 기본방향

ㅇ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재정사업 구조조정 추진

- 실질적인 성과중심의 평가,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성 강화, 직원역량 강화 등으로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

ㅇ 경제 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예산집행 사전준비를 '15년 연말까지 충실히 이행하여 '16년 1/4분기 재정절벽 방지 및 상반기 실집행률 제고

ㅇ 보조금 중복·누수 방지 등을 위해 '보조금 관리점검체계'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으로 성과중심의 자체 성과평가 강화

ㅇ **(통합평가)** 일반재정, R&D 등 분야별 칸막이식 평가 →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단위 종합적 평가 실시로 전환

- 평가대상 확대, 성과지표 간소화, 사업관리 및 성과 우수성 평가 강화

* 평가대상(사업수기준) : 50%수준('16년) → 70%수준('17년) → 100('18년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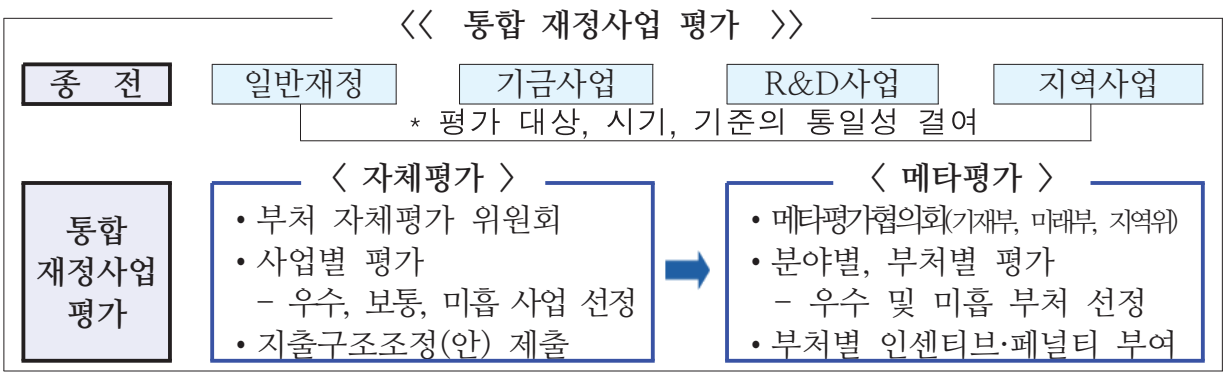

※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주요 변경사항
- (평가대상·주기) 전체 재정사업의 1/3, 3년 주기 → 전체, 1년 주기('16년은 50%)
- (자체평가 기준) 사업 수 기준, 5단계 등급 → 예산 규모 기준, 3단계 등급
- (메타평가 방식) 일반재정, R&D 등 분야별 →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 (평가결과 환류) 미흡사업 10% 예산삭감 → 지출구조조정(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등

- 평가대상 : 탄소배출권 기반조성 등 16개 단위사업(사업의 50%, 지역, R&D는 세부사업)
- 총괄위원회(위원장 : 차장, 5인 이상, 2/3이상 민간위원) 및 분야별(일반재정·지역사업, R&D)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평가 왜곡 및 관대화 예방 등을 위한 우리청 자체 세부지침 마련

2) 재정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관리 강화로 실질적인 성과창출

○ 2015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율적 검증절차 강화

-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및 부서별 교차검증 실시

○ 성과관리와 재정운용의 연계를 강화한 2017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 자체평가위원회 사전검토를 통해 계획서 적정성 검증

○ 만족도조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일괄 추진하여 객관성·신뢰성 확보

* 만족도조사 대상 : 성과계획서에 만족도조사 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재정사업

○ 성과 전문가 협력네트워크 구성,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평가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

3) 보조금 중복·누수 방지 등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 단계별(선정-집행점검-사후관리-환류) 관리점검체계 강화

-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으로 관리점검체계, 점검내용, 점검·보고 절차 및 서식 표준화 및 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산림분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 추진

- 기획재정(재정성과) : 총괄조정, 정보통계 : 시행, 사업부서 : 참여

4) 예산집행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로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

ㅇ 외부지적 및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책임성 강화

ㅇ 전체 단위사업 집행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ㅇ 예산집행심의회 및 재정집행점검회의(특별점검단) 운영의 내실화

ㅇ 예산낭비 사례 처리결과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 지급(3천만원 한도)

* 예산낭비 사례 접수시 담당 사업부서에서 현지조사 후 신고센터로 회신

ㅇ 재정집행의 효과제고를 위해 실집행 관리 강화

- 본청 각 부서·지자체·소속기관별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15년 연말까지 집행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실집행 제고 및 연말 몰아쓰기 방지

ㅇ 월별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행 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집행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직접 현장점검, 중점관리사업과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집중 점검

라. 추진일정

ㅇ '16년도 주요사업 재정집행계획 수립 : 2016. 1월

ㅇ 통합 재정사업평가 지침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 '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계획 시달 : 2016. 1월
- '17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 2016. 1~12월
- '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기획재정부) : 2016. 3월
- '16년도 재정사업 효과성평가 및 만족도 조사 추진 : 2016. 3~12월
- '16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기여자 포상 : 2016. 12월

ㅇ '16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초조사보고서 제출(조세재정연구원) : 2016. 3월

ㅇ '15년도 성과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6. 2월

ㅇ '17년도 성과계획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6. 6월

ㅇ '16년도 예산집행심의회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운영 : 2016. 매월

3.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 추진

목 표

◇ ICT를 융합한 국민 맞춤 산림서비스 집중 육성
◇ 통합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 속으로 정부3.0 성과 확산

가. 정책여건

ㅇ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다양한 정부3.0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나 국민 체감도는 낮은 실정

ㅇ 산림분야에서도 산림복지, 산림재해 안전을 중심으로 일부 정부3.0 사례가 창출되고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대표사례 창출·확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나. 기본방향

ㅇ 정부3.0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 창출

ㅇ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부분 사업화 지원

ㅇ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3.0 성과 통합홍보 및 추진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행정3.0 실행계획」 수정·보완을 통해 실행력 제고

ㅇ 정부3.0 추진성과 및 미비점 분석 결과 반영
- 정부3.0 도입 초·중반기의 우리 청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정부3.0 확산기의 대응 전략 마련
- 산림분야 정부3.0 실행과제 분석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객유형화, 과제범위 확대 등 실행계획 개선

ㅇ ‘정부3.0 T/F’를 구성하여 실행계획 이행상황 관리 강화
- 소관부서·기관·단체 담당관·실무자를 포함한 ‘정부3.0 T/F’ 구성·운영
-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창출의 제약요인 공동해결 추진

2) 산림분야 정부3.0 대표과제를 선정·관리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

ㅇ ICT를 융합한 국민 맞춤 서비스 과제 육성

- 산림재해통합시스템, 산림주제도 서비스, 자연휴양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대국민서비스 대표과제 선정
- 대표과제의 조기 성과 가시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과제 품질관리

ㅇ 국민디자인단 활동영역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밀착형 우수 성공사례 창출

- '국민디자인 과제 선정 자문단'(외부전문가·정책수요자 등)을 구성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1개→5개)하고 과제별 국민디자인단 구성·운영
- 발대식, 성과발표회 등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디자인단 제안을 정책 수립·추진에 반영하여 국민 맞춤 산림서비스 제공 확대

3)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ㅇ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고가치·고수요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 산림통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정보 등 9종의 DB 개방(총 52종/57종)
- 민간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 수요를 반영한 신규 데이터를 발굴

ㅇ 민·관 협업을 통한 등산로 정보 순환서비스 체계 구축

- 등산로 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산림청이 재가공하여 개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ㅇ 경진대회를 통한 민간 활용 확대와 활용 기업 지원

- 아이디어 기획과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활용 기업에 대한 맞춤형 데이터 제공과 홍보 등 지속적인 지원 확대

4) 정부3.0 성과에 대한 부서·기관 통합홍보 활성화

ㅇ 부서·기관 협업 통해 정부3.0 우수성과 홍보 강화

- 정부3.0 대표과제 추진부서와 대변인실, 창조행정담당관실이 협업하여 기획보도, 기고, 인터뷰 등 정부3.0 연계 집중 홍보 실시
- 정부3.0 국민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홍보 활동 전개

ㅇ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정부3.0 성과 홍보

- '정부3.0 체험마당' 참여 확대(1회→2회)를 통해 정부3.0으로 달라진 산림행정의 모습을 사례체험형으로 소개

  * ('15) 빅데이터 활용 산불예방 전시관, 산림치유 체험관 운영

- 상·하반기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적극 발굴·포상

5) 정부3.0 추진 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 실시

ㅇ 계층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부3.0 추진 역량 강화

- 담당자, 중견 실무자, 간부급 공무원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실시
- 단순 강의 위주에서 벗어나 분임토의, 액션러닝 기법 도입으로 정부3.0 방식의 문제해결 역량 교육 실시(산림교육원 정부3.0 정책과정 프로그램 구성)

ㅇ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산림분야 정부3.0 성과창출 능력 제고

- 정부3.0 선도부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토론회, 사례학습을 통해 정부3.0 현장 실행능력 강화
- 타부처·지자체 우수사례를 산림분야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성공요인 및 분야별 특징 분석·공유

라. 추진일정

ㅇ「산림행정3.0 실행계획」 수정·보완 : 2016. 2월

ㅇ 2016년 산림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2016. 2월

ㅇ 산림분야 정부3.0 대표과제 선정 : 2016. 3월

ㅇ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 2016. 5∼7월

ㅇ「정부3.0 체험마당」참여 : 2016. 5월, 11월

ㅇ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 2016. 6월, 10월

ㅇ 2016년 산림공공데이터 활용 포레스톤 대회 개최 : 2016. 9월

ㅇ 9종의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 2016. 11월

ㅇ 정부3.0 정책과정(산림교육원) : 연중(4회)

ㅇ 정부3.0 대표과제 컨설팅 : 연중(상시)

4. 산림행정 효율성 향상

목 표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창의성 증진
◇ 현장과의 소통 및 산림정책의 현장 대응력 강화

가. 정책여건

ㅇ 정부3.0 시대를 맞아 국민·현장·문제해결 중심으로 산림행정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ㅇ 불필요한 관행,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절차 등으로 산림행정의 효율성·창의성 등은 여전히 낮은 실정

나. 기본방향

ㅇ 효율성·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ㅇ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산림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산림행정 효율성·창의성 증진

ㅇ 불필요한 관행·불합리한 업무절차를 발굴하여 개선
-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족영역을 개선하는 '산림분야 일하는 방식 혁신 계획' 수립
- 행정환경 변화에 맞지 않은 업무규정과 절차 정비, 권한과 책임에 맞게 위임전결규정 등을 재설계하여 결재단계 등 대폭 축소
- 산림시책 교육 방법 개선(집합 → 권역별 합동교육) 등 기관·부서별 업무다이어트 사례를 발굴하여 전기관·부서 확산

ㅇ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 활성화
-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제 운영 등을 통해 채택률 및 실시율 제고
-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국민공모 확대(2회→3회)

ㅇ「공무원 연구모임」운영 활성화를 통한 업무의 창의성 증진
- 우수 연구모임 포상 및 수범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성과 전파 및 공유

2) 온라인 정책토론 및 정책실명제 운영 내실화

ㅇ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내실화
- 시기별로 국민이 관심 있는 과제,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토론과제 확대 선정
- 토론과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토론결과 및 정책반영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ㅇ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산림행정의 투명성 제고
-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들에 대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3) 현장과의 소통 및 산림행정 정책 네트워크 강화

ㅇ 제4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각계각층 전문가로 새로이 구성하여 아이디어 및 정책제언 창구를 다변화

ㅇ「산림정책평가위원」,「산림행정연구회」등 전문가 그룹과의 워크숍, 토론회, 현장 탐방 등 활성화

ㅇ「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자체와 소통 및 협력 강화

라. 추진일정

ㅇ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 2016. 2월

ㅇ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2016. 4월

ㅇ 산림청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계획 수립 : 2016. 4월

ㅇ 산림청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2016. 5월

ㅇ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ㅇ 자체 제안 심사위원회 운영 : 반기별 1회

ㅇ 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개최 : 상·하반기 1회

5. 산림행정 평가 및 성과관리

목 표

◇ 내실있는 평가제도 운영 및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으로 산림행정의 효율성 제고
◇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연계로 통합적인 정부업무 성과 제고

가. 정책여건

ㅇ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대한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지원에 역점

ㅇ 산림분야 평가체계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되 자율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ㅇ 국정기조를 반영한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분야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

ㅇ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를 연계하는 평가체계 확립으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ㅇ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성과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정기조와 정책여건을 반영한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이행

ㅇ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 핵심과제의 주요 지표 및 내용, 대통령 지시사항 등 반영

ㅇ 국민 체감 성과창출을 위해 성과지표의 결과지표 비중 확대
- 결과지표 비중 : ('15) 82% → ('16) 85% 이상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점검결과(반기)를 주요정책 자체평가에 반영

2)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연계로 통합적인 정부업무 성과 제고

〈특정평가〉

○ ’16년 정부업무평가 방향과 ’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및 우수부처 성과관리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성과 관리 방향 설정

○ 과제선정 후 분기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추진일정 및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관리하는 등 정부업무평가에 철저히 대비

○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관심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평가와 본청·소속기관 평가를 연계

〈주요정책 자체평가〉

○ ’16년 정부업무평가 방향 및 ’15년 자체평가 결과 분석, 직원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자체평가 계획 수립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사업부서별 주요정책)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추진에 반영

* 자체평가 절차 : 전문위원평가 → 설명회를 통한 소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부서 이의 신청 → 평가총괄부서 검증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본청·소속기관 평가〉

○ 국정과제, 규제개혁 등 특정평가과제의 목표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본청·소속기관 평가항목에 정부업무평가 항목별 비율을 적정히 반영

○ 본청·소속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적 성과보상 실시

- 평가결과는 5급 이하 성과급 및 4급 이상 성과연봉 책정 시 반영
- 우수 부서·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 주관)〉

○ 지자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국정과제, 현안사업의 성과제고 위주로 지표 개선

- ’16년(’15년 실적) 평가지표 : 산림자원 육성 등 3개 지표(7개 세부지표, ’15년 대비 30% 감축)

* 7개 세부지표 : 산림자원조성사업 달성률, 목재생산계획 달성률, 산림휴양복지 수혜인원 증감률, 도시녹화운동 성과율, 산불방지 성과율, 우기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률,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율

ㅇ 행정자치부 실적자료를 근거로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수기관 선발·포상

- 우수 광역지자체는 시와 도로 구분하여 선정(시 4, 도 5)
- 우수 기초지자체는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수기관 선정(시단위 5, 도단위 10)
- 평가 유공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

3)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ㅇ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정기회의(1월, 4월) 및 현장토론회(7~8월) 개최

ㅇ 평가위원의 산림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소위별 현장설명회 개최(7~8월 사업부서별 연 1회) 및 산림정책 자료 제공(사업부서별 연 2회 이상)

라. 추진일정

ㅇ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 2016. 3~4월

ㅇ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개최(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확정 등) : 2016. 4월

ㅇ 본청 및 소속기관 평가계획 수립 : 2016. 5월

ㅇ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 2016. 7월

ㅇ 행정관리역량평가 상반기 점검 : 2016. 8월

ㅇ 산림정책평가위원회 현장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 2016. 7~8월

ㅇ 특정평가 추진실적 제출(국무조정실) : 2016. 12월

ㅇ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공개 및 포상 : 2016. 12월

ㅇ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개최(주요정책 자체평가) : 2017. 1월

ㅇ 본청·소속기관 평가 결과 포상 : 2017. 1월

6. 산림행정 조직 및 정원관리

목 표

◇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

◇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가. 정책여건

ㅇ 산림을 활용한 산업화, 산림복지서비스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인력 운영 방침상 신규 조직 및 인력 확대는 어려운 상황

ㅇ 자체 인력 재배치 방안을 강구하고도 신규 인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소요정원·수시직제를 요구할 수 있어 전략적 대응 필요

나. 기본방향

ㅇ 법령 제·개정, 시설·장비 도입 등의 수요는 기구 및 정원을 신규 확보

ㅇ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을 발굴하여 핵심기능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다. 세부추진계획

1) 2016년도 소요정원 책정결과 2/4분기에 직제 반영

ㅇ 기구 신설 : 국립산림과학원 소속기관으로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신설

ㅇ 증원 : 15명(4급 1, 4·5급 1, 5급 1, 6급 5, 7급 3, 연구관 1, 연구사 3)
- (본청) 산림복지정책 3, 방제현장품질 1, 토석안전 1, 사이버보안 1
- (국립수목원) 산림종자연구 1, 정원연구 1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연구 4, 목재제품 KS표준 1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달음산 1, 시설안전 1

ㅇ 직급상향 : 4명
- 본청 : 4급 1 → 3·4급 1, 5급 1 → 4·5급 1
- 소속기관 : 6급 2 → 5급 2

2) 국정과제 등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ㅇ 국정과제·협업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효율화

-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청 조직혁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청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안 마련

ㅇ 행자부·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해 2016년도 수시직제 반영

3)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기구·정원 확보

ㅇ 산림항공본부 제주격납고 등 신규 시설 도입에 따른 기구·인력 배치

ㅇ 법령 제·개정, 현안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기구·인력 확보

4) 총액인건비·통합정원제 등의 운영을 내실화

ㅇ 자체 총액인건비제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통합정원(14명)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기능쇠퇴 분야, 중복기능 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효율화

ㅇ 기관·부서별 특성,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기계약직 정원관리 방안 마련

5) 정부위원회 운영관리 내실화

ㅇ 정부 방침에 맞게 여성위원 위촉비율(2017년 40% 이상 목표)를 현행 32%에서 38%까지 확대

* 현행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32%, 녹색자금운용심의회 33%, 산림교육심의위원회 41%,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20%, 지속가능한목재이용위원회 33%

ㅇ 연간 회의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 또는 폐지

라. 추진일정

ㅇ 무기계약직 정원 조정 : ’16. 1월

ㅇ 산림청 조직혁신안 마련 : ’16. 1분기

ㅇ 2017년 소요정원, 무기계약직 증원 수요조사 및 검토 : ’16. 1분기

ㅇ 2017년도 소요정원 요구 및 중기(’16~’20년)인력운영계획 마련 : ’16. 4월

ㅇ 2016년도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16. 4월, 9월

ㅇ 2016년도 소요정원 반영 등을 위한 직제 개정 : ’16. 2분기

ㅇ 2016년도 통합정원 감축 등을 위한 직제 개정 : ’16. 4분기

ㅇ 정부위원회 운영 관리 : 연중

7. 산림관계 법령 재정비

목 표

◇ 알기 쉬운 산림관계 법령 만들기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 법령의 적기 제·개정을 위한 전략적 입법계획 수립·추진

가. 정책여건

ㅇ 산림분야 규제관리 강화 등으로 인한 법령 제·개정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법령이 수시 제·개정됨에 따른 문제점 해소 필요

* 법령 간 내용중복, 지나친 가지조문,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등

ㅇ 입법과정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법령 제·개정 적기추진을 위한 전략적 입법계획 수립·추진 필요

나. 기본방향

ㅇ 알기 쉬운 산림관계 법령 만들기 중·장기 계획을 마련·시행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개정 추진

ㅇ 국회 및 법제처와 사전조율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법령정비협의 운영

ㅇ 소관부서 법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로 제·개정 법률안의 완성도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알기 쉬운 산림관계 법령 만들기 중·장기 계획 마련

ㅇ 체계적인 법령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령 개정 추진

- 산림법 분법('05) 이후 법령 수시 개정에 따른 법체계상 모순 및 미비사항을 분석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비안 마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16.1월 완료예정) : 우리 청 소관 법률 중 산지관리법, 국유림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포함

ㅇ 본청 및 소속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순차적 점검 실시

- 행정규칙 내용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기타 미비점에 대한 점검 및 개정 추진

2) 전략적 입법계획 수립을 통한 법령 제·개정 적기 추진

ㅇ 2016년도 법령 개정수요 조사를 통해 입법 방식·시기 조정

- 정부입법(4건) : 인증규제혁신 3건(탄소흡수원법, 목재이용법, 수목원정원법), 청원산림보호직원 처우개선 1건(청원산림직원법)
- 법안 국회제출 시기 조정으로 전략적 국회 대응
- 제때마련 하위법령 모니터링으로 원활한 법제처 심사 대응

ㅇ 법령의 개정주기 조정을 통한 관련 부서 업무부담 완화

- 동일 법령에 대해 소관업무별 개정수요가 다수 있는 경우 법무계 주관 일괄개정

3) 법령정비협의회의 내실화를 통한 법령 내용 사전검토 강화

ㅇ 법령 개정을 수반하는 정책에 대한 중점 검토를 통해 입안과정에서의 혼란 및 향후 법령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 개정을 요하는 법률과 하위법령을 동시에 심사하여 내용 검토 강화

ㅇ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령정비협의회를 통해 부서 간 이견 조정

ㅇ 법령정비협의회 사전 검토 여부에 따라 법령 처리 과정에서 차등 지원

4) 법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ㅇ 법제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령 입안 매뉴얼 제작·배포('16.6)

ㅇ 소관부서 법제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5)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ㅇ 우리청 관련 타 부처 법령안 제·개정 추진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적극적 의견제시

라. 추진일정

ㅇ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 작성·제출 : 2015. 11월

ㅇ 법령 입안 매뉴얼 제작·배포 : 2016. 6월

ㅇ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 연중

ㅇ 일부개정법령안 및 행정규칙 서식승인 : 연중

ㅇ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 연중

8. 산림분야 규제개선

목 표

◇ 실질적인 현장변화를 위한 질적 규제개선 추진
◇ 소통·협업 기반의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확산

가. 정책여건

ㅇ 강력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국민·기업의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함

ㅇ 현장 체감형 과제의 발굴, 개선사항에 대해 이해당사자에게 신속히 홍보하는 등 규제개선 소통확대가 요구됨

나. 기본방향

ㅇ 규제개선 파급효과를 높이고, 실질적 현장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테마형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추진

ㅇ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과제, 관심도가 높은 과제 등 중점홍보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홍보 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 보완

다. 세부추진계획

1) 집중적·입체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

ㅇ 규제건의 수용과제나 민원서, 사업부서 업무계획 등을 검토하여 과제 발굴

ㅇ 협회·단체에 협조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제 발굴 주간운영, 발굴 T/F팀 구성, 자치단체, 기업체 방문 등 적극적 발굴 시스템 구축

ㅇ 단순 법령개정 과제보다는 파급효과가 큰 테마형 과제 중점 발굴

- 목재산업 및 토석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자치단체 중점주진 사업에 대한 산지이용 제한 완화 등

ㅇ 전년도에 개선한 과제를 모니터링하고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 규제개선에 따른 파생적 문제점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

2) 규제개선 효과 부각 및 단계별 계획적 홍보 추진

ㅇ 연접개발 제한 폐지와 같이 규제개선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적 홍보 실시

- 수혜자 인터뷰 등 현장체감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

ㅇ 규제개선 과제 발굴, 법령개정 및 문제점 보완 등 각 단계별로 홍보

ㅇ 본청과 소속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홍보효과 제고

- 본청은 전국단위, 소속기관은 지역단위로 분담

3) 규제개선에 따른 법령개정의 체계적 추진

ㅇ 규제개혁 관련 법령개정 사항과 일반 법령개정 사항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정 추진

ㅇ 재검토기한 설정 등 특별한 경우는 규제총괄 부서 주관 일괄개정 추진

ㅇ 규제비용분석에 따라 추가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법제처 심사가 분산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과 규제담당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4) 민·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현장 소통 활성화

ㅇ 민·관 규제개혁위원회(연 2회) 현장회의 확대 및 규제심사위원회 원칙적 대면회의 개최

ㅇ 소속기관의 산·관 협의체, 현장지원센터 등을 이용한 현장소통 활성화

- 관련기업체, 산촌주민 등을 직접 방문하여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시 본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 정책안내 및 의견 청취

라. 추진일정

ㅇ 규제개선과제 발굴 주간 및 T/F 팀 운영 : 2015년 12월 ~ 2016. 1월

-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 회의, 다수부처 과제 협의 등

ㅇ ’16년도 규제개혁 과제 선정 : 2016. 1월

ㅇ 규제개혁 성과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 분기별 1회

ㅇ 산림교육원 규제개혁과정 교육 추진 : 2016. 5월, 9월

ㅇ ’16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및 성과 조사 용역 : 2016. 10~11월

9. 민원만족도 제고

목 표

◇ 국민중심의 민원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민원만족도 향상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가. 정책여건

- ‘국민중심의 정부3.0 서비스 정부’ 달성을 위한 국민중심·국민참여·국민체감의 공공서비스 혁신 강조
- 국민 의식수준 향상과 산지개발 수요 증대로 수용 곤란한 민원 증가
- 수용 불가 민원이 지속 발생됨에 따라 민원만족도가 일정 수준에서 정체

나. 기본방향

- 국민불편 민원제도 상시 발굴 및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
-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정기적인 민원처리 실태점검 등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보호담당관(2명) 운영 활성화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신세대의 이용편의를 위한 민원대표번호(1588-3249)문자상담서비스 운영

2)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 고객만족 서비스 기관별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3~4월)
- 산림교육원 ‘민원응대역량강화과정’ 개설·운영(연 2회)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한 민원담당자 소통의 장 마련(나라e음 소통방, 민원공무원 워크숍)
- 민원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자 선정·격려(반기별)

3)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 실태점검

- ㅇ 매월 접수·처리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답변 충실도,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수립·시행
- ㅇ 매주 처리된 민원에 대한 불만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민원만족도가 부진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교육(집합교육, 영상회의) 실시
- ㅇ 매일 민원처리기간 및 불만민원 현황을 담당자에게 알리는 '미처리 민원현황 사전알림서비스' 실시

4) 산림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 ㅇ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전화응대 수준을 향상하고 산림청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연 2회)
- ㅇ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고 주도하는 고객만족(CS) 실천리더 선발·운영
  - 부서(기관)별 1명씩 CS 실천리더를 선발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5) 갈등관리 업무강화로 갈등예방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

- ㅇ 잠재적 갈등과제에 대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반기별)
- ㅇ 갈등영향분석 활용 제고를 위해 '갈등영향분석 가이드라인' 작성

라. 추진일정

- ㅇ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 분석: 매월
- ㅇ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주간 분석: 매주
- ㅇ 고객만족(CS) 서비스 교육: 2016. 3～4월
- ㅇ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시달: 2016. 3월
- ㅇ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2회(상·하반기)
- ㅇ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격려: 2회(상·하반기)
- ㅇ 산림행정서비스 전화친절도 조사: 2016. 5월·10월

10. 산림행정의 투명성 향상 및 자체감사 운영 내실화

목 표

◇ 산림정책 ·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및 투명성 확보
◇ 자체감사 운영 내실화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가. 정책여건

ㅇ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감사 및 제도개선 추진

ㅇ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ㅇ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창출

나. 기본방향

ㅇ 자체감사 내실화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ㅇ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기관 네트워크 구축

ㅇ 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 및 우수기관·공무원 발굴·포상

다. 세부추진계획

1) 자체감사 내실화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ㅇ 자체감사의 효율적 수행(13회, 35기관)

- 종합감사(4회) : 동부지방산림청(8), 남부지방산림청(6), 국립산림과학원(4), 산림조합중앙회 소속기관(임업훈련원 3, 지역본부 5)
- 재무감사(2회) :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4)
- 복무감사(4회) : 설 명절, 하계휴가, 추석 명절, 연말연시
- 합동감사(4회) : 행자부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4)

ㅇ 자체감사 내실화를 위한 예비조사 추진

-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고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예비조사 추진('16년 35개 대상기관)

ㅇ 감사처분 이행실태 특별감사 추진 및 반복지적 사례 사전 예방

- 자체감사 처분이행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처분 미이행 및 소극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엄벌 조치(3년간 1,170건 지적)
- 자체감사 반복지적 사례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1차 소속기관)

ㅇ 자체감사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 감사결과 현지처분 기준 마련 및 감사공무원 직무윤리 실천서약, 민·관 감사협의회 제도 신설을 위한 산림청 감사규정 개정

ㅇ 정부합동감사 적극 참여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적정 이행 여부 점검

- 공·사유림의 산림정책·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 발굴 개선
- 산지전용 적정성, 조림 및 숲가꾸기, 소득사업 등의 보조사업 감사

2)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기관 네트워크 구축

ㅇ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감사 참여

- 국립산림과학원 등 연구 분야 감사에 전문가 교차 참여로 효율성 제고
- 회계사, 변호사 감사 참여로 전문분야 감사 강화

ㅇ 산림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감사관제도(2명) 운영 및 활용 강화

- 산림분야 비리·불만사항 제보 및 자체 감사 활동에 참여
- 수감기관 대상 청렴 및 공직윤리 특강 등

ㅇ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감사협의회” 운영(연 2회)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3) 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 및 우수·모범 공무원(기관) 발굴·포상

ㅇ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적극행정 면책 처리

ㅇ 예산절감, 창의적 업무수행 등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및 기관(부서) 포상

라. 추진일정

ㅇ 2016년 자체감사 계획 등 수립 : 2016. 1분기

ㅇ 산림청 감사규정 개정 : 2016. 1분기

ㅇ 감사반복 지적사례 권역별 순회 교육 : 2016. 상반기

ㅇ “민관감사협의회” 운영 : 2016. 상·하반기

ㅇ 자체감사 결과 우수·모범공무원 발굴·포상 : 연중

11.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기강 확립

목 표

◇ 반부패·청렴대책 적극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
◇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산림행정 구현

가. 정책여건

ㅇ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노력

ㅇ 국정 기조에 따른 반부패·기강해이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

나. 기본방향

ㅇ 관련규정 강화 및 청렴교육·홍보 추진으로 청렴 의식 제고

ㅇ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감찰팀 상시 운영

ㅇ 부패·비리 취약분야 및 유발 가능 요인 적극 발굴·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비리 예방활동 강화

ㅇ 기관 내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평가 및 진단 실시

- 고위공직자 및 소속기관장 등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상반기)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및 청렴공무원 포상(하반기)
- 부패 비리 관련 자가진단 및 설문조사 실시

ㅇ 부패·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스템 운영

- 외부강의 운영기준 강화를 위한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운영('16.2월)

  * 외부강의 횟수(3회·6시간/월), 외부강의 대가(원고료를 대가기준 상한액에 포함)

- 내부 인트라넷에 '청탁등록센터', '행동강령 상담센터' 등 운영
- 외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패·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 부패취약 직무 분야에 대한 청렴도 모니터링을 위한 'Clean-call제' 운영

ㅇ 반부패·청렴교육 및 홍보 추진으로 청렴 문화 확산

-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5시간) 지속 실시 및 모니터링 강화
- 산림교육원 청렴교육과정 운영 및 직무교육에 청렴교육 시간 반영
-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및 청렴집합교육 실시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16.9월)에 따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및 홍보 실시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산림행정 구현

ㅇ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제도 발굴 개선

- 부패취약분야 및 요인에 대한 자체 감찰·감사활동 강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잘못된 관행·제도 발굴 개선 추진

ㅇ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직무감찰 활동 강화

- 공직감찰팀 상시 운영으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
- 총선 전·후, 명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 칸막이, 복지부동 행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문제인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전개하고 언론보도, 외부기관 통보사항, 민원내용 등 모니터링 강화

ㅇ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공직자 발본색원 및 엄정 처벌
- 개인 비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성과상여금 하향, 표창제한 등)
- 개인비리 발생기관·부서는 자체 업무평가(공직기강 분야)에 반영
- 외부 비위 통보자에 대한 비위사건 처리기준 이행실태 모니터링

라. 추진일정

ㅇ 2016년 부패방지 · 공직기강확립 계획 등 수립 : 2016. 1분기

ㅇ 반부패·청렴 순회교육 및 홍보 추진 : 연중

ㅇ 내·외부 홈페이지 신고·상담 창구 운영 : 연중

ㅇ 공직감찰팀 운영 및 취약분야·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 연중

ㅇ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2016. 상반기

ㅇ 소속·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실시 : 2016. 하반기

ㅇ 청렴산림공무원 발굴·포상 : 2016. 하반기

12. 현장중심의 산림사업 업무 정보화

목 표

◇ 임도·사방 등 산림토목업무 정보화
◇ 선진사례 산림사업업무 정보화를 사유림으로 확산 기반 마련

가. 정책여건

ㅇ 산림가치 확산, 재난관리, 기후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 대두

ㅇ 모바일 이용의 보편화, 산림현장 업무의 정보화 활용 확산 등 업무추진의 방식 변화

ㅇ 산림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 필요

나. 기본방향

ㅇ 수요자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대국민포털서비스 구현

ㅇ 국유림산림통합체계, 산림재해통합체계 등의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관리

ㅇ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개선 및 개방·홍보 등을 통해 산림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간부분 사업화 지원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유림통합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사유림으로 확대 추진

ㅇ 시스템 기반의 업무처리 정착과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안정화 추진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의 경영실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편의성 개선으로 사업이력관리체계 완성
- 산림사업 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한 사방 사업정보에 대한 확보

ㅇ (국유림) 임도 및 사방업무에 대한 산림토목 정보화 추진
- 설계, 시공, 감리 용역 사업관리로 대장 및 유지관리 정보 현행화
- 공간정보 이력관리체계 마련으로 정보공유 활용확대(CAD 정보 자동변환)

ㅇ (사유림) 임업경영정보와 연계한 '사유림 통합관리체계' 기반 마련
- 농업경영체를 활용한 임업경영체* 구축 및 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 임업경영체 : 산주,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조합원 등
-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정보를 실시간 확보

2) 산림보조금관리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ㅇ 1단계 시범구축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시범운영 실시

ㅇ 임산물 수출 및 해외산림개발 등 6개 세부사업으로 확대

ㅇ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과 온라인 연계를 위한 관련 법·지침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등

3)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산림서비스 구현

ㅇ 스마트야장과 정보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 및 현장처리 기능 고도화
- 스마트야장과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정보 연계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스마트야장 정보조회 기능 강화(경영업무(3종), 자원업무(5종), 토목업무(1종))
- 국유림관리소(2개소) 대상 WiFi 기반 정보 연계 시범사업 추진

ㅇ 종이야장 방식을 적용한 **'스마트 펜'** 융합기술 도입

ㅇ 모바일 현장업무 정착을 위한 모바일기기 노후장비 교체

4) EA기반의 산림정보화 추진 콘트롤타워 강화

ㅇ 효과적인 정보화예산 투자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한 정보화사업의 예산 반영 추진
- 사업간 중복성, 시스템 연계 검토 등 협의절차를 위한 실무검토회 강화
  * (차년도 정보화사업) 실무검토회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기획실) 예산조정
  * 심의대상 사업 정보화를 위한 기반사업에 대하여 우선 투자 등 검토 필요

ㅇ 정보화 용역사업의 사업계획·발주·사업관리·산출물 인수·운영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내실 있게 추진
- (계획단계) 정보화기술성, 업무의 효율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역할 정립
- (추진단계) 기술표준, 보안성검토 등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정보시스템 품질 제고
- (인수단계) 활용도를 강화를 위해 소관부서 운영, 검수체계 강화
- (운영단계) 운영시스템에 대한 사용성과 등을 측정하여 사용율이 낮은 시스템은 관련 시스템과 통합하거나 폐기 조치

ㅇ 시스템 활용률 제고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을 소관부서로 이관

- 메일, 메모를 활용한 주기적인 통계보고 등은 소관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 현장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지침 등을 적극 개정 추진
  *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정보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고, 유지보수를 통합운영
  * 산림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으로 의사결정, 시스템 검증에 대한 부담등 현업의 정보화 추진에 대한 한계 극복

5)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ㅇ 산림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강화

- 유지보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수준관리(SLM, Service Layer Management) 적용
- 유지보수 지원범위를 산림탄소모아시스템까지 확대

ㅇ 소속기관 네트워크 고도화 및 증속 추진

- 대상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0개소(2Mbps → 4Mbps)

6) 대국민서비스 정보환경 변경 사항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개선

ㅇ 대표포털 등 대국민 시스템 Active-X 제거 추진

- 16개 시스템에 대하여 Active-X 제거(대국민 서비스 : 3, 업무용 13)
  * Active-X 설치 내역 : 대표포털 등 29개 시스템 중 50개의 Active-X 사용

ㅇ MS 보안업데이트 중단(2016년 1월)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

- IE8, IE9의 보안업데이트가 중단됨에 따라 최신 버전인 IE11에서 시스템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조치
- 대국민서비스 2종(대표포털, 자연휴양림정보시스템)을 1월에 우선적으로 반영 추진하고 내부업무는 연중 추진

7)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ㅇ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고가치·고수요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 산림통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정보 등 9개 DB 개방(총 52종/57종)
- 민간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 수요를 반영한 신규 데이터를 발굴

ㅇ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를 위한 등산로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숲길개방DB) 민간이 주도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산림청이 재가공하여 개방하는 “개방데이터 순환서비스” 추진체계 마련

ㅇ 경진대회를 통한 민간 활용 확대와 활용 기업 지원

- 아이디어 기획과 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활용 기업에 대한 맞춤형 데이터 제공과 홍보 등 지속적인 지원 확대

라. 추진일정

ㅇ 2016년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분기별)

ㅇ 2017년도 정보화시행계획 및 성과시행계획 마련 : 2016. 4월

ㅇ 2016년 정보화예산 확보 : 2016, 1~8월

- 중기사업계획 마련 : 2016. 1월~2월
- 정보화예산 : 2016. 3~8월

ㅇ 노후 전산장비 교체 : 2016. 5월

ㅇ 소속기관 네트워크 증속 : 2016. 5월~8월

ㅇ 정보화 용역사업 주요 추진 일정

- 국가산림정보화 고도화 구축 사업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 2016. 1월

·사업계획 보고 및 발주 : 2016. 1월

·사업관리(착수, 워크숍, 중간보고, 완료보고) : 2015. 4~12월

·최종검수 및 인수 : 2015. 12월

- 정보화 운영·유지보수

·2016년 통합운영·유지보수 계획 및 발주 : 2015. 12월

·정보시스템 Active-X 제거 추진 : 2016. 3~12월

·정보시스템 MS IE11 호환 : 2016. 1~12월

ㅇ 산림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개방

- 2016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2016. 2월
- 2016년 산림공공데이터 활용 포레스톤 대회 개최 : 2016. 9월
- 9개 DB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 추진 : ~ 2016. 11월

13. 산림공간정보 활용 강화

목 표

◇ 산림공간정보의 공동활용 체계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국민 정보 공유 및 과학적인 산림행정 지원

가. 정책여건

ㅇ 제5차 산림기본계획('13~'17)에 따라 효율적인 산림행정지원을 위해 산림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서비스 마련 필요

ㅇ 공간정보에 대한 표준화 및 유관기관 간 연계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산림공간정보의 개방·공유에 대한 수요가 확대

ㅇ '14년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공간정보체계에 대한 개선사업 추진

나. 기본방향

ㅇ 국가 산림공간정보체계 추진계획에 맞춰 산림공간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 이기종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에 효율적인 공유체계 마련

ㅇ 산림정책 지원에 필요한 산림주제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부3.0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산림공간정보의 개방 · 공유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상도 현행화 등 산림공간정보 확대·통합 구축

ㅇ 벌채·조림 등 산림변화에 따른 산림분포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도 현행화 사업 추진

- 매년 산림의 인위적 변화(조림, 전용)와 자연적 생장을 반영하여 산림통계 및 산림경영활동을 지원
- 대상지역 / 예산 : 충남 · 전북 등 / 40억원

* ('15) 125만ha → ('16) → 127만ha → ('17~'19) 374만ha(사업완료)

○ 대축척 산림토양정보를 활용하여 산림토양통계를 생산하고 단기임산물 재배적지 분석 등 사유림 경영컨설팅 기반 마련

- 대상지역 / 예산 : 경남, 경북 / 31억원

  * ('08～'15) 278만ha → ('16) 45만ha → ('17～'18) 265만ha(사업완료)

○ 전국 산림자원조사를 위해 촬영한 과거 항공사진을 정사영상으로 구축하여 산림의 이용변화 등에 활용

- 대상지역 / 예산 : 충남·전북 등 / 40억원

  * ('11) 3차 정사영상 577매 구축 → ('12～'14) 3차 정사영상 115매 구축, 1·2차 항공사진 47,249매 스캐닝 → ('15) 2차 정사영상 698매 구축 → ('16) 1차 정사영상 700매 구축(완료)

2) 산림공간정보서비스는 산림재해통합관리서비스로 일원화하여 재구성

○ 기존 임상도와 과거 산림항공사진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산림병해충 방제지역,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 등 산림경영활동에 밀접한 정보 제공

○ 한국임업진흥원 등 소속기관에서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현

-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등 설립에 맞춰 소속기관에서 산림정보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확대

○ 산림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각 시스템에서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산림탄소모아시스템에서 항공영상, 임상도 등에 대한 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국제표준 서비스 구현

3) 산림공간정보의 신속한 운영지원 및 교류 강화

○ 산림GIS·GPS 활용 장비 확충

- 소속기관의 활용기반 마련(18대, 223백만 원)

·GIS용 PC(8대), GPS 장비(8대), 칼라플로터(2대) 등

○ 산림 GIS 및 GPS 시스템 장비유지 관리

- 산림GIS 시스템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최적의 기능 유지

·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시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 맞춤형 GPS장비 유지보수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교체, 수리, 교육 등)을 통한 장비 성능 최적화

·현지순회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Help Desk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ㅇ ‘2016년 산림 IT 컨퍼런스’ 개최

- 산림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산림정보기술을 교류하고, 최신 산림 IT 기술 활용능력 강화

ㅇ 공간정보 관련 정책·기술 교류 강화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행정자치부 국가지점번호 제도 관계기관 협의회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 교류 강화
-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기본 공간정보자료 확보 및 현업 활용 지원
- 국가공간정보세미나 참가, 부처별 신기술 확보 등 GIS 기술교류 확대
  - ·국가공간정보위원회(국토교통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위성정보활용 워크숍(항공우주연구원) 등

ㅇ 산림공간정보 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공간정보 교육 추진

- 산림교육원 전문과정(3일, 2회 60명)과 소속기관별 방문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공간정보 활용 지원

ㅇ ‘2016년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참가 및 산림공간정보관 운영

-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스마트국토엑스포’에 산림공간정보 활용 사례 등 전략적 홍보 추진

라. 추진일정

ㅇ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개편 : 2016. 1 ~ 12월

ㅇ 소속기관 GIS, GPS 장비 확충 : 2016. 1～3월

ㅇ 2016년 산림 IT 컨퍼런스 개최 : 2016. 11월

ㅇ 2016년 스마트국토엑스포 대회 참가(전시부스 운영) : 2016. 9월

ㅇ 임상도 현행화 사업 추진 : 2016. 1 ~ 11월

ㅇ 산림입지토양도 확대제작사업 추진 : 2016. 1 ~ 11월

ㅇ 산림항공사진 DB구축사업 추진 : 2016. 1～11월

ㅇ 2016년 GPS장비유지보수 추진(순회 유지보수 및 교육) : 분기별

ㅇ 산림GIS교육 실시(정규 3일간 2회, 자체-수시)

ㅇ 산림GIS 홍보 및 타 부처, 기관 간 기술교류 추진 : 수시

ㅇ 산림GIS 자료 확보·유통 및 갱신 : 수시

14.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확대

목 표

◇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산사태정보시스템, 산림공간정보시스템(FGIS) 등의 통합관리체계 마련
◇ 산림재해정보의 대국민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ㅇ 재해·재난에 대한 유관기관 간 범정부 대응역량 강화 필요

ㅇ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등 대응체계 강화

나. 기본방향

ㅇ 산불상황관제 등 산림재해 개별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 간 연계 등 국가적인 재해 대응체계 구축

ㅇ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관리체계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산림항공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ㅇ 산사태예측정보 등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데이터를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로 이관하여 통합체계 구성

ㅇ 산림항공본부의 각 시스템들을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통합하여 사용자별 공통 정보와 개인별 맞춤화 정보서비스 제공

ㅇ 산불·산사태 등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는 앱서비스를 통합하여 스마트 산림재해 현장지원체계로 개편

ㅇ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림병해충관리시스템의 부분적인 기능개선 추진
- 입목의 시가 표준액, 피해지 조림비용, 피해본수 산정, 감식보고서 관리 등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 지원체계 마련

2) 전국 산악기상정보서비스 및 유관기관 정보 연계 체계 강화

ㅇ 산악기상정보에 대한 오픈API 적용을 통해 범부처 활용체계를 구축
- 산림지도에 산악기상정보망의 실시간 산악기상정보를 매쉬업하여 산악 현장의 기상정보 모니터링 체계 마련

ㅇ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정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 등 4개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유관기관 정보 활용 강화
- 저수지의 저수율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림헬기 출동 시 의사결정지원에 활용

3) 백두대간 및 도시숲 정보관리체계 구축

ㅇ 생물다양성에 따른 현지내 보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백두대간·정맥 자연조사 관리체계 구축

ㅇ 국유지, 공유지, 도시산림공원, 생활환경숲, 도시숲 조성 지역에 따른 도시숲 현황 및 통계 정보 제공 기능 구축

4) 정보처리 기능 향상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확대

ㅇ 과거 산림항공영상 등 산림주제도에 대한 관리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스토리지 용량을 대폭 확대
- 과거 산림항공사진 활용을 위한 저장공간 확대(40TB)

ㅇ 산림청에 분산 운영 중인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 이기종 공간정보 간 연계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 소프트웨어 도입

5) 산림재해 통합관리 체계의 효과적인 현장지원 체계 마련

ㅇ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을 통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사용자 문의에 대한 사용방법 등 서비스 요청에 대한 신속한 응대 지원

ㅇ 항공영상, 지적도 등 각종 주제도에 대해서 최신정보를 유지하고,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연계 체계 마련

라. 추진일정

ㅇ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3차) 사업계획서 작성·심의 : 2016. 1월
ㅇ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3차) 착수 : 2016. 5월
ㅇ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3차) 중간보고 및 워크숍 : 2016. 9월
ㅇ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3차) 완료보고 : 2016. 12월
ㅇ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오픈 : 2017. 1월

〈참고〉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의 추진 및 활용

□ 연차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ㅇ 산림재해 정보화전략계획(ISP)('13~'17)을 통해 유관기관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림공간정보 중심의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연차사업으로 추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획수립('13년)	1차('14년)	2차('15년)	3차('16년)	4차('17년)
예산	1,000	4,500	6,000	4,970	5,000
사업 방향	산림재해 중장기 계획 마련	산림재해 공통 운영기반 구축	산불상황관제 통합 및 지자체서비스 확대	산림재해 공유서비스 확대	스마트 산림 현장업무 강화
주요 내용	- 임상도 등 산림공간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 제시 -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구성 - 산불·산사태 등 데이터 예측 대응 복구체계 지원 강화	- 산림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구축 - 산불분석 및 산림병해충·생태 관리 서비스 구축 - 국민안전처와 연계한 산사태발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내외부 연계시스템 구축 - 산림재해 통합DB 구성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통합 - 산림병해충 공동 활용체계 구축 - 가로수·도시숲 및 백두대간 서비스 구축 - 공간정보 기반 지자체 산림재해 통합 서비스 구축 - 국유 임·소반도 현행화	- 산사태·산림항공 정보시스템 통합 - 산악기상정보서비스 - 산림재해 모바일 서비스 통합체계 구성 - 기후변화 대응 정보관리 -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통합 서비스	- 위성영상을 활용한 산림재해 모니터링 서비스 강화 - 산림재해 오픈 API서비스 - 산불 예방·대비·대응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2016년 산림재해 통합관리서비스 활용 및 구축 계획

ㅇ '16년 1월 중 시범운영 후 2월부터 현장 적용 실시

ㅇ 산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교육 및 운영

- 대 상 : 국유림관리소, 시·군·구 산림재해 담당자
- 내 용 : 산불상황관제서비스, 산림병해충관리서비스 등

* 사용자 활용을 위한 **연중 중앙집중식 및 현장 방문교육 실시**

ㅇ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3차) 사업에 따른 TF 구성

1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 표

◇ 사이버 안보로 확대되는 위협에 완벽한 정보보호 체계 유지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가. 정책여건

ㅇ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타깃형 사이버공격 발생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확산에 새로운 보안 위협의 확대 및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대두

ㅇ 지속적인 사이버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과 모바일 장비의 사용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협 증가

ㅇ 용역사업 및 위탁사업체의 정보보호 의식 부재로 인한 정보유출 가능성 존재

나. 기본방향

ㅇ 모의훈련, 인프라 강화, 예방 중심의 지도 활동을 통한 사이버위협 대응력 강화

ㅇ 운영인력 및 위탁사업자를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정보보안 강화 추진

ㅇ 새로운 개인정보처리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적 개인정보 관리 강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규모 및 유형에 따른 보호수준 편차 해소, 임직원 역량강화, 침해예방을 위한 자율적 실천 지원 필요

다. 세부추진계획

1) 전문화된 정보보안 체계 확립

ㅇ 정보보안 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약분야 개선
-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취약성 개선을 위한 정보보안 지도활동 및 정보보안 감사 이행점검 등 자체 정보보호 활동 강화
- 도청장비를 통한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청 24시간 도청 탐지시스템 운용 및 소속기관 주요 장소에 대한 대도청 측정 및 차단
- PC 모니터 등에 사이버 침해 대응 절차 안내 부착용 스티커 제작· 배포

2) 정보보안 의식 함양에 효과적인 자체 모의훈련 추진

ㅇ 연간 모의훈련 결과 대비 개선되지 않는 열람률과 신고율의 개선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패널티(자체평가 반영비율 상향 등) 방안 강구

ㅇ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합동의 침해사고 및 정보유출 대비 모의훈련 확대
- 자체 모의해킹메일 훈련을 통한 全직원 사이버위기대응 능력 향상
- 농식품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한 긴밀한 공조 대응 확립

3) 사이버위협 선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

ㅇ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대응시스템 구축
- 대용량 트래픽 공격, 정보자원 소모형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 등 사이버위협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ㅇ 종합위협모니터링분석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처리 보안관제 기반 및 로그분석을 통한 사이버 위협의 흐름을 추적하고 시나리오 상관 분석을 통한 정밀대응체계 강화
- 비인가 무선네트워크(에그, 무선AP 등)를 통한 정보유출 상시 차단
- 업무망 해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차별로 全 소속기관 확대 구축

ㅇ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통합관리기반 강화
- 소속기관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
- 모바일을 활용한 업무 확대에 따라 실천 가능한 보안 준수사항 마련

4) 침해기법의 고도화·다양화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ㅇ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확대 및 예방체계 개선
-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 강화
- 개인정보유출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 모의해킹 훈련” 실시 및 결과 반영

ㅇ 개인정보 접속이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및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
- 접속기록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및 침해사고 방지

* 접속기록시스템 : 개인정보의 입출력, 수정사항, 개인별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접속한 내역은 6개월 간 보관 관리

5) 담당자 및 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강화

ㅇ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집중과 권한의 강화

-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상·하반기)
  · 기관별 개인정보담당자 외부 전문교육 1회 이상 의무실시
- 개인 PC의 개인정보파일 대청소를 통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매월1일)을 통해 직원 인식 제고 노력
- 개인정보보호 취급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및 워크숍 실시

ㅇ 산하기관 및 법인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화

-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인식 강화
-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이행점검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능력 향상

6) 외주용역업체의 정보보안 수준 강화 및 개인정보 관리 철저

ㅇ 정보화 용역·위탁사업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관리 강화

- 용역사업의 주요 보안 취약점 도출을 통해 정보보안 강화 방안 마련
- 개인정보 위탁계약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
- 위탁업무 수행 목적에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조치
- 위탁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ㅇ 용역업체 보안관리 강화 및 사업 참여자 보안의식 제고

- 용역업체 대상 노트북 PC·휴대형 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 용역업체 대표자 및 사업관리총괄(PM)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서약식 개최
- 2015년 국정원 실태평가 지적사항인 매체제어(USB, Wifi) 방안 수립
- 용역사업 관리 업무자료 등 외부 유출 금지
- 개발자PC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

라. 추진일정

- ㅇ 2016년 개인정보 보호 세부추진계획 수립(1월)
- ㅇ 2017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수립(2월)
-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갱신 심사 실시(1월)
- ㅇ 소속·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등 지도활동(3월, 10월)
- ㅇ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4월)
- ㅇ 개인 PC의 개인정보파일 대청소 실시(5월)
- ㅇ 자체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5월~6월)
- ㅇ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대응시스템 구축(6월)
- ㅇ 2016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6월)(전직원 및 정보화용역업체 등)
-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실무자 매뉴얼 개정·배포(6월)
- ㅇ 2016년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실시(6월)
- ㅇ 을지연습 사이버테러 대응 훈련 실시(8월)
- ㅇ 산하기관 및 사단법인 등 대상 개인정보 자율점검 실시(8월)
- ㅇ 종합위협모니터링분석시스템 구축(9월)
- ㅇ 국가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수감(9월～10월)
- ㅇ 소속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이행점검(11월)
-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워크숍 개최(12월)
- ㅇ 소속기관 주요공간의 도청기기에 대한 대도청 측정 실시(분기별)

16. 산림통계 품질관리 강화 및 수요자중심 통계 제공

목 표

◇ 산림통계 품질관리 강화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통계 작성 및 제공

가. 정책여건

- ㅇ 신뢰성 있는 고품질 통계수요 증가로 통계생산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조
- ㅇ 국정감사,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통계의 시의성 요구
- ㅇ 사업부서의 정책 활용도 증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작성 필요
- ㅇ 표본관리 및 선진통계조사 기법 도입 등 고효율·저비용 통계조사 검토

나. 기본방향

- ㅇ 현장 모니터링 및 조사원 교육 강화 등 통계조사의 신뢰성 확보
- ㅇ 통계조사별 항목별 통계작성 완료시기 조정 등 시의성 있는 통계 작성·제공
- ㅇ 사용자 통계요구 분석, 정형통계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통계 개발
- ㅇ 조사체계 개편에 따른 임산물생산조사 및 산림기본통계조사 추진
- ㅇ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완료·결과분석에 따른 제7차 조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생산조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ㅇ 주요 5개 임산물(밤, 호두, 대추, 떫은 감, 표고버섯)은 표본조사, 114개 품목은 도급조사, 26개 품목은 행정조사 추진
  - 표본오차가 적고 신뢰수준이 높은 조사기법을 도입한 통계조사 지속 추진

◦ 표본조사 : 표본임가를 전문 통계조사 기관이 전화조사하여 통계산출 ◦ 도급조사 : 산림청은 예산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통계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 ◦ 행정조사 : 종림, 양묘 등 행정자료로 집계되는 통계를 활용하여 생산액 산출

- ㅇ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지침서 개정 및 기초자료 제공 확대
  - 도급조사 단가 상승, 조사표 및 조사항목 변경 등을 반영한 조사지침서 개정
  - 잔디, 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자리스트를 추가 확보하여 지자체로 제공

ㅇ 임업통계조사 수요조사('15년) 결과에 따른 추가 통계 산출
- 2015년 추진한 '임업통계조사 수요조사'에서 요구된 통계자료를 추가로 산출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자료 제공

ㅇ 국정감사 일정(9월 예정)에 맞춘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공표 시기 단축
- 도급조사원 채용('15년 12월) → 조사원 교육('16년 1월) → 현장조사('16년 1~4월) → 조사표 입력 및 내검('16년 5~6월) → 결과공표(7월)

2)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지속 추진

ㅇ 사유림경영정보(조림, 숲가꾸기, 벌채, 전용, 산불) DB 구축 확산
- '15년 부산, 울산, 광주, 제주지역 완료 → '16년 서울, 인천 구축으로 전국 DB구축 사업 완료
- 행정자치부의 새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산림경영활동 정보 DB를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으로 연계 관리

ㅇ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패트롤 운영 추진
-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산림경영활동 정보 DB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 각 1개단 총 34명을 배치·운영(보조금 630백만원)

ㅇ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활용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기교육 실시

3) 2015년 산림기본통계 산출 및 제7차 국가산림자원자원조사 준비 철저

ㅇ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완료('15년)에 따라 「2015년 기준 산림기본통계」 산출
- 2015년 개편한 산림기본통계 조사체계에 따라 산림기본통계 산출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조사 체계		지자체·국유림관리소 행정조사	임상도, 사유림경영DB, 행정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림청에서 일괄 작성
공표 항목	지종	시업지, 시업제한지	지종구분은 삭제하고 "산림기능 및 산지관리" 구분에 따른 통계 추가 산출
	무립목지	미립목지, 황폐지, 개간지, 제지	"미립목지, 제지"로만 구분

ㅇ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착수 및 국가산림자원조사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수립, 조사지침 확정 등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안정적 착수 및 사업 추진
- 국가산림자원조사 통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다양한 통계 산출 및 국가산림자원의 모니터링 분석 추진
  * (신규통계) 경제림육성단지별, 기능별, 수종별, 영급별 산림면적, 축적 등

4) 수요자 맞춤형 통계작성 및 개발

ㅇ 산림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 작성
- 임업통계 수요조사 결과 및 수요자 맞춤형 통계 작성을 위한 워크숍 등 수요자 요구 분석결과에 기반한 산림통계 작성

ㅇ 사업부서에서 많이 활용되는 통계에 대해 정형통계 작성 및 제공 추진
- 주기적 작성·활용되는 내부자료, 지자체 요구자료, 국회 요구자료 등 사업부서 작성통계를 정형통계로 작성·제공

ㅇ 다양한 지역통계 작성 및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 지원
- 임산물의 지역적 특성 및 주산지 관련 통계 개발
- 임업 및 산림과 관련된 지역통계 개발

ㅇ 임산물소득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 개발
- 고사리, 산양삼 등 주요임산물의 생산비, 소득, 생산량 등을 산출하기 위한 임산물 소득조사 본 조사 착수('14~'15년 시범조사)

5) 저비용·고효율 통계조사 방안 모색

ㅇ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조사방식 개선안 검토
- 위성사진 등 원격탐사로부터 얻어진 자료가 기존 조사항목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필요

ㅇ 표본관리 및 조사표 개선을 통해 통계조사의 통·폐합 추진 검토
- 임가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등 임업통계조사의 유사·중복 표본에 대한 관리 및 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고효율 통계조사 추진
- 표본 통·폐합 방안에 따른 조사표 개선 동반 필요

6) 산림 및 임업통계의 품질관리 강화

ㅇ 산림·임업통계 생산을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훈련 강화(도급조사원 등)

ㅇ 통계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추진
- 기존 현장조사 모니터링 검토·개선 및 적극 참여
- 조사원 인센티브 제공 추진 등 조사원 관리 및 지원 강화

ㅇ 산림청 승인통계 10종에 대해 정기 및 자체품질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

7) 수요자 중심의 산림·임업통계 대국민 서비스 확대

ㅇ 시의성과 정확성을 갖춘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 산림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계정보 제공
-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 등에서 서비스되는 산림·임업통계를 지체 없이 현행화
- 간추린 임업통계, 임업통계연보, 기타 조사 결과보고서를 학계,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공 범위를 확대

ㅇ 다양한 정보제공 매체 확산 및 지속 개발로 통계정보의 이용성·편리성 제고
- 정보이용자의 정보 활용 특성을 분석하여 간행물, 전자책, 모바일 등 제공 매체 개발

ㅇ 고객 위주의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산림통계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마련

라. 추진일정

ㅇ 2016년 임업통계조사(표본조사 포함) 추진 : 2016. 1~12월
ㅇ 2015년 임업통계 분석업무 계약 추진 : 2016. 1월
ㅇ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사업 추진 : 2016. 1~12월
ㅇ 2016년 임업통계담당자 및 도급조사원 교육실시 : 2016. 1월
ㅇ 2016년 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추진(현장조사 등) : 2016. 1~12월
ㅇ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보고 : 2016. 6월
ㅇ 2015년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표 : 2016. 4월
ㅇ 2015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공표 : 2016. 5월
ㅇ 2015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공표 : 2016. 7월
ㅇ 2016년 간추린 임업통계 발간 : 2016. 8월
ㅇ 2016년 임업통계연보 발간 : 2016. 8월
ㅇ 2015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공표 : 2016. 9월
ㅇ 2016년 임업통계담당자 워크숍 실시 : 2016. 12월
ㅇ 2016년 임업통계조사 표본 임가 간담회 : 2016. 2~12월
ㅇ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 추진 및 관련 교육 : 2016. 1~12월
ㅇ 저비용·고효율 통계조사 방안 마련 : 2016년 2월~9월

17. 정책홍보

목 표

◇ 국민 체감형 성과위주 홍보로 산림정책 인식 제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언론홍보 활동으로 효과 극대화
◇ 전략적 기획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가. 홍보여건

ㅇ (정 책) 경제혁신,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요구
ㅇ (방 송) 지상파 중심에서 종편, IPTV 등 쌍방향 및 채널 다변화
ㅇ (신 문) 일회성 사건 기사에서 기획, 탐사 등 중점기획보도로 전환
ㅇ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공유가 활발

나. 추진방향

ㅇ 국정과제는 결과물, 성과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홍보효과 거양
ㅇ 홍보매체의 특성에 맞게 산림정책별로 홍보방법을 다양화
ㅇ 단순·전달 위주에서 공감·참여형으로 전환하여 정책이슈 창출
ㅇ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하여 산림정책의 이해·호감도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효과적 언론보도

1) '물 半! 고기 半!, 정책 半! 홍보 半!', 국정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확산되도록 주요 언론사와 공동기획 추진

ㅇ 산림산업, 산림복지 등 차별화된 공동 기획보도를 통하여 산림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및 정책 신뢰도 제고
- 오피니언 리더, 2040세대 등 타깃별 맞춤형 기획홍보 추진으로 정책성과에 대한 체감도 및 신뢰도 제고

ㅇ 계절별로 시의성있는 현장사례 위주 홍보로 국민체감 극대화
- 지상파 방송사 및 중앙일간지 순으로 기획방송, 보도 추진

2) 방송 프로그램 및 공익광고를 활용한 정책공감대 형성

ㅇ 방송사 공동기획, 시사교양 프로그램, 공익광고 등 패키지 형태로 산림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

ㅇ 경제림육성, 산림복지, 규제개혁 등 대국민 인식 저변확대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기획 주제는 현안이슈에 대한 정책과제를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ㅇ 기획방송 전후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 인지도 등에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홍보 효과 피드백 및 모니터링

2. 창의적 온라인 홍보

1) 새로운 모바일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도입·운영

ㅇ 현황 : 웹 기반 매체(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운영

ㅇ 계획 :「인스타그램」런칭(2월), 16년 상반기까지 팔로워 2만 달성 추진

2) 매체 영향력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매체 운영 지속

ㅇ 2대 소셜채널(트위터, 위키트리)은 뉴스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오락적 요소를 중점 가미, 운영

3) ‘가칭 산림e채널’ 등 Multi-Use 콘텐츠 활용 매체 기획 추진

ㅇ 방송사 ‘지식e채널’을 벤치마킹, 연초 주제공모를 통해 테마별 주요산림 정책 소식 등을 자체 UCC로 제작·확산 추진

ㅇ 정책성과 체감사례 발굴, 생활정책 소개형태의 ‘멀티미디어보고’ 운영

4) PCRM 정책고객 운영 활성화 및 블로그 기자단 전문성 강화

ㅇ 운영 효율화 제고를 위해 기존 정책고객을 재편(12만 → 7만), 마일리지 운영제도 지속 관리와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이벤트 등 프로그램 확대

5) 카드뉴스 등 '재미+정보' 결합형 콘텐츠 제작, 정책 이해 증대

ㅇ 모바일 환경에 기반, 부서별 중요 현안정책에 대해 이해가 용이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카드뉴스·인포그래픽스·웹툰' 콘텐츠 개발, 운영

ㅇ 온라인상에서는 SNS 연계 수시이벤트와 모바일 광고 콘텐츠로, 오프라인에서는 신문과 포스터 등 지면광고 콘텐츠로 활용

6) 주요 산림정책에 대한 범국민 캠페인(상 · 하반기 1건)

ㅇ 산불, 식목일 등 현안과제에 대한 범국민 캠페인 운동 전개

3. 정책홍보 역량강화

1) 위기관리 대응 및 체계적인 홍보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ㅇ **(위기대응)** 예견되는 부정적 이슈는 기획기사·칼럼, 토론회, 온라인 등을 활용한 이슈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

- 기자·논설위원 대상 직접 설명 ⇒ 전문가 등의 반박 기고 · 칼럼 게재, 토론회 개최 등 ⇒ 해당 오피니언 리더와의 파트너십 구축

ㅇ **(홍보교육)** 위기관리 대응 및 정책홍보 마인드 함양 등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

- 홍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 및 신규 기법의 응용 학습 위주로 정책홍보 체험 실습 등의 학습 프로그램을 교육

* 산림교육원과 정책홍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한 업무협의 추진

ㅇ **(협의회운영)** 시의성 있는 홍보아이템 발굴 및 정부시책에 대한 정책성과 확산을 위해 산림정책 홍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 홍보 메시지, 홍보기획 등에 대한 전반적 정책추진방향을 논의

2)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 대비하고 소속기관 홍보평가의 내실화로 업무 부담을 완화

ㅇ 정부업무평가(문체부) 홍보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기자브리핑 홍보정책 사전협의(국민소통실), 협업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대변인실과 협의체 구성 등 평가방향에 선도적으로 대응

ㅇ 본청,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 방법을 내실화하여 업무 부담을 최소화

- 브리핑, 기고, 국정과제 보도자료, 홍보 콘텐츠 제공 등 정부업무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 달성 유도

* 정부업무평가 및 소속기관평가 평가지표는 별도 시행

라. 추진일정

ㅇ 정례 기자브리핑 및 간담회 : 매월(이슈발생 시 수시)

ㅇ 신문·방송·온라인 등 언론보도 스크랩 및 대응 : 매일

ㅇ 상·하반기 산림청 정책홍보협의회 : 2016. 6월, 12월(정기) 및 수시

ㅇ 온·오프라인 기관홍보물 제작 및 배부 : 반기별

ㅇ 새로운 SNS 채널 도입 및 콘텐츠 개발 : 2016. 3월, 연중

ㅇ 주요 포털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 (네이버, 구글 등) : 연중

ㅇ 블로그 기자단 확대 재편 : 2016. 1월(연중 운영)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전광판 광고’ 표출과제 신청 : 매월

ㅇ 기관잡지 ‘매거진 숲’ 발간 : 격월

해외자원협력관실 소관

1.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활성화 지원 강화

목 표

◇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확대

○ 해외조림(누계) : (’14)357천ha → (’15)390천ha → (’16)424천ha

◇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등 민간투자지원 강화

○ 해외산림자원개발 협회 설립, 지원제도 정비 등 정책지원 실시

가. 정책여건

○ 산림자원 보유국들의 자국 산림 및 산업보호를 위한 원목 수출금지, 수출세 부과 등으로 국제 목재가격 상승 및 수급여건 악화

- 원목 수입은 제한되고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 심화 우려

* 전체 수입량 대비 제품수입량(%) : (’13) 69 → (’19) 75

* 원목수입가격($/㎥) : (’10) 172 → (’14) 194, 수입량(백만㎥) : (’10) 4.2 → (’14) 3.7

○ 국내산림의 성숙에 따라 국내 목재수요량 중 국산재 공급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

* 목재자급률(%) : (’95) 5→(’00) 5.7→(’05) 8.8→(’10) 13.5→(’15.6.) 14.9

* 국산재 공급 전망 : (’20) 7,400천㎥(자급률 22%) → (’50) 12,000 (30%)

○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목재펠릿 등 목재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나 국내 공급량은 부족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신재생에너지 열공급의무화제도(RHO)에 따라 목재펠릿, 목재칩 등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요 증가

* 펠릿소비량(천톤) : (’12) 174 → (’13) 551 → (’14) 1,946 → (’20) 5,000(전망)

* 목재펠릿 평균수입가격($/톤) : (’12)149.3 → (’13)157.8 → (’14)174.8

○ 한국임업진흥원의 녹색사업단 해외사업본부 통합에 따라 해외산림 협력사업의 전문성 유지 및 전문기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확대 추진

○ 현실성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자원 정책·제도 정비

다. 세부추진계획

1) 협회 설립 및 융자제한사항 완화 등 민간투자 지원체계 개선

ㅇ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협회 설립 추진

- 협회는 정보수집분석,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제도연구,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간행물 발간, 기타 산림청 위탁업무 수행
- 위탁업무, 회원사 도움업무, 수익사업 등 업무 발굴,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산림청, 녹색사업단, 기업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설립 추진

  * 협회설립 절차 : 해외산림자원개발신고사업자의 1/5이상 발기 → 1/3이상의 동의 → 창립총회 → 정관작성 → 산림청장 인가 → 설립

ㅇ 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현실성 있는 지원 정책 실시

-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기준 조림단비 개선(융자지원 대상 공정 등)
- 해외조림지 매수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 해외조림지 매수 지원대상 임령(10년) 및 신규조림 시기(3년 내) 제한 폐지
  * 해외조림지 매수 지원대상에 바이오매스 조림 추가

- 해외산림 개발자원의 반입촉진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 바이오매스 조림 ('15) 70% → ('16) 100%, 임산물가공 ('15) 28억원 이내 → ('16) 삭제

- 원활한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융자지원방식(융자시기) 변경

  * 사후융자 사업을 자부담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사업으로 변경(임산물가공시설)
  * 사전융자 가능사업으로 신규 편성(바이오매스 조림)

ㅇ 목재바이오매스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도입 지원체계 마련

- RPS제도 관련 화력발전사의 우드칩 등 목재바이오매스 수요 증가

  * 발전사는 국내산 원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입산 원료 확대 검토 중

- 해외진출기업 및 시장동향 현행화 등 생산·소비에 대한 정보 제공
- 국내기업이 생산한 해외 바이오매스 조림목의 국내 도입 활용 모델 제시

  * 인니 바이오매스 조림 생산목을 국내 화력발전사에 연료용으로 공급 추진

ㅇ 인도네시아 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한-인니 산림센터」역할 강화

- 양국 간 산림협력의 가교 역할 수행, 민간투자기업 지원 강화 등

  * 산림휴양생태관광사업, 센툴 녹색협력단지 운영 및 양묘센터 지원 등

2) 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실시

ㅇ 해외조림, 목재가공, 조림지 매수 등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투자지원으로 해외진출투자 촉진 도모

- 지원 금액 : 250억원(국고 융자), 상·하반기 융자심의회에서 지원 결정

  * ('14년) : 16개국 27개 기업 1,691억원 지원(지원액 중 36.5%인 617억원 상환)

ㅇ 투자 촉진 및 유망국가 발굴을 위한 해외산림투자 환경조사 지원

- 민간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사전환경조사 지원(5개기업, 170백만원)
- 투자 유망국가 발굴을 위한 정책환경조사 추진(2개국, 80백만원)
- 조사결과는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ofiis.or.kr)에 게재하여 정보공유

ㅇ 해외산림자원개발 정보공유 및 민간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정기적인 투자 세미나, 기업간담회, 워크숍 등 개최로 정책건의 활성화 도모

3) 신규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 추진

ㅇ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시범조림 사업을 통한 수익모델 제시

- 목재바이오매스 시범 조림지 조성 및 적정성 분석(1,000ha)

  * '16년 육림 800ha, 벌채 200ha 실시(벌채 후 가공하여 국내 반입 추진)

- 시기별·임령별·조건별 시험구 조성 및 생장량 조사 등 모니터링 자료 축적

  * 글릴리시디아 조림목 시험 가공 및 분석(펠릿제조 등 가공 후 적합성 평가)

ㅇ 효율적인 사업지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자체 묘목생산을 통한 조림목 공급, 목재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개발을 위한 양묘장 운영

  * 양묘장 3ha(묘목 생산 300만본 가능), 주요 바이오매스(8종) 생장량 시험구 조성

- 양묘장은 목재바이오매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

  * 현장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 작업 교육 및 사업 홍보 등

○ 해외산림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지원

- 해외산림투자웹사이트(ofiis.or.kr) 운영을 통한 해외산림투자 정보 공유

  *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제공 및 최신 관련자료 수집 및 제공

- 해외산림투자 선진지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상시 기업지원 활동

  * 해외산림자원개발 주요지원제도 안내 및 상담, 투자실무가이드 제공 등

-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 대상지 영상분석을 통한 투자기업 지원

  * 해외산림지역에 대한 토지피복분류, 경사, 향, 고도, 수계, 면적 분석서비스를 제공

4) 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한 해외산림인턴사업 취업률 제고

○ 해외산림인턴 사전교육 전문화를 통한 개인별 업무역량 강화

- 인턴참여자 및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추진

- 산림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한 전문교육으로 인턴의 현지적응력 강화

  * 교육기간 : ('15) 3일 → ('16) 2주간, 교육기관 : 산림교육원

○ 취업률 제고, 만족도 향상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인력 지원

- 인턴·기업간 자율매칭에 의한 선발로 상호 선택권 보장

  * '15년부터 실시한 자율매칭 선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인턴 선발에서 경합 발생 시 연계채용 실적 우수기업에 우선권 부여

라. 추진일정

○ 해외산림인턴 발대식 및 사전교육 : 2016. 2월

○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 보고 : 2016. 1월, 7월

○ 해외산림투자 융자사업 및 사전환경조사 지원계획 공고 : 2016. 2월

○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 개최 : 2016. 4월, 8월

○ 해외산림투자 세미나, 기업간담회 : 2016. 3월, 9월

○ 해외산림자원개발 워크숍 : 2016. 12월

2. REDD+ 시범사업이행으로 신기후체제 선제대응

목 표

◇ 중점 협력 4개국 공동 시범사업을 배출권과 연계방안 추진
◇ 국제적인 흐름과 병행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업 추진

가. 정책여건

ㅇ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에 따라 해외 산림탄소배출권의 국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Post-202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계획 확정

ㅇ「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달성하여 국제사회에 선언한 약속 이행 필요

* 국책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결과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09.11월, 국무회의)하고, 코펜하겐 총회(COP15, '09.11월)에서 공식발표 및 UNFCCC 서면 제출('10.1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가능한 탄소배출권 확보 지원체계 구축

ㅇ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37% 감축) 달성을 보조하기 위해 BAU 대비 37% 중 해외감축분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예정

나. 기본방향

ㅇ REDD+ 사업으로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REDD+ 시범사업을 통해 개도국·이행국의 REDD+ 사업이행능력 배양

ㅇ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 탄소배출권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능력 증진, 사업전문가 양성 등 투자환경 사전 정비

다. 세부추진계획

1) 인도네시아 시범사업은 탄소배출권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등록, 산림경영계획구의 경영계획에 포함 추진

ㅇ 국제자발적 탄소표준(VCS)에 사업등록 ('16.6월~11월) 및 FMU에 포함

2)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REDD+ 시범사업 이행

ㅇ **추진체계 정형화**

- 세부사업 이행계획 작성은 대상국,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정은 산림청
- 이행기관은 녹색사업단과 대상국 정부, 자문은 산림과학원
- 사업목표 : 2018년까지 국제 자발적 탄소표준(VCS)에 등록
- 양국 간 탄소배출권 배분은 5:5를 원칙

ㅇ 한·캄보디아 공동시범사업 추진 * PDD작성, 지역사회 개발, 조림

- '16.1월 캄보디아 사업 실무자 회의 (연간 사업 및 분배계획 확정)
- 분기별 사업집행 상황 검토 및 확정후 예산 송부

ㅇ 한·미얀마 공동시범사업 추진 * PDD작성, 사회경제조사, 지역민 능력배양

- 분기별 사업집행 상황 검토 및 확정 후 예산 송부(미얀마, 녹색사업단)
- 미얀마 사업 녹색기후기금 제안('16.6월)

ㅇ 한·라오스 공동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 세부사업 이행계획 작성

- 이행계획 작성(라오스측, '16.6월) 및 MOU 체결('16.9월, 비엔티엔)

ㅇ 국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간 REDD+ 사업 발전방안 논의

- 고위급회의(1회), 국제심포지엄(1회), 포럼(1회)
- 유관기관(과학원, 진흥원, 녹색사업단, AFoCO)과 정기적인 관계관회의를 실시하여 사업의 진행상황 공유 및 사업경험 확산(분기별 1회)
- 일본 등 선진국 국제동향 선제파악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수시)

3) REDD+ 관련 민간기업 등 투자 촉진 및 전문인력 육성

ㅇ 산림교육원, 대학과 연계하여 REDD+ 전문인력 양성

- 대학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연구용역, 2월)
- 한·인니 대학생 REDD+ 논문대회 개최를 통하여 연구인력 확산

ㅇ REDD+ 능력배양 교육훈련 실시(5월, 10월/연2회, 산림교육원)

- REDD+ 주요협력국 사업관계자 초청 연수로 전문성 강화

4)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및 배출권 거래 방안 강구

ㅇ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거래가 가능한 해외 탄소배출권의 확보 전략 이행

- 탄소잠재량 및 대개도국 이행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 선점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ㅇ REDD+ 사업효과 및 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 리플릿 제작, 기술서 발간,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라. 추진일정

ㅇ 캄보디아 사업단 실무회의 : 2016. 1월

ㅇ REDD+ 포럼 개최 : 2016. 5월

ㅇ REDD+ 능력배양 교육 훈련 : 2016. 5월, 10월

ㅇ 국제 REDD+ 심포지엄 개최 : 2016. 8월

ㅇ REDD+ 고위급회의 개최 : 2016. 8월

ㅇ 한·인니 REDD+ 대학생 논문대회 : 2016. 9월

〈인도네시아〉

ㅇ 인도네시아 깜빠르 REDD+ 사업 예산 결산 : 2016. 3월

ㅇ 한·인도네시아 REDD+ 사업 해단 : 2016. 6월

ㅇ 인도네시아 깜빠르 REDD+ 사업 VCS 등록 : 2016. 11월

〈캄보디아〉

ㅇ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 : 2016. 1월

ㅇ 캄보디아 시범사업 분기별 확정 및 예산 송부 : 2016. 1월/4월/7월/10월

〈미얀마〉

ㅇ 미얀마 시범사업 분기별 확정 및 예산 송부 : 2016. 1월/4월/7월/10월

ㅇ 미얀마 사업 녹색기후기금 제안 및 채택 : 2016. 6월

〈라오스〉

ㅇ 세부이행계획 작성 : 2016. 6월

ㅇ 사업이행 MOU 체결 : 2016. 9월

3. 양자협력국가 맞춤형 산림협력 내실화

목 표

◇ 맞춤형 양자산림협력 및 이행점검으로 산림협력 다변화
◇ 정례적인 전문가 회의를 통한 신규의제 및 협력사업 개발

가. 정책여건

ㅇ 주요 산림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산림분야 자원외교 기반 마련
- 일방적 지원에서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의제발굴 필요성 대두
-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상호지지 및 공동대응의 토대 마련

ㅇ 산림협력의 유형이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경험 공유, 해외 산림자원개발에서 바이오매스, 산림휴양 · 생태, 기후변화대응 등으로 다양화 되는 추세
- 특성화의제 발굴과 맞춤형 양자산림협력으로 산림협력 다변화가 필요

나. 기본방향

ㅇ 협력국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양자협력 추진

ㅇ 신규·특성화 의제 발굴 및 산림협력 모델 개발

ㅇ 기관간, 분야별 MOU 체결을 통한 해외산림협력 지원 기반 마련

ㅇ 산림협력위원회 및 국가간 합의의제와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개최(총 18개국)

ㅇ 국가별 협력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산림협력위원회 운영
- 정기 산림협력위원회를 통한 산림분야 양국 민간기관 협력 지원
- 의제별 특성에 따라 국제행사, 다자협력 회의일정과 연계 추진
  * (한국 개최)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상대국 방문) 미얀마 등 8개국

< 2016년도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계획 >

한국 개최(10회)	
동북아	· 제9차 한-몽골 · 제3차 한-일본 고위급
동남아	· 제22차 한-인도네시아/제8차 산림포럼 · 제4차 한-캄보디아
중남미	· 제1차 한-아르헨티나 · 제1차 한-도미니카공화국 · 제3차 한-파라과이
유럽 등	· 제2차 한-오스트리아 · 제8차 한-뉴질랜드
아프리카	· 제3차 한-튀니지

상대국 방문(8회)	
동북아	· 제3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일본)
동남아	· 제9차 한-미얀마 · 제2차 한-라오스
중남미	· 제4차 한-우루과이
유럽 등	· 제5차 한-러시아 · 제2차 한-캐나다
아프리카	· 제2차 한-베냉 · 제2차 한-알제리

2) 국가별 맞춤형 의제 및 사업개발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

ㅇ 「양자협력발전협의회」 운영 및 의제 발굴 전문가 회의 정례화

- 대륙별 · 주제별 의제 발굴 회의 개최(분기별 1회)
- 협력전략 및 의제 논의를 위한 양자협력발전협의회 운영
  * 해외산림개발협회와 공동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해외투자 기업문제해결 지원

ㅇ 국가별 맞춤형 산림협력 프로젝트 개발

- (필리핀) 국가녹화프로그램 지원(양묘장 지원 및 시범림 조성) 현지조사
  * '16년 KOICA ODA 사업으로 선정 및 '18년도 사업으로 개시되도록 추진
- (베트남) 우호의 숲 및 녹색산촌 복원 사업 KOICA 부처제안사업 선정지원
- (도미니카공) 산림휴양(한국의 숲) 및 생태관광사업 타당성 현지조사
  * 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수립을 위해 KSP(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와 연계하여 추진

3) 산림협력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간 약정」 체결 확대

ㅇ 산림녹화 · 이용 분야 등 협력 요청 기관 · 국가들과 신규 MOU 체결

- 중남미개발은행(CAF), 피지 등 MOU 체결 수요와 의미를 고려

ㅇ 국내 산하기관 · 단체 · 협회와 해외 유관기관 간의 MOU 체결 중재

* 국가적 협력 필요성, 국내 기업의 관심도 등 협력수요를 반영
* 협력국의 산림현황, 호응도, 사업이행 가능성, 경제협력을 고려한 협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4)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이행점검을 통한 양자협력 강화

- ㅇ 양자협력 합의사항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정기 점검회의 개최(연2회)
- ㅇ Work Plan 작성을 통한 합의사항 이행관리 강화
- ㅇ 정기산림협력위원회 기본자료(계획 · 결과 · 합의의사록), 해외수집정보 등 양자협력 정보관리 강화
  - * 산림행정 내부행정시스템에 자료축적(해외산림동향 게시판)

5) 지속적인 해외홍보 및 협업 행정으로 산림협력 성과 제고

- ㅇ 영문 홈페이지, 뉴스레터, 코리아넷 등 해외홍보 매체 다변화
- ㅇ KOICA, KDI 등 유관기관 협업행정, 전문가 파견사업 활용
  - 관련기관 능력배양사업 및 전문가 파견사업의 산림분야 활용 확대

라. 추진일정

- ㅇ 제2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일본) : 2016. 3월
- ㅇ 제2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6. 3월
- ㅇ 필리핀 국가녹화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 현지조사(필리핀) : 2016. 3월
- ㅇ 베트남 산림복원 프로젝트 발굴 현지조사(베트남) : 2016. 3월
- ㅇ 제8차 한-미얀마 산림협력위원회(미얀마) : 2016. 4월
- ㅇ 제2차 한-라오스 산림협력위원회(라오스) : 2016. 4월
- ㅇ 제4차 한-캄보디아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6. 4월
- ㅇ 제22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 및 제8차 산림포럼(한국): 2016.5월
- ㅇ 한-CAF 산림협력 MOU 체결(베네수엘라) : 2016. 6월
- ㅇ 제4차 한-우루과이 산림협력위원회(우루과이) : 2016. 6월
- ㅇ 제1차 한-도미니카공화국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6. 6월
- ㅇ 제5차 한-러시아 산림협력위원회(러시아) : 2016. 7월
- ㅇ 제9차 한-몽골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6. 7월
- ㅇ 제2차 한-알제리 산림협력위원회(알제리) : 2016. 9월
- ㅇ 제3차 한-베냉 산림협력위원회(베냉) : 2016. 9월
- ㅇ 제2차 한-캐나다 산림협력위원회(캐나다) : 2016. 10월
- ㅇ 제8차 한-뉴질랜드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6. 10월
- ㅇ 개도국 산림공무원 초청 단기연수, 제13차 러시아 국제청소년산림대회 : 2016. 10월
- ㅇ 제3차 한-파라과이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6.11월
- ㅇ 제1차 한-아르헨티나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6. 11월
- ㅇ 제3차 한-튀니지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6. 11월

4. AFoCO 확대설립으로 아시아 지역 산림협력 주도

목 표

◇ ’16년 8월까지 AFoCO 설립 협정 발효 및 제1차 총회 개최
◇ AFoCO 협력사업 유형화 및 정보화로 사업의 질 향상

가. 정책여건

ㅇ 외교채널과 다자협의로 AFoCO 설립 협정문 타결 및 채택

- 아세안 외교장관 및 농림분야 고위급 회의 의제에 AFoCO 논의 반영
  * 협정문 신속 채택 등 AFoCO 기구 설립 절차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제5,6차 Dialogue-AFoCO 회의를 통한 협정문 최종 합의 및 채택
  * 우리나라, 아세안 9개국, 카자흐스탄, 몽골, 부탄, 동티모르 등 14개국 참여
- 외교채널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인증등본 각국 송부

ㅇ 다자간 합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조 및 공조 분위기 확인

- 제7차 AFoCo 이사회를 통해 각국의 Big AFoCO 설립을 위한 노력 확인
-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협정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진행상황이 순조롭게 진행중임을 각국에 공유

ㅇ 신속한 국내절차 진행을 통해 협정발효를 위한 서명절차 완료

- 차관회의(’15.11.19)→국무회의(’15.11.24)→대통령 재가(’15.11.25) 완료

나. 기본방향

ㅇ AFoCO 발효 절차를 완료하여 명실공히 아시아 지역 산림분야 국제기구로 출범

ㅇ 대한민국과 AFoCO 간 본부협정 체결 및 각종 제규정 제정

ㅇ 아세안 국가와의 지속적 협력사업 추진과 더불어 신규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연계 협력 사업도 발굴 추진

ㅇ 산림분야 국제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 정비

다. 세부추진계획

1) 아시아 지역 산림분야 국제기구로서 AFoCO 협정 발효

ㅇ ’16. 8월까지 국회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AFoCO 협정발효 조건 충족

- 국회 외통위(농해위) → 전문위원 검토 → 법안심사소위 → 법제사법위원회 → 외통위 의결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ㅇ 각국 비준 진행사항을 파악하되, 베트남 등 4개국은 적극 접촉 및 수시 파악

- 발효를 위해 동티모르,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중점 접촉 독려

* 우리나라 포함 다섯번째 국가 비준서 등이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

ㅇ AFoCo 사무국 자산 및 협력사업 등 Big AFoCO 이관 준비 철저

- 제8차 AFoCo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력, 사업 등 이관 논의(’16.3)

2) 본부협정 체결 및 제1차 총회 개최로 기구를 본격 운영

ㅇ AFoCO 국제단체 정보 수정 및 AFoCO 본부협정 체결 지원

- UIA(국제협회연합)에 AFoCO 국제단체연감 등록 정보 수정

- 각종 국제기구, 협약 사무국 등에 AFoCO 발효 홍보

- 우리나라와 AFoCO 본부간 본부협정 체결 지원

* 본부 소재지 불가침, 법인격 등 특권 면제 관련 국내절차 진행 지원

ㅇ 제1차 총회 개최로 AFoCO 운영을 위한 제규정 승인(’16.11)

- 이사회 운영규정, 사무국 운영규정, 사무국 지침 등

3) AFoCO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기반 정비

ㅇ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여 AFoCO 외연을 확대

- 관련 국제기구 및 NGO : UNCCD, FAO, ITTO 등

ㅇ AFoCO를 산림분야에서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

4) 현행 AFoCo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지속적 관리

ㅇ 랜드마크 프로그램 교육훈련센터 건립 현황 등 사업 진행사항 현장 점검(사무국 협의)

ㅇ 지역협력사업 추진 내용 분기별 파악 및 관련 내용 업데이트

ㅇ 회원국-AFoCo 사무국의 공무원 교환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협조

* 대상 : 인도네시아, 말레이사아, 태국, 베트남 경력직 공무원 각 1명

5) 유형별 사업모델 개발 및 관리 정보화로 사업의 질 향상

ㅇ 산림복원, 기후변화 대응 등 유형별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 타 국제기구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사업유형별 우선순위 부여

ㅇ 사업관리 효율화 및 회원국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화 추진

- 제안서 접수 → 평가 → 사업실행 → 모니터링 → 보고서 관리 전산화

라. 추진일정

ㅇ AFoCO 설립 비준(안) 국회 제출 : 2016. 1월

ㅇ AFoCo 사업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회 개최 : 2016. 3월

ㅇ AFoCo 제8차 이사회 개최 : 2016. 4월

ㅇ AFoCO 발효를 위한 중점 국가 방문 : 2016. 2분기

ㅇ AFoCO 추진사항 설명 각국 대사 초청 설명회 개최 : 2016. 6월

ㅇ AFoCO 총회 개최 준비회의 개최 : 2016. 9월

ㅇ AFoCO 제1차 총회 개최 : 2016. 10월

ㅇ 랜드마크 교육훈련센터 준공식 참석 : 2016. 12월

5. 다자간 산림협력 내실화 및 산림분야 협상 적극 대응

목 표

◇ 유엔기구와 협력사업(FLRM·FERI) 활성화로 지구산림복원 선도
◇ 신기후체제 하에서 협상 적극 대응으로 산림부문 위상 제고

가. 정책여건

ㅇ 본 챌린지, 아이치 목표 등에서 산림복원목표를 제시하며 훼손된 산림의 복원이 전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 확대

ㅇ Rio+20 회의, 제21차 FAO 산림위원회,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회의에서 산림녹화 성공 국가인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 증가

ㅇ 유엔 기후정상회의('14)에서 VIP는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국이 기술과 경험을 지원해야 함을 언급

【 박근혜 대통령 연설(2014.9.23, 유엔 기후정상회의) 】

"어려운 시기에 경제 발전에 매진하면서도 … 산림녹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 산림 복원의 성공 국가가 될 수 있었다. …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시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

ㅇ FAO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FLRM) 지원 국가 확정, 사업계획 승인 및 선진국(스웨덴, 프랑스 등)의 참여와 관심 확대로 사업 활성화 예상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양해각서 체결('15.3월, 독일)로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FLRM)과 함께 개도국 산림복원 활동 촉진 전망

ㅇ 또한 신기후체제 협상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산림부문 감축량 계정에 대한 논의 준비 필요

ㅇ 유엔산림포럼에서는 신기후체제 합의문, 생물다양성 목표 등이 반영된 2017-2030 전략계획 및 4개년(2017-2020) 세부계획 수립 논의 진행 예정

나. 기본방향

ㅇ FLRM·FERI 등을 통한 개도국 산림복원사업 활성화

ㅇ UN산림포럼·UN환경협약 등 산림분야 협상 회의 적극 대응

다. 세부추진계획

1) FAO와의 산림 협력 강화를 통해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담당

ㅇ 산림경관복원 매커니즘(FLRM) 협력 강화 및 홍보

- FLRM 제2차 자문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운영상황 파악

* 제23차 FAO 산림위원회(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예정

- 중간 보고서 검토를 통해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 및 환류 작업 실시

* 보고서 검토를 위해 산림청·과학원·임업진흥원 담당자 참여

- 선진국의 지원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국제회의, 양자협력 등에서 FLRM의 사업경과 및 효과를 홍보하고 지원국가 확대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ㅇ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Baby8) 후속조치 추진

- 2016년 말 완료되는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연장선상으로서 FAO와 새로운 사업방향 설정 및 우리의 역할 논의

2)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내실화 및 공여국가기관 확대

ㅇ FERI 직접이행 사업 및 대륙별 능력배양 워크숍 모니터링

- CCD(칠레), ITTO(과테말라), Bioversity(콜롬비아)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직접이행 사업 중간 평가 결과 검토하여 환류 및 직접지원 확대* 논의

* 관련 다자 협력기구의 참여 확대 및 예산 확보 방안 등

【 이행과정 】

단계	지원/이행주체	협력기관
국가별 산림생태계복원 현황보고서 제출	CBD 당사국	
⬇		
보고서 및 기타 자료 분석	CBD사무국	GPFLR 회원기관 및 CBD사무국
⬇		
지원 대상국 및 지원 범위 수립	GPFLR 회원기관, CBD사무국 및 산림청	
⬇		
FERI 직접지원 이행	CBD사무국	협력기관*
⬇		
이행 평가 및 피드백	GPFLR 회원기관, CBD사무국 및 산림청	
⬇		
산림생태계복원사례 발간	CBD사무국 및 수혜국	

* FAO, AFoCO, ITTO, KFS, Bonn Challenge, GEF, World Bank, Regional Development Banks 등

- 이전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계획하고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 및 진행 방향을 관계된 국제기구 전문가와 논의

【 이행능력배양 지원일정(안) 】

지역	LAC	아시아태평양	ECC*	글로벌워크숍
시기	2016년 4월	2016년 7월	2016년 10월	2016년 12월
개최국	콜롬비아	미정	미정	멕시코
협력기관	FAO·콜롬비아정부	AFoCO	미정	CBD 사무국 외

* 예산 불충분으로 개최여부 미정

ㅇ FERI 공여기관 및 국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예산 확대 추진

- 제20차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부속기구회의(4월, 몬트리올)에서 이행 경과 발표

* 의제10. 보호구역 및 생태계복원에서 FERI 논의 예정

- 제13차 당사국총회(12월, 멕시코)에서 고위급 부대행사(글로벌 워크숍)를 통해 사업 효과를 홍보하고 선진국 및 관련 국제기구의 공여 확대 요청
- 예산 집행 현황 및 사업이행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와 예산 확대 협의

3)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산림포럼 등 산림분야 다자회의 대응

ㅇ 신기후체제, 새로운 산림협정 하에서 산림부문 협상 적극 대응으로 우리 입장 반영 및 국내·외 정책 적용 연구

- 신기후체제 하에서 산림관련 의제에 대한 협상을 위해 협약별 전문가 검토 회의 개최 및 협상 대응 지원
-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기반으로, 신기후체제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한 산림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과학원 등과 협력·연구
- REDD, 산림협정(IAF) 등 글로벌 이슈 논의 동향과 연계하여 국내·외 산림정책 및 사업체계 조정

ㅇ 고용휴직, 해외 파견자들을 통한 현지 동향 정보 수집·분석

라. 추진일정

- ㅇ 산림경관복원 협력사업 업무협의 : 2016. 1월
- ㅇ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사업 업무협의 : 수시
- ㅇ 2014년 FAO 임산물 생산 및 수출입 통계자료 제출 : 2016. 1월
- ㅇ 고용휴직·해외파견자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 2016. 1월, 운영지원과
- ㅇ 산림경관복원 협력사업 하반기 추진 실적 보고서 검토 : 2016. 3월
- ㅇ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중남미 지역 워크숍 참가 : 2016. 4월, 콜롬비아
- ㅇ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사업 중간평가 보고서 검토 : 2016. 4월
- ㅇ 제1차 UNFF 정부간 임시 전문가그룹 회의 의제검토 및 참가 : 2016. 4월, 미국(뉴욕)
- ㅇ 생물다양성협약 부속기구회의 의제검토 및 참가 : 2016. 4월, 캐나다(몬트리올)
- ㅇ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참가 : 2016. 5월
- ㅇ 고용휴직·해외파견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 2016. 7월, 운영지원과
- ㅇ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아시아태평양 지역 워크숍 참가 : 2016. 7월, 운영지원과
- ㅇ 산림경관복원 협력사업 제2차 자문위원회 참가 : 2016. 7월, 이탈리아(로마)
- ㅇ 산림경관복원 협력사업 상반기 추진 실적 보고서 검토 : 2016. 8월
- ㅇ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제 검토 전문가회의 개최 : 2016. 10월
- ㅇ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 2016. 11월, 모로코(마라케시)
- ㅇ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제 검토 전문가회의 개최 : 2016. 10월
- ㅇ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및 부대행사 개최 : 2016. 12월, 멕시코(칸쿤)

6. UNCCD 국제논의 대응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목 표

◇ UNCCD 목표 설정 등 토지황폐화중립(LDN) 및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가뭄(DLDD) 논의 참여 및 창원이니셔티브 지속 이행으로 UNCCD내 우리나라 역할 강화

가. 정책여건

ㅇ 토지 면적의 1/3이상이 건조지인 지구촌에서 인위적·환경적 영향에 의한 피해 증가로 인해 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사막화, 토지황폐화 및 가뭄(DLDD[1)]) 문제의 해결이 빈곤감소를 위한 핵심으로 부각

ㅇ 제70차 유엔총회('15.9)에서 채택된 토지황폐화(LDN) 관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5.3이 UNCCD 목표설정과 이행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

* 지속가능개발 목표(SDG 15.3) : 2030년까지 사막화방지, 사막화와 가뭄 및 홍수 피해에 의한 황폐된 토지의 복구, 그리고 토지황폐화중립 세계를 위하여 노력

ㅇ UNCCD COP12('15.10, 터키)에서는 LDN과 관련하여 LDN정의, SDGs 15.3의 역할, 각국의 이행방법 등을 논의

* LDN의 정의 : 특정한 시공간 규모 및 생태계 내에서,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유지(Food Security) 강화에 필요한 토지 자원의 양과 질이 유지 또는 증가되는 상태

ㅇ 또한, LDN과 협약의 목표 통합을 위한 '미래전략 틀 작업을 위한 국가간 작업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Future Strategic Framework, IWG-FSF)' 설치를 결정하여 COP13에 보고 예정

- 총 25명으로, 지역별(Annex)로 최대 5인의 IWG-FSF 대표단 구성 예정

나. 기본방향

ㅇ SDGs 15.3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의 LDN 목표 설정 논의에 적극 대응하여 UNCCD 내에서의 국가 인지도 향상에 노력

1) DLDD :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ㅇ 국가간 작업그룹 참여 등을 통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 10개년 전략계획('08~'18)과 협약 이행 촉진을 위한 체제 평가, 현 전략 계획 중간 점검, 향후 전략 및 정책방향 제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참여

ㅇ 창원이니셔티브 UNCCD 과학기반조성, 협력사업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 후속사업의 적극적 이행을 위해 UNCCD 및 UNEP 등의 국제기구와 수시 업무 연락을 통해 긴밀한 협력기반을 강화

ㅇ 동북아 DLDD 네트워크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소지역 행동계획 등을 이행하고 DLDD 저감을 위한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논의

다. 세부추진계획

1) UNCCD 주요 회의 개최 및 참가

ㅇ UNCCD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개최

-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과 SDGs 15.3의 달성 등을 위해 상설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를 수립하고 LDN 관련 의제 논의 등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회의를 개최(한국, 5월 잠정)

ㅇ CRIC 15 회의, CST 5 특별회의 및 제4차 과학대회 참가

* '16.10월~'17.3월 사이에 CRIC 15 개최 예정, CST 관련 회의도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

ㅇ 미래전략 틀 작업을 위한 국가간작업그룹(IWG-FSF) 회의 참가를 통해 향후 UNCCD 목표 설정 및 이행수단 마련 등에 기여

- UNCCD 목표 설정 논의에 적극 대응하여 LDN 이행과 관련한 GDP 사업과 DLDD 분야 사업의 중요성 강조

* IWG-FSF는 총 25명으로 지역별(Annex)로 5인의 정부대표단으로 구성

2)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성과 평가 및 후속사업 지속 추진

ㅇ UNCCD 사무국과 협의하여 창원이니셔티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향후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 평가기준은 OECD DAC 평가기준과 별도 수립한 평가요소를 적용

ㅇ GDP사업을 통해 건조지역의 토지황폐화 방지와 환경복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토지황폐지와 황폐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증진 기반 마련

-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 등을 공유하고 주민 인식제고 및 능력배양 사업을 병행 추진

ㅇ GDP 사업 대상 지역을 다양화하고 시범 사업 결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

- 사업 대상지역은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 외에 동유럽지역까지 확대

* COP12 부속회의로 개최된 GDP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

ㅇ 건조지에서 황폐지복구 및 식생 복원을 위한 GDP사업 확대

- 동북아 DLDD 네트워크 및 행동계획(NEA-SRAP) 하의 한·중·몽 공동 협력을 바탕으로 신규 GDP 사업 추진(몽골 자민우드)

* 몽골과 중국의 국경지대 건조지 지역에 한·중·몽이 공동 참여하는 DLDD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

3) UNCCD 아시아사무국(ARCU)에 인력파견

ㅇ UNCCD 아시아사무국(태국)에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관리를 위한 연락관 파견 추진

ㅇ 주기적 활동 상황 보고를 통한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정보수집

라. 추진일정(안)

ㅇ 산림청, UNCCD 및 UNEP과 GDP MOU 개정 및 연장: 2015. 12월

ㅇ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6. 1월

ㅇ UNCCD 아시아사무국(ARCU) 직원 파견 : 2016. 4월

ㅇ 건조지녹화파트너십 인셉션 회의 : 2016. 2월(중앙아시아)

ㅇ 건조지녹화파트너십 운영위원회 개최 : 2016 2월(독일 본)

ㅇ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재정 검토회의 : 2016. 2월(독일 본)

ㅇ 국가간작업그룹(IWG-FSF) 회의 : 2016. 3월

ㅇ 중남미 건조지녹화파트너십 현지 점검 : 2016. 4월(에콰도르, 페루)

ㅇ UNCCD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회의 개최 : 2016. 5월(한국)

ㅇ ELD 아시아 지역 회의 : 2016. 6월(한국)

ㅇ 사막화방지의 날 행사 개최 : 2016. 6월

ㅇ 국가간 작업그룹(IWG-FSF) 회의 : 2016. 9월

ㅇ UNCCD 협약검토위원회 : 2016. 10월~2017. 3월

ㅇ UNCCD 과학기술위원회 : 2016. 10월~2017. 3월

ㅇ 제4차 DLDD-NEAN 포럼 및 운영위원회 개최 : 2016. 11월(몽골)

7. ODA 신규 · 후속사업 발굴로 산림협력 강화

목 표

◇ 산림 ODA를 활용한 신규 산림협력사업 본격 추진
◇ 몽골그린벨트 조림 사업지 사후 관리 방안 마련 및 후속사업 발굴

가. 정책여건

ㅇ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은 ODA를 비롯한 다양한 이행수단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Rio+20 총회 시 그린 ODA의 확대를 천명, GCF 유치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ODA 기여 확대 요구

ㅇ 우리나라 정부는 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 2014년 ODA/GNI : (우리나라) 0.13, (OECD DAC 회원국 평균) 0.29

ㅇ 산림경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막화 및 황폐산림 비중이 높은 국가와의 산림녹화 및 산림환경 복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가

ㅇ DAC 상위 10개국의 산림 분야 ODA 비중은 평균 1.7%('07~'11, OECD)로 우리나라도 산림분야 ODA가 증가할 전망

- 우리나라 산림분야 ODA는 국가 전체 ODA의 0.47% 차지(DAC내 비중은 0.9%로 15위)

나. 기본방향

ㅇ 수원국의 자립역량 및 지속가능 발전을 우선으로 한 ODA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대상 및 사업 형태 다변화, 부처 간 연계 사업 발굴 등으로 산림분야 ODA 확대를 추진

- 2016년 사업완료 예정인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 후속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후속 사업 내용에 몽골 자체의 조림지관리 역량 강화 포함

ㅇ 중앙아시아 지역 ODA 사업으로서 한-카자흐 산림협력사업 추진

-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위한 아스타나 우호의 숲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중앙아 진출 교두보로 한-카자흐 산림협력사업 본격 추진

ㅇ 아스타나시 EXPO 개최와 연계하여 한국 전통정원(1.2ha) 조성
- 실시설계('16.3) → 시공업체 선정('16.4) → 공사('16.5~'16.12) → 준공('17.1)

* '17.6.10.~9.10 EXPO 개최예정, 100여개국 참여, 500만명 방문객 예상

ㅇ 아랄해 유역 산림복원 계획 수립 및 산림분야 능력배양 사업 진행
- 현장 중심의 단기 프로그램 운영(강의, 토론,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
- 카자흐 산림야생동물위원회와 사업방식, 내용, 일정, 대상지 등 논의

2) 한-인니 산림휴양·생태관광 사업을 통한 산림복지 기술전수

ㅇ 휴양정책 역량강화 교육(2년차) 실시 및 휴양센터 건립공사 착수
- 역량강화(15여명/1회, 연간 3회), 총 공사비 600백만원('16~'18)

3) 한-몽 그린벨트 조림지 이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과 신규 후속 사업 발굴·추진

ㅇ 2016년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 완료를 대비하여 몽골정부와 협의하여 조림지 이관 및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 몽골정부에 대한 한-몽 그린벨트 조림지 3000ha의 단계적 이관
- 조림지 사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몽골 현지 산림공무원, 산림 관련 단체, 임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림분야 및 생태계 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 및 기술교육 훈련 등

ㅇ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 후속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추진

4) 중국 쿠부치지역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성과제고

ㅇ 현행 1년 단위의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을 중·단기(3~5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전환 추진
- 사업의 주요내용은 사막화방지 조림, 조림기술지도 등
- 녹사단에서 사업자 공모 시 중·단기 사업계획을 검토를 통해 사업자 결정

라. 추진일정

- ㅇ 한-몽골 그린벨트 사업단 2016년 운영계획 수립 : 2015. 12월
- ㅇ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사업계획 수립 : 2015. 12월
- ㅇ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후속 사업 발굴 용역 결과 보고 : 2015. 12월
- ㅇ KOICA 미얀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성과 점검을 위한 심포지엄 : 2016. 2월
- ㅇ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6. 1~2월
- ㅇ 중국 황사방지 협력사업 현지 점검 : 2016. 5월
- ㅇ 우호의 숲 조성 공사 착수 : 2015. 5월
- ㅇ 사막화방지의 날(6.17) 기념 조림 행사(몽골) : 2016. 6월
  - UNCCD 사무국 및 국회, 방송사, 학계와 연계추진
- ㅇ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현장 점검 : 2016. 8월(몽골)
- ㅇ 제10차 한-몽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 2016. 12월

8. 한 · 중 · 일 FTA 등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목 표

◇ FTA 협상 등에 전략적 대응으로 임산업 보호 및 수출여건 개선
◇ 비관세장벽(TBT) 적극 대응으로 임업분야 이익 보호

가. 정책여건

ㅇ 2015년 11월 현재, 미국·EU 등 52개국과 15건의 FTA를 타결하였고,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되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

* 발효(11) : 칠레, 싱가폴, EFTA[2],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 타결(4) :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 협상중(4) : 한·중·일, RCEP, 한-중미, 한-에콰도르
* 협상 준비 중(1건) : TPP

ㅇ 한중일 FTA에서 중국에 대하여는 한중 FTA와 같은 수준으로 타결하고, 일본에 대하여는 수출확대를 위해 높은 수준의 타결이 유리(농경연 '11)

ㅇ RCEP[3], WTO 환경상품협정 등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TPP[4]협상에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

나. 기본방향

ㅇ FTA 대상국별 교역규모, 피해예상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생산자 및 품목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협상안 준비

ㅇ 관세협상 외에 상대국 수출제한조치 해제요구, 불법벌채목재 수입제한 등 TBT분야, 임업서비스, 원산지 등 분야에 임업분야 이익 반영 추진

ㅇ 타결·발효된 FTA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발굴

---

2) 유럽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4) 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미국 주도로 12개국 참여(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부르나이,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내 파급효과가 큰「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 대응

ㅇ ’15.12월까지 9차례 협상을 개최하고, 양허의 종류 등 논의

- 초민감품목 :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계절관세 등
- 민감품목 : 11~20년 기간 중 관세 감축
- 일반품목 : 10년 이내 관세 감축
- 즉시철폐 : 발효와 동시에 관세철폐

ㅇ 용역결과, 품목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된 협상안 마련

- 일본에 대한 수출여건과 국내 생산현황을 반영하여 대일본 공세 우선 순위 품목을 선정, 관세 인하 요구
- 중국에 대하여는 한중 FTA 수준에서 추가양허가 되지 않도록 협상
- 협상동향 설명회, 통상 간담회 등을 통해 협상 현황을 전파하고 임업인의 의견을 수렴

2) RCEP 협상대응

ㅇ ’15.10월까지 10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상품 1차 양허안 제출

ㅇ 중국에 대하여는 국내 임산물 관세보호 목표, 일본에 대하여는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상대국 관세인하 목표 등 국가별 맞춤형 협상

- 전문기관 연구결과, 품목과 의견 등을 반영한 민감 우선순위 확정
- 밤, 표고버섯, 합판 등 주요 임산물의 민감성 반영

ㅇ 원자재 수급 원활화를 위한 원목수출규제, 수출세 부과 등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ㅇ 해외조림 등 임산업 해외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안정성 확보방안 모색

3)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대응

ㅇ 한·중미 FTA는 교역규모가 작아 국내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원목 등 원자재 수급처 다원화 차원에서 상대국 수출제한 해제에 주력

- 중미*는 원목과 제재목에 대한 수출제한, 수출세 부과

〈한·중미 무역규모〉

- 중미 6개국 43만불로 전체 임산물 교역액 53억불의 0.008%
  - ■ (수출) 12만불로 전체 임산물 수출액 3.6억불의 0.03% 수준
  - ■ (수입) 31만불로 전체 임산물 수입액 43억불의 0.007% 수준
    - * 원자재 중 2013년에 니카라과에서 원목 3.1만불 수입사례

* 중미 6개국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ㅇ 한·에콰도르 FTA는 페루·콜롬비아 등 FTA 체결된 주요 중남미 국가의 양허 수준을 상한으로 표고·밤 등 주요 임산물 관세 방어

〈한·에콰도르 무역규모〉

- '13~'14년 평균 13만불로 전체 임산물 교역액 53억불의 0.002%
  - ■ (수출) 5.3만불로 전체 임산물 수출액 3.6억불의 0.01% 수준
  - ■ (수입) 7.7만불로 전체 임산물 수입액 43억불의 0.001% 수준

4) TPP 협상 대비

ㅇ 미국·일본 등 12개 TPP 협상국[5]들은 협상 타결 선언(2015.10.6.)

- 참가국 모두 높은 수준의 양허, 일본은 모든 임산물 최장 16년 이내로 양허

ㅇ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 협상 결과 및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세부 협상 대응방안 수립

- 핵심 임산물 관세철폐 기간이 10년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

5) WTO/DDA 등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

ㅇ WTO에서 논의되는 수출보조금 지급가능기간 연장여부 등 의제대응

*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로 2021년까지 수출물류비 등 지원가능

ㅇ 농업협상과 비농산물(NAMA[6])협상에 관한 DDA 동향 및 쟁점 대응

---

5) 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부르나이,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6) Non-Agriculture Market Access(비농산물 시장접근)

6) 불법벌채목재류 교역제한 제도도입 추진

ㅇ 국외에서 불법벌채로 취득한 목재 및 관련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수입업자에게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하는지 확인할 의무 부여

7) 목재류 품질표시제 등 지원

ㅇ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 시행에 따른 WTO의 TBT 절차 이행

- WTO에 우리측 개정안을 공시하고, 60일간 회원국 의견 수렴

라. 추진일정

ㅇ 임산물 통상협상 기본계획 마련 : 2016. 1~2월

- 한·중·일 FTA, RCEP 등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대응대책 중심

ㅇ 통상협상 간담회를 통한 임업계 의견수렴 : 사안발생시 수시

- FTA/DDA협상 간담회, 대책회의

ㅇ 통상협상 관련 회의 참가

- 임산물 통상협상 참가 : 연중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위원회, 통상실무위원회 등 : 연중

ㅇ 불법벌채목재류 교역제한 제도도입 : 2016. 1 ~ 12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2016년)
- 시범적용(2017년) → 실제적용(2017년)

9.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로 임산물 수출확대

목 표

◇ 임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가. 정책여건

ㅇ 한·중 FTA 등 주요 FTA 타결·발효로 시장개방 가속화
ㅇ 미국·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중국 등 신흥시장은 성장 둔화
ㅇ 엔화 약세, 수출경쟁국의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ㅇ 한류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청정임산물의 중국, 아세안 시장 확대 가능

나. 기본방향

ㅇ 고품질 임산물의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및 수출전략상품 개발
ㅇ 수출협의회와 수출선도조직을 중심으로 핵심수출 조직 육성
ㅇ 수출국 다변화 및 유망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ㅇ 수출장애요인 해소와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 조성
ㅇ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고품질 임산물의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및 수출전략상품 개발

ㅇ 임산물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2,000백만원)
- 주산지 중심으로 수출용 공동시설장비(자동선별장비 등 수출일관시스템) 지원
- '16년까지 5개소, 총사업비 20억원(국고 10, 지방비 4, 자부담 6)
  * 수출특화지역 : '15년까지 3개소(부여, 청양, 청도) → '16년) 영동(표고), 부여(밤)

ㅇ FTA 환경에 부합하는 임산물 고부가 수출전략상품 R&D('14.5~'17.5, 6억원)
- 對중국 경쟁력을 갖춘 수출상품(밤, 표고버섯, 감, 산양삼) 개발
- 중·장기간 상품성 유지를 위한 포장 · 유통방법 연구·보급

ㅇ 수출상품의 고품질·균질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 지원(120백만원)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가공품 생산장비 우선 지원

2) 수출협의회와 선도조직을 핵심수출경영체로 육성

ㅇ 품목별 수출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핵심 수출조직으로 육성(300백만원)

- 수출협의회 회원사 해외시장 개척 및 물류비 인센티브 부여
- 수출협의회 공동으로 시장개척단·공동판촉·박람회 등 해외마케팅 강화
- 수출협의회별 품질기준 설정·운용 및 수출 질서 유지, 정보교류·정책건의·해외마케팅 효율화 등 자율기능 강화

  * 수출협의회(5개) : 밤, 감, 표고버섯, 목제품, 합판보드

ㅇ 임산물 수출선도조직을 전문 수출경영체로 육성(300백만원)

- 임산물 선도조직(2개)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역량 강화
- 참여농가 확대, 생산자·수출업체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품질개선, 임가관리, 마케팅, 사업관리비, 장비지원 등

ㅇ 수출전문 인력 육성으로 수출역량 배양(70백만원)

- 수출협의회 및 수출업체 대상 교육 지원 및 워크숍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

3) 시장 다변화 및 유망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1,730백만원)

ㅇ 임산물 해외홍보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해 신규유망시장 박람회 참가

- 할랄시장, 중국 등 신시장 박람회에 참가하여 임산물 홍보관 운영, 품목별 수출협의회 회원사 등 유망수출업체에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ㅇ 신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상품화, 시험수출(마켓테스트), 바이어 초청 지원

- 신시장 개척에 따른 위험요인 감소를 위하여 시험수출 지원

  * 할랄시장, 중국을 대상으로 시험수출 사업자를 별도 모집하여 집중 지원

- 대추, 산나물, 조경수 등 신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제품개발에서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 정착까지 단계별(3년) 패키지 수출상품화사업 추진
- 유망바이어를 초청하여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주력시장 수출확대 지원

  * 농식품부 협업 BKF 대규모 바이어 초청행사 및 분재·조경수 바이어 초청행사 별도 추진

ㅇ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안테나숍 운영

- 수출유망시장*에 품목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철저로 사업효과성 제고

  * 2015년 유망시장 정보조사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할랄식품 등),중국·유럽(분재·조경수)

- 할랄시장, 중국 내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안테나숍 운영(2개)

ㅇ 밤, 감, 표고 등 주력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홍보·판촉전 추진
- 해외 판촉행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임산물 종합판촉전 우선 지원
- 온라인·TV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판촉지원 강화

ㅇ 수출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 해외홍보 및 시장정보조사 추진
- K-food Fair 등 농식품 홍보행사에 공동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
- 임산물 수출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심층 정보조사를 실시하여 제공

4) 수출장애요인 해소와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 조성

ㅇ 물류비 경감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1,635백만원)
- '15년도 기준 재산정한 표준물류비를 적용하여 물류지원 현실화
- 수출가격에 따라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로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장려
- 수출여건과 국내 생산동향에 따라 탄력적 지원

ㅇ 수출국 현지 냉장·냉동 물류지원으로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요처 발굴
* 해외공동물류센터 : '15년 기준 중국, 일본, 미국 등 13개국 43개 센터(214백만원)

ㅇ 수입국의 식품 안전기준에 대응하여 수출품 안전성 관리 강화(750백만원)
- 밤·감·표고버섯 수출품 대상 생산이력관리 추진
- 글로벌 GAP, 할랄인증 등 해외인증 및 수출보험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 잔류농약 검사 및 식품위생검사 지원으로 수출품 안전성 확보 노력

ㅇ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35백만원)

ㅇ 목제품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20억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5) 민·관 수출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산림부서, 수출·유통부서)와 협조채널 구축
- 지역별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지자체 수출유통 부서와 협업 수출지원
- 지자체와 연계하여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등 협력사업 확대

ㅇ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생산자간 상시 공조시스템 운영
- 수출애로 해소 및 유망품목 발굴 등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임산물수출 기동대' 운영
- aT 콜센타 활용, 산림조합의 특화품목지도요원을 통한 생산자 교육 및 수출임산물 수매 등 수출유통 참여, 임업진흥원 현장컨설팅 등

ㅇ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 농식품부와 공동 홍보·마케팅 등 협업 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농식품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 강화

  * 농식품수출개척협의회 산하 '임산물 분과'운영으로 수출사업 추진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 수입국 검역 조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정책 협조

- 수출국에서의 통관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해 산업자원통상부와 협조

ㅇ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 소통강화 및 사업품질 향상 추진

- 주력수출품목 및 신규유망품목별 생산자 및 수출업체와의 수출확대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소통강화

- 수출보조사업 지도·점검, 부진 품목에 대한 수출촉진회의 개최 등을 통해 수출애로사항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라. 추진일정

ㅇ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2016 임산물 수출사업 추진방향 시행 : 2016. 1월

- aT, 산림조합중앙회 사업계획 승인 및 임산물 수출 촉진대책 시행 : 2016. 2월

- 세부사업별 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연중

- 임산물 판매촉진비 : 매월

- 수출선도조직 사업평가 : 2016. 1~2월

- 시장조사단 파견 : 2016. 4~11월

- 임산물 해외 수출홍보 : 연중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자 선정 : 2016. 하반기

ㅇ 수출확대 현장 간담회 : 수시

ㅇ 임산물 수출확대 전략 워크숍 : 2016. 12월

ㅇ 임산물 수출유공자 표창 : 2016. 12월

10.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유치 추진

목 표

◇ 최적의 유치 제안 및 적극 홍보로 차기 세계산림총회 유치

가. 정책여건

ㅇ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가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78) 이후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동북아시아권에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음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새로운 목표 도입년도이자 신기후체제 도입년도인 2021년 총회의 유치는 지구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인 산림을 강조할 수 있음

ㅇ 한국은 UNCCD 당사국총회를 비롯해 CBD 총회 등 환경협약 총회 유치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산림총회 유치를 통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환경외교 입지를 공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ㅇ 황폐산림 복구 모델로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에게 모범 사례이므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산림 복원 노하우의 개도국 전파는 유엔 기후정상회의('14)에서 VIP 가 언급한 내용에 부합함

【 박근혜 대통령 연설(2014.9.23, 유엔 기후정상회의) 】

"어려운 시기에 경제 발전에 매진하면서도 … 산림녹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 산림 복원의 성공 국가가 될 수 있었다. …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시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

ㅇ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으로서, 산림총회를 활용한 북한 관계자의 참여 촉구 가능할 것임

나. 기본방향

ㅇ 최적의 유치 제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등 사전준비 철저

ㅇ 국내외의 적극적 홍보 및 지지 요청을 통해 유치 달성

다. 세부추진계획

1) FAO 세계산림총회 운영·기술 이행지침에 따른 단계적 업무 추진

ㅇ 유치 당위성 및 논리를 개발하여 유치제안서 작성 및 동영상 제작

- FAO 규정에 근거하여 유치 제안서 작성 진행('15.12월~'16.4월)

  * 제안서에는 유치 논리, 우리나라 산림, 개최도시 및 프로그램 내용 소개 등 포함

- 홍보 동영상 시나리오 작성 및 제작(1월~4월)

  * 홍보동영상 초안은 제26차 아-태 지역산림위원회(2월)에서 사용 예정

ㅇ FAO 사무국에 유치제안서 공식 송부

- FAO 사무국으로부터 유치제안서 제출 요청 서한 수신 후 30일 이내에 송부(4월 말 예정)

ㅇ 제23차 FAO 산림위원회 및 제154차 FAO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 실시

- 수준 높은 프레젠테이션 제작 및 실제상황을 가상하여 발표연습

- 제23차 FAO 산림위원회('16.7.18~7.22, 이탈리아) 및 제154차 FAO 이사회('16.12월, 이탈리아)에서 유치 프레젠테이션 공식 이행

2) 국제회의, 양자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및 지지요청

ㅇ 제26차 FAO 아-태 지역산림위원회(2.22~2.26, 필리핀)에서 적극 유치 활동

- 고위급 만찬,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아시아권의 지지를 이끌어낼 예정

ㅇ 양자협력 체결국가 및 FAO 이사회 국가에 홍보 및 지지요청 서한 송부

- 산림청과 양자협력을 체결한 30개 국가와 FAO 이사회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산림총회 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리고 지지요청

  * 개최도시 선정, 신년인사, FAO 산림국에 유치제안서 제출 등

ㅇ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FAO 이사회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부 각 공관에 한국이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고 지지 요청에 협조를 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한국관광공사의 각 국 지사를 활용하여 문화 홍보 추진

3) 세계산림총회 유치위원회 구성·운영

ㅇ 국내외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섭외하여 유치위원회 구성

- 외교부 등 정부인사, 산림분야 및 국제컨벤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1월)

ㅇ 유치위원회는 국내외 관심 환기를 위한 대외 활동 실시

- 관련 국제회의, 학회 등 참석 시 한국의 산림총회 유치 추진에 대해 알리고 지지 요청 업무 수행

- 유치제안서 작성 등에 필요한 국제 산림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라. 추진일정

ㅇ 세계산림총회 유치 계획서 검토 및 홍보 동영상 제작(안) 마련 : ’15. 12월

ㅇ 세계산림총회 유체 제안서 작성 및 홍보 동영상 제작 : 2016. 1월~4월

ㅇ 세계산림총회 유치위원회 발족·운영 : 2016. 1월~12월

ㅇ 제26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림위원회 참가 : 2016. 2월, 필리핀

ㅇ 제23차 FAO 산림위원회(COFO) 참가 : 2016. 7월, 이탈리아(로마)

ㅇ 제154차 FAO 이사회(Council) 참가 : 2016. 12월, 이탈리아(로마)

산림자원국 소관

1. ‘산림 미래포럼’ 운영 등 개청 50주년 준비

목 표

◇ 개청 50주년(’17.1.9)을 맞아, 산림청의 장기 비전·목표를 구상하고 폭넓은 네트워크, 양방향 대국민 소통 활성화

가. 정책여건

ㅇ 본격적인 산림녹화가 시작(’73~)된지 40년 이상, 산림청이 개청(’67.1.9)한 후 50년이 임박하기에 향후 산림청의 비전과 전략방향을 점검할 필요

ㅇ 제6차 산림기본계획(’18~’27) 준비를 위한 방향설정 및 추진체계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ㅇ 개청 50주년은 ‘과거지향적인’, ‘산림청’ 행사가 아닌 ‘국민이 가꾼 반백년의 우리숲’이라는 국민중심 컨셉 하에 ‘미래지향적’ 비전 수립·확산에 주안점

ㅇ 개청 50주년을 산림 부문에 대한 국민 지지를 집결하고, 녹색 한반도 및 그린 아시아 비전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계기로 입체적으로 활용

ㅇ 한국 산림은 복지 서비스의 다양성, 국민 일상과의 친근성 및 산림재해 대응성 측면 등에서 세계 유일·최고이며 ‘한국 모델’ 정립 중임을 부각

ㅇ ‘국민이 가꾼 숲’, ‘일터, 쉼터, 삶터로서의 숲’을 만든 스토리와 숨은 영웅(unsung hero)들을 발굴하여, 산림정책의 외연과 지원 네트워크를 극대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 미래 포럼 구성 운영 (’16~’17년)

ㅇ 산림청 개청 50주년(’17.1.9) 및 제6차 산림기본계획(’18~’27) 수립 등을 위한 산림부문 비전과 전략 마련

- 정예 민간위원(10명), 각 부문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16년 1년간 총 10회의 포럼을 개최하여 산림 부문 주요 이슈들의 미래전망과 추진방향 모색

2) 「국민이 가꾼 반백년 우리 숲」 편찬·발간(12월까지)

ㅇ '67년 산림청 개청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공과를 정론직필의 사관으로 기술하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 경험한 산림의 변화를 생활사 측면에서 부각

- 「임정 50년사」('97년) 등에서 놓쳤던 문서·사진·영상 자료 등을 수집하고 복원하며 새로 발굴된 희귀자료는 국립산악박물관 등에서 활용

3) '국민이 가꾼 우리숲' 부각을 위한 3대 핵심 행사 추진

ㅇ 산림청 50년 역사 중 '**5가지 성공**(good)', '**5가지 미흡했던 점**(bad)'과, 향후 미래에서 성취해야할 '**5가지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을 선정

- 산림청 내부 의견, 외부 전문가, 국민 참여 및 산림 미래포럼 검토로 준비

ㅇ 2대(代) 이상에 걸쳐, 또는 다수의 가족·친척이 산림·임업부문의 현장·행정·연구 등에서 종사한 '**산림 명가**(名家)'를 찾아 선정하고 시상·홍보

- 산림청 개청 50주년의 전후에 '산림 명가'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기획 보도

ㅇ '17.1.9일 발표될 '**2067년 10대 산림지표 예측**'을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과학적 분석(국립산림과학원)을 하며, 국민 홍보를 위한 인포그래픽 준비

* 10대 산림지표(안) : 임목축적, 연간 목재생산량, 목재자급률, 연간 산림공익가치, 산림의 온실가스흡수능력, 산림부문 일자리(수), 산림・임업 부문 GDP, 임산물 생산액, 연간 산림서비스 이용인구, 1인당 도시숲 면적

4) 'Forests without Borders in Asia', 국제 심포지엄 개최 추진

ㅇ 산림청 50년의 정책 여정에 가장 관심이 큰 AFoCO 가입 개도국이 중심이 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경을 초월한 그린 아시아의 비전 모색

- 인접 국가 간의 화합·협력의 매개체가 되는 숲의 가치와 성공사례 전파
- '국경 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Doctors without Borders)' 아시아 지부와 AFoCo 간의 MOU 체결 및 시범 협력사업 계획 등 마련

* 북한 측도 참가를 적극 유도하고, 산림청 5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17.1월)

라. 추진일정

ㅇ '산림 미래포럼' 구성('15.12월) 및 운영('16.1월부터)

ㅇ 「국민이 가꾼 반백년 우리숲」 기획('16.1월), 확정(2월) 중간검토 및 발간(12월)

ㅇ 3대 핵심 행사 기획('16.1월), 확정(2월) 중간 점검 및 완료(12월까지)

ㅇ 국제 심포지엄 관련 AFoCo 등과 협의('16.1월), 확정(4월) 및 준비 추진(12월까지)

2. 산림분야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목 표

◇ 청·장년층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림일자리의 질적 개선

가. 정책여건

ㅇ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인력 양성체계 구축 필요

ㅇ ‘청년고용절벽’, ‘열정페이’ 등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ㅇ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대안 요구 확대

나. 기본방향

ㅇ 산림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ㅇ 산림분야 현장 전문 기능인력 양성 및 청년층 취업 지원

ㅇ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장년층 일자리 창출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ㅇ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장·단기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 신규 장기 전문일자리 발굴 및 산림복지 등 유망분야 일자리 확대
- 농·산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공공일자리 균형 창출

ㅇ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범위에 ‘고용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 업무 추가

ㅇ 최저임금(48천원) 수준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인건비 현실화 추진
- 최저임금의 지속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인건비 상승 필요

* 인건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천원, 산림서비스도우미 50천원, 공공산림가꾸기 50천원

2) 산림분야 현장 전문 기능인력 양성 및 청년층 취업 지원

ㅇ 산림특성화고(2개교) 육성을 통한 청년 현장인력 양성 배출(80여명/년)
- 산림특성화고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 평가
-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임학 관련 교재개발, 외부교원 활용, 산림관련 자격증 취득교육 등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교육 지원
- 산림특성화고와 산업계 간 교과과정 및 채용연계 협의 간담회 개최
- 한국산림과학고와 영주국유림관리소 간 MOU를 체결하여 실습기계 임대

ㅇ 산림관련 전공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인턴활동 및 정보 제공
- 한국임학회·목재공학회와 연계하여 대학생 인턴장학금 지원 확대
  * ('15년 실적) 80명, 50만원/1개월 지원 → ('16년 계획) 90명, 50만원/1개월 지원
- (절차) 학교별 사업안내(6월) → 학교별 학생 추천(6월)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7월)→ 인턴실적 확인(9월) → 장학금 지급(9월)

ㅇ 산림관련 전공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 박람회 개최
- 산림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설명회와 구직상담 실시

3)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장년층 일자리 창출

ㅇ (발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를 위한 발굴 프로그램 운영
- 아이디어공모전 → 인큐베이팅 → 창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ㅇ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상·하반기(5월·10월) 2회 지정
- (절차) 지정공고·접수 →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 지정 및 통보

ㅇ (육성)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기업 안정화 도모
- 기초·경영컨설팅, 채용 연계, 박람회 참가 등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ㅇ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한 숲해설가 사회적기업 적극 홍보·육성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을 통한 숲해설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라. 추진일정

ㅇ 산림특성화고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 2016. 2월

ㅇ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 2016. 6월

ㅇ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6. 5월, 10월

ㅇ 산림일자리 정보박람회 : 2016. 9월

ㅇ 산림인턴제도 실시 : 2016. 6~8월

3. 산하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경영성과 제고

목 표

◇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개혁 추진
◇ 사업 범위, 조직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역량 강화

가. 정책여건

ㅇ 정부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추진한데 이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설치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기능 및 기관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정체성을 재정립할 시점임

나. 기본방향

ㅇ 녹색사업단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간 기능조정

ㅇ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추진 및 임금피크제 시행 점검

다. 세부추진계획

1) 녹색사업단-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간 기능조정

ㅇ 공공기관 기능조정 이행을 위한 산림자원법 등 하위법령 개정
- 녹색사업단 관련 조문 삭제 및 녹색자금 위탁 기관을 복지진흥원으로 변경

ㅇ 녹색사업단의 해산 및 기능 이관 절차 수행
- 녹색사업단의 자산, 서류, 물품 등 이관사항 및 회계 정리 점검
- 법률개정 완료 후 녹색사업단 해산 및 기능이관을 위한 이사회 개최

ㅇ 기능 및 조직 규모가 대폭 확대된 임업진흥원의 정체성 재정립
- 해외사업본부(14명),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25명)이 신설되어 해외산림자원개발, 산림탄소상쇄사업,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등을 수행할 예정
- 산림경제 분야 중추기관으로서의 기관 미션 및 비전 정립
- 해외산림자원사업 및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2)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추진 및 임금피크제 시행 점검

ㅇ 산양삼 품질관리 등 한국임업진흥원의 고유사업 집행·관리 철저

- 2014 결산시 국회 농해수위 지적사항인 산양삼재배이력시스템 조치사항 점검

ㅇ 한국임업진흥원의 임금피크제 시행 및 정착 상황 점검

- ’16.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대상자 임금 감액 및 신규직원 채용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기 정년이 60세) 도입(57~59세 직원이 대상)

ㅇ 한국임업진흥원 신규사업 추진 시 산림청 유관부서와 협의 이행 점검

- 산림청 및 산하 기관 간 유사·중복사업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이행

라. 추진일정

ㅇ 산림자원법 및 임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공공기관 기능조정) : 2016. 상반기

ㅇ 공공기관 기능조정 절차 수행(이사회 개최 및 기능이관) : 2016. 상반기

4. 기후변화 대응·적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목 표

◇ 법·제도적 기반정비를 통한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한국형산림인증 도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가. 정책여건

ㅇ 우리나라는 '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여방안(INDC)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15.6.30)

ㅇ UN은 산림을 핵심 탄소감축 대안으로 평가('14, IPCC 제5차 평가보고서)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의 역할은 점점 확대될 전망

ㅇ 이에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역량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적극적인 실천노력이 요구되는 시기

나. 기본방향

ㅇ 산림탄소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을 통한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강화

ㅇ 산림탄소흡수량 거래기반 구축 및 인증 흡수량의 활용 유도

ㅇ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 및 사업의 내실화

ㅇ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추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촉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탄소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을 통한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강화

ㅇ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개정을 통해 "산림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을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통합하여 운영

-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시부터 산림탄소상쇄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흡수량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용중지하여 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 산림탄소상쇄표지제도 시범운영(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한 세부운영지침 확정

- 법률개정 후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 확정을 위해 운영지침(안)을 활용한 시범운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 발굴하여 보완

2) 산림탄소흡수량 거래기반 구축 및 인증 흡수량의 활용 유도

○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및 산림탄소흡수량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지정·운영

- 산림탄소센터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검증기관 지정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산림탄소센터에서 적격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운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검증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운영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발생한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인증 실시

- 대상 : 산림바이오매스이용 및 재조림 사업 중 모니터링시기 도래사업(3건)

  * '13년 사업시행 이후 최초로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증 예정

○ 산림탄소흡수량 거래기준 마련 및 주요행사에 인증된 탄소흡수량 활용유도

- 거래기준, 거래단가, 버퍼흡수량 등 필요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
-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산림탄소센터에서 선구매 후 재판매
- 국가 및 지자체의 탄소중립행사 추진을 통한 산림탄소흡수량 활용 유도

○ 산림탄소의 국제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소식지 발간으로 사업자 등에게 산림탄소거래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3)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

○ 탄소흡수원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통한 산림탄소 전문인력 양성

- 목적 : 탄소흡수원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교육·연구기반의 확대
- 지정방법 : 공모(전담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지정 대학원 수 : 1개교
- 지정권자 : 산림청장
- 지원규모 : 선정된 대학원에 연간 최대 1억 5천만원씩 5년간 지원
- 평가 및 환류 : 특성화대학원 사업결과에 대해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

○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양성

-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흡수원법 개정 ('15.12월 상임위 계류 중) 적극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으로 제도 조기도입
- 법령개정 후 산림탄소관리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산림탄소센터)을 통해 10명 내외의 산림탄소관리사 양성
- 산림탄소관리사의 업무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에 관한 지도·조언, 사업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작성지원 및 컨설팅, 검증 등

○ 기후변화와 산림탄소상쇄제도 기획홍보 실시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 산림탄소상쇄제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주요언론을 통한 기획홍보 실시
- 산림탄소상쇄사업지 현장입간판 디자인 제작·보급

  * '15년까지 등록된 산림조성사업 대하여는 입간판 제작・보급, '16년 등록 사업부터는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표준디자인 제공

- 기후변화와 산림탄소 시책교육 운영(2회), 사업자와의 소통 간담회 개최(10월)
- 기업 고객만족담당자, 산주, 일반 국민 등 대상에 맞춘 홍보 실시

○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대상지 및 협력사업자 정보 제공 강화

-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산주 등 잠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수요자별 제공 가능 자원과 협력 요구 자원을 파악하여 연결 정보 제공

  *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확대 추진(누적) : ('15) 69건 → ('16) 110건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규모화로 산림탄소흡수량을 확대하여 사업효과 제고

- 사업 유형·규모 등을 감안한 사업 계획서 작성비용 차등지원 방안 마련
- 찾아가는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규모화 유도

○ 탄소흡수원증진종합계획('15~'19) 이행을 위한 '16년 실행계획 이행 및 '17년 계획 수립

- '16년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계획의 과제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 '16년 사업의 성과분석과 여건전망 등을 통해 '17년 실행계획의 수립

4)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추진 및 지속가능 산림경영 촉진

○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모델 개발 및 실태조사

-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고시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조합, 학계 등 전문가 협력체를 구성

  *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16~'20) 수립에 따른 산림부문 적응 대책 관리 및 점검

ㅇ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활성화 및 인증제품 유통기반 마련

- 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인정기관 협의, 인증기관 지정 등을 통한 산림경영인증 및 임산물생산유통 인증실시
-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 회원가입 및 상호인정 신청 지원
- 산림경영인증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이 유통·판매까지 연결되도록 대책 마련

ㅇ 산림지속성지수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산림경영 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 발표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 국립산림과학원내 지속성지수 팀을 구성하여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5년 완료) 결과를 반영한 '산림 지속성 지수'를 산정 및 발표 (10월)

라. 추진일정

ㅇ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방법론 고시 : 2016. 4월

ㅇ 산림탄소 홍보동영상 제작 : 2016. 5월

ㅇ 기후변화와 산림탄소 과정 시책교육 추진 : 2016. 5월, 10월

ㅇ 산림탄소 관련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탄소흡수원법 개정(국회제출) : 2016. 6월

ㅇ 산림지속성 지수 산출 및 공표 : 2016. 10월

ㅇ '17년도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계획 수립 : 2016. 11월

ㅇ 산림탄소상쇄제도 홍보 및 사업등록 추진 : 연중

ㅇ 탄소흡수원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후 6개월 내

5. 현장 및 성과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및 성과 확산

목 표

◇ 사전기획 및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전주기적 R&D 효율성 제고
◇ ICT기반 융복합연구 확대로 경쟁력 있는 임산업 기반 구축
◇ R&D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관리 체계화 및 성과 확산 촉진

가. 정책여건

- 역동적 경제혁신, 재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 R&D 시스템 혁신 및 체질개선을 통한 투자 효율화 등 요구 증대
- 정부는 예산·배분 조정을 통해 'R&D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의 목적·특성에 따라 '20년까지 일몰시점을 설정·운영
- R&D 전주기 효율화를 위해 연구기간의 회계년도 일치 및 상위평가를 통한 예산 삭감재원의 주요 핵심정책에 재투자하는 등 투자 효율화가 진행 중

나. 기본방향

-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미래성장동력의 신규사업인 "융복합 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조기 성과 창출 지원을 강화
- 기술사업화 통합·연계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개발에 지원하거나 수요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등 선택·집중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복합 기술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임업기술 개발목표·정책방향 재설정을 통한 기술화 과제 기획·추진
  - 미래시장 분석을 통한 임업분야 미래시장 발굴 및 문화·서비스 산업 육성(고부가가치 바이오분야, 문화·콘텐트 분야 R&D 발굴)
- 산림분야 실용화·산업화 연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산림분야 기술역량 강화 및 생산성 향상(특허출원, 사업화 성공률, 기술료 등)
  - 제도개선, 미래시장 발굴, 관련 서비스 발전까지 종합한 기술로 기획

○ 기존 개별연구과제 중심에서 핵심연구기술 단위로 투자전략을 마련

- 기술로드맵(TRM) 개편을 통해 세부사업별 연구과제 체계화 및 효율화

* 1단계(기초・응용) 임업기술개발사업 → 2단계(개발・산업화) 융복합 신산업화

* 연구자별 역할 재정립 : 기초(소속연구기관), 응용(대학 등 연구계), 개발(산업체)

2)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신규 R&D사업 추진 및 사전기획 강화

○ (사업구조 개편) "임업기술연구개발" 외에 신규사업으로 "융복합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등 2개 세부사업으로 개편・운용

- 신규사업 : 융복합기반 첨단 기술 및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술개발(30억원)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5.12월 공모하고, '16. 2월 평가・협약 체결

○ (신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고려한 개발단계의 '기술기획' 강화

- 기획부터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술확보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상기술 선정

* 우수 사업모델, 사업회 기획, 추가 기술개발, 제품성능 인증 등 사업화 프로그램 발굴

- ICT・BT기반 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창출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 공급과 수요를 검토하고, 단기투자(3년 이내)로 성과 도출

○ (기술조사) 사업시행 2년 전부터 수요 조사 및 기술별・단계별로 기획

- 기술수요조사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여 유사・중복문제 해소하고, 선택・집중화하여 연구자 편의 도모 및 행정업무 감축 등 효율화를 도모

- 본청 공모사업은 기초연구를 최소화하고, 응용・개발기술에 집중 지원

* 국립산림과학원 등 소속연구기관은 종전과 같이 기초・응용・개발연구 추진

3) 자체 R&D평가 강화 및 미래부의 'R&D평가'에 체계적 대응

○ 신규과제 선정평가 및 계속과제 연구성과 평가를 질(質) 중심으로 전환

- 개발단계의 공모사업은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참여 중심으로 지원

- 신규과제 선정시 사업화 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및 논문중심의 평가 폐지

- 책임평가제를 도입하여 선정 평가위원 중 일부(2~3인)를 결과평가까지 참여

- 성과평가 환류강화를 위해 성과부진 사업은 조기 단축 및 재기획 유도

○ ’16년 일몰형으로 분류된 임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 체계적 대응

- 사업목표, 연구목표 달성도, 우수성 등 검토사항에 대해 연구진(미래부)이 필요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사업설명 및 요구자료 제출 대응

* ’16. 3월말까지 사업기간 적정성 분석 및 전문위 의견수렴을 거쳐 일몰 연장여부 확정

4) R&D 전문기관 지정 · 운영을 통한 R&D 성과관리 기반 구축

○ R&D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행하여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연구과제 성과평가 및 관리 · 활용, 연구비 지급 · 정산, 기술료 징수 · 관리, 연구자료 보안관리, 연구윤리, R&D시스템 운영 등을 대행 추진

*「산림자원법」개정 후 자체「연구개발규정」전부개정을 통해 업무대행(’16.1월 예정)

- 본청은 6차 산업화 등 R&D사업 프로젝트 구상 등 사전기획에 역량 집중

○ 사업화 유망기술을 임업진흥원 업무와 연계하여 기술 · 경영 컨설팅,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 산업화 촉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

* 한국임업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지정(’15.4.24), 국유특허 처분 • 수탁기관 지정(’15.6월)

○ 전문기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16년 관리인력 6명을 ’17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16. 6월, 기재부)

라. 추진일정

○「산림분야 R&D 규정」전부개정안 시행 : 2016. 1월 초

○ 산림분야 R&D관리 전문기관 지정 · 운영 : 2016. 1월 초

○ 2016년도 소속 연구기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 2016. 1월 초

○ 산림과학기술개발 중장기 투자계획(로드맵) 수립 : 2016. 1~8월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FTIS) 고도화 사업 : 2016. 1월~9월

○ 임산업 신산업화 기술개발 2016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6. 1월 말

○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6. 2월 초

○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 계속과제 및 종결과제 성과평가 : 2016. 3월~5월

○ 2017년도 연구개발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공고 : 2016. 11월중

○ 2018년도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 2016. 11월

6.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경제림 육성기반 구축

목 표

◇ 경제림 육성단지 재설계 및 단지운영 차별화 방안 마련

ㅇ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및 단지 실행력 제고방안 마련

◇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ㅇ 사업 평가·모니터링, 현장특임관제도 운영으로 단지 운영정착

가. 정책여건

ㅇ 국가 목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규모화 경영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경제림육성단지는 지정취지와 달리 집약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정한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단지 재구획이 필요한 실정

ㅇ 산림경영 성공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사업초기 시행착오와 경영역량 부족으로 행정적.기술적 기반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ㅇ 경제림육성단지 재정비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ㅇ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정착을 통한 내실화 및 체계화

ㅇ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활성화 및 고효율 경영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실효성 있는 경제림 육성을 위한 단지 재설계

ㅇ 자원육성 집중을 위해 원점에서 경제림육성단지 재정비

- 현지조사 및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단지 구획 정비
- 재구획 되는 단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현장 지원 체계 구축

* 경제림육성단지 구획조정 및 현행화('15.11) → 현지확인・의견수렴 새로운 단지(안) 마련('16.1～'16.6) → 경제림육성단지 확정・단지운영계획 수립

○ 단지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와 단지 외로 구분 지원 차별화 방안 마련

- 경제림육성단지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기재부 협의
- 2017년 경제림육성단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시·군 공모

2)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정착을 통한 내실화 및 체계화

○ 단지 실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정착 유도

- 추진체계 확립과 안정적 사업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장특임관제도」 운영 (주 1회 현장 방문)
  ☞ 퇴직공무원, 일정자격을 보유한 산림분야 기술자 등으로 임명
- 단지경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현장지원 강화
  * 단지 운영 컨설팅 강화(분야별, 지역별 전문가 풀 확보 추진)
  ☞ 산림청 순회컨설팅(년 2회), 자체 컨설팅(연중)

○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침개정) 예산편성·집행 및 기본계획수립 지침 개정(1월)
  * 정산 등 단지운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상향
- (경영주체) 전문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주체 요건 확대(신규공모)
  * 기존 대리경영주체 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 **대리경영주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
> -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영리, 비영리)

○ 선도 산림경영단지 평가.모니터링 실시로 사업품질 제고

- 매년 단지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사업비 삭감 또는 사업 중단 조치('16년 시범평가, '17년 본 평가실시)
  * 평가・모니터링 지침개발('15.12) → 시범평가・모니터링 실시('16) → 본 평가('17)

○ 산주의 정당한 수익 확보를 위한 단지 내 효율적 입목매각 방안 마련

- (공개입찰) 국유림 입목매각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주가 산림조합에 일정 수수료만 주고 공개입찰 요청
- (직거래)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인 우드옥션(산림조합중앙회 운영)을 활용하여 다수 원목생산업자의 견적을 받아 최고가로 매각
  * 임산물유통센터와 선도 산림경영단지 간 입목매각 시범사업 추진

- (국유임산물매각연계) 국유림과 연접한 사유림의 경우 국유임산물 매각 계획을 고려하여 일괄 매각하고 산주에게 수익배분

  * 경영대행의 종류에 벌채·매각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3)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활성화 및 고효율 경영

○ '15 성과평가·분석 및 환류를 통한 경영 효율화

- 운영성과 평가 및 공유를 위한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1월, 7월)
- 경영 효율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실행(2월까지 계획 확정·제출)

  * '15년 성과분석 결과 반영 및 저비용·고효율 경영강화

○ 저비용·고효율 산림작업 기술 개발을 위한 현장관리 및 협업강화

- '차세대 산림시업기술 개발 연구사업단'과 연계사업 추진(모니터링 등)
-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작업시스템' 현장적용

  * 작업시스템 현장적용 실연회 개최(산림생산기술연구소 협조)

○ 단지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전문관 역량강화 및 보직관리

- 경영전문관 역량 강화 및 단지 전담경영 조치(업무겸직 지양)

  * 자체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로 업무노하우 강화

4)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 선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별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추진 관리를 위한 월간 추진실적 관리(매월 실적 제출)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상·하반기 각 1회)

○ 경영주체 및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강화

- 선도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선도경영관리자 과정' 운영(년 2회)

  * 임업기술훈련원(1주, 30명/회), 현지견학 등 실무중심으로 운영

○ 현장 기술인력 양성 및 산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임업기술반 교육운영

- 조림·숲가꾸기 기술, 임산물수확, 산림복합경영, 6차산업 활성화 교육

  * 한국임업진흥원 '산촌 미리살아보기' 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ㅇ 기술공유 및 사업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토론회 실시

- 국·사유림, 단지 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기술공유 및 사업품질 강화

  * (국유림) 지방청 주관 현장토론회 개최 : 단지별 2회 이상 실시

  * (사유림) 시도/시군구 주관 현장토론회 : 단지별 2회 이상

라. 추진일정

ㅇ「선도 산림경영단지 예산편성 및 기본계획작성 지침」개정 : 2016. 1월

ㅇ 경제림육성단지 구역조정 : 2016. 1월~6월

ㅇ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지 순회컨설팅 : 2016. 2월

  * 산림청 주관(2회), 지자체 주관(연중)

ㅇ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장특임관 선정배치 : 2016. 3월

ㅇ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장토론회 : 2016. 2~11월

  * 토론회 실시 후 2주 이내 결과 제출

ㅇ 2016년 상·하반기 성과보고회 : 2016. 1월, 7월

ㅇ 선도 산림경영단지 시범평가 실시 : 2016. 12월~'17. 2월

ㅇ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추진실적제출(월간) : 결과 익월 5일까지

ㅇ 선도 산림경영단지 점검/지원결과 제출(추진지원반) : 결과 익월 5일까지

참고 1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황(5개소)

(단위 : ha)

지방청별	계획구명 (국유림관리소)	면 적	임·소반	전문관	비고
합계	6개구	31,459	169개임반	8명	
북부청	가리산 (홍 천)	6,564	25개임반 573개소반	2명	
동부청	봉 평 (평 창)	8,628	71개임반 322개소반	2명	
	가리왕산 (평 창)	4,026	23개임반 193개소반		
남부청	장군봉 (영 주)	8,376	37개임반 262개소반	2명	
중부청	샘봉산 (보 은)	1,201	1개임반 97개소반	1명	
서부청	민주지산 (무 주)	2,664	12개임반 164개소반	1명	

참고 2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황(8개소)

(단위 : ha)

시도별	시군별	면 적	필지수	경영주체	비 고
합계	8개 단지	14,101	3,495	8개 단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2,188	381	울산광역시 산림조합	
강원도	홍천군	1,4581	114	홍천군 산림조합	
	삼척시	2,010	600	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	
충청남도	홍성군	1,245	340	홍성군 산림조합	
전라북도	진안군	1,221	268	진안군 산림조합	
전라남도	보성군	2,525	1,078	보성군 산림조합	
	순천시	2,020	585	순천시 산림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1,434	129	거창군 산림조합	

참고 3 경제림 육성단지 현황

❍ 경제림육성단지 지정 현황

- 우량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450개 단지 292만ha 지정('05.9)
- 국유림 105개 단지 58만ha, 민유림 345개 단지 234만ha
- 지정 산림면적 : 450개 단지, 2,919천ha

  * 1개 단지 당 평균 면적 : 6,444ha

❍ 경제림육성단지 지정 내역(시·도, 지방산림청별)

구 분	단지수	면적(천ha)	시·군, 관리소
계	**450**	**2,919**	**153**
민유림	**345**	**2,339**	**128**
경 기	30	191	12
강 원	37	283	15
충 북	34	203	11
충 남	39	190	15
전 북	32	205	13
전 남	45	268	21
경 북	66	673	22
경 남	62	326	19
국유림	**105**	**580**	**25**
북부청	22	221	6
동부청	29	195	6
남부청	17	109	5
중부청	16	14	4
서부청	21	41	5

7. 종묘 생산

목 표

◇ 종자공급원 및 양묘시설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우량 종자·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

ㅇ 사업량 : 종자 55톤 및 묘목 48백만본 생산, 시설현대화 7개소

가. 정책여건

ㅇ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채종원이 부족하여 채종원산 종자공급은 35%에 불과하며, 대부분 유전형질 개량효과가 떨어지는 채종임분에서 생산·공급(65%)하고 있는 실정

ㅇ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의존형 산업인 묘목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양묘시업의 불확실성 증가(연평균 피해본수 : 274만본)

ㅇ 경제림 조성에 유리하고 산업계 수요도 증가하는 낙엽송·편백 등에 대한 안정적인 종묘 생산체계를 마련할 필요

나. 기본방향

ㅇ 종자공급원의 환경개선을 통해 우수종자 생산성을 제고하고, 채종원 확대를 통한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

ㅇ 안정적인 묘목의 생산·공급을 위한 양묘시설 현대화 및 국유양묘장 확대 등 우량묘목생산 기반 구축

ㅇ 묘목의 범위기준 적용 등을 통한 검사 및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종자효율 개선 등을 통한 종묘산업 생산성 향상

다. 세부추진계획

1) 종자공급원 확대 및 종자채취 생산성 제고

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의 관리 및 확대

【 채종원 】

ㅇ「채종원 관리 실태조사('12)」,「주요 조림수종 활성화 방안('14)」에 따른 채종원의 기능 재 구분, 신규조성·갱신·폐기 등을 통한 구조 개선

- 위탁 채종원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 및 수종갱신 등 적극적인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 제4호에 따른 채종림 지정·관리 및 「종묘사업실시요령」 제6조에 따른 채종원 폐기 기준 참고

ㅇ 조림 수요가 증가하는 낙엽송 등 채종원 확대

- 채종원 확대(4ha) : ('15) 780.4ha → ('16) 784.4ha

구 분	수 종	면 적	본 수	지 역
계		22.0	5,273	
다개화	낙엽송	18.0	3,673	충 주
1세대	소나무	4.0	1,600	강 릉

* 낙엽송 18ha 조성 면적은 리기테다소나무 수종 갱신

ㅇ「채종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적지조사('15)」용역 결과에 따라 채종원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국유림 관리전환 등 조치

- 권역별 조성 방향 및 연차별 계획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 마련(400ha)
- 지방산림청은 채종원 확대를 위한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대부 등 협조

  * 2030년까지 채종원 2,500ha를 조성하여 산림용 종자 90%이상 공급

【 채종림·채종임분 】

ㅇ 종자공급원의 생산성 및 채종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 : 60ha(국유림 30, 민유림 30)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환경 개선(ha)	60	6	15	3	3	3	4	5	3	3	4	3	4	4

- 채종림을 단순 지정·관리에서 임분개량을 통한 생산으로 정책 전환
- 지방청·도별 대상지 선정 및 환경개선사업 실행('16.2~11월)
  - ■ 사업 실행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현장토론을 통한 사업방향, 장기목표 등 설정
  - ■ 「'15년 종자공급원 적정성 검증 결과」등을 참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임분개량(밀도·수형조절), 작업로 개설 등 환경개선사업 실행(6백만원/ha)

- 대상지 선정, 적정 규모, 시기별 작업방법 등은「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 매뉴얼」작성·보급(1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사업대상지(1개소/기관)에 대한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 현장토론회' 개최(13개소, 산림청)

ㅇ「2015년 종자공급원의 일제정비」를 토대로 효율적인 종자공급원의 관리체계를 구축 및 지역별 필요수종에 대한 신규 지정 확대
- 기관별 종자공급원에 대한 생산량, 작업내역 등 이력관리 사항을 전산화하고, 종자공급원 지정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사전 대상지 협의

나) 산림용 우수종자 생산·비축 및 전문화

ㅇ 산림용 종자는 반드시 검증된 종자공급원에서 채취하여 우수종자를 공급
- 철저한 종자결실 예찰을 통해 종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종자생산 : ('15) 47톤 → ('16) 55톤
  - ■ 주요 조림수종인 낙엽송·편백 등을 집중 생산
  - ■ 향토수종과 시범조림을 위한 수종 등은 선별적 채취
  - ■ 잣나무·삼나무는 채종원에서 전량 생산
  - ■ 종자공급원 외에서 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지도 점검 강화

ㅇ 결실주기 등 기후영향에 대응하고 대북지원 종자 확보를 위한 비축 증대
- 종자비축 : ('15) 30톤 → ('16) 37톤(조림용 18톤, 대북용 19톤)
  - * 싸리, 아까시 등 북한 황폐산림복구용 종자는 채종임분 등에서 최대한 확보
- 종자저장시설 운영 활성화
  - ■ 종자결실(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종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지역별·기관별 잔여종자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GeneBank에 위탁 저장
    - * GeneBank : 면적 1,808㎡(2층), 단기수급 종자저장(51톤), 장기보존 종자저장(15만점) 등
  - ■ 지역별 저온저장고를 통한 채취종자의 저장·보관으로 활력 유지

ㅇ 종자 채취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채종원 내에서 실행하는 각종 산림사업 및 종자채취에 전문 기능인 영림단을 육성·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부족 해소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영림단 등록현황 제출(5월)
- 종자채취 작업 시 버켓크레인, 휴대용 등목사다리 등 장비 사용을 확대하여 효율성 제고
- 지자체 종자채취 시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9월)

○ 종자생산 기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추진

- 주요 수종별 종자채취 표준 작업공정 및 임목종자표준품질표 마련(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산기술연구소)

  * '산림 종묘정책 연구회'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

- 종자효율 개선(물리적·화학적 방법 등) 방법 구명 및 효율개선에 따른 가격 차별화 방안 마련(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다) 산림용 종자 검증 및 유통·관리 강화

○ 국가지정 산림용 묘목 생산 사업은 검증된 종자 이외의 사용은 제한

-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확인을 통한 특용수 등 구입묘목의 산지검증

○ 산지증명제도 운영

- 산지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는 종자 검사 및 사용 근절
- 불량종자의 차단 및 산지확인을 위하여 원산지 식별기술 지속 개발

  * 원산지 식별 가능수종 :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잣나무

2) 묘목생산·관리 및 생산기반 확충

가) 계획적 묘목생산 및 클론임업 활성화

○ 「묘목생산 확대 방안('14)」, 「'16~'18년 종묘생산 중앙심의」에 따라 지역별 묘목을 생산하되 낙엽송·편백은 생산 확대, 소나무·백합은 축소

- 묘목생산 : ('15) 48백만본 → ('16) 48백만본

구 분	소나무	**편 백**	백 합	**낙엽송**	상수리
'15	12,876	**13,098**	4,851	**4,993**	3,919
'16	10,293	**13,659**	4,785	**6,000**	4,110

○ 경제림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위주로 묘목생산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백합나무는 수요 및 적정 대상지에만 식재하도록 생산량을 축소

ㅇ 형질이 우수한 묘목 생산·보급을 위한 클론임업의 활성화

- 낙엽송 등 클론묘목 생산 : 30만본(국유 20만본, 민유 10만본)

  * '16년 시범 조림(1천본) 및 시범 양묘(18천본) 추진

- 조직배양을 통한 낙엽송 클론묘목 생산기술 이전(산림유전자원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 낙엽송 조직배양 기술(셀라인 포함) 이전(1월, 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 클론임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기술교육 정례화(5월)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자체(산·환·연) 조직배양 담당자 기술교육

  * '15년도 '조직배양을 통한 클론묘목 생산 기술교육' 실시('15.5.26～28)

- '16년 클론 재배시설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 : 3동(국유 1, 민유 2)

나) 양묘시설 현대화 및 국유양묘장 확대

【 양묘시설 현대화 】

ㅇ '16년 양묘시설현대화 추진(46억원)

- 사업량 : 7개소(국유 2〈40억원〉, 민유 5〈6억원〉)

- 시설온실, 야외 생육시설, 자주식 관수기, 종자파종·포장 자동화 및 생육환경 조절시스템 등을 시설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 민유양묘장은「용문 양묘시설 현대화 기본계획('14)」및 '15년 국·민유 양묘시설 현대화 사례를 참고하여 각 양묘장 실정에 맞도록 설계·시공

구 분	개소	대 상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7		4,600	
국유림	2	연곡, 공주	4,000	
민유림	5	진천, 부여, 안동, 영주, 진주	600	국고기준

  * 현장간담회 개최, 기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여건에 부합된 현대화 추진

  * 현대화를 완료한 대행생산자에게 묘목생산 우선 지정(심사 가점 반영)

- ’16년 양묘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안)

기관		추진계획
충북	진천	▪ 설계(1월) 및 사업추진(1～5월), 총사업비 430백만원 * 자동화 온실 및 상토·종자 파종시설, 작업장, 도로포장 등
충남	부여	▪ 설계(1월) 및 사업추진(2～9월), 총사업비 350백만원 * 자동화 온실 및 저온저장고, 창고 및 작업장, 기계장비 등
경북	영주	▪ 설계 및 사업추진(2～10월), 총사업비 595백만원 * 자동화 온실 및 야외생육시설, 종자파종시설, 기계장비 등
	안동	▪ 설계(2월) 및 사업추진(3～9월), 총사업비 300백만원 * 자동화 온실 및 야외생육시설, 기계장비, 종자자동파종시설 등
경남	진주	▪ 설계(5월) 및 사업추진(5～6월), 총사업비 500백만원 * 야외생육시설(6,000㎡) 신축
동부	연곡	▪ 설계(2월) 및 사업추진(5～10월), 총사업비 1,400백만원 * 온실 및 야외생육 시설, 저온저장고 등 [스마트 양묘 시범사업]
중부	공주	▪ 설계(1월) 및 사업추진(1～10월), 총사업비 1,400백만원 * 자동화 온실 및 저온저장고, 포트이동레일, 장비고 등

【 국유양묘장 확대 및 시설 개선 】

ㅇ 우량 묘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유양묘장 확대 및 리모델링 추진

- 국유양묘장 신설 : 1개소(중부청〈공주. 금흥. 산20-1외 1〉)

<공주 국유양묘장 조성 개요>

- 추진목적 : 조림용 묘목자급률 제고, 선진 양묘기술의 개발·보급
- 사업시행 : 중부지방산림청
- 장　　소 : 충남 공주시 금흥동 산20-1, 산20-13
- 기　　간 : 2015년～2016년
- 사업면적 : 약 4ha 내외
- 주요내용 : 토공, 생육시설 및 사무실 등 설치
  * 유리온실, 간이온실, 야외생육시설, 파종시설, 저장시설 등 설치
- 묘목생산 계획(2019년 춘기 수급가능 수량) : 낙엽송 80ha(240천본)
- 주요기계장비 : 굴삭기, 트랙터, 운반차, 지게차, 관리기, 컨베이어 등

- 국유양묘장 리모델링 : 1개소(북부청〈홍천. 내. 자운. 산157외 12〉)

<홍천 국유양묘장 리모델링 개요>

- 추진목적 : 홍천양묘장의 배수시설 개선 및 시설보완 공사
- 사업시행 : 북부지방산림청
- 장　　소 : 강원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157외 12
- 기　　간 : 2016년
- 사업면적(사업비) : 3.6ha(640백만원)
- 주요내용 : 돌수로 및 암거 설치, 돌쌓기, 배수관 설치, 객토 등
  ※ 배수시설 보완사업 추진시 산림과학원 토양조사 결과(’14) 참조
- 묘목생산 계획 : 연간 성묘 100만본

○ 국유양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보완사업 추진

- 양구 양묘장 관리사 시설(30백만원) 및 서벽 양묘장 창고시설(80백만원)
- 국유양묘장별 단동 또는 연동형 비닐하우스 시설은 부대사업비 활용

○ 직영 전환된 민간위탁 양묘장의 시업체계 정비 및 기반조성

- 조림사업 확대에 따른 시업량 확대 및 시범양묘·재배시험 등 기술배양
- 토양개량·배수시설 정비 및 시설 현대화(온실 등)를 통한 기반구축

  * 직영화 양묘장(20.2ha) : 춘천양묘장(5.9), 삼성양묘장(8.0), 남원양묘장(6.3)

○ 국유양묘장별 역할구분으로 기능화 및 특성화 유도

- 중심양묘장(6)과 부속양묘장(5)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중심양묘장은 지역적 대표 수종 양묘로 특성화 및 민유양묘장 선도 경영
- 산간, 직영화 등 부속양묘장은 큰나무 중심의 산지적응, 시험양묘 추진

  * 역할구분 : 중심양묘장(소묘, 용기묘 중심), 부속양묘장(중·대묘 중심)

< 5개 권역별 양묘장 특성화 >

중심 양묘장(6)	운영 방향
용문(북부)	다기능 복합 양묘장 (소나무·잣나무·낙엽송)
정선·평창 (동부)	침엽수 및 동해안 산불복구, 백두대간 복원용 묘목생산 (금강소나무·낙엽송)
춘양(남부)	금강송 종묘생산 기지 (금강소나무·참나무류)
삼성(중부)	바이오순환림 중심 양묘 (백합나무·참나무류)
보성(서부)	난대림복원, 소득과 연계된 난대수종 양묘 (백합·편백, 후박·가시나무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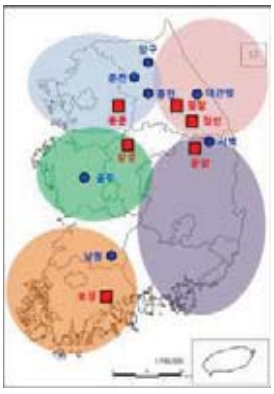

* 양묘장 위치에 따라 목적수종 생산에 제한이 있는 묘목은 기관별 협의 운영

3) 묘목 유통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가)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강화

○ 조림용 묘목검사 강화 및 묘목생산자 실명제 정착

- 묘목검사는 경력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철저히 이행
  - ■ 병해충 진단, 도장묘목 판단 등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행
  - ■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출하금지 및 소독·폐기 등 조치 실행
  - ■ 포장 시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등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묘목검사 시 간장의 범위기준, 적용 H/D율 등 개정된 기준 적용 철저
- 종자공급원·생산자·묘목검사자 실명제 실시(조림지관리대장에 명기)
- 양묘시업 포지에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번호가 표시된 표찰 설치
  * 종자(산지증명)→양묘장(산지표시)→묘목수급(산지,생산·검사자)→조림(산지,생산자)
-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유통시 품질표시 철저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및 제10호의2서식 준수

구분	표시방법	예시
종자	**수종명-수량-종자산지-종자공급원-발아율-효율** 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기관	낙엽송-5-춘천-1-90-80 홍길동-201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묘목	**수종명(묘령)-수량-간장-근원경-종자산지-종자공급원** 생산지-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자	낙엽송(1-1)-100-20~25-10-춘천-1 홍천-홍길동-2014-이도령

- 지자체에서는 민간양묘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수시 확인을 통한 시업기준 준수여부, 시업상황 등 생산실태 점검
  ■ 묘목생산 대행자의 의무 이행(지정량 등) 및 자격·기술조건 검증 철저

○ 연약한 묘목(도장묘·세장묘·비경화묘) 생산 및 품질 표시 불량 근절
- 묘목수급 및 조림시 양묘·조림 담당자 합동 점검을 통해 연약한 묘목 납품 및 품질 미표시 강력 단속 후 행정조치 이행 * 점검실적 제출(4월말)

나) 양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추진

○ 시설양묘 비용 분석 및 묘목생산시설 토양조사 추진
- 시설양묘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등 구성 인자별 상관관계 분석
  ■ 기존「시설양묘정책 및 발전방향 연구('10)」대비 시설양묘 확대 및 양묘시설현대화 도입에 따른 구성비용 변화 및 적용 기준 분석
- 안정적인 노지양묘 생산을 위한 묘목생산시설 토양조사 추진
  ■ 수요 조사를 통해 국유양묘장을 중심으로 토양조사를 추진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17년 개선사업비를 지원
  ■ 토양조사 추진주체를 변경(과학원 → 산림청)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묘목 저장 시험·연구 추진
- 주요 조림수종 묘목에 대한 저온저장 체계 구축(산림생산기술연구소)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산기술연구소)과 각 양묘사업소 공동 연구 추진
  ■ 대상 수종 : 소나무, 낙엽송, 편백, 잣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등
  ■ 수종 및 묘목 종류별 저장기간에 따른 생육상황 조사

- 백합 규격묘 생산을 위한 적정 생립·이식 및 생산 본수 구명(유전자원부)
  * 백합나무 파종량 변화에 따른 유묘 생산본수의 구명도 병행 연구

ㅇ 우량 낙엽송 묘목생산 집중 연구
- 낙엽송 체세포배 클론묘 대량생산체계 구축(유전자원부)
- 마이크로커팅을 통한 낙엽송 삽목묘 생산 연구(유전자원부)
- 낙엽송 1년생 산출묘 생산을 위한 적정 용기 규격 구명(생산기술연구소)
  * 지방청 낙엽송 1년생 식재지 모니터링 및 분석 병행
- 낙엽송 우수 품종간 인공교배를 통한 우량개체 선발(유전자원부)

ㅇ 효율적 종묘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 지자체 사업추진기간 변경에 따른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기간 변경
  ■ 사업추진기간 변경(회계종료 후 2개월→회계종료일)됨으로써 차년도 지자체 조림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해 고시일 변경(12월 → 10월)
- 산림자원법 제16조에 따른 '산림용 종묘'에 대한 고시 개정 추진(11월)
  ■ 기존 고시수종 및 추가 반영 대상수종에 대한 과학원, 전문가 등 내·외부 자문 등을 통해 '산림용 종묘' 수종 선정
- 산림 종묘정책 연구회 운영(각 분기별)
  ■ 각 기관별(본청·품종센터·유전부·산기연) 사업·연구현황 공유 및 제도개선 사항 토론을 통한 종묘정책 발전방안 마련

다) 2016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 추진

ㅇ 식목일을 전후하여 대 국민 나무심기 공감대 형성
- 각 기관별 나무나누어 주기, 내 나무심기, 나무시장 운영 등
  ■ 주요행사 : '국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중앙행사), '소나무 살리기 캠페인'(문화일보 공동), '통일희망 나무'(한국도로공사 공동) 등

라. 추진일정

ㅇ 2015년산 종묘가격결정 자문위원회 및 결정 : 2015. 12. 30.

ㅇ 2016년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 2016. 1. 1.

ㅇ 국유양묘장 리모델링(홍천) 사업 : 2016. 1. 1.

ㅇ 2016년 파종용 종자 확보상황 파악·보고 : 2016. 1. 10.

ㅇ 2016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 : 2016. 2. 1. ~ 4. 30.

ㅇ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사업 : 2016. 2. 1. ~ 11. 30.

ㅇ 2016년 봄철 조림지 수급묘목 점검 보고 : 2016. 4. 30.

ㅇ 2016년 양묘시업 상황 파악·보고 : 2016. 5. 31.

ㅇ 채종원 확대 실행계획 수립 : 2016. 6. 30.

ㅇ 2016년 종자결실 예찰 조사·보고 : 2016. 8. 20.

ㅇ 2017년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 2016. 8. 30.

ㅇ ’17~’19 종묘생산 중앙심의회 : 2016. 9. 10.

ㅇ 2016년 묘목생산 실태 조사·보고 : 2016. 10. 15.

ㅇ 2016년 제44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 개최 : 2016. 10.

ㅇ 신규 채종원 조성 : 2016. 10. 31.

ㅇ 2016년산 종묘가격결정 자문위원회 및 결정 : 2016. 10. 31.

ㅇ 산림용 종자 및 묘목 고시 개정 : 2016. 11. 15.

ㅇ 2016년 종자채취 결과 파악·보고 : 2017. 1. 10.

8. 조 림

목 표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

- 사업량 : 21,813ha, 52,300천본 -

가. 정책여건

ㅇ 국내 목재수요의 해외 의존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목재자원 공급을 위해 경제림육성이 시급

ㅇ 산주들은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은 장기수 조림을 기피하고, 시장 가치가 높은 특용자원의 식재를 선호

ㅇ 기후변화 및 재선충병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대체 수종에 대한 관심 증가

ㅇ 산림을 휴양, 치유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

나. 기본방향

ㅇ 지역·기후를 고려한 경제성 높은 대표 수종으로 조림
- 경영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 수종을 확대
- 경영비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목재공급을 위해 규모화 조림
-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은 경제수종으로 갱신

ㅇ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큰나무 및 지역특화림 지속 추진
-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조림
- 지역의 특색 있는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브랜드화 도모

ㅇ 조림사업의 여건 변화 대응과 현장 괴리 해소 및 이력관리 강화
- 목재생산을 위한 활엽수종 시범 조림 및 재선충병 대체 수종 조림
- 조림예외지 중 맹아갱신지에 대한 기준 본수 조정으로 현장 괴리 해소
- 사유림경영정보 시스템과 새올 시스템을 연계하여 벌채 단계부터 조림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2016년 조림계획 : 21,813ha, 932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16년 조림계획 (국고보조금)
① 경제림조성	▪ 국고 보조율 : 60%(지방비 30%, 자부담 10%)	▪ 15,610ha, 456억원 . 국유림: 2,150ha, 70억원 . 민유림: 13,460ha, 386억원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조림 및 단기소득 조림 -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유휴토지조림 ▪ 3,000본/ha, 479만원/ha	▪ 15,610ha, 456억원 . 국유림: 2,150ha, 70억원 . 민유림:13,460ha, 386억원
② 큰나무조림	▪ 국고 보조율 : 50%(지방비 50%)	▪ 4,488ha, 290억원 . 국유림: 488ha, 57억원 . 민유림: 4,000ha, 233억원
가. 큰나무공익조림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 경관조성을 위한 수종 식재(수고 1.5m 내외) ▪ 350본/ha, 1,167만원/ha	▪ 2,028ha, 123억원 . 국유림: 98ha, 11억원 . 민유림: 1,930ha, 141억원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 산사태, 산불, 병해충 및 태풍 등의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 예방을 위한 조림 ▪ 1,500본/ha, 887만원/ha	▪ 2,460ha, 167억원 . 국유림: 390ha, 46억원 . 민유림: 2,070ha, 92억원
③ 지역특화조림	▪ 국고 보조율 : 50%(지방비 50%)	▪ 1,565ha, 123억원 . 국유림: 300ha, 11억원 . 민유림: 1,265ha, 112억원
가. 금강·안면소나무육성	▪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 대경재 생산을 위한 금강·안면소나무림 보전 및 후계림 육성 ▪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 등 350만원/ha	▪ 480ha, 14억원 . 국유림: 300ha, 11억원 . 민유림: 180ha, 3억원
나. 섬지역산림가꾸기	▪ 강한 해풍,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지역 산림 조성 ▪ 객토, 유기질비료, 물주기, 자생수종의 식재 및 보육 등 2,012만원/ha	▪ 182ha, 18억원 . 민유림: 182ha, 18억원
다. 지역특화림 조성	▪ 동계올림픽 경관림 등 각 산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림지로 육성 : 2,012만원/ha ▪ 동계올림픽 경관림(120ha), 충주댐 벚꽃동산 조성(20ha), 칠갑산 특화림(30ha), 덕숭산 특화림(50ha), 내장산 단풍 특화림(20ha), 지리산둘레길 특화림(50ha), 용궐산 미르숲 조성(20ha), 방장산 특화림(20ha), 변산 경관 특화림(30ha), 대나무 특화림(30ha), 정남진권 푸른숲 조성(80ha), 나주 나평십리송복원(50ha), 참가시 난대숲 조성(20ha), 황칠 특화림(110ha), 견과류 웰빙 숲 조성(110ha), 송이소나무 특화조림(30ha), 무을돌배 특화림(70ha), 5대명산 가꾸기(43ha)	▪ 903ha, 91억원 . 민유림: 903ha, 91억원
④ 밀원수림 조성	▪ 국고 보조율 : 100%(국비 100%)	▪ 150ha, 20억원 . 국유림: 150ha, 20억원
	▪ 국유림을 중심으로 안정적 채밀 공급을 위한 밀원수림 조성 ▪ 3,000본/ha, 1,100만원/ha	▪ 150ha, 20억원 . 국유림: 150ha, 20억원

* 설계감리비 29억원(국유림 5억원 민유림 24억원), 사업운영비 14억원

다. 세부추진계획

1) 경제림 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5,610	2,150	13,460
사업비	45,644	6,976	38,668

※ 국고 보조율 : 60%

ㅇ 경제림육성단지(450개, 292만ha)를 중심으로 경영목적에 맞게 조림방법과 식재본수를 다양화하여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경제림 조성의 종류〉

① 목재생산조림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산림을 조성하는 조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백합나무 등 지역별 중점 조림수종을 단순화하여 대면적·집단화 조성

* 조림지 여건을 고려하여 소묘, 중묘, 대묘, 움싹, 파종, 천연하종, 복층림조성 등 적절한 조림방법을 적용

② 바이오순환림조성

·목재펠릿, 펄프재, 표고자목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는 산림을 조성

·백합나무, 참나무류,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속성수 식재 또는 움싹갱신으로 조성

* 최종적으로 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밀식 조림하여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 활용

③ 특용자원조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의 대단지 조림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화 기반조성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종 및 옻나무, 두릅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자원 수종을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식재

*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직접 구매하여 식재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실행

④ 유휴토지조림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실수·특용수·조경수·용재수종 등을 식재

·조림수종은 유실수, 특·약용수 위주로 추진하되,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조림

가) 목재생산조림

(1) 조림수종

ㅇ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집중 조림으로 생산성 증진

- 목재수요 증가, 온난화 영향 및 산주 선호도 등 경영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 수종을 규모화하여 조림

  - 확대 : 낙엽송, 편백나무
  - 축소 : 소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 현 수준 유지 : 삼나무, 가시나무류

ㅇ 목재생산 등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은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을 고려하여 대면적·집단화 추진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 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 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큰나무공익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경관수종, 유실수·특용수는 지역특성 및 산주 수요를 반영하여 조림(붙임 조림권장 수종 참조)

ㅇ 리기다소나무림, 불량활엽수림 수종갱신 지속적 추진

-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벌채시기에 도달한 녹화수종,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식생기후대 북상에 따른 조림수종의 변경은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조정

- 장기적으로 제주도에서 생육하고 있는 상록활엽수종 등 난대 수종을 온대 중부지방까지 확대

- 온대 중·남부 지역 잣나무·리기다소나무림 등의 수확지에 기후변화대응 시범조림을 추진하여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편백 등 기후대 적응 범위가 넓은 수종을 확대하되, 조림수종의 조정은 산림기후대 북상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난·아열대 수종 지역 적응성 검정 및 육성연구

- 분포지 확대가 예상되는 난·아열대 수종 조림적기 규명 및 증식법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국립산림과학원, '13~'16)

(2) 묘목

○ 묘목의 종류 및 식재본수는 현지 입지여건과 산림경영 목적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

- 소묘, 중묘, 대묘, 움싹, 파종, 천연하종, 복층림조성 등 조림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림방법을 적용

  * 목재생산 목적의 대묘조림은 경제림 조성에 포함하여 추진

- 목재생산조림 시 임야하단부,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특용·유실수종을 병행 식재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 지원(조림면적의 10%)
-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수종별 특성과 입지여건에 따라 조정 식재

·일반 노지묘, 침엽수 용기묘(2-0), 활엽수 용기묘(1-0) 3,000본/ha 식재
·비옥지에 낙엽송을 조림하는 경우 2,000본/ha 식재
·대경재 생산을 위해 백합나무를 조림하는 경우 1,100본/ha 식재
·백합나무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시는 2,000본/ha 이상 식재
·소나무, 잣나무, 편백 등 대묘는 1,500본/ha 식재

<주요 수종의 묘목규격>

수종별	소묘	중묘	대묘	비고
소나무	1-1	2-0(용)	1-1-2, 2-2(용)	
낙엽송	-	1-1, 2-0(용)	-	
잣나무	2-1	2-2	2-2-3	
편백	-	1-1, 1-1-1, 2-0(용)	1-1-2, 2-2(용)	
삼나무	-	1-1	-	
리기테다소나무	1-0	-	-	
백합나무	1-0, 1-1	-	-	식재후 대절
가시나무류	2-0(용)	-	-	

* 조림용 묘목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묘목을 수급(종묘 생산지증명 등)

ㅇ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고 사후관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규격 묘목으로서 묘령 및 규격이 큰 중·대묘 조림을 확대

- 조림 후 타 식생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농·산촌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증가에 대처
- 경제림 조성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편백 등 중점 조림수종의 묘목 크기를 상향 조정하되, 속성수, 활엽수 조림은 중·대묘 조림 지양
- 중·대묘 식재본수는 묘목 규격 상향에 따라 적정비율로 하향 조정

  * 소묘(3,000본/ha)와 대묘(1,500본/ha)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비옥도와 생장속도를 감안하여 설계에 의하여 적정 본수 산출

ㅇ 용기묘 조림은 우량 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침엽수 용재수종 중심으로 확대

- 용기묘 생산 효율성, 현지 적응성이 높은 수종 중심으로 확대
-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를 위주로 용기묘 조림 추진

  * 단벌기 경영 목적의 산림은 용기묘 조림 대상에서 제외(상수리나무 등)
    예) 표고자목 생산, 목재칩 생산을 위한 바이오순환림조성 등

(3) 사업관리

ㅇ 벌채 시 전목·전간재 집재를 활성화하여 임목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림예정지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 원목반출 후 조재산물의 임내정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하고, 부산물 수집으로 바이오매스 원료공급 및 식재공간을 최대한 확보

ㅇ 천연하종갱신, 맹아갱신 등 저비용·고효율 조림 추진

- 개별·인공조림 위주의 갱신에서 인공조림과 병행한 맹아·천연하종 갱신 및 복층림 조성 등 저비용 조림 실현(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적지에 실행)

ㅇ 조림목의 절단 방지 및 효율적인 풀베기 작업을 위해 조림목 표시봉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나무 등 환경친화적인 천연소재 사용

  * 표시봉 : 길이 1.0m 이상, 땅속에 박히는 깊이 0.2m 이상, 상부는 흰색 페인트 0.4m～0.6m 표시

ㅇ 허가(신고)에 의한 벌채지 및 훼손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무조림 및 조림명령 철저 이행

나) 바이오순환림조성

(1) 조성계획

ㅇ 목재펠릿, 펄프재, 보드·섬유판, 표고자목 등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속성수 식재 또는 움싹갱신을 활용하여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에 따라 '20년까지 10만ha 조성
- 소·중경재 단벌기 순환림 또는 대경재 생산림의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 활용
  * 실행요령은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자원육성과-940호, 2009.2.26) 및 '바이오순환림조성 실행계획'(산림자원과-3673호, 2009.12.18) 참조

ㅇ 조성대상지는 가급적 토지생산성이 높고, 임도 등 기계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

- 맹아갱신, 백합나무 등 속성수 조림지는 바이오순환림으로 우선 조성

ㅇ 펠릿공장, 탄소순환마을 등 수요처와 국·사유림을 연계하여 대면적 단지화 조성을 중점 추진

- 기관별 바이오순환림 시범단지 운영 및 연차별 조성계획을 준수하여 추진

·대면적 시범단지(개소당 50ha 이상) 및 국·사유림 연계 시범단지 조성

  * 시·도별 연차별 조성계획(변경) 및 시범단지 내역은 붙임 참조

(2) 조림수종

ㅇ 조림수종은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식재본수는 대상지별 입지여건과 묘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식재수종 :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포플러류,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자작나무는 온대북부 지역에 식재)
- 식재본수

  백합나무, 포플러류 : 2,000본/ha 이상
  기타수종 : 3,000본/ha 이상

  * 백합나무 2천본구 식재간격은 2×2.5m 또는 5×1m 등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대절 후 2개 이상 움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풀베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시 정리
  * 백합나무는 한건풍·동해 우려가 없는 적지에 한정하고 조림면적 축소

- 바이오순환림조성 시 임야하단부,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특용·유실수종을 병행 식재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 지원(조림면적의 10%)

ㅇ 척박지, 능선부 및 산정부 등 백합나무 식재가 부적합한 대상지는 임지여건을 고려하여 침엽수 용재수종을 대상교호 또는 군상혼효로 식재하되, 간벌재를 바이오매스, 산업용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ha당 3,000~5,000본까지 밀식

※ 대상·혼효 식재한 용재수종은 바이오순환림 단지면적에 포함

(3) 사업관리

ㅇ 불량림 벌채, 비료주기 등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셈적용 등 원가계산에 차질 없도록 반영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공정산출 및 설계 참고사항

·불량림의 벌채가 수반되는 경우는「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의하여 벌채공정 반영

·임산물운반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 요령으로 공정 반영

·조림목의 빠른 생육을 위하여 전면적 비료주기 작업 실행

·기타 식재공정 등은 일반 조림사업에 준하여 설계

ㅇ 조림비용의 절감과 조림지 사후관리 어려움을 감안하여 움싹, 천연치수 등 자연복원력을 이용한 저비용·고효율 조림 추진

- 자연복원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움싹, 천연치수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 식재(300본~1,000본/ha)

- 보완 식재하는 묘목은 움싹, 천연치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성수로 식재

* 바이오순환림 관리대장은「조림사업 설계·감리시행지침」의 '조림지관리대장'으로 통합관리

다) 특용자원조림

ㅇ 약용, 식용, 공업용 등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특용수종을 단지화 조림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자원 조성

- 특용자원 단지 조성계획, 특용수종 조림 적합지, 산업화 연계 효과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유망 특용자원(예시)

- 옻나무(옻칠공예, 식약재), 닥나무(한지산업), 대나무(죽공예), 헛개나무(식약재), 박달나무(운동기구), 황칠나무(전통도료), 산수유(식약재), 동백나무(유지), 참죽나무(가구재, 식약재) 등

* 산림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 허가·신고대상 수종은 제외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 효과적인 산업화 성공을 위해 대면적 단지화 대상지 우선 선정 ▪ 단순하게 수실을 채취하여 소비하는 수종보다는 원료, 가공품으로 2, 3차 산업화 유발 효과가 큰 특용자원 발굴 ▪ 식재방법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통상의 조림방법으로 실행 (작업로, 관리시설 등은 별도 사업자 사업비 투입 및 개별적으로 인허가) ▪ 대상 수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산림의 조성이 아닌 **재배-경작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관목류, 만경류 등은 제외** ▪ 지역별 고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유망 특용자원의 개발

ㅇ '16년 사업계획 : 1,500ha(국비 4,357백만원)

- 민유림 1,400ha(4,022백만원), 국유림 100ha(335백만원)

  * 경제림조성 단가적용(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ㅇ 특용자원 조림 사업비는 경제림 조성 전체 통합 예산을 활용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한 사업비를 반영 집행

- 특용자원 조림 사업단가 : 4,788천원/ha당(특용자원 묘목구입비 포함)
- 식재본수는 비옥도, 묘목의 크기 등 토양 및 수종별 특성에 따라 조정
  - 유실수(감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등) : 400~800본/ha
  - 특·약용수종(옻나무, 두릅나무 등) : 1,500본/ha

ㅇ 보조방법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묘목을 직접 구매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

- 산주희망, 지자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비 또는 민간보조로 편성

ㅇ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수를 조림하는 산주에게 특용자원조림을 우선 지원

- 기 조성된 운재로·작업로의 유지 보수와 비료주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 반영

라) 유휴토지조림

ㅇ '16년 사업계획 : 민유림 1,000ha(국비 2,873백만원)

  * 경제림조성 단가적용(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ㅇ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실수·특용수·조경수·용재수종 등을 식재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 '유휴토지조림 5개년 계획' 참조(산림자원팀-1731호, 2006.11.27.)

ㅇ 조림수종은 유실수, 특·약용수 위주로 추진하되,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조림

* 밤나무는 과잉 생산을 감안, 지원 대상 수종에서 가급적 제외

ㅇ 유휴토지 조림 후 5년간은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조치

ㅇ 기후변화 대응 신규 산림조성에 대한 산림사업 실적으로 별도 관리되므로 반드시 계획량 이상으로 추진

- 한계농지 이외에도 식생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한지, 도심지 자투리 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하천변에도 조림 가능

2) 큰나무조림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4,488	488	4,000
사업비	29,026	5,692	23,334

※ 국고 보조율 : 50%

가) 큰나무공익조림

ㅇ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되, 가급적 지자체별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효과 제고
- 경관수종(수고 1.5m 내외)은 350본/ha 기준으로 식재하되, 조림목의 크기에 따라 식재본수를 가감하여 실행
- 경관조성, 산불예방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목류, 조경수 식재 가능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ㅇ 산사태, 산불, 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으로 산림경관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

- 산사태 피해지는 우선 복구를 지원하고, 주택가, 농경지 주변 산사태 우려지는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
- 산불 및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피해지는 자연복구와 병행하여 인공복구 추진
- 경작지, 주거지 주변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방풍림 조성

ㅇ 식재수종은 대묘(1,500본/ha) 이상 큰나무를 식재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소묘 또는 관목류 식재 병행

- 피해목 벌채, 비료주기 및 대묘식재 등 기본 공정에 반영

ㅇ 태풍으로 인하여 부러지거나 쓰러진 입목 피해지는 2차적인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목을 제거하고 집단피해지는 재조림 추진

- 단목(單木), 소규모 분산 피해지는 숲가꾸기 산물처리 방법에 따라 조재 후 임내정리 또는 매각 처분
- 피해목 제거 후 재조림이 필요한 집단 피해지는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 후 조림계획에 반영

  *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 따라 처리

ㅇ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모두베기 지역에 대한 조림은 경제성과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림 수종 선정

- 기후, 토양 등 현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지역별 적지적수를 선정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조림 권장수종>

구 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조림 권장수종
온대북부	낙엽송
온대중부	낙엽송,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온대남부	편백, 삼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난 대	편백, 삼나무, 졸참나무, 가시나무류(붉가시, 개가시, 종가시나무)
제 주	후박나무, 가시나무류, 편백, 비자나무, 벚나무류

3) 지역특화조림

가) 금강소나무육성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380	300	80
사업비	1,190	1,050	140

※ 국고 보조율 : 50%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목재가치가 높고 역사적·문화적으로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종임

ㅇ 병해충,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후계림 육성이 시급함

* 숲에 낙엽이 쌓여 씨앗발아가 어렵고, 낙엽활엽수와의 경쟁에서 쇠퇴

〈분포현황〉

ㅇ 금강소나무는 강원, 경북의 백두대간에 주로 분포(373천ha)

- 강원(강릉, 삼척 등) : 226천ha(국유림 28%, 민유림 72%)
- 경북(봉화, 울진, 영양 등) : 147천ha(국유림 25%, 민유림 75%)

* 금강소나무(*P. densiflora* for. *erecta*)는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한 품종으로 곧고 통직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음

〈사업개요〉

ㅇ 우리나라 대표수종인 강원·경북지역 금강소나무림의 보전·관리 및 후계림 육성으로 문화재용 특수재 및 고급대경재 생산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로 우량임분 육성
- 천연하종, 파종조림, 식재조림 및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로 후계림 조성

〈추진요령〉

ㅇ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우량형질로 육성

- 솎아베기 : 동령림은 생육밀도 조절, 다층림은 상층의 송지채취 또는 산불피해를 입은 대경목 위주로 실시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위주의 금강소나무 육성

ㅇ 임지의 여건에 따라 모수작업, 모두베기를 통하여 적정 임분 관리

- 남향 또는 남동향 사면의 노령목 주벌 수확지는 모수작업을 적용
- 벌기에 도달한 임분 또는 과거 송지채취·산화피해를 받은 노령목 분포지역은 모두베기 실시
- 단순림, 혼효림, 단목림 등 임분의 형태에 따라 전문가 현장토론 등을 거쳐 적정 작업종을 결정하여 시행

ㅇ 후계림 조성은 일조량, 토질, 경사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천연하종 및 파종조림으로 갱신하고, 식재조림을 병행 실시

- 천연하종 및 파종은 일조량이 많아 종자 발아율이 높은 남동, 남서 사면에 실시
- 어린묘, 대묘, 용기묘조림은 모든 곳에 조림이 가능하나 북향의 경우 생육이 다소 저조하므로 신중히 식재

ㅇ 금강소나무 생육분포도 작성 및 DB화하여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이력 기록관리 및 사후관리 철저

- 후계림 보전을 위한 인공갱신 시험시업지에 대한 생육상황 조사
- 문화재용 특수재 목재생산림 지역 등 사후관리 철저

ㅇ 대관령, 소광리 등 지명도가 높은 지역은 금강소나무 시범 전시림으로 조성하고 숲 체험 교육장으로 이용

나) 안면소나무육성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00	-	100
사업비	175	-	175

※ 국고 보조율 : 50%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안면소나무는 고려시대부터 궁궐재 등으로 공급된 목재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우수경영산림으로 선정

ㅇ 병해충,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후계림 육성이 시급함

* 안면소나무 보전·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08년, 충청남도)

〈분포현황〉

ㅇ 충남 안면읍·고남면 일원에 4,802ha 분포(공유림 3,550ha)
-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안면소나무림은 약 2,770ha
  * 수령 80～120년(직경 30㎝ 이상)의 성숙림은 381ha(141천본) 분포

〈사업개요〉

ㅇ 형질이 뛰어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안면소나무림의 보전·관리 및 후계림 육성으로 문화재용 고급대경재 생산 및 관광 자원화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로 우량임분 육성
- 천연하종, 파종조림, 식재조림 및 비료주기 사후관리로 후계림 조성

〈추진요령〉

ㅇ 밀도조절 등 숲가꾸기 및 후계림 조성을 통해 문화재용 고급대경재를 생산하는 우량림으로 육성
-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동령림은 밀도조절을 실시하고, 성림지는 솎아베기 후 안면소나무 복층림으로 조성
- 천연하종, 파종 및 인공식재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안면소나무림 확대

ㅇ 강산성 토양은 질소질 비료와 석회를 시비하고, 솎아베기로 토양내 공기유통 및 수분흡수를 촉진하여 안면소나무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교정

ㅇ 안면소나무림에 생육하는 리기다소나무는 벌채하여 안면소나무 후계림으로 조성하고, 부실초지 등 유휴지는 복구조림 실시

다) 섬지역산림가꾸기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82	-	182
사업비	1,831	-	1,831

※ 국고 보조율 : 50%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강한 해풍과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 지역 산림의 녹화 및 식생복원으로 산림경관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ㅇ 자생수종의 식재 및 보육,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섬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림 및 숲가꾸기 적용이 필요

〈추진방향〉

ㅇ 자생수종 중심의 조림 · 숲가꾸기 추진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ㅇ 섬지역 고유의 산림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ㅇ 주거지역, 관광지 및 뱃길 가시권 지역의 산림을 우선 추진

〈사업개요〉

ㅇ 자생수종 중심으로 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 방법을 적용하고, 신속한 녹화를 위한 특수공정 적용

- 난대지역은 동백나무, 후박나무, 돈나무 등 난대 자생수종으로서 교목류, 관목류를 식재하여 섬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계로 복원
- 큰나무조림을 확대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객토, 유기질비료, 수목 운반시 수분접착 마대 활용 등 신속한 산림녹화를 위한 특수공정 개발·적용
- 식재수목의 규격 및 식재본수는 현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단비표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사업실행은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ㅇ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건강한 산림가꾸기 추진

- 치수보육, 움싹조절 등 숲가꾸기를 병행 실시하고, 자생수종으로서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육작업
- 산림경관을 해치는 덩굴류와 생태계교란종은 제거

※ 사업 제외대상

· 일반 산림지역에서 실행하는 조림 및 숲가꾸기 적용이 가능한 지역
·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어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 **국립공원**으로서 조림 및 숲가꾸기가 불가능한 지역
· 수목식재 등 산림조성 대상지가 없고 관목류 · 초본류 식재만 가능한 지역

라) 지역특화림 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903	-	903
사업비	9,088	-	9,088

※ 국고 보조율 : 50%

ㅇ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 모델 제시 및 산업자원으로 육성

- 동계올림픽 경관림 등 각 산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림지로 육성

<사업대상지>

(단위 : 백만원)

지역별	사업내용	사업량(ha)	사업기간	사업비	국고(50%)
강원(평창)	동계올림픽 경관림	120	'14～'16	2,415	1,207
충북(충주)	충주댐 벚꽃동산 조성	20	'16～'18	402	201
충남(청양)	칠갑산 특화림	30	'14～'18	604	302
충남(예산)	덕숭산 특화림	50	'15～'17	1,006	503
전북(정읍)	내장산 단풍 특화림	20	'15～'17	402	202
전북(남원)	지리산둘레길 특화림	50	'16～'18	1,006	503
전북(순창)	용궐산 미르숲 조성	20	'15～'16	402	201
전북(고창)	방장산 특화림	20	'16～'18	402	201
전북(부안)	변산 경관 특화림	30	'15～'17	604	302
전남(담양)	대나무 특화림	30	'13～'17	604	302
전남(장흥)	정남진권 푸른숲조성	80	'15～'18	1,610	805
전남(나주)	나주 남평십리송복원	50	'16～'17	1,006	503
전남(보성)	참가시 난대숲 조성	20	'16～'18	402	201
전남(해남 등)	황칠 특화림	110	'16～'20	2,216	1,108
전남(영암 등)	견과류 웰빙 숲 조성	110	'16～'20	2,216	1,108
경북(봉화)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30	'14～'19	604	302
경북(구미)	무을돌배 특화림	70	'14～'18	1,409	704
대전	5대 명산 가꾸기	43	'14～'18	866	433
계	**18개소**	**903**		**18,176**	**9,088**

4) 설계·감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비	2,846	500	2,346

※ 국고 보조율 : 60%

ㅇ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공무원이 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시행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경제림육성단지관리계획 등 기관별로 수립한 조림계획은 기본설계로 활용 가능

ㅇ 실시설계는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연도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거나 전년도에 실시

ㅇ 이윤율, 간접노무비 등 원가계산 요율 기준은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적용

- 간접노무비는 조경업종으로 적용하고, 일반관리비는 전문공사로 간주

ㅇ 조림사업 실행자(시공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조림 감리범위에서 활착률 조사하는 대신 조림 감리 표준지 조사로 대체(활착률 조사는 풀베기 감리자가 실행)

- 식재한 묘목의 고사율은 표준지 조사에 의하며, 위치를 도면에 표시

- 조림 감리 표준지 배치 및 조사 요령

· 표준지 조사 비율은 조림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 표준지는 소반 또는 필지별로 1개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표준지 크기는 200㎡(반지름 8.0m 원형)를 원칙으로 하되, 소반 또는 필지단위 사업면적이 2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반지름 5.67m 원형) 크기로 할 수 있다.

ㅇ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의 적용비율을 종전 전문공사에서 조경업종으로 적용

ㅇ 산림경영정보 DB 구축과 조림통계의 전산화를 위해 「조림지관리도」 및 「조림지관리대장」을 전자파일로 관리

-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시 작업지시도, 필지별 사업내역서를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지자체·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참조

5) 비료주기

ㅇ 산불피해지 등 지력회복이 필요한 산림과 척박지 등 재해우려지에 우선 실시하고, 바이오순환림, 경제수조림지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실행

- 경제림조성, 산림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에 포함된 비료주기 공정을 활용하여 조림사업과 병행하거나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실행

< '16년 비료주기 관련 총사업량 >

(단위:ha, 천kg)

구 분	계		경제림조성 (30kg/ha)		산림재해 방지조림 (90kg/ha)		금강·안면 소나무육성 (360kg/ha)		섬지역 산림가꾸기 (700kg/ha)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계	18,732	989	15,610	468	2,460	221	480	173	182	127
민유림	15,892	782	13,460	404	2,070	186	180	65	182	127
국유림	2,840	207	2,150	64	390	35	300	108	-	-

주) 해당 사업에 기본공정으로 포함된 비료주기임

ㅇ 조림목의 뿌리가 활착된 5~6월경(식재 1개월 이후)에 실시하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름, 가을철에도 시비

- 초기생장 동안 많은 양분이 요구되는 낙엽송이나 활엽수류는 조림 후 3년간 집중적으로 시비
- 비료주기는 실행시기에 따라 식재작업과 동시 발주하거나 분리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전년도 조림지 등)
- 이듬해 시비할 경우에는 봄철 나무심기가 집중되기 전에 우선 실행하여 조림사업 노동력 분산

* 시비 작업요령은 「산림과 임업기술(II)」 산림조성편(229쪽),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조림설계지침 참조

6) 조림사업의 기계화 추진

ㅇ 농·산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임업여건 변화에 따라 기계화 도입으로 사업성과 제고

- 식재구덩이 파기 등 조림사업의 기계화 작업을 확대로 작업의 효율성 제고

ㅇ 조림용 동력식혈기를 도입하여 작업의 편리성과 조림목 활착률 제고

- 동력식혈기 사용 시 곡괭이 등에 의한 인력작업에 비해 식재구덩이를 충분히 팔 수 있어 뿌리 활착에 도움
- 용기묘 식재시에는 가급적 'OK 식재기'를 활용하고, 식재기 사용이 어려운 석력지 등은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한 식혈방법 적용

7) 밀원수 조림

ㅇ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기피 및 생리적 쇠퇴현상 등으로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

- ’60~’70년대 국토녹화기에 아까시나무를 연료림으로 조성하였으나, 이후 경제발전으로 연료재를 활용하지 않아 대부분 소규모로 분포
-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의 거부감으로 조림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채밀수종이 아까시나무에 편중

ㅇ 한-베트남 FTA 계약체결에 따른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밀원수림 조성

- 국유림을 중심으로 규모화된 밀원수림 조성(150ha)
- 신품종의 현장 보급 확대로 벌꿀 생산성 증대
  * 아까시(유니, 지니), 헛개나무(풍성 1호, 2호, 3호), 음나무(청송) 등 검토
- 채밀을 감안, 아까시나무 위주로 조림하되 기타 밀원수종 병행 조림
  * 저지대(300m 미만) 아까시나무, 고지대는 헛개나무 등 기타 밀원수종

<밀원수림 조성>

구분	계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
면적(ha)	150	30	30	30	30	30

ㅇ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조림 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꿀의 채밀량이 많은 백합나무를 지속적으로 조림하고, 경관조림 및 가로수종에 적합한 이팝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종 조림
- 유휴토지에 특용수종 조림시 헛개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음나무 등 조림 지원

<주요 밀원 수종>

개화기	교목류	소교목류	관 목
3월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회양목, 매실나무	진달래
4월	왕벚나무, 산벚나무, 마가목		산딸기, 복분자딸기
5월	아까시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오동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때죽나무	족제비싸리, 찔레나무, 말발도리, 쥐똥나무
6월	밤나무, 헛개나무, 감나무, 참죽나무, 피나무, 황벽나무, 산딸나무		싸리나무류
7월	황칠나무	모감주나무, 좀목형	싸리나무류
8월	음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릅나무	
9월		붉나무, 산초나무	
10월		차나무	

ㅇ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종 산림의 조림 및 관리 강화

- 국유림은 바이오순환림과 연계하여 밀원수 조림
- 공유림은 지자체에서 시범단지 조성(도별 1~2개소)
- 사유림은 밀원수종 조림 희망지역에 조림사업비 우선 지원

<지자체별 밀원수단지 조성계획>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합계	228ha	6	6	27	106	75	8
지자체	13개 시·군	남양주시(3) 가평군(3)	강릉시(3) 양구군(3)	영동군(27)	공주시(100) 논산시(3) 보령시(3)	곡성군(50) 구례군(23) 강진군(2)	안동시(3) 영양군(5)
수종		헛개나무 피나무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옻나무 등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6955(2011.11.21)호

ㅇ 숲가꾸기 작업시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밀원식물 존치

* 3ha 이상 밀원산림 분포 : 3,741개소, 29,278ha('10년)

8) 미래 대비 수종의 시범조림 추진

ㅇ 고유수종인 활엽수의 용재 가치 제고를 위해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음나무의 혼효 시범조림 및 모니터링 추진

- 북부청 2ha(물푸레나무, 음나무), 동부청 2ha(물푸레나무, 음나무), 남부청 2ha(느티나무, 졸참나무), 중부청 2ha(졸참나무, 물푸레나무), 서부청 2ha(느티나무, 졸참나무)

* 식재방법 : 5,000본/ha 기준으로 3열 열상 혼효 식재

- 국유림은 묘목 수급계획에 따라 국유양묘장에서 수급하되, 자체 수급이 곤란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후 추진

<묘목 수급계획>

구 분	물푸레나무	음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북부청	5,000본	5,000본		
동부청	5,000본	5,000본		
남부청			5,000본	5,000본
중부청	5,000본		5,000본	
서부청			5,000본	5,000본

- 지방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범조림 대상지를 제공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조림 대상지 현장 확인 후 조림 설계 실시

- 지방산림청은 조림 설계도서에 따라 조림을 실시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시업내용을 사진 및 문서로 상세히 기록·관리
-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범조림지에 대하여 적응시험 및 모니터링 연구 등 시범조림지 관리 지도 및 연구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15년 식재밀도 방법에 따라 식재한 시범조림지 모니터링 지속 추진

ㅇ 조림적지 및 목재생산 등을 위한 루브라참나무 및 헝가리아까시나무의 시범조림 및 모니터링 추진

① 루브라참나무

- '16년 시범조림 10.5ha : 북부 1.5, 남부 3.0, 중부 3.0, 서부 3.0
- 국유림은 묘목 수급계획에 따라 상수리나무는 국유양묘장에서 자체수급하고, 루브라참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급

<묘목 수급계획>

수 종(산지)	묘령	계	북부	중부	서부	남부
루브라참나무 (국내산지)	1-0	3.5 (10,500본)	0.5 (1,500본)	1.0 (3,000본)	1.0 (3,000본)	1.0 (3,000본)
루브라참나무 (펜실베니아산지)	1-0	3.5 (10,500본)	0.5 (1,500본)	1.0 (3,000본)	1.0 (3,000본)	1.0 (3,000본)
상수리나무 (국내산지)	1-0	3.5 (10,500본)	0.5 (1,500본)	1.0 (3,000본)	1.0 (3,000본)	1.0 (3,000본)

* 묘목 규격은 종묘사업 실시요령의 루브라참나무 표준 규격에 따름.

② 헝가리아까시나무

- '16년 시범조림 7.5ha : 북부 1.5, 동부 1.5, 남부 1.5, 중부 1.5, 서부 1.5

  * 식재방법 : 4,000본(2.5m×1m)/ha 기준으로 조림

- 국내 아까시나무와 헝가리아까시나무의 생장 비교를 위하여 밀원수림 조성사업 대상지에 시범 조림
- 국유림은 묘목 수급계획에 따라 아까시나무는 지방청별로 자체수급하고, 헝가리아까시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급

<묘목 수급계획>

구 분		계	북부	동부	남부	중부	서부
계	ha (본)	7.5 (30,000)	1.5 (6,000)	1.5 (6,000)	1.5 (6,000)	1.5 (6,000)	1.5 (6,000)
헝가리	니레지	2.5 (10,000)	0.5 (2,000)	0.5 (2,000)	0.5 (2,000)	0.5 (2,000)	0.5 (2,000)
	아칵	2.5 (10,000)	0.5 (2,000)	0.5 (2,000)	0.5 (2,000)	0.5 (2,000)	0.5 (2,000)
국내 아까시나무		2.5 (10,000)	0.5 (2,000)	0.5 (2,000)	0.5 (2,000)	0.5 (2,000)	0.5 (2,000)

- 지방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범조림 대상지를 제공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조림 대상지 현장 확인 후 조림 설계 실시
- 지방산림청은 조림 설계도서에 따라 조림을 실시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시업내용을 사진 및 문서로 상세히 기록·관리
-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범조림지에 대하여 적응시험 및 모니터링 연구 등 시범조림지 관리 지도 및 연구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14년 시범조림한 루브라참나무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

ㅇ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낙엽송 묘목 수급 확대를 위해 1-0묘 시범 식재
- '16년 낙엽송 1-0묘 5ha : 북부 1, 동부 1, 남부 1, 중부 1, 서부 1

9) 제71회 식목일 기념행사 추진

ㅇ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추진
- 세계적인 이슈인 지구온난화, 황사 등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나무심기로 상징화

ㅇ 기관별 식목일 기념행사는 국가기념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4월5일 식목일 당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산불예방 등 기관실정에 따라 조정
- 어린이, 지역주민, 기업 등 많은 국민들이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무심기 체험행사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전개

〈국민 참여 식목일 행사 대상지〉

① 2016년 조림지
-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재해복구지, 지역특화숲 등 조림사업 예정지

② 생활권 주변지역
- 공원, 도시녹지대, 기관청사 주변, 마을 또는 아파트단지내 공한지, 주요도로 및 철도 조망권내 산림

③ 지역축제, 국제행사 개최지
- 지역별 대표적 축제장소 주변, 국제행사 장소 등 기념조림 및 기념식수

10) 조림용 묘목의 조사 및 검사

ㅇ 조림용 묘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규격 측정 등 묘목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급

- 조사·검사 결과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고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
- 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이끼류 등 묘목의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물수세미는 곤포당 4㎏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물에 담근 후 사용

- 묘목의 포장 외부에 묘목의 규격, 생산지, 생산자 등의 품질표시를 명확히 하여 출하

*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조치

ㅇ 묘목의 품질표시 위반, 출하금지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종묘생산업자에 대하여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엄정히 집행

- 국유양묘장, 민간양묘장 및 종묘생산업자의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산림청, 시·도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묘목의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양묘사업 공정 준수 여부 등 묘목 생산체계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추진

11)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

ㅇ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위해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의 금액확정 등 정산 및 잔액 반환 철저

- 정산 확정 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별도 고지에 따라 납부기한 내 조속히 납부
- 잔액 보조금의 반납 지연 시에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당년도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는 등 불이익 강화가 불가피

ㅇ 벌채 후 국고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6년 조림비용 고시 금액의 10%를 반드시 사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산림소유자의 부담금이 있는 경제림(유휴토지조림 포함) 조성 보조사업은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보조율을 반드시 준수하여 정산

-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을 산주 또는 조림의무자(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포함)로부터 징수하여 사업 실행

- 자부담금 10%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조사업으로 실행
  * 경제림 조성 보조율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ㅇ 산림소유자가 직접 수행하는 간접 보조사업은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영수증 등을 확인 및 정산

12) 조림 사업장 현장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ㅇ 용기묘 조림시 묘목의 분을 단근하여 식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업체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용기묘 조림시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시행자가 용기묘목의 분을 단근하여 식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재조림 하도록 조치

ㅇ 조림은 가급적 봄철에 식재하고 가을철에 조림할 경우 11월 중순까지 완료하여 동절기 동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온대남부(전남·경남) : 10월 하순~11월 중순
- 온대중부(전북·경북·충청) : 10월 중순~11월 상순
- 고산 및 온대북부(경기·강원) : 9월 하순~10월 중순

ㅇ 조림사업 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현장 대리인 선임계, 작업원 운영계획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의 현장 투입 여부를 수시 점검
- 감리 용역의 과업으로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사항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서 보관
  * 사업시행자의 작업원 운영계획서상의 작업원 명단(자격 등)과 현장 근로 작업원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

ㅇ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 사업방지 및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 점검
- 설계·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수시 점검
- 사업계약시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체의 기능인영림단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

ㅇ 조림사업 실행지의 필지별, 계약 건별 사업실행 이력 관리 철저

- 사업완료 즉시 필지별 사업내역서, 조림지 관리대장 작성 등 DB 관리
- 조림목에 대한 종자산지·종자공급원·생산자·묘목검사자에 대한 이력을 조림지관리대장에 명기하여 관리
- "조림사업실적 통계"에 의한 세부 인자별 조림실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적관리(재원별, 소유별, 대상지별, 실행주체별 등)
- 활착률조사 표준지는 GPS 좌표를 기록하고 가능한 도면화하는 등 사후 현장 검증 등에 대응자료 구축
- 사유림은 사유림정보시스템과 새올시스템을 연계하여 벌채 단계부터 조림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ㅇ 조림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진 등 자료관리 철저

- 조림 사업지의 세부사업 공종별로 전·중·후 대비 사진기록 관리 및 실적 보고시 현장 사진중심의 보고체계 강화
- 민원 발생 우려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로 기록 관리

ㅇ 각종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조림지 활착률 조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조사에 이용된 표준지에 대한 좌표기록 유지 등 사후 검증에 대비

ㅇ「산림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대상지 조사, 실시설계, 현지점검, 준공검사 등의 사업이력 처리 활성화(지방산림청)

라. 추진일정

ㅇ '16년 조림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 : 2015. 12월

ㅇ 지역별 조림계획수립 및 조림예정지정리 : 2015. 12월~2016. 2월

ㅇ 봄철 나무심기 및 제71회 식목일 행사추진 : 2016. 3월~4월

ㅇ 조림지 활착상황조사 : : 2016. 6월~9월

ㅇ 가을철 나무심기 추진 : 2016. 9월~11월

ㅇ '17년 조림설계 및 조림예정지정리 : 2016. 11월~12월

〈참고 1〉

조림 권장 수종

□ 경제림 조성용 집중 조림수종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를 고려하여 적합한 조림수종 선택

□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

□ 조림 가능수종(78개)

구분		조 림 수 종
용재수종 (27)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황철나무, 들메나무
경관수종 (20)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죽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유실・특용수종 (16)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음나무)
기타 수종 (15)	내공해수종	산벚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죽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해송, 버즘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죽나무), (때죽나무)
	내음수종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내화수종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 조림 권장수종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 가능

〈참고 2〉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 바이오순환림의 개념

ㅇ 짧은 기간(20~35년)에 목재를 수확하여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와 산업용재를 공급하는 산림

※ 바이오순환림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임도, 기계화 등 인프라 확충 필수

<바이오순환림의 탄소순환>

<바이오매스 수확>

□ 바이오순환림에 적합한 수종 및 적지

ㅇ 백합나무, 포플러류,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속성수

※ 백합나무, 포플러류 2,000본/ha, 기타 수종은 3,000본/ha 이상 식재

ㅇ 바이오순환림 조성에 적합한 지역

- 토심이 깊고 비옥한 지역으로 토지생산성이 높은 지역
- 대면적으로 집단화·단지화 조성이 가능한 지역
- 도로, 임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 경사가 완만하여 조림·벌채작업에 기계화가 용이한 지역

□ 연차별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

계	'13년까지	'14년	'15년	'16년	'17~'20
100천ha	29천	3천	3천	3천	62천

□ 백합나무를 이용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례

▶ 조성대상지(경기 양평)

▶ 조림 3년차(경기 화성)

▶ 성림지(전남 강진)

9. 숲가꾸기

목 표

◇ 산림을 경제 ·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

ㅇ 현장과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로 산림기능 최적 발휘

ㅇ 현장역량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품질 향상

- 숲가꾸기 : 215천ha (국유림 42천ha, 민유림 173천ha)

* 예산 : 195,941백만원 (국유림 63,597백만원, 민유림 132,344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확대되고,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는 기술적인 산림관리가 요구

ㅇ 큰나무 위주의 숲가꾸기 정책추진으로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

ㅇ 산림경영 및 사업 품질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로 숲가꾸기 분야도 투자효율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과 질적 수준의 제고 필요

ㅇ 숲가꾸기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가 필요

나. 기본방향

ㅇ 현장 중심의 숲가꾸기 사업 내실화 및 기술적인 숲가꾸기 추진

-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로 조림 성공률 제고
- 경제림 육성단지에 사업을 우선배정하고, 산림의 기능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ㅇ 숲가꾸기 사업 각 단계별 현장 역량을 강화

- 설계·시공·감리까지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마련

ㅇ 외부 모니터링 확대 및 현장점검 시스템 강화

-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모니터링 확대
- 시기별·사업종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점검 강화 및 문제점 발굴·개선

ㅇ 사업 안전관리를 최우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산물처리 강화

ㅇ 동계올림픽 대비 국토 경관개선, 도로변 덩굴제거 등 산림가치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정책 분야

1) 현장중심의 숲가꾸기 사업 내실화 도모

○ 현장 수요 및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

◈ 총 사업량 : ('15) 222천ha → ('16) 215천ha (△7천ha, △3%)
* 큰나무가꾸기 : ('15) 127천ha → ('16) 105천ha (△22천ha, △17%)
* 조림지・어린나무가꾸기 : ('15) 95천ha → ('16) 110천ha (15천ha, 16%)

○ 경제림 육성단지에 숲가꾸기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공익림 숲가꾸기는 기능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2) 숲가꾸기 사업 품질관리 강화

○ 사업방향 제시, 추진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숲가꾸기 기본설계** 추진

- (대상) 숲가꾸기 작업종 전체, (시기) 사업실행 전년도
- (주요내용) 적정 대상지 조사 및 선정, 경영·관리목표 등 사업기본방향 제시, 적정 사업종과 사업량 등
- (활용) 지역단위 숲가꾸기 계획수립 및 우선순위 선정, 실시설계 기초자료, 산주동의 자료제공(산림의 상태, 필요성 등)

○ 설계의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위한 **숲가꾸기 기술자문단** 운영

- (구성) 학계·산업계·NGO 등 전문가, (운영) 산림청, 도·지방청 단위
-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 사업지 대상으로 대상지 적정성, 경영목표, 방향, 작업종 적정성 검토 및 자문

  * 숲가꾸기 기술위원회, 설계자문단 등을 숲가꾸기 기술자문단으로 통합운영

○ 숲가꾸기 품질 향상을 위한 유형별 **선목시범사업** 추진

- (대상) 8개도 및 5개 지방청별로 유형별 3개소 추진
- (주요내용) 발주 유형별 사업품질, 작업·행정적 효율성 등 효과성을 분석하고 실무매뉴얼 개발
- (유형) ⓘ 선목을 실시설계에 포함 추진, ⓘⓘ 선목을 숲가꾸기와 분리 추진, ⓘⓘⓘ 숲가꾸기에 선목품을 반영 추진

○ 현장역량강화를 위해 숲가꾸기 전 과정의 각 고려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보급

  * 사업단계 : 대상지선정 → 설계 → 시공 → 감리 → 준공

3)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화 되는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가) 경제림가꾸기에 집중하여 사업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

ㅇ 경제림 육성단지 등에 숲가꾸기 사업을 집중하여 추진

-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목재생산 기능이 높은 지역 및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생산성 증진
- 숲의 상태와 목표 수확별 시업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추진

ㅇ 활엽수 사업지는 대상지를 엄격히 선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

- 활엽수 천연림보육사업은 축소하고 활엽수 천연림개량사업은 가급적 지양
- 활엽수 천연림보육 대상지는 임지 생산력 및 경영여건 등을 엄격히 적용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기준(150본 이상), 지위·소밀도 중 이상, 집약적 경영이 가능한 임지

나) 공익림은 숲의 기능별 수요에 필요한 특성화된 숲가꾸기 추진

ㅇ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공원, 도심 생활권, 야생동물 관리, 대나무 숲, 사찰림, 학술림 등 숲의 기능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숲가꾸기 실시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13.3)」을 참고하여 실행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및 휘귀 야생식물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지 선정에 유의

ㅇ 기능별 산림관리 현장역량강화를 위해 **"공익림 산림관리 현장 실무매뉴얼"** 보급

- 공익림 가꾸기 사업단계별 고려할 사항 등 추진요령 및 사례 위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보급

다) 전국 단위의 「산림기능구분도」 활용

ㅇ 지역별 사업 계획 및 산주별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

- 산림기능구분은 법적 제한목적이 아닌, 산림을 경영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림경영·관리 의사결정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ㅇ 산림공간정보서비스(http//fgis.forest.go.kr)를 통한 산림기능구분 정보제공

- 필지별 검색 : 기능구분(주, 부기능), 기능평가(기능별 잠재력 고, 중, 저)

  * 숲가꾸기 사업설계시 산림의 기능구분 및 관리목표 설정에 활용

4)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천연림 등 시업 체계 개선

가) 풀베기 사업 설계·감리 제도 정착 및 사업적기 시행

ㅇ 풀베기 사업에 설계·감리제도를 정착하여 사후관리 사업 품질 제고

- 사업대상지 조사, 작업공법, 적정 품셈 적용 및 사업비 산출 등 현장에 맞는 설계를 추진하고, 감리를 통해 사업지도 및 조림목 피해조사 실행

ㅇ 풀베기 시행과정에서의 조림지 피해 배상 적용 철저

- 조림목의 초두부 훼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일정기준 이상 훼손될 경우 시공자에 손해배상 조치하고 세부기준 및 적용 철저
- 풀베기 사업 계약시 손해배상 기준을 공지하고 계약에 포함하여 시행

◈ **조림목 피해 배상기준**
- 피해율 5% 미만 : 감리보고서 상에 피해의 정도외 원인 기록
- 피해율 10~20% : 정해진 비율로 사업비에서 공제
- 피해율 20% 초과 : 사업비 공제 및 산림사업 참여 제한
  * 피해율 조사 : 소반단위, 필지단위로 실시(사업면적의 2%이상 표준지 조사)

ㅇ 현장에 맞도록 풀베기 사업 설계·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제도 보완

- 모두베기 공법 등 품셈개정 및 용어, 산출방법 등 실행요령 수정
  * 조림목찾기품 등 풀베기 설계·감리 및 실행요령 개선사항 '16. 2월중 별도 시행 예정

ㅇ 적기에 사업을 실행하여 조림목 피해방지 및 사업의 효과 극대화 도모

- 풀베기는 조림 당년도를 포함하여 3~5년간 추진하되,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 연 2회 실시**하고, 적기에 실행하여 사업효과 제고
  * 풀베기 사업시기를 경과하여 조림목 피해 및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유의
  * 권장시기 : 온대남부(5월중순~9월초순), 온대중부(5월하순~8월하순), 고산 및 온대북부(6월초순~8월중순)

나) 어린나무가꾸기 공정 개선

ㅇ 풀베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입목의 생육상태를 확인하여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ㅇ 현장조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유형별 관리요령 및 공정을 세분화하고 관련지침 및 품셈에 반영

  * 산림생산기술연구소 현장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지 협조(지방청)
  * '15년 침엽수(낙엽송, 잣나무) 2수종에 대한 1차 공정조사 완료
  * 기존 ha당 소요품 기준에서 100본당 소요품으로 개선

ㅇ 조림목이 없거나 생육이 불량하고 천연발생목의 형질이 불량하여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사업지에서 제외

다) 천연림 숲가꾸기 시업 체계 개선

○ 천연림 보육.개량사업 관련지침 개선

- 지방청 및 시·도의 숲가꾸기 사업 자료 분석 및 현장 확인 등 실태분석을 통해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생산기술연구소 현장조사 및 자료 요청시 협조(시・도 및 지방청)

○ 움싹 갱신지 보육사업 사례조사를 통해 시업체계(안) 마련

- 지방청 및 시·도 대상지별 실태분석을 통한 품셈 적용 등 시업기준 제시

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매뉴얼」 수정 및 보완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숲 관리 기술 표준매뉴얼을 개선하고 현장 보급

  * 산림환경, 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고려하여 수정・개선

5) 설계·감리제도 기능 강화

○ 설계서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용역 품셈에 설계서 검토 품을 반영하고, 숲가꾸기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설계 검토 강화

  * 숲가꾸기 기술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별도시행

○ 부실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결과를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산림기술자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산자법 제30조제5항), 계약관련법에 의한 부정당 업체 제재

6) 시기별 현장 지도점검 및 외부 전문기관 모니터링 확대

가) 현장 위주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

○ 시기별.사업종별로 일제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실행 완료 사업지 위주에서 사업예정지까지 점검대상 확대

  * 시기별 중점 점검 대상 : 예정지(3~5월), 조림지관리(6~9월), 큰나무(10~11월)

- 현장보완 조치 위주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등으로 강화

  * (주요 점검사항) 설계・시공・감리 분야별 준수, 사업지 누락, 작업원 기준 준수

○ 숲가꾸기 품질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15년 개발)를 일제점검시 시범적용하고 객관화하여 보급하여 기관별 자체 점검체계 구축

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확대

○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분야 모니터링을 확대 추진하여 현장의 기술 수준 향상 및 개선과제 도출

- 중앙단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

  * ('15) 34개 기관, 100개 사업장 → ('16) 42개 기관, 130개 사업장

- 모니터링 결과 미흡 사업지는 산림청에서 직접 현장 확인하고 엄정 조치

다) 시스템에 의한 부실방지 및 점검 강화

○「숲가꾸기 사업 이력관리 실시요령」('14.6월)에 따라 관리 철저

- 동일 사업지내 중복실행 차단을 위해 대상지 선정단계에서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한 5년이내 이력조회를 사전 실시
- 시스템내 '숲가꾸기 대상필지 사업이력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다수 필지에 대한 이력을 일괄조회(조회 대상필지 엑셀로 업로드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솎아베기 사업 반복 실행을 엄격히 제한
- 산림사업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각종 평가와 연계

  * (국유림)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사유림)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

- 시·군 단위에서 조림 이후의 이력관리 업무를 숲가꾸기 담당자로 일원화하여 지정하고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연계성 강화 및 혼선 방지
- 숲가꾸기 실행 결과(전후 사진) 등 사업 이력을 산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우편 메일 등)하여 산주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산림사업의 신뢰 확보

○ 사업계약시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시스템' 입력을 의무화로 작업원 이중 투입 및 무자격자 차단

- 감독 공무원이 사업착수 시 작업원 명부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타지역에 등록된 작업원 명부와 비교하여 허위중복 투입여부 확인

  * '산림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 내「숲가꾸기 작업원 관리시스템」메뉴 입력

7) 대상지 선정 및 계약단계에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확보

가) 사업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 우선순위와 명확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

-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적합성 평가 기준을 기관별 시범 적용

  * '15년 개발 "숲가꾸기 사업대상지 적합성 평가 기준" 별도시행(2월)

○ 사업대상지를 전년도에 미리 선정될 수 있도록 산주동의 절차를 조기에 시행하고 **기본설계**를 확대하여 사업적합성 사전 파악

나) 산림사업 공고제도를 명확히 이행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차단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지자체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산주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동의절차를 반드시 이행

- 기본적으로 사업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업 실행

  * 사업 동의 요청시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방법 권장

- 공고의 대상은 주소 불명, 우편물 반송 등 명확한 '소재 불분명'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무응답' 은 공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의서가 반송된 경우 바로 공고하지 말고 여러 경로로 주소파악을 위해 노력한 후 공고하여야 함

ㅇ 숲가꾸기 설계, 시공 시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사항,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잘못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사업 실행 전 반드시 산주 ·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수막·안내판 게시
- 사업 중·후의 사업진행사항에 대하여 산주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의무적으로 통보
- 특히 주민 이용이 많은 지역 사업 추진시 목적, 방향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사업자 및 작업자에게도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

다)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 방지

ㅇ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 내로 숲가꾸기 사업을 분할하여 발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사례 금지

라) 벌채 신고·허가 등 법적요건에 대한 검토 병행

ㅇ 숲가꾸기 사업 및 숲관리 특색사업 실행시 벌채 허가·신고 사항 등 법령상 규정사항에 대하여 사업 결재시 병행하여 조치

- 민원 발생 등에 따른 사전 인·허가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논란 방지

8) 안전관리 강화 및 재해 예방 철저

가) 숲가꾸기 안전사고 예방

ㅇ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

ㅇ 작업 실행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ㅇ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구급약품 비치,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통신장비 등

ㅇ 특히, 하절기 벌쏘임에 대한 쇼크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풀베기 사업 시행 시에 안전교육을 강화 및 안전장구 비치를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가 확인

나) 숲가꾸기 산물 처리로 재해요인 사전 제거

ㅇ 산불·수해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의 산물을 반드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 부식이 촉진되도록 단목 처리

- 계곡부의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도로·임도·농경지,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사면거리 30m 내외 지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산불위험 1등급 지역내 숲가꾸기 산물은 전량 수집 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

9) 동계올림픽 대비 국토 경관개선 숲가꾸기 등 산림의 가치 제고

ㅇ 동계올림픽 대비 국토 경관개선 숲가꾸기 추진

-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고속도로, 국도, 철도변 산림 정비

* 주요지역 : 영동고속도로, 42번 국도, 고속철도(서울～강릉) 주변 산림

* 대상기관 : 인천, 경기, 강원, 북부・동부청

- 평창올림픽 존(1,061㎢)중 주요 접근로 및 경기장 주변 가시권 지역의 산림경관을 집중적으로 조성·정비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관림조성 3계년계획(산림자원과-3097호, '15.7.6)

* '16년계획 : 숲가꾸기 583ha, 경관조림 117ha

* 대상기관 : 원주, 횡성, 평창, 정선, 강릉, 양양, 북부・동부청

ㅇ 주요 도로변 및 조림지 덩굴류 제거사업 집중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제고

- 노선별, 거점별로 덩굴제거 사업을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 제고
- 덩굴류제거와 공익림가꾸기 등 세부사업과 통합 실행가능

ㅇ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추진으로 성과 제고

ㅇ 관리요청을 받은 타부처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적극적인 산림사업 추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국유림관리과 협조 요청

실무 분야

1) 숲가꾸기 설계 · 감리

가) 기본 사항

ㅇ 50ha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개소는 반드시 설계·감리 실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등에 따라 현지여건에 맞게 시행
- 부실 설계·감리 근절·방지를 위한 자체적으로 사전교육 등 강화
  *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강화, 감리원의 역할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ㅇ 소규모(50ha 미만) 산주 직접 사업지는 지자체에서 위탁 설계·감리업체 지정

- 위탁 설계·감리업체의 완료 보고서 수리 후 보조금 지급

· 숲가꾸기 사업의 조기발주 및 연중 사업실행을 위해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계를 통해 전년도에 50% 이상 사업면적 확보 및 설계 완료

ㅇ 현장과 부합하는 숲가꾸기 설계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 정확한 현지조사 및 산림 여건을 반영하여 소반을 세분화하고, 소반에 필요한 사업종을 적용하여 숲가꾸기 설계도 · 서 작성
- 특히, 전 구역을 천연림개량과 같은 단일 사업종으로 설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천연림 갱신 등 다양한 작업종 반영
- 숲가꾸기 기계화작업로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공정은 추가 반영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참조

ㅇ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부수적(附隨的)인 산림사업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산림사업 통합 설계 시행

-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일부 면적이 포함되는 송이산 가꾸기, 단기소득 임산물 식재, 피해목 제거 등 포괄적인 숲가꾸기 사업 범위에서 실행
- 단, 숲가꾸기를 수반하는 경우 유사한 작업은 숲가꾸기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물과 단기소득 묘목대 등은 집행 불가

나) 품셈 적용 기준

ㅇ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는 산주 실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미반영

ㅇ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림조합·산조중앙회 등은 부가가치세를 미반영

>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되,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시에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방지(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금 지급시 정산처리)

ㅇ 숲가꾸기 사업 부문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

ㅇ 숲가꾸기 품셈 적용시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함

ㅇ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한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처리하며, 관계법령에서 **매년 고시**하는 내용을 확인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1호, '15. 9. 22)**
>
> · 산재보험료 : 2천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도 가입(고용노동부 고시)
> ·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7~1.3%(사용자 부담금, 국토교통부 고시)
> * 1개월 미만의 일일 고용사업인 경우에도 보험료 반영(고용보험법 제2조 6호)
> · 국민연금보험(국토교통부 고시)
> * 단 1개월 이상 사업인 경우만 적용
> · 국민건강보험(국토교통부 고시)
> ·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사용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지출하고,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는 업체에 지출시 반드시 세금고지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ㅇ 숲가꾸기 설계도·서에 의거 실행되지 않은 공정과 실행할 필요성이 없는 공정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감액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산처리

다) 사업 시행자 자격확인 철저

ㅇ 설계용역 의뢰 단계에서부터 설계·감리용역의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사업 발주

ㅇ 선목과 솎아베기를 분리발주할 수 있으며, 선목은 반드시 선목 자격이 있는 자가 사업 실행

ㅇ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아닌 산주 실행사업은 미래목 선정, 작업자의 자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ㅇ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작업원 운영계획서(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7호 서식)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시 점검
- 감리 용역시 계약사항에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서 보관
- 현장 지도 점검 시 하도급 사례에 대한 작업자들의 신고 강화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숲가꾸기 작업원 기준 미달 시 사업을 중지시키고 시공업체에 시정명령 조치

  * 사업시행자의 작업원 운영계획서상의 작업원 명단(자격 등)과 현장 근로 작업원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

ㅇ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한 사업, 위법 및 지침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 점검
- 설계·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 수시 점검
- 사업계약시 담당자는 사업시행자의 자격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

·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http://fec.foa.go.kr/legal/)' 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현장대리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숲가꾸기 작업원관리 메뉴에서 계약시 작업원명부를 입력하여 작업원 이중등록 확인

ㅇ 현장 점검 실행 시 부실사례를 발견할 경우, 一罰百戒 차원에서 시공업체 및 감리자 등 산림기술자에 대해 의법 조치

라) GPS를 이용한 표준지 보존·관리

ㅇ 숲가꾸기 사업의 표준지는 반드시 GPS좌표를 기록하고 도면화

- 표준지는 지형도상에서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배치하도록 하며 임도변, 도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

> · 표준지 설치 목적은 사업비 산출근거, 작업원에게 작업방법의 현장 설명에 활용, 사업 전·후의 대조구 역할 등으로 사업면적에 포함됨.
> · 표준지 조사는 '수평 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

ㅇ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 대비, 사후 점검이 용이하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보존

- 도로변, 주요 시설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설계도서에 기록

2) 숲가꾸기 예산 집행

가) 예산 집행 및 관리

ㅇ 숲가꾸기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매월 집행률 및 실집행률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현지 집행 추진

- 시·도(시·군·구)의 예산 편성시 세부사업명을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로 통일하여 향후 예산집행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치

ㅇ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선금규정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으로 노임체불 등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 경감

- 계약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
- 선금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요령 >**
> · 근거 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 · 근거 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1호, '15. 9. 21)**
>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제33조부터 제39조)'
> ※ 계약예규에서 선금의 사용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노임인 숲가꾸기 사업에 선금 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ㅇ 숲가꾸기 사업은 소액 수의계약 규모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적용

- 감사원 및 안전행정부 감사시 숲가꾸기 사업은 계약관련 법령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 5천만원 이하로 적용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집중을 위한 숲가꾸기 예산 배정시기 조정

ㅇ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집중 및 기능인력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자체의 숲가꾸기 예산은 가급적 하반기로 배정

- 조림지 사후관리,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 필수예산을 제외하고, 솎아베기 사업 등의 예산은 하반기에 배정

3) 직무역량 강화 및 기술 지도 등

가)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및 산림기술자 직무 교육

ㅇ 숲가꾸기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력 향상

- 담당자 현장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중심 위탁교육 실시(1분기)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에 위탁하여 5일 집합교육으로 실행

ㅇ 도 주관으로 해당 시·군에 소재한 설계·감리 및 시공업체 소속 산림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상반기)

다) 일정규모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정례화

ㅇ 50㏊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지방청 주관으로 분기별 일제점검 추진
  * (주요 점검사항) 설계·시공·감리 분야별 준수, 사업지 누락, 작업원 기준 준수

ㅇ 부실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동일사례 재발 방지

ㅇ 지방청·지자체는 학계, 전문가 등으로 숲가꾸기 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

라)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활성화

ㅇ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림자원 현장 포럼 추진

- 산림자원 정책의 현장 적용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개선
  * (주관) 산림청, (참석) 담당자, 과학원, 사업주체, 산주, 전문가 등

ㅇ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현장 토론회 적극 추진

- 도·지방청 주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상의 산림 기능별 토론
  * 숲에 대한 경영목표, 작업방법, 작업강도 등 토론
  * 임업기계장비의 활용, 산물수집 확대 방안 등 숲가꾸기 기술 공유
  * 산림청에서는 자체 현장토론회시 지자체와·지방청 요구에 따라 지원
- 토론회 결과를 검토 반영하여 세부사업 추진

4) 숲가꾸기 사업 평가 및 홍보

가) 숲가꾸기 사업 평가

ㅇ 기관평가

- 민유림 : 수시 현장 점검 및 지자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 주관)에 의함
- 국유림 : 소속기관 평가 계획에 의함

ㅇ 숲가꾸기 품질 대상(大賞) 선정

- 설계~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우수 사업장 선정
- 숲가꾸기 우수 사업장 선정을 통해 사례 발굴 · 전파 및 품질향상 도모
- 우수기관 포상 및 사업 담당자의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제공

나) 숲가꾸기 사업 홍보 강화

ㅇ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 주요 사업지별 '숲가꾸기사업 발대식' 개최를 통해 숲가꾸기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지역 언론매체, 반상회보,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ㅇ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의 숲가꾸기 홍보 입간판 지속 정비

- 노후화된 홍보 입간판 도색 또는 철거, 입간판 주변 풀베기 등 수시 정비

ㅇ 숲가꾸기 사업 효과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산주의 자발적 신청 참여 유도

- TV 공익광고, 리플렛, 포스터 제작,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 동원

ㅇ 숲가꾸기 사업의 재해예방 효과 등 순기능에 대해 홍보 강화

ㅇ 숲가꾸기 추진 과정상의 사진 등 자료관리 철저

- 주요 사업지의 세부사업 추진 공종별로 전·중·후 대비 사진기록관리
- 민원 발생 우려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로 기록 관리

다) 숲가꾸기 기간 행사 추진

ㅇ 숲가꾸기 기간(11.1 ~ 11.30) 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확대 실시

- 숲가꾸기 1일 체험 시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의 참여 확대
-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병행하고 홍보 강화

ㅇ 산림청 및 산하기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숲가꾸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숲가꾸기 장소 제공 및 장비대여, 기술지도

라) 사랑의 땔감나누기

ㅇ 사랑의 땔감 나누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물의 일부를 지역내 취약계층(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공공시설(양로원, 마을회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
-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연중 실시하되,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집중지원
- 2016년 지원 목표량 : 10천 세대에 50,000㎥ 지원(1세대 당 평균 5㎥ 지원)

5) 녹색댐 조성사업

ㅇ 기본설계에 따라 가급적 댐 유역별 사업량 전체를 묶어서 일괄 실시설계 및 사업 실행
  * 산림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녹색댐 조성사업' 공동 추진 협약 체결('07.11.20)
  * 기본계획 수립(산림청) → 기본설계(한국수자원공사) → 연간 사업 계획 수립(산림청) → 실시설계, 숲가꾸기, 감리(국유림관리소, 시・군)

ㅇ 세부적인 사업요령은 관련 지침과 표준매뉴얼을 참조하여 실행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매뉴얼('13년)의 수원함양림 작업 기준

ㅇ 녹색댐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는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

ㅇ 실시설계서 검토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

ㅇ 녹색댐 추진 실적자료 관리 철저
- 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05~'11년, 26개댐)한 댐 유역의 지자체별(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실적자료 정리 및 이력 관리 철저
  * 기본계획에 의한 댐별, 연도별, 개소별 현지 숲가꾸기 추진실적('06~'15년) 관리

라. 추진일정

ㅇ 2016년도 숲가꾸기 발대식 : 2016. 1월

ㅇ 2016년도 숲가꾸기 사업 시책 설명회 : 2016. 1월

ㅇ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 2016. 2월~3월

ㅇ 숲가꾸기 기간행사 계획 보고 : 2016. 10월 15일

ㅇ 숲가꾸기 품질 대상(大賞) 선정 : 2016. 11월

ㅇ 지역별 숲가꾸기 현장 토론회 : 2016. 수시

ㅇ 사랑의 땔감나누기 추진 : 2016. 10 ~ 2017. 2월
  * 매월 5일 기준으로 숲가꾸기 추진실적(월보) 제출

10. 공공산림가꾸기

목 표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

ㅇ 고용인원 : 2,107명(국유림 135, 공·사유림 1,972)

* 예산 : 19,251백만원(국유림 3,254, 공·사유림 15,997)

가. 정책여건

ㅇ 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고용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

ㅇ 인력의존도가 높은 숲가꾸기를 통해 청년 실업자 및 장년층 퇴직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확대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물수집의 확대와 임업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

ㅇ 산림재해의 예방·복구, 도로변 경관림 조성,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수원함양림 육성 등 공공성이 높은 산림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나. 기본방향

ㅇ 청년 실업자 및 민간일자리 재진입이 어려운 장년층 퇴직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

ㅇ 청년실업자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을 우선 고용하고 집중적인 산림기술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직업인으로 양성

ㅇ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내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

ㅇ 전국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 및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산림 현장 민원의 조기 처리에 '숲가꾸기패트롤' 인력 확대 투입

ㅇ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조사 및 체계적인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DB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공통사항

1)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개요

ㅇ 3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ㅇ 운영 인원 : 2,107명

- 지방청 : 135명(숲가꾸기 패트롤 135명)
- 지자체 : 1,972명(수집단 1,772명, 자원조사단 200명, 숲가꾸기패트롤)

* 지자체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인원(도별 5명, 8개도 40명)은 지자체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인원 내에서 별도로 선발

ㅇ 운영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ㅇ 사업 추진 : 연중 실행(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되, 가능한 조기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2) 주요 사업 내용

ㅇ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정책숲가꾸기 실행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산물 활용 촉진

ㅇ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 조사 업무와 산림사업 DB구축 등의 관리 등

ㅇ **(숲가꾸기패트롤)** 산림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 민원 처리

3) 모집 공고 및 신청 자격

ㅇ 신청 및 선발 기관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시·군·구 '공동모집·선발 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모집(접수)·선발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사업실행부서 주관으로 별도 모집(접수)·선발
- (숲가꾸기패트롤) 국유림관리소 사업실행부서 주관으로 별도 모집(접수)·선발
  * 신청서 접수현황을 대장으로 작성 관리하며, 우편접수 허용

○ 참여자 모집공고
- 전년도말 또는 연초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지 등에 사업내용을 공고한 후 공개채용 실시
  * 모집공고시 반복 참여제한, 고액부동산 보유자 및 공적연금 수령자 참여제한 명시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및 고교·대학 재학생 등은 신청자격을 제한(세부사항은「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참조)

○ 결원 보충 및 추가모집
-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선발 시 작성된 대기자 명단을 활용하여 수시 고용하거나 또는 추가모집 가능

4) 사업 참여자 선정

○ 사업 참여자 선정주체
-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 지방자치단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장년층 우선 선발 : 만 55세 이상 가점 부여(참여목표 비율 75%)
- 대상사업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2년 연속 반복 참여, 고액부동산 보유자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참여 제한
- 세부 선정기준은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 참여자 정보 및 근로내역 실적을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 입력

5) 임금 및 교육 훈련

ㅇ 인부임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일반인부-48,500원/1일, 기술인부-53,500원/1일(일반인부임 + 기술수당)

- 숲가꾸기패트롤 : 60,000원/1일

ㅇ 교육 훈련

- 모집 공고문에 기술교육 참여가 의무사항임을 반드시 명시
- 참여 근로자 전원 1회 이상의 기술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독려 및 조치
- 교육훈련비는 목적 외 타용도 사용금지 및 집행잔액은 반납
- 참여 근로자의 교육 이수율이 낮은 기관은 차년도 계획인원 축소

6) 안전 관리

ㅇ 안전 관리

-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감독공무원은 수시로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기록 유지
-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개인별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작업현장에 구급약품을 반드시 비치
-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초 건강진단 실시

ㅇ 안전 장구 구입

- 사업 시행기관별로 작업자별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구입하여 지급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통신장비 및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업여건상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개인보호구 등

- 벌 등 독충 피해예방을 위해 방충복 등을 지급하여 안전사고 적극 대처

7) 대행 제도

ㅇ 행정력 절감을 위한 대행제도를 운영실정에 맞게 예산 범위내 활용

- 근로자 선발, 예산 집행을 제외한 현장 기술지도 업무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산림조합계통조직)하도록 하고 대행 수수료(인부임의 7%이내)를 지급

8) 사업 점검단 운영

ㅇ 지자체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 점검 정례화(상·하반기 각 1회 이상)

ㅇ 인건비 지급 적정성, 안전사고예방 노력도, 사업추진 실적 등 중점 점검

세부 사업별 기준

1)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ㅇ 선발 기관 및 대상

- 시·군·구 '공동모집·선발 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 모집(접수)·선발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업무보조요원으로 구분하여 선발

  * 지자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고용 배정인원 내에서 숲가꾸기패트롤 단원 선발

ㅇ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ㅇ 장년층 우선선발 : 만 55세 이상 가점 부여(참여목표 비율 75%)

ㅇ 선발 우선 순위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 숲가꾸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ㅇ 2년 연속 반복 참여, 고액부동산 보유자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참여 제한

- 세부 선정기준은「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ㅇ 주요 사업내용

-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관리 사업(덩굴류 제거 등)
-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사업
- 숲가꾸기 이후 산물 발생대상지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
- 산불, 풍수해, 병해충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 기타 사업추진 요령은「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적용

2) 숲가꾸기자원조사단

ㅇ 선발 기관

- 시·군 산림사업 부서에서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모집(접수)·선발

ㅇ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 산림관련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졸업자
  - ·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관련 업체 및 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또는 관련 용역수행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ㅇ 선발 우선 순위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 산림조사 및 산림정보 DB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청년 실업자
  -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ㅇ 2년 연속 반복 참여, 고액부동산 보유자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참여 제한

- 세부 선정기준은「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ㅇ 주요 사업내용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산림병해충 등 산림피해 조사
-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숲가꾸기작업원관리시스템 DB 입력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 기타 사업추진 요령은「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적용

3) 숲가꾸기패트롤

ㅇ 선발 기관

- (민유림) 지자체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인원(도별 5명, 8개도 40명)은 지자체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인원 내에서 별도 선발하여 운영
- (국유림) 지방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모집(접수)·선발

ㅇ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자
  -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ㅇ 선발 우선 순위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 관련 업무 자격증 취득자 등
  - * 예) 임업기계훈련원 아보리스트(수목관리사) 민간자격증 취득자
  - ·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 기타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ㅇ 2년 연속 반복 참여 제한

- 세부 선정기준은「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ㅇ 주요 사업내용

- 주거지,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주요 도로변 등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 현장 활동 기록유지 및 기타 사업기관이 지시한 제반 산림업무
- 기타 사업추진 요령은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적용

라. 추진일정

ㅇ 근로자 신청·접수, 선발 : 2015. 12월 ~ 2016. 2월까지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시・군・구 '공동모집・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함

ㅇ 근로자 기술교육 : 2016. 3 ~ 9월

ㅇ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 : 2016. 5월, 10월

ㅇ 2016년 숲가꾸기패트롤 민원만족도 보고(붙임6) : 익월 5일까지(매월)

ㅇ 2016년 산림일자리 고용실적 보고(붙임7) : 익월 5일까지(매월)

공공산림가꾸기 세부 적용 기준은『20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및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에 의한다.

11. 남북 산림협력 사업

목 표

◇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안정적 지원기반 구축 및 민·관 협력강화 등을 통한 남북산림협력사업 활성화 도모

가. 정책여건

ㅇ 국정과제 '126.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의 세부 단위과제로 북한 산림복구 및 남북산림협력사업이 포함

* VIP께서 드레스덴 선언, 제69회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복합농촌단지 조성, 남북산림협력 및 산림공동관리 등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분야 역할 강조

ㅇ 북한은 산림황폐화가 지속되면서 황폐 문제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산림복구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을 요청

* 산림건설 총계획(2013～2042)을 수립하고 1단계('13～'22)로 168만ha 조림 추진

ㅇ 남북 고위급 회담('15.8.25) 및 제1차 남북당국회담('15.12.11) 이후, 민간을 통한 남북간 산림복구협력 활성화 기대

나. 기본방향

ㅇ 본격적인 북한 황폐산림 복구에 대비한 안정적인 지원기반 구축

- 북한 황폐산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산림정보 DB 구축
- 북한의 황폐지 조림을 위한 대북지원용 종자 · 묘목지원기반 구축

ㅇ 민간단체·국제기구 등과 협력강화를 통해 남북산림협력 활성화

- 국제기구를 통한 산림협력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사업 적극 발굴
-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인프라 구축

ㅇ 북한의 긴급지원에 대비한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확대

- 대북지원용 종자공급원(12개소)를 통해 종자 5톤의 종자 채취 및 저장

  * 지방청은 낙엽송, 잣, 아까시, 싸리 등 대북용 종자를 일반 산림용 종자와 병행 채취하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이송하고, 센터는 종자 저장 및 활력도 검사 실시

ㅇ 강원 고성 및 경기 연천 국유림 지역에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

- 강원도 고성 국유림 지역(3ha)에 1차년도 조성사업(포지조성 등) 추진(7.5억원)

- 경기도 연천지역은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

ㅇ 북한 황폐산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산림정보 DB 구축

- '15년까지 위성영상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 경사도별 황폐율 세분화

- 국립산림과학원과 협력하여 위성분석을 통한 산림정보 DB 구축('16~'19)

  * 산림자원 정보 DB 구축, 조림 · 사방 · 임농복합경영의 적지 및 복구방법 등

ㅇ 북한 황폐산림 복구 세부실행방안 마련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 지역별 중요성 · 시급성 등 복구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복구계획 마련

-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북지원용 종자 · 묘목의 민간단체 무상양여기준 마련

2) 민간단체 · 국제기구를 활용한 산림협력사업 활성화

ㅇ 남북간 종자교류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 지속 추진

- 북한 자생수종 종자 수급여부에 따라 3차 산림종자 추가지원 추진

  * '15. 4~10월 1~2차에 걸쳐 남한 산림종자 8톤(잣나무 7.8, 낙엽송 0.2) 지원

- '16.3~5월 1차 젓나무잎응애 방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솔잎혹파리 1,000ha 방제 추가 지원

  * 북측과 신뢰가 형성되면 북한 전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속적 방제 지원방안 협의

ㅇ 통일부 '산림분야 민간단체 공모사업' 기술자문 · 컨설팅 및 확대 추진

- '15년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단체와 상시 협의채널 운영

  * '15년 공모사업 : 4개 단체, 21.5억원 (양묘장 조성, 종자·묘목지원, 임농복합 등)

- 통일부와 협의하여 산림복구와 식량·에너지난 해결이 연계된 패키지형 산림분야 공모사업 확대 추진

  *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당국간 실무자 회담에 대비한 중점 추진정책(과제) 선정

ㅇ FA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신규사업 발굴 · 추진

- FAO와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사업('09~'16) 지속 추진

  * 북한 전문가 교육훈련, 워크숍, 양묘장 조성, A/R CDM · REDD+시범 사업 등

- FAO,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임농복합경영 등 신규사업 발굴 · 추진

3) 정부 ·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강화

ㅇ 통일부, 농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산림분야 대화채널 지속 강화

- 통일부 '그린데탕트협의회', 농식품부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등

ㅇ 남북산림협력 지원기반 마련 및 이행을 위한 민 · 관 협력 강화

-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 및 '민 · 관 실무협의회' 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신규사업 개발 · 구체화 및 대북사업 정보 공유
- 통일시대 효율적 산림정책 모색을 위한 「통일산림비전 자문회의」 운영

  * 정치, 경제, 법률, 식량, 에너지, 산림전문가의 다양한 자문기회 마련(반기별)

- 관련 기관 · 단체 역할 정립 및 퇴직공무원 등으로 전문가 Pool 구성

4) 북한 산림복구 역량 강화

ㅇ 대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북한산림 이해 및 협상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북한 산림복구 실무역량 향상과정 운영 계획>
- 일시 및 장소 : '16. 5월 중 3일간, 산림교육원
- 대상 : 공무원, 녹색사업단 등 산하기관과 대북사업 민간단체 담당자 등
- 내용 : 북한의 현황과 양묘, 조림, 사업 합의 등에 대한 주제로 실시

○ 지자체 및 민간단체 주관의 대북사업에 대한 자문·기술 전수 및 정보 지원

- 양묘장 조성, 사방, 병해충방제 등의 실질적 전문가 기술자문 및 지원

- 북한 수종 및 임농복합경영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민간단체 등에 배부

○ 남북한 산림과학자간 학술회의 등을 통해 북한 산림관계자 역량 강화

- 남북간 산림(임업)용어 정리 및 사전발간 등 산림과학기술 분야 교류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5.12월, 중국에서 북한 전문가 초청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 '16.6월까지 FAO-독일 에버스발데대학의 북한 산림복구 연수프로그램 추진

  *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산림복원 교육, 백두대간 복구계획 수립, 워크숍 등 개최

라. 추진일정

○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사업(1차년도) 추진 : 2016. 3~12월

○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 모니터링 및 추가 지원 : 2016. 3~5월

○ '북한 산림복구 실무역량 향상과정' 운영 : 2016. 5월

○ 북한 산림복구용 종자 채취·저장 : 2016. 11월

○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 및 민·관 실무협의회 운영 : 연중

〈참고〉

북한 황폐 산림의 변화

□ 북한 황폐산림 변화('08, 국립산림과학원)

ㅇ 산림면적 899만ha(남한의 1.4배)중 32%(284만ha)가 황폐화

- '99년 대비 산림면적은 17만ha 감소, 황폐지는 284만ha로 121만ha가 증가(전체 산림의 32% 차지)한 것으로 분석

※ 특히 임목벌채 및 땔나무 채취로 무립목지(無立木地)가 88만ha 증가

- 황폐 원인 : 무분별한 연료 채취, 뙈기밭 조성, 산림병해충 등

- 북한의 산림축적은 약 59m^3/ha로 추정되며 남한(126m^3/ha)의 절반 이하 수준('11, 북한 중앙통계국)

구분	총 면적	입목지	황폐산지(만ha)			
			소계	개간산지	무립목지	나지
2008	899.25	615.45	283.80	132.20	141.33	10.27
1999	916.57	753.40	163.17	97.20	53.35	12.62
증(△)감	△17.32	△137.95	120.63	35.00	87.98	△2.35

※ 1999년 : Landsat(공간해상도 30m) 영상분류, 경사도 8° 기준

※ 2008년 : SPOT(공간해상도 10m) 영상분류, 경사도 8° 기준

ㅇ 산림황폐화가 가속됨에 따라 기후위험지수가 전체 7위로 악화되었으며 전 세계 3번째로 재난 대처 능력이 취약함

※ 재해 발생시마다 인명피해와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는 재산피해 발생 (German Watch,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

ㅇ 산림 황폐는 산사태 등 재해피해를 가중하여 농업,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식량·에너지 문제를 악화

- 토사유출로 농경지 침수 및 도로 등 산업 기반시설 붕괴

※ 북한의 토사유출량은 ha당 40~60톤으로 추정되며 남한의 토사유출량(1.3톤)의 약 40배에 달함('06, UNCCD)

□ 북한 주요 지역 산림 실태조사 결과('13년)

ㅇ 조사목적 : 위성영상 기반 북한 주요 지역 황폐지 현황 파악 및 추세 분석을 통하여 북한 산림복구 기본계획 기초 정보로 활용

- 주요 지역 : 평양, 개성, 혜산, 봉산, 고성(금강산 인근) 등 5개 지역

ㅇ 주요 조사 결과

- 입목지가 황폐산지로 전환되어 황폐산지 비율이 5년간 0.7%P 증가

※ 입목지 : ('08) 143천ha(51.4%) → ('13) 141천ha(50.7%), 2천ha 감소

※ 황폐산지 : ('08) 135천ha(48.6%) → ('13) 137천ha(49.3%), 2천ha 증가

- 개간산지가 무립목지·나지로 전환되어 황폐가 심화되는 것으로 추정

※ '08년 대비 개간산지 3천ha 감소, 무립목지·나지 1천ha, 4천ha 증가

※ 평양지역의 개간산지는 증가. 이는 식량 부족으로 무립목지를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경작지로 개간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도시지역은 황폐산지비율이 증가(0.8%P ~ 1.5%P)하였으나, 농산촌지역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

※ 평양지역 황폐산지비율 : ('08) 37.1% → ('13) 37.9%, 0.8%P 증

※ 개성지역 황폐산지비율 : ('08) 63.2% → ('13) 64.7%, 1.5%P 증

ㅇ 주요 시사점

- 최근 들어 황폐산지의 양적 확대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 개간산지가 무립목지·나지로 전환되는 등 황폐산지의 질적 악화로 황폐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북한의 황폐산지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북한 황폐산림 복구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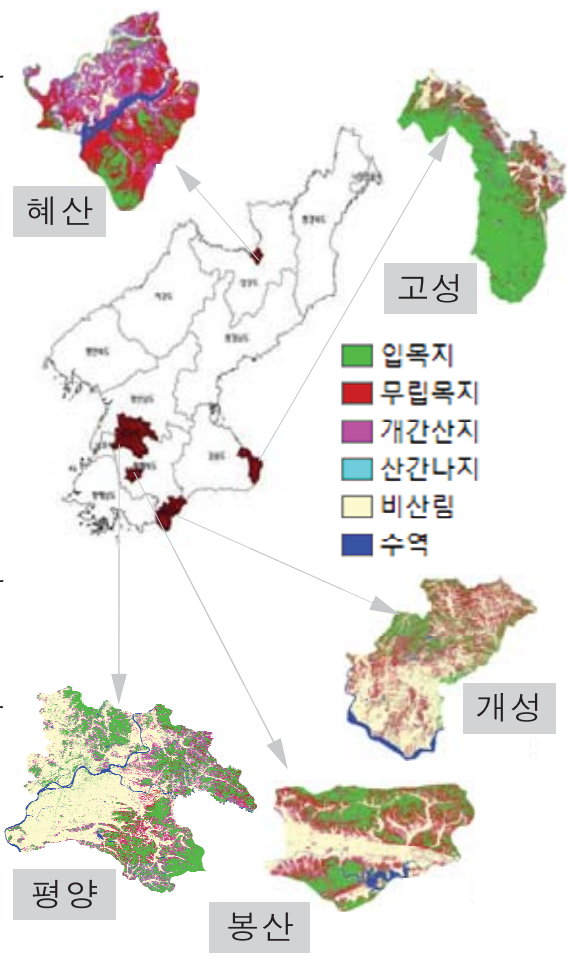

<'13년 북한 주요지역 위성영상 분석 결과>

12. 산림생명자원관리 강화 및 이용 활성화

목 표

◇ 산림생명자원의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한 생물주권 강화

◇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 기반 구축

ㅇ 대한민국 물질지도제작, 식물정유은행 설치, CR(종자공급원)단지 조성 등

가. 정책여건

ㅇ 국내 바이오산업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원료의 약 70%를 해외에서 수입

- 국내 생산규모는 지난 5년간 약 1.5배 증가하여 7조원을 돌파
- 국내 자원은 정보부족, 고가 및 안정적 공급량 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실정

ㅇ 나고야의정서 발효('14. 10)에 따라 국가 생물주권 확보와 외국 자원 이용에 따른 부담 경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산림은 국가생명산업의 중요한 원천이나 정보부족, 고가 및 안정적 공급량 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실정

ㅇ 산림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

나. 추진방향

ㅇ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을 체계화하고, 라이브러리 구축

- 자원의 수집·보존 관리를 표준화하고, 전략적 · 체계적 수집·보존
- 산림생명자원의 향유 물질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map으로 구축

ㅇ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

- 검정된 유용자원 종자 등의 안정적인 공급원 조성
- 국가차원의 산림생명자원재배시험 관리체계 마련
- 산업화 가능이 큰 자원을 개발·육성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생명산업 소재를 자원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명자원의 라이브러리 구축

가) 자원의 수집·보존·관리 표준화 및 전략적 수집·보전

ㅇ 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이용 SOP를 정립하고,「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관리 표준매뉴얼」마련

ㅇ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단일 관리코드 작성

ㅇ 책임기관별 자원별 보존 목표값 설정 및 목적별 이용 자원 수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 ('15까지) 105만점 → ('16) 107만점

나) 식물정유은행 설치 · 운영

ㅇ 미래가치가 높은 산림향료자원 수집을 통해 정유수율, 성분분석, 향, 색 분류 등 정유의 기초특성 조사(연간 20~30종)

ㅇ 향료자원 종류별 정유를 추출하고 각종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라이브러리 구축

- 국립산림과학원내 정유은행을 설치하여 수집된 정유자원에 대하여는 연구소재로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다) 대한민국 물질지도 제작

ㅇ 유효성분 물질을 보유한 식물의 분포지역 및 재배적지도 제작

- '15년 산림생명자원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유용자원 선정 및 지역별 유전자원 확보

ㅇ 선정된 자원은 재배매뉴얼 제작을 위해 국유림 내 산림생명자원 상설재배시험지에 시험 식재(산림약용자원연구소)

2)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 기반 구축

가) 검증된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CR단지(종자공급원) 조성 준비

ㅇ 대상지 선정, 조성방법 및 관리체계 등 기본계획 수립

ㅇ 공모에 의한 사업후보지 선정

- 미 활용되는 대규모의 간척지, 폐목장용지 등이 우선 대상

나) 산림생명자원 상설재배시험지(TEST BED) 조성 및 시범 운영

ㅇ 기 조성된 수원(양평), 양구, 충주 시범 시험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ㅇ 국유림 내에 대한 상설재배시험지에 대한 시설기준 및 제도 정비

다) 소재자원화 및 전통문화자원 공급원 조성

ㅇ 전략적 육성품목의 자원화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화 자원 개발을 위한 '생명산업 소재자원화' 사업 시범추진

- 전략적 육성품목 : 잔디, 이끼, 대나무, 닥나무, 겨우살이, 복령
- 기 조성된 특용자원 조림과 연계하여 '생명산업 소재자원화' 시범 추진

ㅇ '전통문화자원 공급원' 조성에 필요한 기초 조사

-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느티나무 등 16종에 대한 전국 분포도 조사

라) 대나무산업 육성을 위한「대나무산업 발전대책」 수립

ㅇ 대나무를 경쟁력 있는 경제·환경·문화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나무자원 정밀 실태조사 실시

- 지역별, 죽종별 분포면적 및 생육 현황, 경영실태조사추진
  * 국립산림과학원(남부산림자원연구소) 협조

ㅇ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계기로 「대나무산업 발전대책」수립

- 대나무 자원증식, 지역별, 죽종별 분포면적을 조사 산업화방안 마련
  * 식용, 조경용, 산업용 및 6차산업화 추진

ㅇ 생육환경에 적합한 임분관리를 통해 대나무 숲의 건강성 증진·보전

-「대나무숲의 조성 및 관리요령」에 따라 기관별 자체설계 추진
  * 제2죽녹원 예정지 등 대면적 생육지 우선 사업추진

마) 닥나무 생산단지 조성 사업 추진

ㅇ 지역 및 용도에 맞는 유전자원 확보 및 조성·관리기술개발

- 한지 주요 생산지(가평, 괴산, 문경, 안동, 원주, 의령, 전주)별 유전자원 확보
- '12년 영주국유림관리소 시범조성지(6.5ha) 모니터링을 통해 조성·관리 기술 개발(산림생산기술연구소)
  * 식재, 비배관리, 수확 등 단계별 기술 개발

ㅇ 닥나무 시범 마을 조성에 따른 선정 기준 마련

- 닥나무 시범 마을 조성에 따른 선정 기준 마련과 후보지 선정
  * 농경지와 접한 야산, 유휴농지, 주변 국・공유림
- 국가기록원과 '국산닥을 활용한 보존용지 개발 및 기록관리 도입'을 협업과제 추진

3) 산림생명자원의 저변확대 및 관리역량 강화

가) 나고야의정서 대응팀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ㅇ 학·연·산·관 전문가 나고야의정서 대응팀 구성
- 나고야의정서 외부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매뉴얼 개발

ㅇ ABS이해와 산림생명산업 교육 과정 운영
- 산림생명자원분야 저변확대 및 산림분야 ABS 전문 인력 양성
  * 산림교육원, 1주 과정, 연 1회 운영

나) 산림생명자원 민관협력회 구성 및 관리기관 운영 효율화 추진

ㅇ 산·학·연 소통채널로 산림생명자원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 생명자원 이용 동향 공유와 생명자원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정책 자문

ㅇ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전문성 강화,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다) 산림바이오 비즈포럼 개최

ㅇ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 및 토론, 성공사례 발표 등

ㅇ (전시 홍보) 기관별, 지자체별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홍보
  * 신기술 · 신품종 전시 및 사업 컨설팅도 병행하여 진행

4) 산림종자 유통 강화 및 신품종개발 보급 확대

가) 산림종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강화

ㅇ 옥천군 이원면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한 종자유통 홍보교육 실시(연 2회)

ㅇ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 행위 단속(연중)

ㅇ 산림품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 조사 실시
-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10대 작물을 선정하여 시장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와 유통단속 실시

ㅇ 품종의 분쟁 등에 따른 제도 정비
-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훈령) 제정 및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나) 종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신품종 보급 확대

ㅇ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품종에 대한 보급체계 개선
- 학교 등에서 개발하여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은 신품종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접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ㅇ 국유 신품종에 안정적 유통을 위한 유통 네트워크 강화
-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등 수요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3~2017)에 따른 산림분야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행
- 고부가·고품질 산림종자 개발 및 공급 등 산림분야 시행계획 추진

라. 추진일정

ㅇ 종자유통과 관련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훈령)제정 : 2016. 1~3월

ㅇ 6대 전략품목의 자원화 전략 마련 : 2016. 1~6월

ㅇ 대나무산업 발전대책 수립 : 2016. 1~6월

ㅇ 대나무자원 정밀실태조사 : 2016. 1~11월

ㅇ 산림생명자원 민간협의회 구성 : 2016. 2월

ㅇ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 · 관리 표준매뉴얼 : 2016. 2~10월

ㅇ ‘생명산업 소재자원화’ 사업 시범추진 : 2016. 2~5월

ㅇ ‘전통문화자원 공급원’ 조성에 필요한 기초 조사 실시 : 2016. 3~11월

ㅇ 산림생명자원 상설재배시험지 운영지침 마련 등 : 2016. 4~10월

ㅇ ‘산림생명산업과 ABS 이해과정’ 운영 : 2016. 5월

ㅇ 산림생명자원 상설재배시험지 운영 등 : 2016. 4~10월

ㅇ CR단지(종자공급원)조성에 따른 후보지 선정 : 2016. 9~11월

ㅇ 관리기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2016. 10월

ㅇ 산림바이오 비즈포럼 개최 : 2016. 10월

ㅇ 직무육성품종 처분 : 2016. 10월

ㅇ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수립·이행 보고 : 2016. 12월

ㅇ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행 보고 : 2016. 12월

ㅇ 산림분야 신품종 유통조사 실시 : 연중

13.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목 표

◇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ㅇ 산업시설 현대화 지원(51개소, 51억원), 가공시설 교체 등 융자(201억원)

ㅇ 국산재 활용촉진사업(5개소, 5억원),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5억원)

◇ 품질관리 강화로 목재이용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ㅇ 단속 품목 :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14품목

ㅇ 품질 단속 : (합동) 상·하반기 각 1회, (수시) 지방청별 분기 1회

가. 정책여건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3.5.24)으로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

ㅇ 웰빙, 로하스(LOHAS) 부각과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으로 목재의 소비는 증가하고 관련 산업 시장은 확대될 전망

ㅇ 목재자원 보유국의 원목 수출규제 정책으로 목재산업 원자재 부족난 가중

나. 기본방향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정사무 이행을 통한 제도 정착

ㅇ 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및 KS표준 개발·정비를 통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ㅇ 「국산재 활용 촉진대책」 추진 및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추진을 통한 국산목재 용도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ㅇ 목재제품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정사무 이행 및 제도정비

ㅇ 법정사무 이행을 위한 위탁사업 추진(150백만원)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방안 및 생산·수입·유통 목재제품 시장분석 등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추진

- 해외 품질검사기관 지정근거 마련, 목재제품 품질인증 및 KS인증 통합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2개소, 48백만원), 목재생산업 등록 지속 추진 등

2)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ㅇ 노후화된 제재·건조 및 방부시설에 '현대화 사업' 지원(51개소, 51억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15.1월)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업체 선정(기 지원받은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 집약적·안정적 목재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지역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 원목 생산·공급, 목재 가공 및 소비까지 지역 내 자급 시스템 구축

ㅇ 목재유통센터 품질 향상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보완 지원(474백만원)

- 최신 고열처리 목재 건조기 도입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등

ㅇ 소규모 영세 목재산업체 융자 지원으로 생산·유통 안정화 유도

- 가공시설 교체 자금 및 원자재 구입 자금 등 지원(201억원)

3) 국내산업 보호 및 무역활성화를 위한 KS표준 개발·정비

ㅇ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KS표준을 개발하고 규격·품질기준과 관계 정립

-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과 KS표준 간 중복성 검토 후 연차적 정비

-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간사기관 시범 운영

ㅇ 목재·제지사업분야 KS표준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수행

- 목재 및 펄프제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KS표준에 대한 수요분석

- 산림청 소관 KS표준 430개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등 적부 확인

4) 국산목재 용도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ㅇ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국산재 활용 촉진대책」추진

- 한국형 중목구조 목조주택 모델 개발·보급, 공공기관 국산재 우선구매 강화

ㅇ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지속 추진(5개소, 5억원)

- 홍보효과가 큰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 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추진

5) 목재제품 관리체계 강화로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ㅇ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11→14품목)

- 산업계의 자율적인 품질 검사를 위한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

ㅇ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 지방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품질단속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역량 강화

* 품질단속 실적을 소속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품질단속 성과 제고

- 품질단속 공무원을 지자체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품질단속 강화

* 지방청 및 지자체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활동비 지원(136백만원)

- 자발적인 유통질서 확립 유도를 위한 민간 중심의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50명)

*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계도, 홍보 및 감시활동 등 수행

ㅇ KS 인증제품 현장조사 및 시판품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

- 목재 및 제지분야 KS 인증대상 품목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라. 기타 사항

ㅇ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ㅇ 발암물질이 포함된 파티클보드, 섬유판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15년 감사원 감사와 동일 지적사항	ㅇ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강화 * (합동단속) 반기별, (지방청) 분기별 ㅇ 소속기관 평가에 품질단속 실적 반영
	ㅇ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제도 강화 및 개선방안 강구	ㅇ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 ㅇ 국산재 활용촉진대책 추진

ㅇ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품질단속 품목	8개 품목	11개 품목('16.1월)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14개 품목('16.7월) (WPC, OSB, 난연목재)
목재·제지분야 KS 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산업자원통상부	산림청, 지방산림청
목재·제지분야 KS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한국임업진흥원

ㅇ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목재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9월)	ㅇ 장관 1점, 청장 2점 - 목재제품 품질단속 : 장관1, 청장1 - 국산재활용 촉진사업 : 청장1
목재산업 유공자 표창	목구조기술경진대회(9월) 목조건축대전(11월) 목재의 날 행사(11월)	ㅇ 장관 2점, 청장 16점 - 전국 목구조기술 경진대회 : 청장10 - 목조건축대전 : 장관1, 청장3 - 목재산업 유공 : 장관1, 청장3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ㅇ 「국산재 활용 촉진대책」 시행 : 연중

ㅇ KS표준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 : 연중

ㅇ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개최 : 연중

ㅇ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 2016. 2월

ㅇ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교육 : 2016. 3월

ㅇ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합동(상·하반기 1회), 지방청(분기별 1회)

ㅇ KS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간사기관 시범 운영 : 2016. 6월

ㅇ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등 보조사업 현장점검 : 6월~9월

ㅇ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6. 9월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 2016. 12월

〈보고사항〉

ㅇ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 실적보고(목재생산업 등록업체) : 2016. 1월

ㅇ 목재생산업 등록현황(시·도) : 반기 후 15일 이내

ㅇ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적(지방산림청, 시·도) : 분기 후 15일 이내

ㅇ 국산 목재제품 우선 구매실적(지방산림청, 시·도) : 분기 후 15일 이내

14. 목재문화 및 이용 활성화

목 표

◇ 목재문화 체험기회 다양화 및 목재이용 캠페인 확대

ㅇ 목재문화체험장 조성(25개소, 164억원), 목재이용 캠페인(2억원)

ㅇ 목재문화활성화 사업(20개소, 3억원), 목재문화지수 조사(1.5억원)

가. 정책여건

ㅇ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수확된 목재제품(HWP)이 탄소계정에 포함됨으로써 목재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

ㅇ 「목재법」 시행('13.5.24)으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목조주택, 교육적 효과 등 목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ㅇ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목재문화진흥회 설립('14.3월)

나. 기본방향

ㅇ 일반인이 참여하는 목재이용 캠페인을 통하여 목재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목재체험 공간 확대

ㅇ 목재가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운영·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목재문화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

ㅇ 생활 속에서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국민인식 제고
- 목재 사용에 따른 건강, 효능 등 목재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홍보 강화
- 목재이용 캠페인 행사 참여를 통해 목재의 긍정적 인식 형성

ㅇ 목재문화진흥회 중심으로 목재문화를 선도하고 목재이용을 촉진
-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나무누리 국민 캠페인' 추진
- 목혼식, 우드캠핑, 나무누리 축제, 목재나눔행사 등 체험중심의 행사 운영
- 목재산업박람회, 목조건축대전 등 산업체 지원행사 강화

○ 목재문화지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유도

- 목재문화지수 시범사업('14~'15)을 통해 개선·보완하여 '16년부터 본사업 실시
- 목재문화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 관심을 유발하고, 지역별 중·장기 및 단기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지자체의 목재 활용 촉진 유도를 위한 지표로 개선·보완

2) 다양한 목재체험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목공체험 공간 확대를 위한 지자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지원(지자체 주관)

- 지역별 수종·산업·문화와 연계하여 목재문화체험장 특성화
- 신규조성 대상지는 사업설명 및 자문위원 검토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성하되, 국산목재는 설계에 반드시 반영
- 나무누리축제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 '16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계획(조성 25개소, 운영 15개소)

○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목재문화진흥회 주관)

- 민간단체, 대학교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20개소)
- 목재체험교실, 목공지도자 양성 교실, 초·중등 교사 목공체험 등 추진

  * 목재문화활성화 사업자는 전년도 운영실적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추진

○ 시민들에게 목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프로그램 공유(산림청 주관)

- 일반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목재를 접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목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목공예·목재 체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문화가 있는 날' 생활목공 행사 추진('15.9월~)

3) 전문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목재관련 자격제도 활성화

○ 목구조 건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운영

- 목구조 기술자의 전문성 향상과 고용의 질 개선, 고용 안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운영(2개소)

○ 목공기술 습득이 취미에서 소득까지 이어지는 산업으로 양성

- 목공관련 민간자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장려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교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창업 지원 및 안정적인 일자리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라. 기타사항

○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 목재문화 기반 부족으로 목재 산업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확대 - ('15) 7개소 → ('16) 15개소 ○ 목재에 대한 지속적 홍보 추진 및 체험기회 제공 - 목재이용 캠페인(2억원), 목재문화활성화 사업(3억원)

○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목재문화지수 조사	○ 2015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	○ 2016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

○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나무누리 경진대회	5월	○ 장관상장 : 2점 - 목재체험프로그램 개발 최우수(1) : 시상금 100만원 - 목가구제작 최우수(1) : 시상금 100만원
목재올림피아드	5월	○ 청장상장 : 1점(최우수상)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조성 자문회의 : 2016. 2~3월

○ 목재이용 캠페인 사업수행자 선정 및 추진 : 2016. 2~12월

○ 목재문화지수 조사 사업 추진 : 2016. 2~12월

○ '16년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추진 : 2016. 3월~12월

○ 2016년 나무누리 축제 개최 : 2016. 5월

○ I LOVE WOOD 캠페인 목재 체험행사 개최 : 2016. 9~11월
- 우드캠핑(9월), 목혼식 페스티벌(10월), 목재나눔행사(11월)

○ 2016년 목재산업박람회 행사개최 : 2016. 11월

〈보고사항〉

○ 2015년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정산결과 보고(목재문화진흥회) : 2016. 2월

○ 2015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성과 보고(시·도) : 2016. 3월

15.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구축 및 국산재 이력관리

목 표

◇ 목재산업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국내 목재생산 확대

ㅇ 목재생산량 확대 : ('15) 534만㎥ → ('16) 550만㎥

- 목재생산 : 550만㎥(국유림 45만㎥, 민유림 505만㎥)

ㅇ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40개소 43억원(국비 35, 지방비 8)

가. 정책여건

ㅇ 대면적 벌채에 따른 토사유출 및 생태경관 훼손으로 벌채 활성화 저해

ㅇ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의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공개매각시스템 개발 시급 및 FTA 체결에 따른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국제추세 대두

ㅇ 국제유가 하락 및 국·내외 경기둔화로 원목가격 하락추세 지속

나. 기본방향

ㅇ 친환경벌채 정착으로 원자재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마련

- 모두베기 면적을 축소하고, 벌채방법 교육 및 벌채제도 이행점검 강화

ㅇ「국산목재 통합관리체계」구축 및 임목의 정확한 평가로 벌채사업 품질 제고

ㅇ 국유림 목재 비축재 운영 및 맞춤형 목재생산으로 산림자원 가치 증진

- 우량 대경재의 체계적 관리 및 나무은행 활성화로 입목 재활용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친환경 벌채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마련

ㅇ 양을 우선하는 벌채 방식에서 생태·경관을 고려한 벌채로 전환

- 모두베기 면적 축소(50ha→20ha) 및 모두베기 존치방법에서 단목 제외

ㅇ 목재생산 시기 도래에 따라 벌채담당공무원 정기교육 실시(산림교육원)

- 벌채 및 목재산업 제도, 행정절차, 법령, 민원실무 및 현장견학으로 역량강화

ㅇ 벌채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 확대

- 환경적 측면에서 벌채의 필요성 홍보 및 친환경 벌채 우수사례 발굴 시상

2)「국산목재 통합관리 체계」구축 및 벌채사업 품질제고

ㅇ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 및 부산물을 공개 매각하는 시스템 개발
- 원목 매각 시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유도

ㅇ 목제품의 합법성 인증을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 '15년도 '벌채 및 공공개발지 산림자원 컨설팅'을 토대로 시스템 구축

ㅇ 임목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한 지방별 재적표 확대 제작 보급
- 산림과학원은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유림관리소는 숲가꾸기패트롤 등 지원

ㅇ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품등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 산림청장이 원목의 규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목재법」개정 추진

3) 목재 비축재 운영 및 맞춤형 목재생산으로 목재가격 안정화 유도

ㅇ 2015년 목재 이용량, 국내외 경제전망 등을 고려한 '2016년 목재수급계획' 수립
- 기관별·용도별 목재수급계획 및 하절기 산업용재 공급계획 수립 등

ㅇ 국유림은 목재가격 안정화 및 국산목재 가치제고를 위해 비축재로 운영
- 우량림은 수확벌채를 지양하고 불량림 수종갱신 확대로 목재생산기반 조성

ㅇ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유도 및 정보제공을 위한 '원목 시장가격 동향 조사'
- 분기별로 지역별·수종별 원목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

ㅇ 목재산업의 체계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목재이용 실태조사' 추진
- 12개 업종별 원목 수급 현황, 제품 생산량 및 판매량 등 조사

ㅇ 국제 목재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 목재산업 정보수집사업' 추진
- 매월 주요 목재산업국(10개국)의 수출입 동향 및 임업정책 동향 등 조사

4)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효율적 관리로 임업활성화

ㅇ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대장 일제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 다른 법률에 의해 중복 지정, 지정목적 상실구역은 지정 변경 또는 해제

ㅇ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확대 지정·관리
- 10ha 이상 느티나무 조림지 및 참나무 자생지를 발굴·지정하고 관리 철저

ㅇ 특수용도 생산목재의 유통체계 개선으로 거래 활성화
- 문화재수리용 목재는 관급 조달방식 및 우드옥션을 통한 매각
- 표고자목용은 지역 표고생산자단체에 매각하여 표고재배 농가 원료난 해소

5) 국유림 목재생산 효율성 제고 및 주민과의 소통 강화

ㅇ 국유림관리소 목재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입목처분 위탁시행 확대 추진
- 입목처분 대상지 조사 및 자재조사 등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현장설명회, 현장 확인 등 업무는 벌채 담당자가 처리
- 관리소별 입목처분 위탁시행 수요를 받아 지방산림청에서 일괄 계약 체결

ㅇ 원활한 원료재급 원목 매각을 위해 중량단위 매각 시범사업 성과 분석
- 벌채 대상지가 집약적인 국유림관리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3개소)
- 이동식 계근대를 활용하여 반출 시 중량 측정 및 사후 정산

ㅇ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가 목재자원 활용도 제고
- 소량으로 분산된 대경재 및 특수용재를 수집·저장하여 고가로 매각
- 매각이 어려운 저장센터 보유목을 활용한 목구조물 시설 시범사업 추진
  * 수요 조사를 통해 목구조물 희망 지방산림청에 시설비 1억 5천만원 지원

ㅇ 산림생태·경관 보전 및 주민이해를 감안한 벌채대상지 선정기준 강화
-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점검 표준목록 및 점검방법 준수, 주민설명회 내실화, 모두베기 10ha 또는 관리소장이 필요한 지역 사전심의 실시
  * 사전점검 목록에 의한 벌채대상지 → 벌채구획 및 설계 초안 작성 → 주민설명회 → 벌채 사전 심의(10ha 이상) → 벌채설계 확정 → 사업추진

6) 나무은행 활성화 및 벌채부산물 수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ㅇ 나무은행 운영을 통한 자원활용 및 산림자원 가치 제고
- 나무은행에 보관중인 입목의 재활용으로 임업의 경쟁력 강화
- 반상회 등을 통해 수목기증을 홍보하고 나무은행 포지관리 철저
- 나무은행 우수사례 및 미담사례의 적극 발굴을 통한 나무은행 제도 확산

ㅇ 벌채 후 임지에 남아 있는 벌채부산물 수집·활용 시범사업 추진(서부청, 전남)
-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지역별 부산물·수집활용 업체 육성 방안 마련
  * 산물수집 → (1차) 톱밥 및 칩생산 → (2차) 축사농가 깔개용 보급 → (3차) 친환경 비료 생산 → (4차) 원예농가 보급

ㅇ 수목굴취 활성화 통한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및 산주의 소득 증대
- 산림훼손 우려가 없는 경미한 지역은 수목굴취 신고만으로 굴취 가능
  * 1,000㎡ 이내 대나무, 임도·방화선의 지장목, 농경지·주택 피해목 등
- 수목굴취지역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관리 철저

라. 기타 사항

ㅇ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ㅇ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에 노력	ㅇ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완화되도록 적극 홍보 ㅇ 국산용재 용도 개발, 우선구매 확대, 목조주택 모델 개발

ㅇ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최대 벌채면적	50ha	20ha
모두베기 존치방법	단목, 군상, 수림대	군상, 수림대
국유림 벌채 대상지 선정기준	〈신 설〉	ㅇ 국유림 벌채대상지 선정기준 제정 - 사전점검 목록 및 점검방법 - 주민설명회 매뉴얼 - 사전심의(모두베기 10ha 이상)

ㅇ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고
친환경벌채 우수 사례 발굴 포상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9월)	ㅇ 최우수(1) : 장관상 (시상금 3백만원) ㅇ 우 수(1) : 청장상 (시상금 2백만원) ㅇ 장 려(2) : 청장상 (시상금 1백만원)
국산재 공급 확대 유공 표창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9월)	ㅇ 장관표창 2점(지방청 1, 지자체 1) ㅇ 청장표창 2점(지방청 1, 지자체 1)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 ㅇ 2016년 목재수급 계획 수립 : 2016. 2월
- ㅇ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원목 시장가격 조사 위탁사업 발주 : 2016. 2월
- ㅇ 국산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발주 : 2016. 2월
- ㅇ 벌채 담당 공무원 정기 교육(2회) : 2016. 3월, 6월
- ㅇ 입목처분 위탁시행 사업 발주 : 2016. 3월
- ㅇ 2016년 해외 주요 목재산업국 목재산업 동향 정보 제공 : 2016. 3∼12월
- ㅇ「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개정 : 2016. 4월
- ㅇ「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친환경 벌채기준) 개정 : 2016. 4월
- ㅇ 국유림 벌채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 : 2016. 4월
- ㅇ 친환경벌채 이행실태 합동점검 : 2016. 5월
- ㅇ 2016년도 친환경벌채지 우수사례지 선발 공모 : 2016. 8월
- ㅇ 2016년 긴급벌채 지원사업 추진 : 2016. 8∼12월

〈보고사항〉

- ㅇ 입목벌채허가(신고) 실적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ㅇ 2015년 국유림 목재 매각실적 보고(지방산림청) : 2016. 1월 10일까지

16. 산림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

목 표

◇ 국내 산림바이오에너지 공급안정화 및 산업경쟁력 향상

ㅇ 목재펠릿 제조업체 효율개선 5억원(2개소),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2억원(10개소)

ㅇ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11억원(기반조성 16ha, 조림 35ha, 벌채 10ha)

◇ 산림바이오에너지 수요 기반 마련 및 품질경쟁력 제고

ㅇ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51억원(주택용 3,000대, 사회복지용 100대, 산업용 7대)

가. 정책여건

ㅇ RPS 제도 도입('12년) 이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국내 생산역량 확대 및 안정적인 원료 공급 필요

ㅇ 저가·저품질의 목재펠릿이 발전용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14년말부터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어 국내산 경쟁력 약화

나. 기본방향

ㅇ 국내 수급 기반 안정화를 통한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 활성화

ㅇ 산림바이오에너지 분야 품질관리 강화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ㅇ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모니터링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 확대 및 유통망 구축

ㅇ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으로 생산규모 확대 및 노후시설 개선

- 사업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사업내용 : 생산비 절감 및 가동률 향상에 필요한 시설 지원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2억원, 자부담 3억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사업 지속 추진으로 판매대리점 확대

- 사업내용 : 지역산림조합에 유통시설비(저장 및 운송장비) 지원
- 총사업비 : 4억원(국비 2억원, 자부담 2억원) * 국비 50%, 자부담 50%

2) 목재펠릿보일러 수요 확대 및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주택용 및 주민편의·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보급대상 : **(주택용)**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규모 및 조건 * 산림청 등록제품만 지원 가능

구분	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보급량/ 예산	3,000대 / 3,600백만원 * 1세대 당 1대	100대 / 200백만원
기준 단가	4,000천원	4,000천원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30/40/30	50/50/-

- 사후관리기간 : 5년 (준공일 기준)

  * 기타 사항은「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및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참조

ㅇ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보급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7대 / 12.6억원 * 산림청 등록제품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국비 30%, 자부담 70%(국고지원 한도액 2억원)
- 사후관리기간 : 7년(준공일 기준)
-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시 국고지원율에 대한 금액 환수

  * 세부 사항은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참조

ㅇ 국내산 목재펠릿 수요 창출 및 소비자 인센티브 강화

- 발전공기업, 공공기관, 산업용 보일러 사용자 등이 국내산 목재펠릿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제도 정비
-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하여 목재펠릿 사용자가 온실가스 대체 효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3) 산림바이오에너지 분야 품질관리 및 단속 강화

ㅇ 국내 생산·유통 제품에 대한 주기적 품질검사 및 유통 단속 강화

- 대상 제품 :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성형목탄
- 단속 내용 : 시·도·지방청 합동단속 연 2회 이상
  · 제조시설·수입업체 원자재 출납대장 점검으로 원료 이력 관리
  · 국내 제조·수입·유통업체 대상 규격·품질표시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
  * 단, 유통 중인 제품은 사용업체(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 협조 하에 단속
  · 위반사항 적발 시 「목재이용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처벌

ㅇ 불량·불법 수입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단속 체계 구축

- 산림청-관세청-환경부 간 정보공유 및 협업검사 실시

ㅇ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운영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목재펠릿 및 보일러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4)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생산

ㅇ (기본방향) 조성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시범 조성단계(2012~2016년), 수확·관리단계(2016~2021년)

ㅇ (조성규모) 기반조성 16ha, 조림 35ha, 벌채·수확 10ha

- 사업비 : 1,088백만원 (조성·식재 942, 사후관리·벌채 146)
  * 사업단가(백만원/ha) : 기반조성 14, 나무심기 17, 풀베기 1.7

ㅇ 사업내용

- 식재수종 : 이태리포플러, 미루나무 등
- 수확·벌채 : '13년 조림지 중 이태리포플러 수확(10ha)
  · 시기 : 1~2월 또는 11~12월
  · 장비 : 우드크래커 등 수확에 적합한 기계·장비 사용
  · 산물활용 : 산림바이오에너지용(목재칩, 목재펠릿 등)으로 활용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 조림지 사후관리
  · 풀베기 : 전년도 조성, 대절 및 수확지를 대상으로 실시
  · 대절 : 맹아지 발생을 유도하기 위해 식재목에 대절 실시
  · 시비·병해충 방제 : 친환경 비료 및 농약을 사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ㅇ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조성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가공·이용 및 전시·홍보·체험관 조성
- 사업기간 : 2013~2016년
- 총사업비 : 95억원(국비 48.7억원, 지방비 46.3억원)
- 3차년도 사업 추진 ('16년 종료)
  * 사업비 : ('15) 35억원(국비 17.5, 지방비 17.5) → ('16) 28억원(국비 14, 지방비 14)

라. 기타 사항

ㅇ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ㅇ 국내산 목재펠릿 자급률 제고	ㅇ **(주택용)** 국내 제조·유통시설 지원 및 보일러 보급 확대 ㅇ **(발전용)** 국산 펠릿 우선 구매 요청 및 협의, 품질관리 강화

ㅇ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주택용 보일러 보급 확대	ㅇ **(규모)** 2,000대 ㅇ **(대상)** 도시지역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규모)** 3,000대 ㅇ **(대상)**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지역제한 없음) - 단,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제한

ㅇ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목재펠릿 보급 우수 기관	목재산업 담당자 워크숍 (9월)	ㅇ 표창 : 4점 (장관 1, 청장 3)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 ㅇ 2016년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대상업체 선정 : 2016. 1월
- ㅇ 목재펠릿 비축사업 추진 : 2016. 1～11월
- ㅇ 목재에너지림 기반조성 및 춘기 식재 : 2016. 2～6월
- ㅇ 목재에너지림 추기 식재 및 수확·벌채 : 2016. 10～12월
- ㅇ 2017년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공모 : 2016. 11월
- ㅇ 2017년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공모 : 2016. 12월

〈보고사항〉

- ㅇ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결과보고(지자체) : 2016. 12월
- ㅇ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사업 결과보고(산림조합중앙회) : 2016. 12월
- ㅇ 주택용·사회복지용 보일러 보급실적 보고(지자체) : 2016. 6월, 12월
- ㅇ 산업용 보일러 보급실적 보고(지방산림청) : 2016. 6월, 12월
- ㅇ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운영결과 보고(한국임업진흥원) : 분기별
  - * 최종 결과 보고 : 2017. 2월
- ㅇ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현황 및 결과 보고(지방산림청) : 2016. 6월, 12월
- ㅇ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조성 현황 및 결과 보고(전라북도) : 2016. 6월, 12월

17. 임업기계화 촉진

목 표

◇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촉진을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

ㅇ 임업기계장비 보급 : 80대(51억원)

ㅇ 임업기계장비 구입자금 지원 : 15대(5억원)

가. 정책여건

ㅇ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목재생산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대경재 생산량이 증가되는 등 벌채목 대경화에 따른 고성능 장비 보급 필요

ㅇ 농촌인력의 감소로 임업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임업생산성 저하

나. 기본방향

ㅇ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ㅇ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사후관리 철저

ㅇ 임업기계장비 실연회 및 기계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임업기계장비 활성화

다. 추진계획

1)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사후관리

ㅇ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벌채목 대경화에 따른 적합한 임업기계 집중 보급

- 중·소경목 집재장비에서 고성능 장비로 보급기종 전환

  * ('15) 99대, 5,468백만원 → ('16) 80대, 5,065백만원

- 고가의 기계장비는 과학원에서 개발·시범사업 및 현장실연 후 보급

ㅇ 임업기계장비는 각 기관별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입 기종 선정(1월중)

- 지역실정, 사업량, 장비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정

ㅇ 임업기계장비는 상반기 중 구입완료 될 수 있도록 조달계약 등 조기발주

- 자체개발 장비는 제작기간, 성능검증 등을 고려하여 납품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생산업체와 사전에 조율

ㅇ 저비용 고효율의 임업기계장비 개발·보급 및 활성화 기반 조성
- 단순 개조 및 저가장비 개발은 '기계장비 개조비(200백만원)'를 활용

< 추진절차 >

아이디어 공모	⇒	평가	⇒	집행	⇒	특허등록	⇒	실연 및 전시
지방청		심의 위원회 구성		지방청		제작된 기계는 특허등록		자체 실연 및 전시

ㅇ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장비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기관별 보유 장비에 대하여는 일제 점검 후 내용연수 경과 장비 등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불용처리

2) 임업기계장비 실연회 및 기계화 확대 추진

ㅇ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는 임업기능인의 기술발전 및 사기진작, 임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실연회와 연계하여 추진(10월)

ㅇ 지방청은 임업기계장비 실연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기계화 촉진
- 임업기계장비 전시 실연을 통한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작업시스템 습득

3) 임업기계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계화 거점으로 육성

ㅇ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기계장비는 사용자 니즈(needs, 임대 및 대여·교육훈련·상설교육장 등)에 적합한 임업기계 집중 보급
- 장비구입 시 원목생산업자 및 산림사업법인 등 주 사용주체 의견수렴

ㅇ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지역의 기계화 촉진
- 장비운영 전문성 확보 및 임업기계 전담인력 양성
- 지원센터의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 및 일반산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산림지, 전문지, 등) 실시

4) 영세율 적용 기계장비 구입 및 면세유 공급 등 임업인 지원 확대

ㅇ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ㅇ 「산림사업 종합자금」의 홍보 강화로 임업기계화 촉진

< 산림사업 종합자금 >

- 지원자격 :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2016년도 종합자금 신청 : 2016. 1. 20일까지 지역 산림조합
- 지원조건
  ·임업기계장비 구입 : 금리 3%, 융자비율 80%, 융자한도 100백만원
  ·임업기계장비 생산 : 금리 3%, 융자비율 80%, 융자한도 200백만원
  ※ 2016.1.1.일자로 변동금리 적용
- 자금용도
  ·임업기계장비 구입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생산에 필요한 자금
  ※「생산」관련 대상 장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에서 정한 임업기계장비(15종)

ㅇ 산림조합중앙회는 면세유류의 공정한 공급 관리를 위해 전년도 기종별 면세유 사용량을 종합 분석하여 산주 및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

ㅇ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연 2회 이상, 수시로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타용도 등으로 부정사용 되지 않도록 지속적 지도·감독 철저

라. 기타사항

ㅇ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ㅇ 임업기계장비 인증 체계적으로 도입	ㅇ 인증제 도입 기반 마련 및 안전매뉴얼 보급

ㅇ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임업기계화 정책자금 융자	ㅇ 금리 : 고정 3~4%	ㅇ 금리 : 고정 3% 또는 변동 △1%

○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10월	○ 장관·청장상장 등 : 6점 - 대상 : 장관상 1점(300만원) - 최우수상 : 청장상 2점(각 100만원) - 우수상 : 중앙회장상 3점(각 50만원)
임업기계화 촉진	연말	○ 장관표창 1점, 청장표창 1점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 임업기계장비 운영실태 점검 : 연 2회

○ 임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실태 점검 : 연 2회, 수시

○ 임업기계장비 구입 및 예산조기집행 : 2016. 6월까지

○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및 기계장비 실연회 : 2016. 10월

〈보고사항〉

○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생산 실적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중앙회)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공통) : 2016. 12. 31일까지

○ 2016년도 임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신청(중앙회) : 2016. 1. 18

○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보고(중앙회) : 익월 15일까지

○ 면세유류 공급·사용실태 점검 보고(중앙회) : 점검 후 10일 이내

18.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목 표

◇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기계 전문기능인 양성 및 관리강화를 통한 건전한 산림일자리 창출

ㅇ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 11천명(30억원)

ㅇ 기계화영림단 운영 : 105단, 1,050명

가. 정책여건

ㅇ 본격적인 목재생산 확대 및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필요

ㅇ 농·산촌 인구 고령화 및 도시로의 이탈로 임업생산성 약화

ㅇ 대경재 생산에 따른 숙달된 임업기계 전문 기능인력 부족

나. 기본방향

ㅇ 산림사업의 확대 및 기계화 촉진을 위한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과 기능인(기계화)영림단 조직·운영의 활성화 도모

ㅇ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추진

ㅇ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추진

ㅇ 훈련원별 편중된 교육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교육효과 제고

- 기능인이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ㅇ 임업기계조종사 양성을 위한 임업기계화 교육 확대 추진

- 숲가꾸기 중심에서 임업기계장비 활용교육을 확대하여 임업기계조종사 양성
-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고성능 기계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효과 제고

ㅇ 현장위주의 체험식 임업전문 교육훈련 실시

- 이론교육보다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현장교육 강화
- 임업기계 상설교육장(5개소)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장 확대 추진

2) 기계화영림단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ㅇ 기계화 영림단 확대운영 및 활성화 추진
- 국유림·산림조합 기능인영림단을 기계화영림단으로 육성
  * 기계화영림단 확대 : ('15) 97단(993명) → ('16) 105단(1,050명)
    · 국 유 림 : ('15) 66단(681명) → ('16) 70단(700명)
    · 산림조합 : ('15) 31단(312명) → ('16) 35단(350명)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우선 지원 및 안정적 사업량 배정 등 적극 지원

ㅇ 기능인영림단에 대한 안정적 사업량 확보 및 보수교육 강화
- 산림사업은 기능인영림단을 적극 활용하고, 월별 균등하게 사업물량 책정 방안 모색
- 새로운 산림정책 및 작업기술, 기계장비 사용, 안전작업 요령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추진하여 기술능력 향상 및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3)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ㅇ 산림분야 인력양성 기관 확대로 현장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청주농고 산림환경자원학과」, 300백만원/년

ㅇ 임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임업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산학겸임교원" 또는 "외부강사" 등으로 위촉하여 최신 현장기술 교육 지원
-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기술향상 및 취업기회 제공

ㅇ (산림정책과) 산림특성화고 운영성과 중간평가 및 육성·지원계획에 따라 추진

4)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강화로 건전한 산림일자리 창출

ㅇ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을 통한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
-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산림기술 일자리 관리

ㅇ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자격운영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 기관별 상·하반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하는 등 관리강화

라. 기타사항

ㅇ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ㅇ 국유림영림단 관리강화	ㅇ 국유림영림단 조직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연2회)

○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임업기능인 교육훈련	○ 임업훈련원 기능인 교육훈련 - 기계훈련원 : 국유림 - 기능인·기술훈련원 : 민유림	○ 임업훈련원 기능인 교육훈련 - 지역별 국·민유림 통합 운영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 기능인영림단 운영실태 점검 : 연2회

○ 임업훈련원 운영실태 점검 : 연2회

○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 10월

〈보고사항〉

○ 임업훈련원 교육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산림사업법인(영림단 포함) 및 산림기술자 점검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영림단(국 · 민유림) 운영실적 보고(연보) : 익년 1월 10일까지

○ 산림사업 실행 주체별 산림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익년 1월 15일까지

○ 다음년도 임업기능인훈련 교육훈련계획 보고 : 12월 10일까지

19.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 표

◇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재해발생 최소화

ㅇ 임업재해율 감소 : ('15) 2.18% → ('16) 2.1%이하(△0.08%p)

ㅇ 취약사업장 안전교육강화 : 5천명(1.4억원)

가. 정책여건

ㅇ 산림사업은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므로 다른 업종의 작업보다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광업, 건설업, 임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함

ㅇ 최근 3년 평균 산림분야 재해율은 2.43%로 전체산업평균 0.57보다 4.3배 높고, 건설업 등에 비하여 약 2.9배 더 높은 실정임

- 광업 8.46% 〉 임업 2.43% 〉 건설업 0.83% 〉 제조업 0.78%

ㅇ 산림사업 재해율 증가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림 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11) 6.5% → ('12) 7.2% → ('13) 8.0% → ('14) 8.7% → ('15) 8.9%

나. 기본방향

ㅇ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관리제 추진

ㅇ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교육 등 예방 협력체계 강화

ㅇ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구축 및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사업 안전관리 예방 목표관리제 설정

ㅇ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함으로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의식을 높이고 재해율을 낮추는 계기 마련

- '16년도 산림사업 재해율 2.1% 이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자체 목표를 설정
-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원목생산업자 등의 안전관리사항 점검 추진

ㅇ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목표 의식 제고
-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산림사업의 재해자 및 재해율을 최소화한 공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실시

2) 안전보건공단, 임업훈련원 등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안전관리 강화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협약사항에 대한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 산림사업분야 안전사고 예방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 공동 실행
- 산림분야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합동점검 등 추진

ㅇ 산림분야 안전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강화
- 원목생산업 및 산림사업법인 등 안전사각 지대인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140백만원, 5,000명/년)

ㅇ 임업훈련원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신규자 등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시간 확대
-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과정 편성 및 산림사업 특성을 고려한 교육실시

3)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산림사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ㅇ 사업시행자는 위험한 산림사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호구 의무착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제32조

ㅇ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는 참여제한 조치 등 행정적 제재 조치
- 연속 3회 이상 적발된 근로자는 산림사업 퇴출 조치 시행
- 안전관리 소홀 사업장은 작업중지 조치 및 지방노동청(근로감독관)에서 단속토록 조치

나) 작업장 5대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수칙 낭독

ㅇ 기계톱 등 위험장비 사용시 안전한 사용법 반복 교육 실시

ㅇ 작업현장에 안전수칙, 안전교육일지 등을 비치 및 기록 관리

①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②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③ 안전작업 요령을 숙지한다. ④ 산림작업 시 작업에만 집중한다. ⑤ 작업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다)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 강화 및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 추진

ㅇ 작업 착수 전 작업반장은 반원의 안전장구 착용 및 건강유무 확인

ㅇ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는 작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일지에 기록·관리

ㅇ 사망사고 유형별 및 산림사업별 예방대책 마련
- (넘어짐) 5년간 임업 사망재해의 32% 점유
- (날아와 맞음) 5년간 임업 사망재해의 11% 점유
- (떨어짐) 5년간 임업 사망재해의 9% 점유

4)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및 산림사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보급

ㅇ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은 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
- 재해다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조사 분석
- 중대재해 발생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안전예방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후 행정조치

ㅇ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및 교육·홍보자료 등 보급

라. 기타사항

ㅇ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5년 국정감사	ㅇ 산림사업 안전교육 강화필요	ㅇ 임업훈련원 안전교육 강화 ㅇ 취약사업장 현장안전교육 지속 추진(140백만원, 5천명)

ㅇ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임업훈련원 안전교육 강화	ㅇ 일부 위탁과정 등 안전교육 미반영	ㅇ 전 과정 안전교육 반영

ㅇ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ㅇ 연말	ㅇ 장관표창 1점, 청장표창 2점

라.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ㅇ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 사업 발대식 개최 시

ㅇ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 현장 예방교육 : 매일
- 정기 안전교육 : 월 1회 이상

ㅇ 취약사업장 안전교육(훈련원) : 연중

ㅇ 안전사고 다발기관 및 재해발생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 연2회

〈보고사항〉

ㅇ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ㅇ 산림사업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20. 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목 표

◇ 자연재해에 안전한 자연친화적 임도시설 확충과 임도시설의 다양한 상시 활용을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ㅇ 사업량(km) : 신설 728(간선 470, 작업 258), 구조개량 369, 보수 4,083

ㅇ 사업비(백만원) : 179,136(국비 141,895, 지방비 24,827, 자부담 12,414)

가. 정책여건

ㅇ 산림영급구조의 상승에 따라 목재생산대상 면적증가로 임도 필요성 증가

ㅇ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 임도시설 요구

ㅇ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야외 활동으로 임도의 다양한 이용 요구 증가

나. 기본방향

ㅇ 경제림단지에 임도를 집중 시설하고, 국·사 연계성을 강화하여 임도망 구축

ㅇ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임도시공을 위해 체계적 사업추진

ㅇ 임도피해예방 및 상시 활용을 위한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강화

ㅇ 임도시설의 다양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테마임도(산림휴양·레포츠) 운영

ㅇ 지역주민, 관련기관·단체, 언론 등과의 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임도신설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간선임도		작업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7.5	109,823	469.6	81,925	257.9	27,898
민유임도	491	65,190	321	49,138	170	16,052
국유임도	236.5	44,633	148.6	32,787	87.9	11,846

가) 노선선정

ㅇ 임도시설 확대방향

- 산림사업의 시급성·경제성을 고려한 선택·집중적 임도시설 확대
- 시급성이 요구되는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단지에 우선사업 추진
- 지속적 산림경영과 산림재해 신속대응, 국민 보건·휴양 및 지역발전 도모 등

ㅇ 간선임도 대상지

- 제4차 "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예정노선 중 경제림단지의 경영계획이 수립되고, 타당성 평가결과 적합한 개소에 설치
- 지역(산)별로 국·사유림 간 및 자치단체간의 연계성과 기존 산림내 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선정
- 산림경영계획 수립지에 우선하여 임도노선을 선정하고, 노선을 완결하여 임도 이용도 증진(* '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ㅇ 작업임도 대상지

- 인공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목재생산 집중지역에 우선 반영
- 작업임도 노선은 반출계통이 같은 유역단위로 선정(가급적 3km 이내)
- 노선은 등고선 방향으로 산복임도로 선정(계곡·능선임도 지양)
- 기존임도 등을 연결하여 시범림·특수림 등의 산림관리, 재해예방, 테마임도 조성 등을 위한 순환임도 조성이 필요한 지역

  *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임업기계 수집이 가능한 작업장(약300㎡내외) 설치

ㅇ 적정 임도망 선정

- 「임도망 계획 의사결정 지원시스템(2014년 국립산림과학원 개발)」을 활용하여 적정 임도망 및 노선 선정

ㅇ 임도 타당성평가 실시

- '17년 신설예정 임도의 타당성 평가는 '16. 10월말까지 완료하고, 타당성 평가시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확보와 병행 실시
- 실시설계 완료 후 산주부동의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 완료 후 설계 등 사업추진

ㅇ 임도 타당성 평가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의 사전 통보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 민원수렴
- 임도의 타당성평가시 지역주민의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
- 다수민원 및 유사민원 반복 등으로 임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선은 변경 실시

※ 산주 동의서는 임도관리대장과 같이 영구문서로 관리

ㅇ 임도망 연계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간(시·군간) 또는 기관간(국유임도·민유임도)의 임도망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 관계기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계획 공유
-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사업실행 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지도·감독
-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는 협의체 운영결과를 6월말까지 보고

ㅇ 기관별 임도망 구축

-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는 기 구축한 임도, 제4차 임도설치계획 및 '임도망 구축 연계협의회' 등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기관별 임도망도' 구축
- 임도망도 구축은 기관별 관내 전체도면(1/50,000) 및 세부도면(권역별 또는 단지별, 산별 등) 작성 *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음
-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는 기관별 전체적인 임도망도을 작성하여, 시·도 및 지방청에 제출하고 시·도, 지방청은 그 결과를 10월까지 산림청에 보고

나) 설계 및 사업추진 방향

ㅇ 임도설계 방향

- 설계비를 반영 설계하여 가능한 조기(4월말까지)에 시공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개소별 추진 공정표에 따라 체계적 사업추진
-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은 임도신설 실시설계 비용산출 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 3항"(실시설계 요율의 1.3배 적용)을 준수하여 "임도사업 설계의 품질향상" 도모
- 노선 설계시 기계화 작업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설계실명제 준수

ㅇ 사업추진 방향

-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에 따라 추가비용 반영(* 2015년 산림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목재산업과-5938호, 2015.11.9. 참조)
- 임도신설은 현지 지형여건을 고려한 설계·시공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개설(기준단비 150% 초과지 유보)
- 민유임도 사업의 경우 산주 부담금(사업비의 10%)은 예산부족에 따른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예산편성 및 지원

다) 간선임도 사전설계 실시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158	120	38
사업비	1,224	843	381

* 간선임도 사전설계비 단비 : 10,040천원/km(207,000천원/km시설비 × 4.85%)

ㅇ 사전설계 대상지

- 임도시설 시범단지 등 집약적이며 연속적인 임도신설 지역
- 동절기 적설량이 많아 3월말까지 현지측량이 어려운 지역
- 측량·설계업무가 상반기에 편중되어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
- 기타 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판단하여 전년도 사전설계가 필요한 지역
  * 사전설계비는 다음년도 사업대상지를 고려하여 시·군 및 관리소별 조정 실시

ㅇ 사전설계 예산관리

- 사전설계는 2015년에 2016년 사업지를 설계하였으므로 금년사업비로 2017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설계 추진 (* 설계비 불용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
- '15년 사전설계로 사업비가 남는 '16년도 설계비는 '17년도 사전설계비로 집행
- 적설기 측량·설계로 현지여건과 불 부합하는 등의 부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철저(사전설계 측량은 11월말까지 완료)

라) 임도사업 추진

ㅇ 임도시공 방향

- 임도시설기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견실하고 활용도 높게 시공
- 종단기울기와 최소 곡선반지름은 규정을 준수
- 구조물 등은 야생동물 이동 등 환경을 고려하여 시공
- 성토사면 층따기 시공으로 재해 안전성 강화
  * 산지사면 표토층 제거 → 계단상 층따기 실시 → 흙쌓기와 원지반 접합(지반변형 및 활동방지)
- 자연환경 등 공익환경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시공
  * 고속도로 및 도시 가시권 등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구간은 친환경녹화구조물 설치

ㅇ 임도시공 예산집행

- 민유임도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재해위험시설(소형사방댐, 골막이 등) 보완 및 유지관리 등 임도사업에 집행 * '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임도신설 사업비는 목적별 계획대로 집행하고, 계약 잔액은 추가시설로 가능한 불용액 최소화

ㅇ 임도공사 감리

- 임도의 시공품질 향상과 재해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 철저
-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감리실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ㅇ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활용

-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대국민 위치안내서비스 제공 등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점 번호판' 적극 설치
- 임도거리표주(석)를 대체하여 설치하고 효율성 제고 및 설치비 절감

  * 임도분야 '국가지점번호' 사업실행 계획(붙임 2) 참조

2) 구조개량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km)	369.3	260	109.3
사업비(백만원)	19,744	12,305	7,439

ㅇ 구조개량사업 방향

- 필요성 ·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필요성이 낮은 공종 및 과다시공 지양
- 임도하단부에 주택 등 피해예방이 필요한 구간은 우선시공하여 재해안전 확보, 이외 지역은 산림사업과 임업기계화에 필요한 공종 위주로 추진
- 구조개량 사업시 노면포장위주의 시설지양 * '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ㅇ 구조개량 대상지

- 기존임도의 구조개량은 노선완결 원칙으로 하되, 재해발생 우려지역은 우선 실행
- 임도피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 일반주민 이용률이 높은 임도
- 전간재 반출이 어려운 구간은 선형개량, 작업공간 확보 등 병행 추진
- 기존에 구조개량을 실시하였거나, 최근 시설한 임도(하자보수기간 만료)라도 인명·재산피해 우려 시 추가 실시 * 필요성 및 사업실행 근거 명문화
- 산림 내 타용도 도로를 임도로 전환한 노선 중 산림사업이 시급한 지역, 재해발행 위험이 높은 지역,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 등

  * 편입된 사설임도 및 타용도 도로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해 재해안전성 강화

ㅇ 임도시설의 기능 다양성 유도

- 휴양림주변, 도시근교, 특히 경관이 아름다운 노선은 임도의 기능다양화를 위한 부대시설물 설치로 이용 만족도 제고
- 테마임도는 산림휴양형과 산림레포츠형으로 조성하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

  * 특정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 유도

3)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4,083	1,883	2,200
사업비	11,104	8,557	2,547

○ 임도시설 보수사업 대상지
-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임도
- 집중호우 등으로 임도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

○ 임도시설 보수사업 실시
-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고, 1차 보수는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
- 「임도시공·관리 매뉴얼(2015년 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보수작업 실시
  * 임도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율보수 조건 등을 검토 후 통행허용

○ 임도시설 유지·관리
- 해빙 후와 우기 중에 임도관리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상시관리 체계 강화
- 임도관리원은 2월말까지 선정, 해빙기부터 근무하고, 우기에 집중 배치
- 관리원 배치는 거리, 관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운영
- 안내입간판, 이정표 등 정비·보수 추가 설치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국유임도의 경우, 민간위탁 사업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배치·활용
- 지역실정에 맞게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임도망도 현행화

○ 국유임도 민간 위탁관리
- 국유임도의 일부구간은 민간위탁 관리하고, 이외의 노선은 자체장비 및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 실시
- '16. 2월 중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장마기 전에 사업완료
- 민간위탁 1차 보수는 6월 초순까지 완료, 2차 보수는 9월말까지 완료

4) 임도사업 기술능력 강화 및 품질향상

○ 산지의 특성과 재해 안전성을 반영하여 '15년 개발한 '임도품셈' 시범적용 및 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임도품셈 고도화
- 3개소(북부·남부·중부지방청) 시범적용 시뮬레이션(감리병행) 실시(2월~11월)
  * '기존 임도품셈과 개선 임도품셈' 비교 설계 및 시공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임도품셈 현장 적용 설명회' 개최(10월)
- '임도품셈' 최종 수정·보완 및 감수(11월)
- 임도품셈 적용 전국 운영 확대 시행('17년부터)

ㅇ「임도시설 시범단지」상시 학습장 운영
- 적정한 노선선정과 재해에 안전하게 시설하여 상시학습장으로 활용
  * 기관별 1회 이상 현장토론 실시하고 결과 제출
-「임도시설 시범단지」확대 추진(광역시, 특별시, 경기, 충북)
  * 시범단지(현재) : 10개소(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개 지방산림청)
- 시범단지의 효율적 노선배치를 위해 연차별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실시
  * 시범구역 내 편입된 사유림은 기본설계 시 산주동의 완료

ㅇ 임도시설 자체 성과평가 실시(지자체 및 지방산림청 등 : 연1회 이상)
- 시공능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자체평가 실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규정에 따라 점검・평가

ㅇ 임도시설 우수사례 평가실시(10월~11월)
-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재해에 안전한 임도시공을 위해 평가 실시
  * 우수사례 선정 포상 : 산림청장상(6점/최우수・우수・장려), 특별상(2점)

ㅇ 임도시설 담당자 워크숍 개최(10월~11월)
- 임도담당자가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 발표, 기술정보교류 등 기술향상 유도

5) 임도시설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ㅇ 운재로 및 군사도로를 활용한 저비용 임도 확충
- 임도화가 가능한 노선은 구조개량 후 임도 전환 및 산림관리에 활용
- 운재로 설치 시 임도화를 고려하여 가능한 등고선 방향으로 노선 배치
  * 벌채 예정지는 임도를 우선 설치하고, 벌채 및 운재로 계획

ㅇ 목재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계화 작업공간 설치
- 목재생산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계화 작업공간 설치 모델 제시
- 목재운반 최적화를 위한 집재 공간 및 운송체계를 고려한 구조개량

ㅇ 임도시공 현장관리 역량강화 및 중앙기술자문단 운영
- 임도설계 및 시설기준 등 제도정비, 대학교수 등 현장자문단 활용

6) 임도시설 안전관리 및 파트너십 강화

ㅇ 임도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임도시설 재해예방 대응요령」,「임도피해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대응
- 임도유역 민가, 주요시설물 등에 대한 DB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ㅇ 지역 환경단체·기관·주민·언론 등과의 소통으로 파트너십 강화 및 갈등 완화
- 사업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등 설명하고 의견 수렴 (2015년 산림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7) 제도개선 및 산림기반자산관리시스템(임도관리) 운영

ㅇ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 ’16년부터 산림기반자산시스템(임도관리) 운영 등에 따라 관련 규정 보완
- ‘임도구조개량 사업’ 중 곡선부 구조개량 시설기준 신설 등

ㅇ 산림기반자산관리시스템(임도관리) 도입을 위한 교육 및 운영(지방산림관리청)
- ’15년 산림기반자산관리시스템(임도관리) 개발에 따라 운영을 위한 교육실시
- 보관중인 수기 ‘임도대장’을 임도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등

라. 기타 사항

ㅇ 민유임도시설의 지특회계 운영(시 · 도 자율편성)에 따른 ’17년 예산확보를 위한 시 ·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강구
- 지역 임도설치계획 등 중장기 임도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2017년도 예산편성에 기관별 금년 수준 이상의 임도시설 예산을 최대한 확보

ㅇ 정부 재정집행 정책에 따른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및 부진기관 중점관리
- 임도사업 조기 발주(상반기 전 개소 착공)
- 선급금 청구·지급, 기성금 및 노무비 청구·지급 실시
  * ’16년 임도사업 재정집행상황을 고려하여, ’17년 임도사업 예산배정 검토

ㅇ 임도관련 법령, 규정 준수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산지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 이행철저

ㅇ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2년 감사원 감사	ㅇ 간선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에도 간선임도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간선임도를 설치	ㅇ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임도에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철저
	ㅇ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임도 설치 및 설계기준 미비	ㅇ 산림경영계획 수립지에 우선 하여 임도노선을 선정하고, 노선을 완결하여 이용도 증진

구 분	지 적 사 항	조 치 계 획
2012년 감사원 감사	ㅇ 구조개량사업의 경우 노면포장 위주의 과다한 시설물 투입으로 예산집행 효과 저하	ㅇ 구조개량 사업을 할 경우 노면 포장위주의 시설 지양
2015년 산림청 종합감사	ㅇ 「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 제2조제2항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달청과 계약파기하고 설계변경 및 시공업체 사급자재 도입에 따른 공사지연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ㅇ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에 따라 추가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전파
	ㅇ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에 따르면 임도 및 사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능한 사업착수 이전에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필요성 및 사업개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ㅇ 사업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설명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설명회 철저

ㅇ 달라지는 주요 정책

구 분	2015년	2016년
임도품셈 시범운영	ㅇ 건설품셈에 의한 설계 · 시공	ㅇ 임도품셈에 의한 설계 · 시공 - 시범적용(북부·남부·중부청)

ㅇ 주요 표창 및 포상계획

구 분	시 기	비 고
임도시설 우수사례	임도시설 담당자 워크숍(11월)	ㅇ 청장상장 : 6점 - 최우수(2) : 시상금 100만원 - 우수(2) : 시상금 70만원 - 장려(2) : 시상금 50만원
임도분야 연말 정기표창	연말	ㅇ 청장표창 : 4점

마.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ㅇ 임도담당자 시책교육(시책 설명회) 실시 : 2016. 3월

ㅇ「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 2016. 6월까지

ㅇ 기관별 임도망(전체 임도망, 권역별 임도망) 구축 : 2016. 10월까지

ㅇ 도 및 지방산림청 별「임도시설 시범단지」사업 추진
- 임도시설 시범단지 설계에 대한 현장자문 실시 : 2016. 3~4월
- '16년도 임도시설 시범단지 실시설계 및 시공추진 : 2016. 4~11월

ㅇ 임도(간선·작업)신설사업
- 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 2016. 1~3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6. 5~11월
- 익년도 신설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산주동의 : 2016. 10월
- '17년도 임도 사전설계 : 2016. 7~11월

ㅇ 산·학·연으로 구성된 중앙기술자문단 현장방문 지도 : 연중
- 주요대상 : 시범단지 내 설계·시공, 구조개량 등에 대한 자문 요청 시

ㅇ 구조개량사업
- 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 2016. 2~4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6. 4~10월

ㅇ 임도보수 및 민간위탁사업
-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 2016. 2~3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6. 4~6월

ㅇ 임도시설 호우피해 예방사업 및 점검
- 임도하단부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 추가 조사완료 : 2016. 3~5월
- 집중호우 대비 임도노선 일제점검 및 재해위험 예방조치 : 2016. 5~6월

ㅇ 산림기반자산관리시스템(임도) 자료입력 : 연중

ㅇ '표준품셈' 시범적용 및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실시 : 2016. 2~11월

ㅇ 임도시설 자체 성과평가 : 지자체 및 지방청 등(11월)

ㅇ 임도시설 우수사례 평가 : 2016. 10월~11월

ㅇ 임도시설 워크숍 개최 : 2016. 10월 또는 11월

〈보고사항〉

ㅇ 2015년 임도시설 추진실적 제출 : 2016. 1.10까지 (서식 별도통보)

* 추진실적, 예산집행상황, 활용실적, 임도전산관리대장, 임도망도(수치지도)

ㅇ 2016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제출 : 2016. 1.31까지 (서식 별도통보)

ㅇ 임도사업 추진상황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서식 별도통보)

ㅇ「임도시설 시범단지」지정결과 보고 : 2016.11월까지 (서식 별도통보)

ㅇ ‘임도망 구축 협의회’ 구성·운영 결과 제출 : 2016. 6월까지

21. 사유림경영 주체 육성 및 기반 구축

목 표

◇ 사유림경영 주체 육성 및 기반 구축으로 경영 활성화 도모
◇ 임업인·귀촌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강화로 자립기반 확대

가. 정책여건

○ 국민들의 산림휴양·치유, 청정임산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경영의 중요성이 부각

○ 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 증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의 필요성 증가

나. 기본방향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임업인을 위한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사유림경영 주체로 육성

○ 임업인・귀촌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으로 사유림경영 기반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을 사유림경영 선도주체로 육성

○ 독림가·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산림경영주체의 선발·육성 확대
- 전문임업인 : ('15까지) 7,900명 → ('16까지) 8,400명(증 500명)

○ 전문임업인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임업단체의 경영모델학교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실시

○ 전문임업인들의 자체발전방향 모색과 정보공유를 위한 행사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 독림가의 산림경영인대회 및 임업후계자의 전국대회 지원
- 식목일을 전후하여 전문임업인에 대한 산림유공표창 실시
- 선진 임업국의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지원

ㅇ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확대
- 전문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경영지원”을 위한 장비 지원 확대
  * 산림경영·관리를 위해 목재생산장비에 다목적로우더, 우드그랩을 추가

ㅇ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운영 및 지원방향 정립
- 치산녹화의 주역인 독림가에 대한 그동안의 발자취와 성과를 점검·평가해보고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추진

ㅇ 전문임업인의 6차산업화를 위해 숲속야영장, 산악레포츠 등을 산림사업종합자금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ㅇ 임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모범사례 전파를 위해 임업인 대상 신설
- 임업인 대상(조림왕, 소득왕, 임업명가) 시상(6월, aT센터)

2)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제고 및 실효성 증대

ㅇ 국고 보조에 의한 경영계획 작성은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규모화·집단화 되도록 작성
- 경제림육성단지 안에서 연접된 사유림을 묶어서 집단화하여 작성
- 산림경영계획 작성 우수기관에 대한 연말 표창(4개 기관) 및 포상금 지급
  * 경제림육성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

ㅇ 산주의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혜택사항 홍보 강화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감면 및 산림사업 실행에 대한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등 세제혜택을 적극 홍보

ㅇ「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및 기준」(고시)의 현실화 추진
-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의 현실화를 통해 부실작성 방지
  * ’15년 산림경영계획 ha당 작성단가(예산) : 15,200원

ㅇ 보조사업 집행시스템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임업경영체 등록 및 산림경영계획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및 이에 따른 세금감면, 조림,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을 필지별로 전산시스템 관리

3) 임업인에 대한 재정 · 세제지원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ㅇ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금리를 시중 은행금리와 연동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에게 변동금리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
  * 변동금리(’16.1.1. 시행) : 사립수목원 조성 사업 등 13개 사업

ㅇ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간 자금조정 승인을 상반기부터 실시하여 미대출 예상되는 사업을 조기에 정리

* 이차보전 사업의 사업간 자금조정 권한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방안 강구

ㅇ 장기·안정적인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세제 개선을 지속 추진

- 장기산림경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임업'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4) 임업인 · 귀촌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체계 구축

ㅇ 교육훈련프로그램 인증제를 신고제로 간소화하되, 교육훈련 위탁사업을 공모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유도(고시 개정)

* 산학협력임업기술지원 사업 : ('15) 2억원 → ('16) 4억원

ㅇ 임업인, 산주, 조합원 등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산림경영컨설팅 행사의 운영체계 개선

- 관련분야 성공자 상담요원 활용, 홍보 및 운영계획 사전 통보 등

ㅇ 임업인 · 귀촌인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교육 시스템 개선

- 산학협력임업기술지원 대학,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 종합연수원 및 훈련원 등의 산림경영관련 교육과정 체계화

라. 추진일정

ㅇ 2016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발간·배부 : 2016. 1월

ㅇ 산림사업종합자금 담당자 교육 실시 : 2016. 2월

ㅇ 산림경영모델학교(독림가, 임업후계자) 운영 : 2016. 3～11월

ㅇ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 : 2016. 4월

ㅇ 임업인 만남(컨설팅) 행사 개최 : 2016. 6월

ㅇ 지자체 산림경영계획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6. 11월

ㅇ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지도·점검 : 상·하반기

ㅇ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지도·점검 : 상·하반기

ㅇ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실태 점검 : 상·하반기

22.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

목 표

◇ 산림조합을 조합원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주체로 육성
◇ 경영개선 및 경영혁신을 통한 건전한 조합으로 육성

가. 정책여건

ㅇ 자원확보와 소득창출을 위해 사유림 관리 혁신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나, 산림조합의 산주·임업인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역할은 미흡

- 지도원 대부분 산림경영지도보다는 산림사업의 현장대리인 역할에 치중

* 지도원(명) : ('78) 312 → ('88) 677 → ('98) 787 → ('08) 880 → ('14) 880

ㅇ 산림사업법인 증가, 산림사업의 공개입찰 확대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조합운영이 어려운 실정

* 산림조합중앙회 3년 연속 적자(억원) : ('12) △109 → ('13) △298 → ('14) △192

ㅇ 조합원의 자격요건 등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련규정 정비 필요성 대두

ㅇ 임업인종합연수원 등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기관의 역할정립과 운영 활성화 필요성 증대

나. 기본방향

ㅇ 산림경영지도를 전담하는 체계 구축 및 지도원에 대한 교육·평가 강화

ㅇ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개선 및 산주·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육성

ㅇ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대응방안 마련

ㅇ 새로이 개원한 임업인종합연수원과 임업인기능인훈련원 등 기존 교육기관의 역할정립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경영지도 전담체계 구축 및 지도원에 대한 평가 강화

ㅇ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경영지도를 전담하는 지도원 배치

- 산림경영 전담지도원은 최근 3년간 지도성과 등을 기준으로 우수 핵심인력을 선발하고, 조합별 지도수요를 감안하여 1~2명 배치

  * 산림경영지도원 : 880명(일반지도원 820명, 특화지도원 60명)

ㅇ 복무규정 마련 등을 통해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실시

- 전담상담석 운영, 임업인종합연수원에 전문교육과정 개설 운영

ㅇ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교부 및 지도원 배치 등에 반영

ㅇ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임무 부여

-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대리경영단지 조성 및 산주대상 컨설팅 실시

  ·대리경영단지에 전담지도원을 배치하고 단지 내 부재산주 중점 발굴 및 산주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동의 등 경영임지 확보

- 지도원의 현장대리인 역할 금지, 지도일지 서식개선 등 건수 위주의 산림경영지도에서 품질위주로 지도업무 개선

2) 경영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지속 추진 및 산주·조합원을 위한 건전한 조합으로 육성

ㅇ 구조개선사업 성과 평가 및 부실우려조합 경영지도 강화

- ('12) 11개 조합 → ('13) 10 → ('14, '15) 8 → ('16) 6 (예상)

ㅇ 조합원 보호, 조합경영개선을 위해 자산규모별 외부감사 확대

- ('13) 1,000억원 이상 → ('14) 700억원 이상 → ('15) 500억원 이상

ㅇ 1조합 1특화사업 지원확대를 통한 수익창출 및 자립기반정착 도모

- ('15까지) 37조합 → ('16) 3조합 (양구, 제주, 임실)

ㅇ 수익구조 개선, 유통사업 개선 등 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

-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산림조합을 산지유통 거점 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산림조합의 역할 확대

- 국산재 활용촉진을 위한 소비 확대 방안 마련 및 유통전문가 선발 등을 통한 목제품 재고해소와 원가절감 추진

ㅇ 조합원 가입 확대, 임업전문 금융기관 역할 등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
- 이용고배당, 출자배당, 장학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 혜택 확대
- 임업인 기술지도 확대,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적극 유도
-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소득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

3) 산림계원의 조합원 자격논란과 관련하여 규정 정비추진

ㅇ '94.6.30일까지 출자하여 조합원이 된 산림계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논란이 선거 전·후로 지속 제기됨에 따라 산림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규정 정비
- 산림계 운영현황, 존속 및 해산여부, 선거인명부 등록 인원 등 조사
- 산림계 운영실태 분석 및 검토결과에 따라「산림조합법」등 개정 추진

4) 임업인 연수원 등 중앙회 소속 교육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ㅇ 산림조합중앙회 훈련원, 임업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성 해소 등을 고려하여 산주·임업인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ㅇ 중복·유사과정 통합 및 수요자 중심이 카페테리아식 교육 진행
- 지역별·대상자별 맞춤형 강의로 능동적 교육분위기 조성 및 만족도 제고

ㅇ 수목원, 국립공원 등 주변 산림인프라 활용 및 임도, 사방댐, 산채재배지 실습장 등 시설 조성하여 현장 체험형 교육 추진

ㅇ 임업관련 기관·단체, 교육기관 등과 연수협약을 추진하여 연수원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합·중앙회 학점이수제 도입

ㅇ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를 통해 산림분야 고급기술 인력 양성 및 산림사업 품질향상

ㅇ 임업인종합연수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월별 홍보 세부계획 수립 시행

라. 추진일정

ㅇ 산림경영지도 체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2016. 1～2월

ㅇ 산림경영지도 전담체계 구축에 따른 복무규정 마련 : 2016. 1월

ㅇ 산림경영전담지도원 전문교육 : 2016. 1～2월

ㅇ 산림계 제도 운영방안 마련 : 2016. 6월

ㅇ 산림조합 구조개선사업 추진성과 평가 : 2016. 7월

ㅇ 2016년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자체 공모선정 : 2016. 9~10월

ㅇ 산림경영지도사업, 우수지도원 평가 및 포상 : 2016. 12월

ㅇ 산림경영지도원 및 임직원 교육(기본, 전문) : 연중

23.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상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목 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임산업의 경쟁력 제고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임산물의 브랜드화

가. 정책여건

ㅇ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및 대형유통업계의 사업범위 확대로 임산물 유통여건 악화

ㅇ 단기임산물의 다품목·소규모 분산 생산, 다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유통비용 과다 및 경쟁력 약화

나. 기본방향

ㅇ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국고보조 사업방식 개선

ㅇ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청정임산물 정보제공 및 유통경로 확대

ㅇ 임산물 6차산업 프로그램 강화 및 우수 임산물의 브랜드화 추진

ㅇ 임산물 표준규격의 합리성 확보 및 친환경인증품목의 관리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보조사업의 투명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 개선

ㅇ 소비촉진을 위한 임산물 생산단체(협회) 지원을 공모제로 전환
- 사업내용별(소비촉진·교육·홍모) 공모를 통한 평가·선정

ㅇ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자 선정을 전문기관에 위탁·선정 평가제 도입
- 사업자 선정 공고(7월) 후 외부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 심의 후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의 전문성·경영 안정성 확보

ㅇ 산림소득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소득운영지원시스템' 운영
- 산림소득분야 DB의 지속적 관리 및 사업자 선정시 구축된 DB를 활용

2) 임산물 유통시설 운영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ㅇ 규모화된 가공 전문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과 경영·홍보 컨설팅 실시

-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확대
  * 가공산업활성화사업(신설・보완) : ('16) 2개소, 2,000백만원
- 임산물의 수집·저장·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지원
  *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신설・보완) : ('16) 7개소, 3,500백만원
- 곶감 건조시설·장비 등 임산물의 저장·가공시설(보완포함), 포장재 등 지원
  * 유통기반시설 : ('16) 220개소 4,400백만원

ㅇ 유통센터별 유통경로·운영실태 파악 및 지역·유사품목별 통합운영

- 유통센터별 유통경로·운영실태 파악 및 경영상태 분석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등 국고보조시설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

·미승인 근저당 해지 및 국고보조금 반환 추진
·지도·점검(연 3회 이상) 및 등기부 등본 열람(분기별 1회 이상) 강화
·신설 유통센터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채권보전 추진

- 산림조합 유통센터(19개)의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역할 강화

3)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청정임산물 정보제공 및 유통경로 확대

ㅇ '임산물종합정보센터' 를 활용한 먹거리 임산물 발굴과 래시피 개발

- 산조중앙회의 '임산물종합정보센터' 준공 및 청정임산물의 전시·홍보·시음 및 정보 제공으로 고객 확보

ㅇ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생산자·소비자 정보지원 확대(552백만원)

- 정보 제공 콘텐츠의 다양화, 타 기관 DB 연동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

ㅇ 'e-숲으로'와 '푸른장터'를 통합한「임산물 쇼핑몰 직거래장터」운영으로 임산물 소비촉진 효과 제고(49백만원)
  * 직거래장터, 꾸러미판매, 온라인쇼핑몰 등 판매방법의 다양화

ㅇ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판매 및 전시 등 공모사업 지원(215백만원)

- 도시 및 지역축제에서 임산물을 전시·판매 소비촉진 직거래 행사 추진
- 우리 임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세미나, 식품박람회 등 행사참가 지원

4) 임산물 6차산업 프로그램 강화 및 우수 임산물의 브랜드화 추진

ㅇ 6차산업화를 통한 생산·가공·체험과 연계한 임업의 상품화 추진
- 예산지원 후 조성완료 사업의 운영 등 추진실적 모니터링
  * (조성완료 2개소) 떫은감(청도) 및 대추(군위) → (조성 중 4개소) 임산버섯(괴산), 황칠나무(장흥), 산나물류(곡성), 산양삼(함양) → (신규 3개소) 지리산 항노화산업(함양), 밤(공주)・대추(보은) 클러스터

ㅇ 시설 위주 사업을 생산자와 생산현장 중심의 6차산업화로 유도
- 임산물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적은 사업(홍보관· 공원·연구시설 등)이 전체사업비의 50% 이상인 경우 지특회계로 변경

ㅇ 지리적 특성을 가진 임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확대로 지역특산품의 상품화
-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확대 : ('15까지) 51품목 → ('16까지) 54품목
- 지리적표시 편법운영 근절을 위한 등록단체 운영실태 수시 지도·관리

5) 임산물 표준규격 합리성 확보 및 친환경 인증 품목의 관리강화

ㅇ 임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의 명확성을 위한 표준규격 개정
-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개정안 마련

ㅇ 친환경 인증관리 품목 확대 및 '청정숲푸드' 인증 도입 기반 마련
- 산림에서 채취한 임산물의 신뢰 확보로 임산물의 소비 촉진 도모

라. 추진일정

ㅇ 명절 성수기 임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 2016. 2월, 9월

ㅇ 임산물종합정보센터 준공 : 2016년 4월

ㅇ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실태조사 및 경영분석 : 2016. 2분기

ㅇ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관리실태 점검 : 2016. 2~3분기

ㅇ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지도점검 : 2016. 2~3분기

ㅇ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공고 : 2016. 7월

ㅇ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 : 2016. 4분기

ㅇ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개선 완료 및 설명회 : 2016년 11월

ㅇ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추진 : 연중

ㅇ 산림소득사업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 연중

24.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정비

목 표

◇ 산양삼 생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안전성 강화
◇ 생산자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소득창출 및 산업화 촉진

가. 정책여건

○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재배면적과 생산이 증가추세

○ 산양삼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부정·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동단속 및 관련기관 간 협업 필요성이 증가

나. 기본방향

○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정착 및 관련제도 정비

○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안전성 강화

○ 특별관리 임산물에 대한 홍보 및 불법 유통단속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 고품질 산양삼 생산 및 산양삼 재배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비용지원(240백만원)

○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산양삼’을 ‘산양산삼’으로 용어 변경
-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 절차 간소화 및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 특별관리 임산물 유통단속 조사·검사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
-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수수료 면제 및 제조업 신고기준 마련

○ 통계조사원 및 재배자 교육을 통해 산양삼 생산량, 판매액 등 통계기반 구축

2)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 확립

○ 종자·종묘, 재배, 생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배이력시스템 운영

- 산양삼 재배이력조회시스템(검사번호, QR코드, NFC)을 통한 정보제공

○ 생산과정 기록 의무화 및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확인·공개제도 정착

- 소비자가 생산 및 품질검사 정보 공개 요청시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3) 특별관리 임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불법 유통단속 강화

○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을 통한 제도 홍보 및 교육

- 산양삼·산약초 CEO과정, 임산물업체 전문경영인 과정 등 전국 최고수준의 임업인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강화

- 산양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식약처, 경찰관서 등과 협업체계 구축 및 합동단속 실시

4) 산양삼 종자공급단지 조성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연구 추진

○ 우수한 산양삼 종자·묘종을 생산 보급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시장개방으로부터 산양삼 산업을 보호·육성

* (목표) '18년까지 50ha 조성 및 '22년부터 종자공급 수요량의 50%(2,500kg)공급

○ 산양삼 고부가가치를 위한 표준규격 정립 등에 대한 연구 추진('14~'17)

* 산양삼 품질규격·등급기준 등 정립, 신기능성 규명 및 효능 차별화 등

5)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기준 조정 추진

○ 품질검사기준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무농약 기준 추진

○ 생산적합성조사 잔류농약 검사항목(65성분)을 품질검사 검사항목(78성분)과 동일하게 조정

라. 추진일정

○ 산양삼 홍보 전시회 및 학술 세미나 개최 지원 : 상·하반기

○ 산양삼 품질검사 등 계도·단속 실시 : 연중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 추진 : 연중

25.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목 표

◇ 임산물 품목별 규모화·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
- ㅇ 산림작물생산단지 : ('15까지) 234개소 → ('16) 40개소, 140억원
- ㅇ 산림복합경영단지 : ('15까지) 65개소 → ('16) 27개소, 36억원

◇ FTA 등 임산물 시장개방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ㅇ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에 따른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

ㅇ 생산 규모 영세 및 시설 낙후, 생산지역 분산 등으로 경영 여건 열악

나. 기본방향

ㅇ 규모화 · 집단화를 통한 대량생산 등 경쟁력 강화로 임가소득 증대 도모

ㅇ 임업인 개별 지원에서 생산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규모화 유도

ㅇ 안전하고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재배 및 품질관리 강화

ㅇ FTA 대응대책 추진 및 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의 품목별 단지화·집단화·규모화 등 지원

ㅇ 품목별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의 규모화 · 집단화(40개소, 140억원)

ㅇ 사업 지원대상

- 산나물류·수실류·수목 부산물류 등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
  * 관수 시설, 보호 울타리, 작업로 시설, 모노레일, 감시 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표고목 등
- 관상산림작물류 : 조직배양 및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 작업,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등

2) 임산물 생산 증대 및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ㅇ 수실류, 관상식물류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소득증대 도모(66억원)

- 밤나무 노령목관리, 병해충 방제장비, 친환경 방제(포충등, 성페르몬 등), 생산장비(굴삭기, 4륜 오토바이, 선별기, 밤수확망, 수확기 등), 관수시설, 작업로 등

ㅇ 노령화되어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고소득 대체작목(수실류, 산나물류 등) 조성사업비 지원(18억원)

- 지자체별 사업량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및 탄력적 운영을 유도

ㅇ 연작으로 지력 약화 및 산성화된 임산물 재배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48억원)

ㅇ 표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종균 개발, 시설지원 및 기술지원 등

- 원목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우량종균 공급 및 연중 재배시스템 구축(11억원)
- 표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연중「표고재배반」운영(초급반, 전문가 양성반)
- 경상권 톱밥배지센터 조성으로 톱밥배지 안정적 공급(70억원, '16～'17년)
- 표고 톱밥배지시설 증가에 따른 권역별 적정 생산규모 파악 등 장기수급 계획 마련으로 향후 정책 방향 제시

  * 표고버섯 소비동향, 배지시설 규모, 수요・공급 분석, 종자산업법 준수 등

3) 목재생산과 연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ㅇ 숲가꾸기 사업지 등에 산나물 및 약초·약용류 등을 재배하여 숲을 가꾸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복합경영 확대(27개소, 36억원)

- 사업대상지 : 조림예정지, 숲가꾸기 사업지 등
- 지원내용 : 숲가꾸기와 관수시설, 생산기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등

ㅇ 현실 여건에 맞는 소득사업지 조성을 위한 사전설계 및 시공감리 추진

4) 산림소득사업지 점검·평가, 표준품셈 마련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ㅇ 주요 임산물생산단지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산림작물생산단지('15년까지, 234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15년까지, 65개소)

ㅇ 산림소득사업(작물생산단지, 복합경영단지)에 대한 표준품셈 마련

  * 표준품셈 마련을 위해 T/F 구성・운영(청・전문가・협회・지자체 등)

ㅇ 산림청·지자체 교육, 지도점검 및 소득사업 경영 컨설팅 강화

5) 표고 우량신품종 개발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수행(’21년까지)

ㅇ 품종보호 및 수입대체용 표고 신품종을 개발·상용화하여 자급률 제고 (2021년까지 자급률 60%, 수출 100만불 달성)

* 참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조중앙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경상대, 단국대 등

* 총 예 산 : 100억원(’14～’21)

6) 임업인·생산자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 지원과 홍보 강화

ㅇ 청정임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웰빙 임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임산물 지원 품목을 확대

* 소득지원대상 품목(’15) :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 등 79품목

ㅇ 임산물 수요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행사 지원

- 한국분재대전, 대한민국난대전, 산양삼 홍보 전시회, 잔디세미나 등

ㅇ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다양화 및 지원 강화

- 식품 박람회 등 규모 있는 전시·박람회의 참가 지원

7) 한·중, 한·베트남 등 FTA 체결에 따라 임산업 경쟁력 강화

ㅇ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지원제도 추진

-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등 행정기반 구축 및 임업 특수성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 추진

* 피해보전 제도 마련과정에 농업인 지원위원회 등에 임업전문가 적극 참여 및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임업분야 적극 반영

- 자발적 판로 확대 및 수급 조절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도입

* 조직・규모화된 떫은감, 밤 등에 대해 제도 가능성 분석 등 단계적 추진(’16～’18)

- 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생산·유통·연구분야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ㅇ 임산물 생산 규모화 등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

- 임산물 재배 규모화를 위한 작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 확대 조성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유통체계 개선

- 산림소득분야 시설사업에 ‘체험시설’을 포함하여 6차 산업화 유도

ㅇ 주요 임산물의 주산지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및 예산확대에 활용

- 품목별 현장 간담회 추진(조경수, 복분자, 오미자, 고사리 등)
- 지자체 농업기술원, 임산물 연구소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이원화 품목의 고부가 산업 유도 및 소득증대 도모
- 버섯류, 감류, 약용식물 등에 대하여 농식품부, 농진청 등과 협력시스템 구축

라. 추진일정

ㅇ 일선 시·군 공무원 대상 산림소득분야 시책 교육 : 2016. 1월

ㅇ 산림소득사업(공모) 경영 활성화 워크숍 : 2016. 3월

ㅇ 한국새우란대전 및 대한민국난대전 개최 지원 : 2016. 1분기

ㅇ 한국분재대전 개최 지원 : 2016. 4분기

ㅇ 표고재배기술 교육 : 연중

ㅇ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연중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임산물 지원품목 확대) 추진 : 연중

ㅇ 경상권 톱밥배지센터(문경) 조성 : 연중

ㅇ 산림소득사업 표준품셈 마련 : 2016. 4 ~ 10월

ㅇ 표고톱밥배지 장기수급계획 마련 및 T/F 운영 : 상·하반기

ㅇ 단기소득임산물(떫은감, 밤 등) 자조금 제도 도입 검토 : 연중

ㅇ FTA 폐업 지원금 등 품목 선정 및 단가 협의 등 : 연중

참고	2016년 산림소득생산 기반조성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5 예산		'16 예산		형 태	지원율 (국:지:융:자)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계		37,459		55,462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농특】		34,954		41,022		
- 표고종균생산연구지원	1종	1,100	1종	1,100	보조	100:-:-:-
- 산양삼종자공급	-	-	1종	620	보조	100:-:-:-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12종	4,193	12종	6,592	보조+융자	20:20:20:40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523㏊	2,748	914㏊	4,800	보조	70:20:-:10
- 밤나무대체작목조성	650ha	1,820	650ha	1,820	보조	40:20:-:40
- 산림작물생산단지	13개소	13,000	40개소	14,000	보조	40:20:-:40
-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6개소	240	6개소	240	보조	40:60:-:-
- 산림복합경영단지	9개소	3,600	27개소	3,600	보조	40:40:-:20
- 임산물산업화단지(군위, 청도)	2개소	2,680	-	-	보조	50:40:-:10
- 잔디경작지 모래 객토	1식	2,500	-	-	보조	50:40:-:10
- 임산버섯 클러스터 조성	1개소	300	1개소	700	보조	50:50:-:-
- 묘목유통단지	1개소	200	1개소	700	보조	50:50:-:-
-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1개소	300	1개소	700	보조	50:20:-:30
- 황칠 산업화단지	1개소	150	1개소	700	보조	50:20:-:30
- 산양삼 산업화단지	1개소	323	1개소	700	보조	50:50:-:-
-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	-	2개소	2,000	보조	50:50:-:-
- 지리산 항노화산업 유통센터			1개소	1,000	보조	40:60:-:-
- 남부권 톱밥배지센터	1개소	2,000	-	-	보조	50:20:-:30
- 영남권 톱밥배지센터	-	-	1개소	1,750	보조	50:20:-:30

26. 임업재해보험 내실화 및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

목 표

◇ 재해에 대비한 임업경영 및 임가 소득안정망 구축
◇ 재해의 사전예방 및 복구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가. 정책여건

ㅇ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임업작업 중 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

ㅇ 임업인의 경영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임산업 재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임업재해보험의 인지도 제고 및 보험기능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ㅇ 현장수요에 맞는 상품 및 제도개선으로 임산물재해보험 및 임업안전보험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ㅇ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가의 피해복구 지원으로 임업인이 신속하게 재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개선으로 운영 내실화

ㅇ 품목별 표준 단가 및 수확량 현실화로 재해보험 보장수준 제고
- 지역별 직거래 판매가격 적용, 개인별 생산량 반영 지속 추진
-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떫은 감을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 추진
- ’16년 떫은 감 재해보험에 低 자기부담 비율(10%, 15%) 적용

ㅇ ’16년 오미자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 사업 대상지역 선정, 표준단가·수확량, 보험요율 및 상품인가, 약관 등 확정

* 보험품목 : (’15년) 5개(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 → (’16년) 6개 품목

2) 임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임업인안전보험 운영 활성화

○ '16년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법」에 따라 임업인과 농업인안전보험 통합 운영

- 농업인과 동일한 보험료 적용,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상범위 확대

  * 농・임・어업인의 재해보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16.1.7일부터 시행(그동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으로 운영)

  * 임업인이 임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적 피해(부상・질병・장해・사망 등) 보상

- 임업인 재해보험 신설상품 도입 및 기존상품 강화, 보험료 지원 확대

  * 신설상품 도입 : **간병급여**(장해지급률 50% 이상일 때 : 500만원), **직업재활급여**(장해지급률 3%이상 100%이하일 때 : 500만원 × 장해지급률)

  * 기존상품 강화 : 상품종류(1종 → 4종, 특약 3종), 사망유족급여(5천만원 → 5천만원~1.2억원), 상해・질병치료급여금(150만원 → 입원의료비 5,000만원, 통원의료비 중 외래 20만원, 통원의료비 중 처방조제비 10만원)

  * 보험료 : 농업인과 동일하게 운영(국가 50%, 지자체・농협 등 25% 내외, 자부담 25% 내외)

3)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품목별 생산자·단체, 주요 생산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

- 지자체 홍보지, 전문지, 보도자료, 기고, 산림조합 입·출금기, 생산자 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임업신문, 산림경영지(분기별), 임우회지(매월) 등

○ 각 기관의 임업분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자, 임업인, 산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과정별 연 1~4회)

-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특화품목전문지도원 등 대상 교육

  * 소득담당자 교육, 생산자 간담회, 각종 교육 추진 시 재해보험 교육 시간을 반영

- 산림교육원, 임업인종합연수원, 임업진흥원, 산림조합(산림버섯연구센터) 등 교육기관별 임업재해보험 교육시간 편성 및 안내자료 배포

○ 재배 임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품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상품개선 추진

- 참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 품목별 전문가, 재배 임가

- 해당품목 : 5개(떫은감·밤·대추·복분자·표고)

- 협의사항 : 상품개선, 홍보, 보험료 지원, 품목·지역 확대 등 주요사항 협의

4)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인상 및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지원

ㅇ 재해피해 임가 소득보전을 위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인상

- ’15년에 인상되지 않은 13개 품목의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인상 추진

  * 대추비가림시설(5종), 약용류, 머루, 다래, 산양삼, 약초류, 톱밥배지표고, 농약대(2종)

- 단가 인상을 위한 시설비 시장가격 조사 및 관계부처와 협업 추진

  * 임업분야 단가 자료조사 및 대응자료 구축(2월까지), 국민안전처 협의 추진(3~6월)

ㅇ 태풍, 강풍 등 임산물 자연재해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구축

- 재해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피해복구(재해복구비, 융자금) 지원

5)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에 임목 포함을 위한 협업 추진

- 임목보험 필요예산을 ’17년 농업재해보험 중기사업 및 예산요구에 반영

  * 재해보험 운영비(순보험료의 15%) 및 초기 사업 소요예산 추가반영

- ’17년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를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로 선정

ㅇ 산림조합중앙회의 보험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이행

- 재해보험 판매 임산물 선정, 임산물재해보험시스템 보완, 보험요율 및 상품인가, 약관, 국가재보험 약정체결, 시범사업 테스트,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라. 추진일정

ㅇ 임업인과 농업인안전보험 통합 운영 : 2016. 1월부터

ㅇ 농업재해보험에 예산반영 추진 및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사업 참여 준비 : 2016. 1월부터

ㅇ 자연재난 복구비용 조정단가 협의자료 구축 : 2016. 2월

ㅇ 떫은 감 종합위험방식 전환 시범사업 및 低 자기부담 비율적용 : 2016. 2월

ㅇ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 2016. 2월(밤·대추)·4월(표고)·9월(복분자)·12월(감)

ㅇ 자연재난 복구비용 조정단가 합동고시 : 2016. 7월

ㅇ 오미자 시범사업(종합위험방식) 추진 : 2016. 10월

ㅇ 자연재해(태풍, 폭설 등) 피해복구 지원(재해복구비, 융자금) : 연중

ㅇ 임업재해보험 인지도 제고 홍보 및 교육 : 연중

ㅇ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운영 준비(국가재보험, 상품인가, 약관 등) : 2016. 12월까지

27.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관리

목 표

◇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내 녹색공간 확충 및 사후관리 철저
- ㅇ 녹색쌈지숲 조성 : 99개소(49㏊) 9,331백만원
- ㅇ 산림공원 조성 : 22개소(81㏊) 7,550백만원
- ㅇ 생활환경숲 조성 : 62개소(59㏊) 12,380백만원

◇ 도시숲 확대를 위한 대상지 사전확보 및 도시숲법 제정 추진

가. 정책여건

ㅇ 2015년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국민-전문가들은 도시숲 조성을 꾸준히 만족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평가

* 도시숲 조성은 교육문화분야 10대 정책 중 2위, 40개 정부 주요정책 중 6위[7)]

ㅇ 국민 1인당 생활권내 도시숲 면적이 국제 권고기준에 미달하고, 국민들도 도시숲 면적이 부족하다고 인식[8)]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내 도시숲 면적(8.3㎡)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9㎡)에 미달하고, 국민들도 도시숲을 추가 조성해야한다고 응답(79.2%)

ㅇ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시간 활용 등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권 내 녹색공간 확충에 대한 수요와 참여 욕구 급증

※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2015. 한국갤럽)
- 도시내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85.5%)
- 도시숲 조성 및 지원사업은 산림정책 중 확대해야한다는 의견(76.5%)

나. 기본방향

ㅇ 도시숲이 체험 및 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나무와 꽃 등으로 자연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정자·분수 등 시설물은 최대한 지양

ㅇ 도시숲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행정 추진

ㅇ 도시숲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 제20조에 의한 "도시림등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철저

7) 동아일보-고려대 정부학연구소 공동 평가(2015. 11월)
8)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조사(2015. 12월, 리서치랩)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가) 녹색쌈지숲·생활환경숲 조성

① 대상지

ㅇ 녹색쌈지숲 : 시민들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건물사이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

ㅇ 생활환경숲 :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옥상·벽면녹화)과 그 주변지역,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 하천·제방부지 등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해 조성이 필요한 지역

② 조성방법

ㅇ 대상지의 규모, 인접 지역의 생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

- 동·읍 또는 시·군·구내의 기존 도시숲 배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

ㅇ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공원형, 경관형 등은 생태환경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 주민 이용도와 숲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시설 도입
- 숲의 기능과 함께 지속적인 산림문화(이야기) 공간을 조성

ㅇ 시설물 위주의 인위적 사업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조성

- 잔디밭 조성이나 관상수 식재 중심의 인위적 조성방식 지양
- 시설물은 이용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
- 편의시설, 기반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도시숲 조성사업비 외의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시설

ㅇ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 추진

- 토양이 척박한 경우 토양개량 등 먼저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계획단계부터 대책마련 후 조성 추진

ㅇ 교목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되 관목·자생 초화류 보완식재

- 고가 위주의 제한된 수종보다는 면적, 위치 등을 감안 다양한 식생 도입
- 주변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한 적정수종을 선정하고, 관목류 및 자생 초화류를 섞어 심어 심미적 경관 창출

* 식재 가능한 밀원수종 및 야생화 식재를 확대하여 경관개선 및 관광자원화

ㅇ 식재규격 등 엄정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실명제 도입
- 식재목의 규격검사 외에도 건강성·수목 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조성기간,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관 등 도시숲 조성 실명제 도입

ㅇ 독립적인 비오톱(Biotop)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

ㅇ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 거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 인공지반녹화, 벽면녹화 등 다양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ㅇ 도시농업 체험이 가능한 개소는 농업부서를 참여시켜 설계 반영
-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공한지, 관수가능지 등 사후관리 용이 지역

나) 산림공원 조성

① 대상지

ㅇ 도시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내 국·공유지의 산림
- 면지역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 다른 법에 의한 제약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이미 취한 지역

ㅇ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용도가 높은 산림공원 확대 조성

ㅇ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소관 사업은 이용도가 높은 도심의 산림과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예정지를 이용하여 추진하되 다른 법에 의한 제한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 도시숲 조성·관리의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장기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

② 조성방법

ㅇ 자연적·사회적 및 인문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하되 경관적 요소를 반영하여 조성
-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은 공원형 및 방풍·방음형으로 조성
- 도심 속에 고립되어 방치된 경우에는 생태형으로 조성

* 식재 가능한 밀원수종 및 야생화 식재를 확대하여 경관개선 및 관광자원화

ㅇ 사업은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성
- 조망점 중심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경관 숲가꾸기 실시
- 보완식재가 필요할 경우 경관조림사업 실시

ㅇ 시설물은 이용도 및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설치
-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입지여건과 이용도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주변 숲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ㅇ 자연재해의 안전성을 고려한 수목식재 및 이용시설물 설치
-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
- 과다한 이용으로 훼손된 산림공원은 복구사업 반영 등 재해안전성 확보

다)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ㅇ 신규 조성지는 유아숲체험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ㅇ 식재 가능한 밀원수종 및 야생화 식재를 확대하여 경관개선 및 관광자원화

ㅇ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

ㅇ 기 조성된 도시숲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 수시 보완

라) 금호강 생활 숲(대구시민의 숲) 조성 사업

ㅇ 쓰레기 매립장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형 도시숲 조성

ㅇ 사업내용 : 천년의 숲, 국제교류의 숲, 테마 숲, 생태탐방로 등

ㅇ 사업규모 : 30억원(총사업비 70억원, 사업기간 ’15～’17년, 국비 50%)

ㅇ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 사업시행중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시민 · 기업 참여로 민 · 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마) 지자체「도시림 조성·관리계획」수립

ㅇ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철저
- 지방자치단체 수립 여부를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등에 반영
- 각 시·도별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수립실적 제출(상·하반기)

바)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ㅇ 도시숲 조성 시 안내표지판 및 나무이름표 의무적으로 부착

-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9] 안내표지판 및 수목표찰 배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에 따라 신규 사업설계 시 반영하여 설치 의무화

•사업완료 후 도시숲 조성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 산림청 명칭 및 로고를 포함하여 설치

•수종별 나무이름표를 조성하는 도시숲 내 설치

ㅇ 조성된 도시숲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강화

-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입간판, 수목표찰 등 시설물 수시 보완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 및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신규 조성 시 적극 반영

사)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및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① 제10회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시상

ㅇ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이 우수한 모범 사례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사례를 전파

ㅇ 사업개요

- 공모대상 : '06년도 이후 신규로 조성한 도시숲 및 가로수
- 신청방법 : 각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신청
- 추진절차 : 계획 통보 및 접수(8월) → 심사(9월) → 시상(10월)

* 시상은 도시숲 담당자 워크숍 시 병행 추진

- 시상내용 : 7개 기관(대상 1,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대상(국무총리상 및 상금), 최우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상금), 우수・장려(산림청장상 및 상금)

ㅇ 사례집 발간 : 녹색도시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

---

9)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평균 83.04점) **안내판 설치부분은 13개 항목중 최하점수인 74점으로, 산림청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80%가 답변(2015. ㈜리서치랩)**

② 제8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ㅇ 도시숲 조성 시 인위적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산림형에 가까운 숲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유도

- 기존 공원과는 차별화된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계획·설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함

ㅇ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도시숲 설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 추진절차 : 사전접수(6월) → 작품제출(8월) → 작품심사(9월) → 시상(10월)
- 시상내용 : 11개 작품(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입선 5)

  * 최우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상금), 우수, 장려 및 입선(산림청장상 및 상금)

ㅇ 사례집 발간 및 홍보 : 도시숲 설계 공모·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및 홍보

  * 수상작품 전시 및 홍보

아)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유 및 소통강화

① 도시숲 정책 시책 설명회

ㅇ 도시숲 정책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각 시·도별 사업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회 개최(2월중, 시·도 계장 및 지방청 과장)

② 도시숲 정책 담당자 교육실시

ㅇ 교육목적 : 도시숲 정책 방향 공유 및 관련 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배양

ㅇ 교육대상 : 지자체 도시숲 담당자 200명(기당 100명)

ㅇ 교육기간 : 3월중(2일간 × 2회)

③ 도시숲 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ㅇ 도시숲 정책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

ㅇ 우수사례 등에 대한 지자체 상호간 정보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ㅇ 개최시기 및 장소 : 10월, ’16년 녹색도시 최우수기관(지역)

④ 도시숲 정책 담당자 공무국외 정책연수

ㅇ 목　　적 : 해외 선진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지를 탐방함으로써 새로운 도시숲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선진기술 습득 기회 부여

ㅇ 기간·장소 : 5~6월(5박7일, 잠정) 유럽(2개국, 잠정)

ㅇ 경비부담 : 참여기관 자체 부담

자)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ㅇ 담당업무 : 도시숲 자원조사,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방제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ㅇ 사업규모 : 190명(지자체 151명, 제주 32명, 지방산림청 7명)

ㅇ 사업예산 : 2,890백만원(국비 1,501백만원, 지방비 1,389백만원)

ㅇ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직접사업 100%

ㅇ 선발기준 우선순위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 임업·조경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16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참조

ㅇ 도시녹지관리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에서 3월중, 100명 교육

2) 도시숲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가)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 사전확보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ㅇ 사전확보로 사업 대상지 변경 최소화 및 민간참여 도시숲 조성 대상지 제공

- 사업 대상지를 사전검토 확보하여 대상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 조사된 도시숲 조성 가능지를 시민·기업에게 공지하여 민간참여 활성화

나) 국·공·사유지에 도시숲 조성 활성화 방안 강구

ㅇ 국가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의 토지소유자와 지자체간 5년 이상 무상사용 계약체결로 도시숲을 조성한 사례를 검토하여 지자체 확대 추진

*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1년도부터 12개소 조성운영

다) 도시숲 조성 사업 계약체결 및 집행관리 감독 강화

ㅇ 사업 실행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배치하여 품질향상 제고

- 일정규모(5억원) 이상 사업장은 시·도에서 특별관리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현장책임관의 임무 강화 : 분기별 점검사항을 제출

ㅇ 사고이월 방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타당성 심사 강화

- 각 시·도에서는 '17년도 지특회계 사업신청 이전에 각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심사 검토서 작성 제출(3월까지)

* 심사항목 : 부지여건,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방비 확보여부 등

ㅇ 도시숲 조성 시 지방비 부담금을 녹색자금 등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철저

- 도시숲 계약명을 일관성 있게 지정하여 예산집행 관리 및 적정성 확보

* (예시) '16년 000녹색쌈지숲 조성공사, '16년 산림공원 조성공사(00호지)

ㅇ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이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사업시행 전 보험가입 여부 확인, 추진상황 수시 지도점검 실시

라)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추진 및 제정(안) 마련

ㅇ 조경계와 주기적인 간담회 운영으로 도시숲법 제정 분위기 조성

ㅇ 도시숲법 제정을 위하여 조경계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 도시숲의 범위, 도시숲의 사업시행자, 도시숲관리사 양성 등

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해제에 따른 도시숲 활용방안 강구

ㅇ 국토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대응방안 등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활용방안 강구

- 부처별 대응사례, 활성화 방안(행위제한 완화, 세제혜택 등) 검토
- 편입부지 국·공·사유지 소유자별 도시숲 조성방안 검토

라. 추진일정

- ㅇ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계획 통보 : 2015. 12월
- ㅇ 도시숲 정책 시책 설명회 : 2016. 2월
- ㅇ 도시숲 정책 담당자 실무교육 : 2016. 3월
- ㅇ 도시녹지관리원 교육 : 2016. 3월
- ㅇ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 2016. 3월
- ㅇ 도시숲 조성사업 타당성 심사결과 제출 : 2016. 3월
- ㅇ 민간참여 도시숲 조성 대상지 파악 : 2016. 2~4월
- ㅇ 도시숲 정책 담당자 공무국외 정책연수 : 2016. 5월
- ㅇ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여부 조사 : 2016. 5월
- ㅇ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 2016. 6~10월
- ㅇ 도시숲 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6. 11월
- ㅇ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 지도·점검 : 2016년 분기별
- ㅇ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 2016. 8~10월
- ㅇ 도시숲 조성사업 실적 제출 : 2016. 12월

28. 국민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

목 표
◇ 시민 · 기업이 함께하는 '국민참여 도시녹화운동' 확대 시행 ◇ 도시숲 사랑 캠페인 및 업무협약 체결로 도시녹화 참여율 제고

가. 정책여건

ㅇ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해 경제적 부담이 없는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와 참여 욕구 급증

* 도시숲 월 1회 이상 방문 82.7%[10],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성 및 관리에 76%가 참여 의사 표시[11]

ㅇ 대내적인 다양한 요인 등으로 도시숲 조성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이며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도시숲 조성 시 기업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숲을 확충하고 대국민 녹색복지 서비스 확대

* 국민의 88.7%가 기업의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참여에 찬성[6]

나. 기본방향

ㅇ 도시녹화운동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현장캠페인 실시로 참여 확산

ㅇ 개인·단체·기업의 도시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도시숲 트러스트 구성 · 운영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민과 기업참여 도시숲 확대를 위한 설명회 및 매뉴얼 보급

ㅇ 전국 권역별로 '도시숲 조성 사회공헌 안내 설명회' 확대 실시

- 기업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로 기업 참여 유도

* 5개 권역 : 수도권 지역(중견기업 대상) / 그 외 지역(향토기업, 연고기업 등)

---

10) 도시숲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2015,리서치랩)
11) 6) 도시숲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3,한국갤럽)

- 기업참여 유형에 따라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부 등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 산림청으로 기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우선 알선 기회 부여
- 기존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및 포상 실시

○ 시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드는 도시숲 매뉴얼 보급 확대

- 도시녹화 기부에 따른 참여절차, 참여자 소득공제, 기업이미지 제고 설명

○ 도시숲 이용 유형별 다양한 시민참여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 현장 학습, 유아숲 체험 등 도시숲 이용 유형별 참여·이용 프로그램 개발

○ 조성된 도시숲은 지자체, 기업 및 단체,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체제 유지

- 지자체 또는 기업·단체, 지역주민간의 공동 관리모델 발굴

·개인·단체 등과의 도시녹지 사후관리 위탁(협약) 및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예, [사]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의 도시숲 조성·관리 자체 운영 규정 및 민간참여 제도 등 마련
  * 공모사업 선정 시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2) 국민참여형 '도시숲 사랑 현장 캠페인' 및 언론홍보 확대

○ 범국민적인 시민과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숲 사랑 현장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

- 분기별 전국을 순회하면서 '도시숲 사랑 현장 캠페인' 실시(2/4분기부터 3회)
  * (2014년) '14.10월 대전 대덕구, (2015년) '15.11월 인천 송도

○ 유력 방송·신문사와 공동으로 도시숲의 가치 및 효과 등 중요성에 대해 연중 기획홍보 추진

- 대상별, 테마별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실시

○ 도시녹화운동 홍보 동영상 활용

- 각종 행사, 워크숍, 토론회 등에 홍보동영상 활용으로 도시녹화운동에 대한 홍보 강화(산림청 제작자료 활용)
  * 각 시・도 보유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여 홍보

3)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도시숲 업무협약 및 협의회 구성 추진

ㅇ 도시숲 조성·관리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기반 구축

- 지자체별로 “도시숲 트러스트”를 구성하여 도시녹화운동 참여 활성화

  * 세부 운영요령은 2014년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방안 참고

ㅇ 도시숲 조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회 구성·운영

-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등과 도시숲 조성 협의회 구성

4)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가) 사업목적

ㅇ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군·구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로 국정과제 이행

나) 사업내용

ㅇ 대　　상 : 지자체별 도시녹화운동에 참여한 기업·단체(2점)

ㅇ 신청방법 : 각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신청

ㅇ 추진절차 : 지자체 녹색도시우수사례 선정과 병행하여 추진

라. 추진일정

ㅇ 도시숲 조성 사회공헌 안내 설명회 : 2016. 분기별(5, 8, 11월)

ㅇ 도시녹화 현장 캠페인 : 2016. 분기별(5, 8, 11월)

ㅇ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공모 : 2016. 8~10월

ㅇ 도시녹화운동 전개 추진실적 제출 : 2016. 12월

29. 명상숲 조성·관리

목 표

◇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녹색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자연적으로 조성

ㅇ 명상숲 조성 : 113개소, 3,490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명상숲 조성 수요 증가

- 명상숲 조성의 품질향상 및 명상숲을 활용한 친자연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필요성 증대

ㅇ 생활권내 녹색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등 사업대상지 확대 요구 증가

- 학교 및 주변 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유형별 명상숲 조성 요구

나. 기본방향

ㅇ 녹색쉼터 제공을 위한 친자연적 명상숲 조성

ㅇ 명상숲 품질향상 및 활용·사후관리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명상숲 조성사업

ㅇ 사업규모 : ('15) 106개소, 3,220백만원 → ('16) 113개소, 3,490백만원

ㅇ 지원형태 : 개소당 6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기간 : 1년

ㅇ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 자연성 확보

·자연스러운 숲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그 주변지역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

·자연성을 떨어뜨리는 조형적이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지양

- 기능성 실현

·명상숲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소음방지, 기후조절, 정서함양 등 숲이 갖는 기능을 강화

- 교육성 강화

·명상숲 조성사업에 교육적 활용방안을 반영하여 조성

·명상숲 내에 자연체험, 생태학습, 도시농업 체험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

* 단, 도시농업 체험공간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배치

- 기타

·명상숲에 '야생화원'을 조성하여 우리꽃 야생화에 대한 관심 제고

* 야생화 식재기준(10% 이상)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을 사업계획에 반영

·수목 선정시 나라꽃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무궁화 식재를 적극 확대

ㅇ 품질향상을 위한「명상숲 조성 설계 심의회」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생, 동문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여 명상숲의 품질향상 제고

* 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의 질 향상 제고

ㅇ 명상숲 조성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개

- 교육부·교육청을 대상으로 많은 학교에서 명상숲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발송

- 명상숲의 기대효과(청소년의 정서함양 도모 및 학교폭력 절감) 홍보 전개

ㅇ 명상숲 사후관리 강화 및 활용도 제고

- 명상숲 조성학교와 기초자치단체간 조성협약서를 체결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상숲 조성 유지·보전

* 학교 내 시설물 설치로 인해 명상숲 생장공간이 축소되는 경우, 축소면적을 확보하여 나무 옮겨심기 등을 통해 당초 조성 면적으로 유지 · 관리

- 시·도별 명상숲 조성분야, 활용 및 사후관리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관리

- 교사 등에 의한 '명상숲 활용 프로그램' 운용 및 '명상숲 가이드북' 등을 통해 교육적 활용도 제고

2) '기업-정부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참여 학교숲 확대

ㅇ 기업(삼성화재)참여 학교숲 조성 계획 : ('12~'15) 20개교 → ('16) 8개교

ㅇ 기업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정부간 실무협의회 개최 및 지역 연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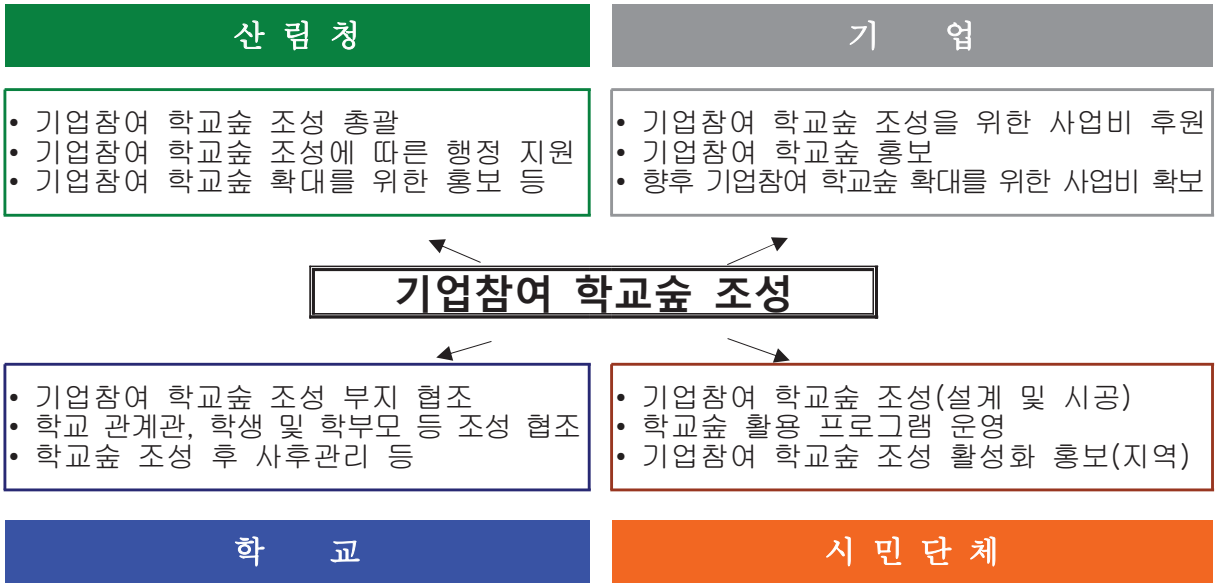

3)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

ㅇ 사업개요

- 운영인원 : 45명
- 소요예산 : 700백만원(국비 350백만원/지방비 350백만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ㅇ 주요업무

- 명상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 및 사후 관리지원
  ·수종 선정 등 식재계획 수립시 컨설팅 지원
  ·주요 수종별 특성 및 식재·관리 요령 자문
- 명상숲의 교육적 활용 지원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 자문
  ·명상숲 활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모니터링
  ·학교구성원,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형성방법 안내
- 명상숲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업무(현장지원 포함)
  ·명상숲 자원 조사 및 DB구축,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 기타 선발권자가 명상숲의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추진일정

ㅇ 명상숲 조성사업

- 2016년 명상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 : 2016. 1~3월
- 시·도별 '명상숲 조성 설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2016. 1~12월
- 2016년 명상숲 및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 2016. 3~12월
- 2016년 명상숲 조성사업 현장 점검 : 2016년 분기별
- 명상숲 우수사례 선정 : 2016. 10월
- 2016년 명상숲 조성사업 완료보고 : 2017. 1월
- 2017년 명상숲 조성사업 수요조사 : 2016. 4월
- 2017년 명상숲 조성학교 공고 및 선정 : 2016. 9~11월

ㅇ 명상숲코디네이터 운영

- 2016년 명상숲코디네이터 채용공고 및 선발 : 2016. 1월
- 2016년 명상숲코디네이터 채용 결과보고 : 2016. 2월
- 2016년 명상숲코디네이터 교육훈련 : 2016. 3월
- 2016년 명상숲코디네이터 운영 결과보고 : 2017. 1월

30. 산림경관 개선사업 추진

목 표

◇ 산림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 ㅇ 산림경관모델숲(국유림) 조성 : 2개소, 1,400백만원
- ㅇ 산림조경숲 조성 : 7개소, 1,600백만원
- ㅇ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 10개소, 210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국토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림경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ㅇ 새로운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분야 녹색인프라 중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ㅇ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ㅇ 업무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경관모델숲 조성

가) 백두대간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추진(3년차)

ㅇ 목 적 : 경관 수요가 큰 산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ㅇ 사업기간 : 2014 ~ 2016년(3년)

ㅇ 사업내용 : 조망점 발굴·정비, 경관수종 식재, 불량 임분 개선 등

ㅇ 사업규모 : 1개소, 10억원(총사업비 30억원), 국고 100%

ㅇ 사업시행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ㅇ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산림사업의 시행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 사업시행 시 복합경관숲 조성 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본 지침에 없는 사업별 공종 등은 기존 산림사업에 대한 지침, 규정, 매뉴얼 등을 반영
- 코레일 및 봉화군과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ㅇ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조성 시범사업 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
- 시범사업 성과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

나) 대관령 소나무숲 조성(2년차)

ㅇ 목　　적 : 대관령지역 소나무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숲으로 조성하여 자연학습 교육 및 산림생태관광지로 활용

ㅇ 사업기간 : 2015 ~ 2017년(3년)

ㅇ 사업내용 : 조망점 발굴·정비, 경관수종 식재, 불량 임분 개선 등

ㅇ 사업규모 : 1개소, 4억원(총사업비 10억원), 국고 100%

ㅇ 사업시행 :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ㅇ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산림사업의 시행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 사업시행 시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지침에 없는 사업별 공종 등은 기존 산림사업에 대한 지침, 규정, 매뉴얼 등을 반영

ㅇ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조성 시범사업 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참고

2) 산림조경숲 조성

ㅇ 목　　적 : 조경소재를 주제로 도시내 특색 있는 조경숲을 조성하여 체험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기간 : '16 ~ (계속)

ㅇ 사업내용 : 다양한 조경소재를 주제로 한 경관숲 조성

- 조경수 전시포, 야생화원, 무궁화원 등 특색 있는 조경숲 조성
- 조경 소재 전시 공간, 조경인 참여숲 조성 등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통한 도시숲 조성 참여 유도

ㅇ 사업규모 : 1,000백만원/개소(규모에 따라 증감 가능)

ㅇ 사업대상 : 접근성이 양호한 지자체 소유 산림

  *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시 산림이외 토지도 가능

ㅇ 사업시행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ㅇ '16년 조성계획 : 7개소, 3,200백만원(지방비 포함)

- (울산) 1개소, 1,000백만원, (경북) 6개소, 2,200백만원

3)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ㅇ 목　　적 : 도로변 산림경관을 창출하여 국토산림경관 이미지 제고

ㅇ 사업기간 : '16 ~ (계속)

ㅇ 사업내용 : 산림경관을 저해하는 불량임지, 공한지 등 임내정리 및 훼손지 복구 후 꽃피는 나무 및 야생화 등 식재

ㅇ 사업규모 : 30백만원/개소

  * 식재수종은 산철쭉, 조팝나무, 개나리, 복자기, 산벚, 산수유, 이팝 등

ㅇ 사업시행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조건 : 보조(국비50%, 지방비 50%)

ㅇ '16년 조성계획 : 10개소, 420백만원(지방비 포함)

- (경기) 2개소, 60백만원, (경북) 5개소, 300백만원, (경남) 3개소, 60백만원

4) 산림경관 업무개선 및 신규 사업 적극 발굴

ㅇ 산림경관 조성 시범사업 효과분석 및 세부실행방안 마련
- 백두대간 복합경관숲, 대관령 소나무숲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 분석
-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현장 적용
- 공·사유림의 대리경영 등을 통한 사업실행 검토
  ·근거리 가시권의 조망권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유림에 대한 경관정비를 위해 산림청 주관의 대행 사업 검토

ㅇ 기재부 예산확보를 위한 산림경관 신규 사업 발굴
- 고속도로 연접지역 산림경관 개선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산림경관 개선 등

라. 추진일정

ㅇ 산림경관숲 사업대상지 선정 : 2015. 12월

ㅇ 산림경관숲 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 2016. 1월

ㅇ 산림경관숲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2016. 1～ 4월

ㅇ 산림경관숲 사업 시공 및 감리 : 2016. 4 ～ 12월

ㅇ 2017년 산림경관숲 사업 수요조사 : 2016. 4월

ㅇ 2017년 산림경관숲 대상지 심사 및 선정 : 2016. 9~11월

ㅇ 2016년 산림경관숲 사업 완료보고 : 2017. 1월

31. 전통마을숲 복원

목 표

◇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생태·환경적 기능을 회복시켜 산림문화자산으로 육성

ㅇ 전통마을숲 복원 : 37개소, 1,610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전통마을숲은 역사·풍수·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호하고 관리하여 산림문화 자산으로 육성할 필요성 대두

ㅇ 산업화·도시화, 전통마을숲의 가치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전통마을숲의 훼손·단절이 우려

나. 기본방향

ㅇ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하여 산림경관자원으로 육성

ㅇ 토착신앙, 역사·전설·구전 등 마을숲의 문화자산을 계승하여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산림문화 공간으로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전통마을숲 복원

ㅇ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추진

- ('15년) 8개소 415백만원 → ('16년) 37개소 1,610백만원

ㅇ 복원방향

- 전통마을숲의 유래, 역사·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마을의 특색 있는 산림문화자산으로 조성
- 전통마을숲이 지닌 경관/풍수, 환경조절, 문화/종교, 휴양/관광, 자연/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마을숲으로 조성
- 마을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산림문화와 역사를 잇고 마을숲을 교육 및 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성화

ㅇ 전통마을숲 선정기준
- 전통마을숲의 역사·문화적, 경관·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
-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주민참여 의사가 분명한 곳
- 전통마을숲 복원을 통해서 농산어촌의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곳
- 마을숲의 복원 및 후계림 조성 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계획된 곳
- 사료에서 파악되고 있는 전통마을숲 중 훼손되었거나 소실된 곳 등

ㅇ 복원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 마을숲 복원시 인공적 시설물 최대한 지양
- 마을숲에서 이루어지던 당산제 등 지역 문화축제는 계승발전
- 마을숲이 이용객 등에 의한 답압으로 인해 수목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관목류, 야생화 식재 및 돌담 등을 설치
- 마을숲 내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생하는 지역은 활엽수로 인해 침엽수가 피압되지 않도록 수형 조절

ㅇ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의 품질향상 및 자료의 통합관리
- 복원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복원매뉴얼 마련 및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등
  * 전국 전통마을숲 1,335개소 중 77개소 복원('03～'15)
- 전국 마을숲 전수조사 및 DB보완
- 전통마을숲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조사 등

ㅇ 전통마을숲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육성
- 전통마을숲 중 역사·문화·전설·토착신앙 등의 가치가 있는 마을숲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정절차는 산림문화자산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추진

라. 추진일정

ㅇ 2016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실시 설계 및 사업 착수 : 2016. 1~3월
ㅇ 2016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시·도별 자문회의 개최 : 2016. 1~3월
ㅇ 2016년 전통마을숲 복원 : 2016. 3~12월
ㅇ 2016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현장 점검 : 2016. 분기별
ㅇ 전통마을숲 전수조사 및 DB보완 : 2016. 2~12월
ㅇ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 2016. 2~12월
ㅇ 2017년 전통마을숲 사업 수요조사 : 2016. 4월
ㅇ 2017년 전통마을숲 대상지 심사 및 선정 : 2016. 9~11월
ㅇ 2016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완료보고 : 2017. 1월

32.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반 강화

목 표

◇ 가로수 조성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 가로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가로수 신규조성 : 325km, 16,614백만원
ㅇ 명품가로숲길 조성 : 172km, 8,495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녹색 네트워크의 핵심요소로서 가로수 조성 확충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로수에 대한 재해 대응력 강화 필요성 대두

ㅇ 정부 3.0에 따른 국민과 쌍방향 소통하는 가로수 정책 요구

나. 기본방향

ㅇ 지역별 기후, 문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로수 조성·관리

ㅇ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1) 가로수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

ㅇ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으로 합리적인 가로경관 확보
- 대로변 : 큰키나무 식재로 운전자 시계확보 및 보행자 녹음제공
- 상가 및 좁은 지역 : 작은키나무, 초화류 식재로 간판가림 민원 해소

ㅇ 향토수종 식재, 수형관리 등을 통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
- 수종 선정 : 지역별 역사·문화·주민선호도 등 반영
- 수형 조절 : 수종별 생리, 주변 환경 특성 등 고려

ㅇ 가로수 생육환경, 관리시설물 개선 등을 통한 건강한 거리 조성
- 수목 생육 : 토양개량, 띠녹지 확대를 통한 투수층 확대 등 생육환경 개선
- 관리 시설 : 지주목, 수목보호덮개 교체 등 가로환경 질 제고

2) 가로수 건강성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생육 지장물 제거 및 개선
- 수목 식재 시 분뜨기에 사용된 고무바, 철사 등 생육 저해 물질 제거
- 겨울철 가로수 장식전구 설치(제거) 및 관리 철저
- 염화칼슘, 기타 피해요인 대응(보호막 설치, 친환경제설제 사용)

ㅇ 태풍 등 재해예방 및 대응력 강화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준수

ㅇ 가로수 수목 생장에 따른 안전시설물 가림 현상 조치
-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가림에 대한 운전 · 보행자 시야 확보
- 지하부 뿌리생육에 따른 보도블록 들림 현상 등 보행 위험요인 제거

3) 가로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

ㅇ GIS기반 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현장관리 지원기능 강화
- 가로수 위치 및 관리이력, 배전선 등 지장물 DB와 연계한 관리기능 제공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7년까지 단계적 구축 및 고도화

ㅇ 가로수 좌표 정보 등 DB 보유 지자체의 시스템 우선 구축 및 고도화 추진
  * 가로수 DB 미보유 지자체에 대한 DB 구축 지원 추진

4) 민·관 협력을 통한 가로수 사후관리 강화

ㅇ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 구축
- 그린오너제(나무돌보미), 봉사활동 등 활성화를 통한 민·관 협력모델 정착
- 병충해, 보호시설물 진단 및 신고를 통한 신속한 대처

ㅇ 도로 관계 부처 및 부서와의 공조체계 구축

ㅇ 한국전력공사, 주변 상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창구 마련

라. 추진일정

ㅇ 가로수 시책 설명회 및 가로수 기술자교육과정 운영 : 2016. 1월

ㅇ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적('15년말) 보고 : 2016. 2월

ㅇ 2015년도 가로수 조성 사업지 현장점검 : 2016. 분기별

ㅇ 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 연중

ㅇ 가로수조성 및 관리실적 보고 : 2016. 12월

ㅇ 관련 부처 간 가로수 업무 협의 및 법령·규정 개정 : 연중

33.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 및 관리 강화

목 표

◇ 무궁화 보급기반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권 내 무궁화 보급 확대

◇ 체계적 보급·관리를 위한 법제화 및 후속조치 추진

ㅇ 무궁화동산 조성 : 17개소, 950백만원

ㅇ 무궁화동산 관리 : 58개소, 310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언론 매체 등의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

ㅇ 일반국민의 무궁화에 대한 인지도와 접촉 빈도가 낮은 실정

ㅇ 무궁화 문화행사 및 교육에 대한 참여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ㅇ 생활권 주변 무궁화 보급 확대 및 체계적 관리

ㅇ 무궁화 문화행사 통합 내실화 및 교육 강화

ㅇ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위한 법제화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공공부문, 민간 상호 협력을 통한 무궁화 보급 확대

ㅇ 유동인구가 많고 관리가 용이한 생활권내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확대

- 조성 : ('15년) 11개소, 600백만원 → ('16년) 17개소, 950백만원

  * '16년부터 국고지원 무궁화관리 사업은 '10년부터 국고 지원으로 조성된 무궁화 동산에 한해 관리 예산 지원

  * 무궁화동산 조성 : (규모) 0.5ha 이상, (사업비) 1억원/개소

ㅇ 도시숲과 연계해 시민·기업·단체 등 민간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 도시녹화운동 추진 시 무궁화 관심 기업 대상 무궁화 식재 적극 권장

ㅇ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무궁화 식재 추진

- 공원, 역, 박물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대한 무궁화 식재 요청
- 자라나는 학생들이 무궁화를 접하고 무궁화 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에 무궁화 묘목 무상지원(4월, 19천본)

  * 교육부 협업과제 : ('14～'17년) 1,109개교 공급, 172천본

2) 법제화와 연계한 무궁화 보급기반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ㅇ 기 조성된 생활권 주변 대규모 무궁화 식재지 집중관리

- 무궁화관리 : ('15년) 21개소, 100백만원 → ('16년) 58개소, 310백만원
-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등 생육관리 철저

ㅇ 공공기관 의무식재 등 묘목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급여건 개선

- 무궁화 묘목 수급 지원을 위해 전국 무궁화 묘목 생산자 및 보유량 등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개
- 무궁화 재배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ㅇ 부적지에 식재된 무궁화 실태조사 및 이식 등 일제 정비 추진

- 시민·무궁화단체 등 민간제보를 활용한 부적정 관리사례 적극 시정

ㅇ "올바른 무궁화 식재·관리지침" 마련 및 지자체 등 통보(1월)

- 무궁화 식재 장소 선정, 부적지에 식재된 무궁화의 정비 기준,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요령, 식재관리 시 적정 및 부적정 사례 등 수록

3) 무궁화 진흥계획 수립 등 법제화 후속조치 추진

ㅇ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무궁화진흥계획 수립

ㅇ 각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할구역 토지에 식재·관리하고 있는 무궁화 개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기관별 보유 무궁화의 규격, 수량, 계통(품종), 관리이력 등 조사

  * 조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각 부처 및 지자체 합동교육 실시

-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식재지, 노거수 등은 좌표 등 위치정보 취득, 관리(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 또는 산림조합 협조)

  * 계통이나 품종 확인이 가능한 6월～10월 중 실시

ㅇ 연차별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5년 단위 무궁화진흥계획 수립

- 무궁화 식재·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보급·관리 현황, 품종보존·연구 및 개발, 무궁화 생산기반 등에 관한 사항 반영

4) 관계 기관 등 업무협력체계 구축

ㅇ 국가상징 관련 부처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내실화

ㅇ 무궁화 양묘업계, 관련 단체 등과 무궁화 시장화 발전체계 구축

- 무궁화 신품종 개발 및 유통업계 상생방안 마련

라. 추진일정

ㅇ 무궁화 재배자 현황 조사 추진 : 2016. 1월

ㅇ 올바른 무궁화 식재·관리지침 마련 및 시달 : 2016. 1월

ㅇ 무궁화 문화행사 위탁사업 계약 추진 : 2016. 1∼2월

ㅇ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실적('15년말) 보고 : 2016. 2월

ㅇ 2016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장 점검 : 2016. 분기별

ㅇ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 2016. 7∼8월

* 중앙 및 지역행사 병행 추진

ㅇ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실적 보고 : 2016. 12월

ㅇ 관련 부처 간 업무 협의 및 법령·규정 개정 : 연중

산림이용국 소관

1.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산지규제 제도개선 추진

목 표

◇ 현장 중심의 산지규제 개선 및 생태적 산지이용 적용기준 마련
◇ 제도개선 완료 과제의 현장정착을 통한 효과 극대화

가. 정책여건

ㅇ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은 10,517ha로 '09년 이후 경기침체 영향으로 감소되다가 '14년 증가 추세로 반등

- 산지전용 면적(ha) : ('10) 11,851 → ('11) 8,026 → ('12) 7,753 → ('13) 7,432 → ('14) 8,544

ㅇ 범정부적으로 민간 투자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며, 입지규제 완화 등 집중적 산지규제 개선에도 제도개선 요구는 지속

ㅇ 반면, 산지 개발에 따른 훼손우려, 이해집단간 의견 상충 등이 증가하고 있어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 필요

ㅇ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다변화된 토지이용수요에 맞도록 산지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타부처 토지이용법령과의 상호 연계성을 점검 필요

- 산악관광 등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 도입 및 다양한 토지이용 형태에 따른 타지목 토지와 산지의 범위 및 용도제한 등의 중복 및 상충성 검토

나. 기본방향

ㅇ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지관리 체계를 유지하되,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산지는 해당 입지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마련

ㅇ 효율적 제도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의견수렴 체계 구축

ㅇ 완료된 제도개선 과제는 규제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성과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업인 등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추진

ㅇ 임업 현장을 찾아가고 국민공모제,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 추진

- 임산물재배지 궤도시설 허용, 정자 등 보전산지 행위제한 현실화 등
- 임업인 단체 의견수렴, 지자체 산지 및 산림소득 담당자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후 산지관리법령 개정 추진

ㅇ 법제처·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검토 반영

- 법령해석 및 불합리한 제도로 개선 권고한 규정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

2) 산악관광 등 생태적 산지이용을 위한 세부 적용기준 마련

ㅇ 저밀도·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차별화

- 산지전용기준 이원화 : 생태적 산지전용지역의 허가기준 강화

  * 경사도, 표고, 비탈면 수직높이, 건축물 규격 및 적용공법 등 별도 기준 마련

ㅇ 문체부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구역지정 기준, 도입시설 및 허가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시 산림분야 의견 반영

- 산지관리법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의무화 등 연계 반영

  * 문체부 주관 협업으로「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마련

3) 부처간 합동 제도개선 등 협업을 통한 산지분야 성과 도출

ㅇ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점검회의 등의 규제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타부처와 관련된 합동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산지분야의 선제적 성과 창출

- 관광·산업입지 등 복합규제에 대한 산지분야 개선사항 발굴 반영
-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제적인 제도개선 실시

ㅇ「산지관리법」과 관련된 타부처 법령의 제·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 대응

-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

고,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타법률의 제·개정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

4) 산지의 이용 등과 관련한 주요 민원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

ㅇ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민원내용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 반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반영

ㅇ 자주 질의되는 민원에 대하여 Q&A 및 사례집을 통한 민원해소

- 산지이용과 관련한 Q&A 및 사례집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해소

5)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역량강화 및 투명한 운영기반 마련

ㅇ 심의 대상지의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현장심의를 확대하고, 현장워크숍 및 토론회를 통한 심의역량 강화

ㅇ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세부 심의기준 및 유형별 심의사례를 정리한 매뉴얼을 통한 심의내용 객관화 및 표준화를 기해 투명한 위원회 운영기반 마련

6)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교육실시 및 현장 점검

ㅇ 산지이용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홍보 강화 및 담당자 교육실시

-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언론홍보 강화 및 담당자교육(연중, 개정 즉시)
- 산림교육원 산지관리자반 교육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교육(연 2회)

ㅇ 산지관리 워크숍(6월), 현장 담당자 합동세미나 등을 통한 산지관련 법령의 운영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공유

라. 추진일정

ㅇ 타부처 및 지자체 제도개선 수요조사 : 2016. 2월중

ㅇ 산지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임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 및 현장토론회 개최 : 2016. 3~4월중

ㅇ 지자체 산지 및 산림소득 담당자 합동토론회 개최 : 2016. 상 · 하반기 중

ㅇ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별 현장토론 및 합동 워크숍 개최 : 2016. 상 · 하반기 중

ㅇ 지자체·타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016. 4월중

ㅇ 산지분야 Q&A 및 사례집 제작 · 배부 : 2016. 상반기 중

ㅇ 산지관리워크숍 개최 : 2016. 6월중

ㅇ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016. 하반기 중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 : 연중(월 2회)

2.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목 표

◇ 산지관리계획에 기반한 계획적 · 전략적 산지관리체계 구축
◇ 선제적 산지관리제도 관련 연구 및 산지 전문가 네트워크화 구축
◇ 체계적인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산지관리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 전국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체계(기본-지역계획) 시행으로 합리적 · 계획적 산지관리체계 기반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산지관련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 인력풀 확보 등 산지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나. 기본방향

○ 「산지관리기본 · 지역계획」에 따라 획일적 산지관리체계가 아닌 산림경관권역(27개) 및 산지유역유형(5개)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 지역적 맞춤형 산지관리체계 구축·운영

○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산지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매10년 주기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전국산지 대상의 산지구분(10년 주기) 관련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추진
- 산지구분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타당성조사 실시
·'16년(1차)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경북, 경남
·'17년(2차)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18년(3차) : 산지구분도 작성·검수 및 고시도면 산지정보체계 반영
  * 전국 17개 시·도를 2권역으로 구분하여 1·2차년도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실시, 3차년도 산지구분도 작성 및 고시 추진

ㅇ 산지이용실태 인프라 구축 및 계획적 산지관리 지원을 위한 산지이용실태조사 추진

2) 「산지관리기본-지역계획」에 따라 합리적 · 전략적 산지관리체계 실현

ㅇ 획일적 산지관리체계가 아닌 산림경관권역(27개) 및 산지유역유형(5개)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산지관리체계 구축·운영

- 산지관리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보전산지 지정 ·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마련 추진

ㅇ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산줄기연결망 공간 DB 구축' 연구 실시를 통해 '통합적 산줄기연결망' 관련 정책 마련

- 백두대간축 이외 정맥 · 기맥 · 지맥과 「산지관리법령」 상의 보전산지와의 법적 · 논리적 연관성 확보 및 산줄기 관련 산지관리제도개선 사항 연구

  * 산지전용협의 기준 등으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ㅇ 산지관리계획의 핵심인 '산지경관 관리' 및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심화연구 실시

- 전국 산지경관 특성분석 및 자원조사체계 연구('16)
- 백두대간-민북지역-보전산지의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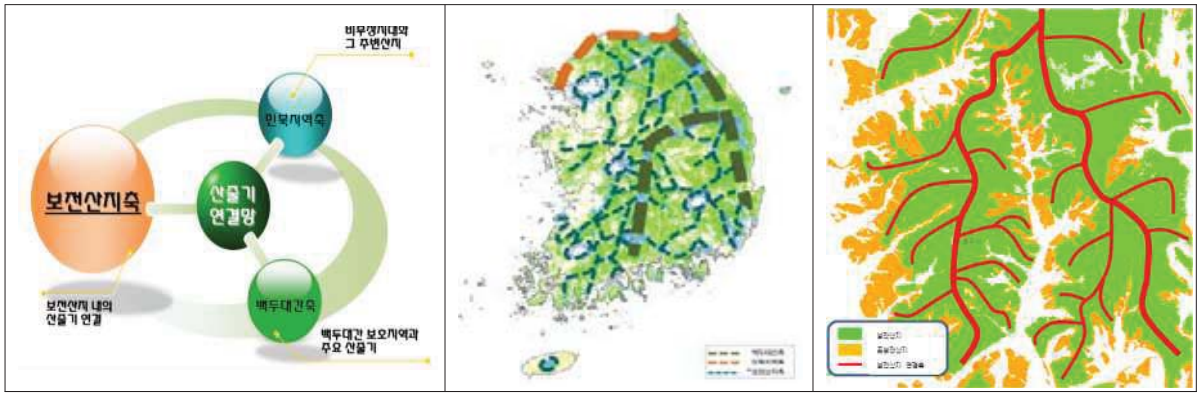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개념도　　공주시 인근' 보전산지축 발췌한 산지구분도

3) 「산지山地포럼」 활성화를 통한 산지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강화

ㅇ 국내 · 외 정기심포지엄 및 학술 등 세미나를 상·하반기 각각 연 2회 개최

4)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국민맞춤형 산지관리정보체계 추진

ㅇ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방식으로 산지전용·복구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합

리적인 산지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강화

ㅇ 산지정보시스템 연계항목에 대한 자료 활용도 제고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에 산지정보시스템 활용과정을 운영하여 현업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ㅇ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지역 등의 신규지정, 해제, 변경내역 등을 산지이용정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개선 최적화

5) 산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위탁관리 추진

ㅇ 「산지관리법」 제3조의5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로 산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위탁

-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간 위탁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 추진

ㅇ 시스템 성능 및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산지구분 조정에 필수적인 지역·지구 변동사항 등 DB모니터링 및 산지정보시스템 지원 고객지원센터 전담 운용(☎1588-3493)

라. 추진일정

ㅇ 산줄기연결망 체계 제도화를 위한 연구 추진

-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3차년도 연구용역 추진 : 2016. 1월~6월
-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수시

ㅇ 「산지山地포럼」 개최

- 「산지山地포럼」 세미나 개최 : 2016. 상반기
- 「산지山地포럼」 정기 심포지엄 개최 (국내 · 국외) : 2016. 하반기

ㅇ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사업 추진 : 2016. 3월

ㅇ 산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2016. 2월

ㅇ 산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위탁관리 추진 : 2016. 2월

ㅇ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활용교육 실시 : 2016. 3월, 6월, 8월, 10월

ㅇ 산지관리정보체계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 관리 : 연중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강화

목 표
◇ 민북지역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한 산지관리 전문기관 육성 ◇ 민북지역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ㅇ 민북지역은 지난 50년간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우수한 산림생태계,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역임
- 반면, 군사시설 및 농지 조성 등 불법산지 훼손이 발생되고 있음

ㅇ 비무장지대 일원을 대상으로 각종 특화사업 및 개발사업이 부처별, 지자체별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산지이용 수요 및 개발압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제1차 민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계획('15～'17)이 수립됨에 따라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체계적인 산지관리 체계가 구축됨

ㅇ 군사시설 밀집 등 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제약사항이 많아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나. 기본방향

ㅇ 한국산지보전협회(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민북지역 산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민북지역 산지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

ㅇ 민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계획을 반영한 체계적인 산지관리

ㅇ 민북지역 산지관리 강화 및 산지훼손을 예방을 위한 군부대 등 교육사업 추진

ㅇ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민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산지관리 추진

ㅇ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및 산지전용허가 검토 시 산지관리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협의

ㅇ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을 수립·시행(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2) 민북지역 산지관리 전문기관 육성 : 한국산지보전협회

ㅇ 한국산지보전협회(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민북지역 산지관리 업무를 위탁

*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5억원 반영('16년)

3) 민북지역 산지관리 강화 및 군부대 등 교육사업 추진

ㅇ '15년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무허가 국방·군사시설 등 재해 우려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정상화 방안 모색
- 농경지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국유림관리소에 통보하여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

ㅇ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지속 추진('15～'17)

- 민북지역 산지관리 교육교재 개발 및 군부대 등 교육사업 추진

4) 민북지역 산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ㅇ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북지역 산지관리 사업설명회 개최('16.2월)

-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공유·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라. 추진일정

ㅇ '15년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통보 : 2016. 1월

ㅇ 민북지역 산지관리 사업설명회 개최 : 2016. 2월

ㅇ 민북지역 모니터링 용역 추진 : 2016. 3월~11월(9개월)

ㅇ 군부대 등 교육사업 추진 : 2016. 7월

4.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관리 강화

목 표

◇ 안정적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운영
◇ 토석채취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토석채취지 관리 강화
◇ 산지훼손지 실태조사를 통해 적기 복구 등 사후관리 강화

가. 정책여건

ㅇ 토석산업은 건설공사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 주거환경개선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나 토석채취 사업장은 환경피해 및 재해에 극히 취약

ㅇ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훼손우려 등으로 반대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음

ㅇ 산지전용 후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하여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

나. 기본방향

ㅇ 토석자원의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석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채취·가공산업 지원체계 마련
- 석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으로 관련 산업기반 안정화 및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자연친화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한편,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토석채취사업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

ㅇ 산지훼손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 지도점검을 통해 적기 복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ㅇ 석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채취·가공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ㅇ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석재산업 기반 조성 등 지원, 우수사업자 인증 등을 통한 석재산업 발전 기반 조성

2) 토석채취사업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및 교육 강화

ㅇ 토석채취사업장 내 안전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신규, 34시간)을 실시

- 제도도입 첫 해임을 고려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하여 신규 교육 위주로 교육 실시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기준 등에 대한 교육 실시(전국 통합 교육)

3)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지 실태점검

ㅇ 채석단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 개소 : 2015년말 채석단지 지정된 22개소
- 조사시기 : 2016. 4∼10월
- 조사방법 : 전문가와 합동 실시
- 조사내용 : 사업계획서, 심의조건 이행 여부 및 운영실태 조사

ㅇ 전국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실태 점검

- 도별 자체 조사 및 합동조사 실시(4∼10월)

4)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ㅇ 산지전용 · 채광지 · 토석채취지에 대한 복구이행 실태 점검

- 허가기간이 종료된 사업지에 대한 복구이행 상황 점검
- 복구비 관리 실태 점검
- 도별 자체 조사 및 공동조사(도별 3개소 이상) 실시
- 시기 : 2016년 상반기

ㅇ 불법전용지 관리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조사 실시

- 조사주체 : 한국산지보전협회(산지관리법 제44조의2)
- 조사시기 : 2016년 연중
- ('15) 서울·광주·제주·전라남도 조사 → ('16) 울산·부산·강원 3개 시·도 조사
- 해당 자체단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복구명령 등 사후관리 조치

라. 추진일정

ㅇ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2016. 6월

ㅇ 도별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2016. 6 ~ 10월

ㅇ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복구이행 상황 점검 : 2016. 상반기

ㅇ 불법전용지 실태조사 : 연중

ㅇ 토석채취허가지 및 채석단지에 대한 실태점검 : 2016. 4 ~ 10월

5. 국유림 경영계획 운영 및 제도 내실화

목 표

◇ 국유림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 경영계획 운영제도 내실화 및 시스템 운용 강화
ㅇ 산림조사 149천ha·경영계획 수립 112천ha(사업비 1,865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대외) 기후변화협약은 탄소흡수원 인정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요구

ㅇ (대내) 산림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의 기초자료로서 경영계획의 바른 역할 요구

나. 기본방향

ㅇ 국유림의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수요 충족과 현장여건에 부합한 경영계획 수립

ㅇ 주요 수종별 생장 모니터링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경영계획의 토대 마련

ㅇ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의 운영 정상화로 국유림 경영사업의 효율적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유림의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 내실화

가) 일반 사항

ㅇ 산림조사 전문기관 및 용역업체 등 전문가 협의체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기술사협회, 산림사업법인 등

ㅇ 산림조사는 직영 산림조사, 용역 산림조사로 구분 추진하고 용역사업은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ㅇ 산림조사의 표준지 조사 방법을 가급적 원형조사방법으로 정착시키고, 직영 및 용역조사 단가 상향조정 등 불합리한 사항 개선 추진

ㅇ 산림조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
- 시범적으로 매화산 경영모델림에서 산림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지선정 방법 임황·지황조사 등 산림조사 요령에 대한 집중교육 실시
- 산림조사 전문기관(산림조합 중앙회)과 합동으로 교육이수(2박3일×3회)

○ ’16년도 차기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사업계획

(단위 : ㏊)

구분	산림조사		경영계획		비고
	경영계획구	사업량	경영계획구	사업량	
계	15개소	149,106	12개소	112,289	
북부청	안성, 광주, 인제, 양구, 보수	55,141	연천, 기린	32,958	
동부청	현북, 보수	8,995	주천	11,925	
남부청	포항, 평해, 밀양, 보수	35,293	안동, 상주, 김해	23,485	
중부청	영동, 천안, 아산, 보수	17,381	충주, 보은, 보령	19,719	
서부청	군산, 영암, 곡성, 거제, 보수	32,296	정읍, 나주, 보성	24,202	

○ 국유림경영계획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제5차 지역산림계획(변경), 제1차 국유림종합계획(변경)과 연계하여 수립·운영

○ 국립공원지역이 포함되는 경영계획구에 대하여는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사업계획 사전 협의

나)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산림조사

○ ’16년도 사업 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계	149,106	100	55,141	8,995	35,293	17,381	32,296
직 영	59,130	39.7	22,115	3,460	14,037	6,518	13,000
위탁(용역)	89,976	60.3	33,026	5,535	21,256	10,863	19,296

○ **산림조사 일반**

- 직영조사 및 위탁(용역) 조사방법을 활용하고 조사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기 착수로 동절기 이전에 현장조사 완료
- 산림조사 시 맞춤형조림지도, 산림입지토양도, 위성사진 등 기 구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 모바일 야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조사 업무의 효율성 강화
-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건의 사항 등도 수집하여 국유림경영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 국유림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주어 지역주민 스스로 국유림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직영 산림조사**

- 조사반별 월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따라 조사 추진
- 현장조사는 가급적 비녹음기에 실시하고 녹음기에는 조사자료 정리 및 조사결과 전산입력 등 내업 실시

○ **용역 산림조사**

- 세부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초 산림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
- 정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맞춤형조림지도, 산림기능평가도, 산림입지토양도, 산림입지조사자료, 재산목록, 임야도, 국유림종합계획서 등 산림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판단자료를 지원
- 산림조사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산림조사 요령을 공유하기 위하여 직영조사반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실시(년 2회)

○ **'16년도 산림조사 사업계획량 조사·보고**

- 계획기간 만료 경영계획구, 신규매수지, 사권설정지 해제, 권리보전, 교환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16년도 산림조사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 경영계획 기간이 조기 도래하는 신규 매수 대상지 등은 보수조사에서 보류 가능

다)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 **'16년도 사업 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계획구수	12	2	1	3	3	3
면 적	112,289	32,958	11,925	23,485	19,719	24,202

○ **국유림경영계획 일반**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계획 작성
- 산림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지와 부합되도록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과 연계된 경영계획서 작성

-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경영계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작성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및 참고자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

- 운영요령 일부개정에 맞도록 참고자료 정비 및 현장 업무능률 향상 도모
- 국유림 경영정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산림조사 요령, 평가분야 등 현실과 부합하도록 재정비

라) 국유림경영계획 평가 실시

○ **'16년도 실행평가 대상 경영계획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제주
연간실행 실적분석	104	27	18	21	18	19	1
중간평가 (2012~)	4	2 (철원, 인천)	1 (장성)	-	-	1 (함양)	-
예비평가 (2009~)	10	4 (창촌, 서울, 고양, 여주)	1 (정선)	3 (문경, 현동, 울산)	2 (공주, 논산)	-	-
최종평가 (2007~)	12	2 (연천, 기린)	1 (주천)	3 (안동, 상주, 김해)	3 (충주, 보은, 보령)	3 (정읍, 나주, 보성)	-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연간실행실적분석·중간·예비·최종평가)는 경영계획구별로 실시

- 실행평가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보고
- 연간실행실적분석은 중간평가에 활용토록 당해 연도 사업 특이사항, 사업계획 대비 실적의 증감을 자세히 기재

○ 예비평가는 8년차 경영계획구 대상이며, 부득이 2년간은 예비·최종평가를 함께 추진하고 '17년부터는 예비평가만 실시

- 기관별로 최종평가를 상반기에 실행·제출하고, 예비평가는 하반기 이행 완료

○ 최종평가 등 평가 분석결과는 차기 경영계획 수립시 반영 개선

- 미래지향적인 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제시, 각종 사업계획 등 변경

마)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및 경영계획 변경절차 이행 철저

○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등 운영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및 변경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행

- 산림자원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영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변경절차 사전 이행 등 관리 강화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 · 임도 · 사방분야 등은 누락 없이 입력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완성도 제고
- 국유림경영DB 및 임 · 소반도 현행화 완료 및 기능보완 등
- 국유림경영계획 자료를 미리 파악하여 DB구축에 차질 없도록 협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DB구축 및 확인 점검
  ·연도별로 산림사업 실적 등 소관 국유림의 사업현황 등(별도 점검)
  * '15년도 DB구축된 경영계획구(64개)에 대하여는 DB 완성도를 높일 것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 e-푸른샘(산림청지식포탈시스템)의 "행정정보시스템-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접속
- 지방청 및 관리소 팀장급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운영상황 점검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청별 순회 교육(통계담당관실, 1~2월)
- 신규 업무 담당자 등 지방청 자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 활성화 도모

2) 시범경영계획구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영계획 선도적 역할 수행

○ 시범경영계획구 운영 지침,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등 연계성을 충분히 숙지 이해 한 후 사업추진

〈시범계획구 현황 : 6개소 31,625㏊〉

구분	북부(홍천)	동부(평창)		남부(영주)	중부(보은)	서부(무주)	비고
개소	1	2		1	1	1	
경영계획구명	가리산	가리왕산	봉평	장군봉	샘봉산	민주지산	
면 적(㏊)	6,564	4,026	8,628	8,401	1,342	2,664	

○ 시범경영계획구 운영시 새로운 산림경영·관리기술 개발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 운영 추진은 가능
- 시범경영계획구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은 경영전문관이 수행
  *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예규 제627호) 참조

○ 연도별 시범경영계획구 내의 산림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적 파악
- 계획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연간실행실적 분석을 통한 사업물량 확인과 당년도 사업계획 예산으로 수립

3) 주요수종의 산림사업 전·후 모니터링사업 표준지 관리

ㅇ 소나무·낙엽송·잣나무임지에 대하여 간벌사업 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간벌사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 및 종다양성의 변화 모니터링

* 관학연구사업으로(주요조림수종 간벌효과 모델개발) 추진 : 128백만원

- 착수·최종보고(본청), 중간보고(남부청), 현장토론(2회, 북부·동부청)

ㅇ 간벌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표준지 관리

ㅇ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협력관계를 지속유지

ㅇ 주요수종 간벌효과 모니터링 표준지 표시 및 관리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선정된 표준지에 경계표시·안내간판 등 표식

·표준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에 5m간격으로 철제 기둥을 설치한 후 지름 2cm이상의 로프(반영구 보전 가능)로 경계를 설치

·연구용역용 표준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

* 안내판 규격 : 가로 40cm×세로 30cm×높이 1.5m의 아연각으로 제작

-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자료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간벌)은 연구자와 협의하여 지방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

* 표준지 설치 현황 : 135개소 405개(잣나무 30개소 90개, 소나무 23개소 69개, 낙엽송 45개소 135개, 굴참 7개소 21개)

ㅇ 국유림관리소에서는 표준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1년에 2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ㅇ 표준지 경계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용역 연구진과 협의하여 표준지 경계를 보수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라. 추진일정

ㅇ 국유림경영계획 연간 실행실적 분석(국유림관리소), 중간·예비평가(지방산림청) 실행 및 반영 : 2016. 4/4분기(최종평가 2/4분기)

ㅇ '16년도 산림조사(경영계획구별) 계획량 보고 : 2016. 1월

ㅇ '16년도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완료보고 : 2016. 12월

ㅇ 국유림경영계획 작성현황 보고(총괄) 보고(경영정보시스템) : 2016. 1월

ㅇ 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연간·중간·예비·최종) 결과 보고 : 2016. 1월, 12월

ㅇ 국유림경영·관리 분야 상·하반기 현장 점검 : 2016. 6월, 11월

6. 국유림이용 활성화 정책사업 추진

목 표

◇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경영하는 국유림 활용 확대

가. 정책여건

ㅇ (대외)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국유림 수요 증가

ㅇ (대내) 독자적인 국유림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문제 다수 발생

나. 기본방향

ㅇ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협력 강화

ㅇ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산림사업 추진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ㅇ 국유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에 기여

다. 세부추진계획

1) 지방청과의 국유림정책 강화 등 발전방안 도모

ㅇ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장이 참여하는 국유림정책 토론회(하반기) 개최
- 전문가, 일선 기관장 등과 국유림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전방안 도모
- 국유림경영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정책 방향 공감대 형성

ㅇ 일선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국유림 정책추진 협의회 운영
- 분기별로 현장의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발굴 등 해결방안 마련
- 지방청과 관리소의 업무담당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유림경영 활력 도모
-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 등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협의

2) 국유림경영·관리 사업의 성과 제고

ㅇ 일본 임야청과 지방산림청 간의 국유림 경영정책 및 정보교류 추진
- 일본 임야청과 임목생산, 복합경영 등 현장교류 연수 추진

ㅇ 지방청별 국유림경영·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워크숍 개최(11월)
-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 공유 및 특화사업 사례발표를 통한 격려·시상

ㅇ 전문가(평가위원 등) 참여 상·하반기 국유림경영·관리 현장 점검(6, 11월)

ㅇ 산림조사·국유림경영계획 담당자 현장 실무교육 신규 편성·운영(3회)

3)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ㅇ 지방청별로 국유림경영관리 전반에 걸쳐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 개최
- 「국유림법」 제7조 및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

ㅇ 구성위원으로는 산림의 경영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주민 등을 다양하게 위촉
  * 자문위원 중 공무원(국립대 교수 포함)이 5명 이내 일 것
-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
- 위원회 소집,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국유림사업 등을 자문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4조(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일정 면적의 구애 없이 주요사안(재산처분 등)이 있을시 그를 포함하여 개최·심의 추진
- 국유림 처분에 관한 자문사항은 개정 법률에 따라 자문위원회 운영 강화

ㅇ 지방산림청별 예산배정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비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26,000	5,200	5,200	5,200	5,200	5,200	

4) 관리소별 산림경영모델 특화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ㅇ 국유림관리소별 현장여건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특화사업 추진
- 모범적인 국유림 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의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추진
  *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 용인 석포숲(기부재산) 조성 운영 등

ㅇ 국유림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ㅇ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 사업에 대한 협력과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ㅇ 국민과 임업인,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홍보·활용

5) 산림경영대행제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활성화

○ 기존의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경영대행 협약체결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산림사업 이행

* 사업비는 숲가꾸기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림사업 추진

○ 타부처 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대행 사업 적극 추진

- 경영대행 사업 가능임지의 협약체결은 가급적 장기 계약으로 추진
- 타부처 산림경영대행 지역의 산림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운영

○ 지방청별 타부처 국유림경영대행 협약체결 현황

지방청	관리소	대행면적(㎡)	산림소유자	대행기간	비고
계	**14건**	**80,303,730**			
북부청	소계	4,600,000			
	수원	1,730,000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13.10 ~ '18.10.31 (05년)	
	서울	2,060,000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	'13.10 ~ '18.10.31 (05년)	
		810,000	〃	'13.10 ~ '18.10.31 (05년)	
남부청	소계	5,676,379			
	영덕	5,028,533	국방부 (경상시설단)	'14.3.11 ~ '24.3.10 (10년)	
	구미	647,846	〃	'15.4.9 ~ '20.4.8 (05년)	'15년 신규
중부청	소계	44,016,545			
	부여	2,000,977	국방부 (탄약지원사령부)	'11.10.20 ~ '21.9.30 (10년)	
	〃	1,900,000	국가보훈처 (현충원)	'12.12.19 ~ '22.12.18 (10년)	
	충주외3	39,616,253	국방부 (충청시설단)	'13.2.25 ~ '23.2.24 (10년)	
	부여	499,315	교육부 (충남대학교)	'14.11.11 ~ '23.10.31 (10년)	
서부청	소계	26,010,806			
	무주	8,460,000	국방부 (전라시설단)	'13.5.2 ~ '22.5.1 (9년)	
	무주	5,088,168	〃	'14.9.5 ~ '24.9.4 (10년)	
	순천	795,727	〃	'15.11.2 ~ '24.5.25 (10년)	변경계약
	정읍	2,874,210	〃	'15.11.2 ~ '25.11.1 (10년)	'15년 신규
	영암	8,792,701	〃	'15.11.2 ~ '25.11.1 (10년)	〃

6) 국유림 보호협약 활성화 및 무상양여 확대

ㅇ 지역주민과의 보호협약 체결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운영 강화
-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으로 의무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에게 양여 가능
  *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활동, 산림병해충의 예찰·구제 등 방제활동, 임도·사방 등 시설의 보호 및 관리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훼손 우려가 있는 무상양여 구역의 지도감독 강화

ㅇ 무상양여 국유림의 기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지역 주민의 소득 확대를 위한 국유임산물 생산기반 확대 방안
- 국유림내 주민 및 연접마을 주민과 산림조합·영림단과 보호협약 확대
- 국가에서 직접 채취가 불가능한 임산물을 산림보호 활동을 한 마을에 전부 또는 일부 무상양여로 산림자원 활용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 국유임산물을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의 종류 - 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가지 -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작업으로 발생된 임산물 -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버섯류・열매류・수액 등의 산림부산물(단, 겨우살이는 제외)

ㅇ 무상양여 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등 개최
- 무상양여 제도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이해당사자와의 실무회의 등 의견수렴
- 국유림보호협약 마을간 상호 연대하여 국유림보호활동 추진방안 마련
  * 산불예방원・병해충예찰단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인력과 협력 활동 강화

라. 추진일정

ㅇ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사업 가능임지 사업계획 수립 : 2016. 상반기

ㅇ 정책강화를 위한 국유림관리소장 현장토론회 개최 : 2016. 하반기

ㅇ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산림사업 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

ㅇ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분기별

ㅇ '15년도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 : 2016. 1월

ㅇ 국유림보호협약 마을(단체 등)의 활동상황 점검 : 2016. 6월

ㅇ 국유임산물 양여 대상 운영실태 점검 : 상·하반기

7. 지방산림청의 활력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

목 표

◇ 국유림행정 일선 기관의 원활한 운영지원으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가. 정책여건

ㅇ 전국적인 국유림 분포로 어려운 현장 근무가 많고 근무 여건이 열악

ㅇ 자연산 선호 및 웰빙의 붐을 타고 국유림의 사용허가 요구 등 민원발생

나. 기본방향

ㅇ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임업기술과 행정시스템에 대한 체험위주의 국제적 안목배양과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ㅇ 산림수련관의 안전관리 철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과 산림가족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지방산림청 운영지원

ㅇ 국유림경영·관리 분야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산림청 : 국유림경영·관리 분야 공무원 선발 포상
- 지방청 :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ㅇ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해외 정보교류를 위한 정책연수
- 지방청 실무담당자 및 성과 우수 기관에 대한 담당자 해외연수 추진
  · 해외연수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추진하고 금년도 워크숍 발표 등 우수기관 담당자를 연수에 참여토록 기관 배정
- 지방청 요구 시 해외 선진임업 기술교류를 위한 교육 추진
  * '15년도 지방청 특화사업 발표 결과 입상자 해외연수 추가 포함

ㅇ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관사 보증금 인상액 지원에 따른 수요조사
- 지방청별 관사 보증금 인상이 필요한 소요금액(245백만원) 제출(1월)

2) 산림수련관 운영·관리

ㅇ 산림수련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 시설물의 안전 및 시설물 주변 또는 진입로 주변의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산림수련관 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및 이용자 안전시설 관리 철저

ㅇ 산림수련관의 노후시설 분야는 연차적으로 보수공사 추진
- 노후시설은 지방산림청별 필요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보수 추진
  * 정화조 등 보수예산 규모가 큰 경우 기관별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ㅇ 산림수련관 시설물 운영상태 등 현장 점검(상·하반기)

ㅇ 수련관 운영관리
-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낭비요인 수시확인 개선
- '16년도 운영예산 : 269,227천원

기 관 별	계	북부지방청 (설악산)	동부지방청 (양양)	남부지방청 (포항)	중부지방청 (신진도)	서부지방청 (변산)
금액(천원)	269,227	25,378	43,083	53,461	82,028	65,277

* 수련관 안내실에 지역주민 지역특산 임산물 판매처 안내서 및 홍보물 비치

라. 추진일정

ㅇ 지방청 소속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 2016. 상·하반기

ㅇ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 2016. 11∼12월

ㅇ 국유림경영·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분야 우수공무원 선발·포상 : 2016. 11월

ㅇ 산림수련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점검(지방산림청) : 연중

ㅇ '15년도 산림수련관 이용현황 등 실적 제출 : '16. 1월

8. 산림경영임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목 표

◇ 공·사유림 매수, 교환 등을 통한 산림경영임지 지속 확보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산 일제 정비

ㅇ '16년 경영임지 매수 8,001ha(사업비 671억 원) -

가. 정책여건

ㅇ (대외)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산림보호구역 등 법정 제한림 지역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국유림 확대 필요

ㅇ (대내) 국유림 확대재원 확보가 어려워 보존부적합 재산, 장기 대부·사용허가지, 타부처 국유림 등의 교환 등을 통한 경영임지 확대가 필요

나. 기본방향

ㅇ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로 국유림이 고루 분포되도록 매수 추진

ㅇ 보존 부적합한 장기 대부·사용허가 재산,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재산은 가능한 한 경영임지와 교환을 적극 추진

ㅇ 산림 외의 용도로 타부처에서 장기적으로 사용중인 재산을 일제 조사·정리하여 사용승인(관리전환) 처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에 기여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유림 매수

※ '16년도 예산 확보(11,507ha, 67,151백만원 → 5.83백만원/ha당)

☞ 경영임지 매수 : 10,850ha 54,250백만원

☞ 공익임지 매수 : 67ha 8,375백만원(곶자왈 : 제주특별자치도)

☞ 대한석탄공사 : 590ha 2,950백만원

☞ 수목원 완충지 : 0.5㏊ 1,576백만원

가) 지방청별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ha, 백만원)

기관별	계		산림경영임지		공 익 임 지							
					석공임야		소양강 탁수저감		광릉 완충지역 제주 곶자왈		기타 (임도부지 등)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8,001	67,151	7,335	54,975	590	2,950	2	300	60.5	7,576	13.5	1,350
북부청	225	2,725	220	2,125	0	0	2	300	0	0	3	300
동부청	403.5	2,547	210	1,247	190	950	0	0	0	0	3.5	350
남부청	2,152.5	13,693	1,750	11,443	400	2,000	0	0	0	0	2.5	250
중부청	1,652	16,769	1,650	16,569	0	0	0	0	0	0	2	200
서부청	3,507.5	23,841	3,505	23,591	0	0	0	0	0	0	2.5	250
수목원	0.5	1,576	0	0	0	0	0	0	0.5	1,576	0	0
제 주	60	6,000	0	0	0	0	0	0	60	6,000	0	0

→ 본 예산은 부대비(입목조사, 감정수수료 등)가 제외된 순수 토지매입비(목:410)임

* **산림경영임지** 매수는 실거래 단가를 감안하여 지역별 사업량 및 단가를 조정하여 추진

- (계획) 10,850ha, 500만원/ha ⇒ **(조정) 7,335ha, 750만원/ha**

나) 추진요령

① 공통사항

ㅇ 국유림 분포률이 높은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 제한지역 등 국가관리가 꼭 필요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지구·지정된 산림을 위주로 매수하고, 국유림 분포률이 낮은 지역은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유림 우선 매수

ㅇ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공유림 등 매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과 분산 소규모 또는 기존 국유림과 원거리로 이격된 재산(매수기준 불부합 재산)과 또는 재산가격이 고가인 재산은 매수 지양

ㅇ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수 절차와 감정평가 자료 제공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행위를 공개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는 임야는 취득 제한 등 엄격 심사

* 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제외

- 감정평가법인에 자료제공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수준으로 공개

ㅇ 매수대상지내 입목조사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목가격이 재산가격 결정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목조사 실시

- 매수대상지가 30ha 이상인 경우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산림조합중앙회, 법인, 기술사사무소, 산림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조사 의뢰하여 현장조사

ㅇ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 시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의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할 것

ㅇ 홈페이지(지자체 포함),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현수막, 전단지, 반상회지, 스티커, 광고 전광판 등 모든 수단과 방법 등을 찾아 연중 홍보

☞ 특히 『2015년 사유림매수 홍보사례 리플릿』을 참고하여 기관 여건에 맞는 홍보사례를 최대한 응용하여 사유림 매수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 바람

② 산림경영임지 및 보전림

ㅇ 기관별 국유림 분포률과 신청된 물량 및 지가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배정하되, ha당 단가는 집행기관별 차등하여 추진

- 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가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매수 계획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아울러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양질의 경영임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는 각 지방청 매수 계획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기준 단가와 관계없이 우수한 사유림을 매수하되 사전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매수 목적과 세부 활용 계획에 대한 자문절차를 거친 후 최종 승인 받아 추진하도록 함

ㅇ 국가 경영임지는 국유림 안 또는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집약적으로 경영·관리가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

ㅇ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위주로 매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 「산림보호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며 국유림관리소별 계획대비 20%범위 내에서 매수 추진하되, 기관별 연간 매수계획 물량 확보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 참고로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공원관리청이 매수하도록 되어 있음

ㅇ 산림경영임지에 개재·연접된 토지(전·답 등)는 현실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토지인 상태로는 매수를 금지함. 다만 토지의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거나 현황이 임야인 경우, 매도자의 요청에 따라 현황대로 감정하기로 한 경우 ha당 매수단가를 고려하여 취득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수 검토

③ 산림경영임지 매수사업 민간위탁

ㅇ 사유림 매수 사업량 일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추진(토지매입비 68억원)

- 지방산림청 실정에 맞게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지역을 지정하여 각 지방의 직접 매수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산림 소유자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
- 일반적인 산림경영 임지와 보전림 등을 매수하되 해당 관리소 기준단가에 맞는 취득 가능한 공·사유림을 매수하도록 사전 담당자 교육 추진

ㅇ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지방산림청장이 사유림매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매도승낙서 접수, 현지조사, 매수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유림 매수업무 일체의 대리권을 행사
- 수탁자와 국유림관리소간 매도신청접수 상황을 매월 1회 보고토록 함
- 수탁자는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라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하는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담당자 교육 후 사유림 매수업무를 수행 하도록 조치
- 인근(유사)재산에 비하여 매수 단가가 높다거나 소유권 이동이 빈번하였던 재산 등은 여러 방면으로 확인 검토
- 현실적으로 매수 단가의 큰폭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므로 올해 조정된 단가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매수하도록 조치
- 위탁수수료는 매수 실적에 따라 정산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성과분석, 문제 및 개선방안(건의사항 포함) 제출

ㅇ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행위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

④ 대한석탄공사 산업비림 매수

ㅇ 대한석탄공사의 **“산업비림”**은 국가의 산림정책에 따라 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던 산림으로 그 목적의 달성이 완료된 산림은 산림청에서 매수 후 경영 관리하는 것이 당초의 산업비림의 소유 취지를 살리는 것임

- 2014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한석탄공사 소유 임야 매수할 것을 요청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

ㅇ 대한석탄공사 소유 임야 중 임목 생육상태·임목밀도 등 임상이 우량하고 접근로 등 지리적인 여건이 양호하여 장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하여 경영계획 수립 경영

- 매수 계획량(590ha, 2,950백만원)
  - ■ 동부지방청 190ha 950백만원, 남부지방청 400ha 2,000백만원

< '산림비림' 등 참고자료>

◈ "산업비림"이란?

○ 구「산림법」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다음자에게 소유를 명하여 소유의무자가 산업용의 특정목적으로 소유하였던 산림임

- **"산업비림"**의 소유를 권장 받은 자 : 펄프제조업자, 탄광업자,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자.

→ 원목을 이용·가공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입목을 육성해서 사업용으로 사용케 함으로서 벌채로 인한 황폐화 방지 및 필요시 사업자 소유의 원목을 신속히 공급하여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관련법

○ 산업비림의 소유 : 구「산림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법 제16조)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을 재료로 이용하는 기업자에게 산업비림으로 산림을 소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0조)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1. 펄프제조업, 2. 탄광업, 3. 연간 5,000㎥이상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 "분수림" 이란?

○ 산업용 원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국가 산림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묘목을 식재하는 등 입목을 가꾼 산림

◈ 대한석탄공사 산업비림 장기 매수 계획

○ 위 치 : 강원도, 경상북도, 전남, 전북, 충북

○ 매수계획 : 805필지, 6,808ha('15년→'19년)

- **연간 1,360ha 규모로 5년간 매수**

○ 소요예산 : 경영임지 매수 476억원(ha당 7백만원)

◈ '15년도 석탄공사 소유임야 매수 실적(계획/실적) : 474ha/692ha(146%)

○ 동부청(계획/실적): 237ha/145ha(61%)

○ 남부청(계획/실적): 237ha/547ha(230%)

⑤ **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ㅇ 강원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소양강 상류인 양구군(해안지구), 홍천군(자운지구), 인제군(가아지구) 지역의 산림과 인접한 고랭지 밭 등을 매수

ㅇ 대상지 선정시에는 실제 토사유출방지 효과가 큰 곳을 위주로 매수하여 예산투자의 실효성을 높임

* 추진배경 :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환경부)에 따라 산림청은 협조부처로서 국유림관리과는 "산림과 연접된 개간토지 매수를 통한 산림복원"을 위해 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를 2008년부터 매수 추진

⑥ **제주 곶자왈 보전림**

ㅇ 희귀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단지화가 되도록 매수 추진

- 조천(선흘)·한경곶자왈 지역 위주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수 추진
- 공유지분의 산림(토지 포함)은 면적 과반수 이상의 지분 소유자가 매도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곶자왈 보전림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매수 후 곶자왈 보전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추진배경 : '07~'09, '11 국정감사시 김우남의원 "곶자왈 국가매수관리 제기"

- 2009년부터 단계별 매수계획에 따라 곶자왈 매수추진, 현재 2단계 추진 중

⑦ **광릉 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보존**

ㅇ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의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광릉숲 완충지역내 토지 매수(0.5ha 1,576백만원)

- 완충지역 지정 현황 : 1,845필지 572㏊ 4,402억원(남양주 216, 포천 356㏊)

* 법적근거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19조의3

ㅇ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 보존지역 완충지역 매수와 관련하여 재산의 활용도 등 매수 대상지 주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릉숲 보존·관리에 필요한 대상지를 우선 매수하고 매수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철저

⑧ **임도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 또는 국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ㅇ 산림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임도부지,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편입부지 등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 각 지방청은 매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익임지(기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매수 목적과 매수 후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 승인 요청
- 연차별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매수 예산 범위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토지 우선 매입

2) 교환 제도를 활용한 국유림 확대

ㅇ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은 매각 또는 교환 추진하여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

- 안허가 등 협의 시 부득이한 경우에만 매각으로 추진, 그 외는 교환 조건으로 협의

ㅇ 5ha이내 국유림을 대부받아 5년이상 사용한 경우와 2ha이내 면적을 사용허가 받아 10년이상 사용한 경우(종류재구분 검토 선행) 국유림을 교환 처분할 수 있도록 국유림법 개정 시행(2015.9.28.)

-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한 교환 조건을 충족한 수대부자의 경우 주변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산림으로의 환원이 불가한 경우 교환을 검토하여 국유림 확대 정책에 기여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한 국유림의 경우 종류재구분 조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교환을 검토하여 추진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5항 검토 철저

ㅇ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연고매각 대상 국유림의 처분은 매각 또는 교환으로 추진

- 기간갱신 도래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연고매각 대상이 되는 수대부자에게 연고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공지하여 산림으로 환원이 안되는 연고매각 대상이 되는 대부지 처분 적극 검토

ㅇ 교환 취득·처분 때에는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할 것. 다만, 공유림 등의 소유자가 입목조사를 생략할 것을 원하면 생략할 수 있음

- 입목조사는 사유림 매수 시 입목조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은 소유자가 각각 부담
- 감정평가 기관 선정은 공개적으로 신뢰성이 입증된 감정평가법인 중 2곳을 선정하여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되, 민원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기관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을 목록화하여 그 중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3)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집행

ㅇ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연간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득하거나 처분(매각·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을 파악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계상

- 각 지방청은 ’17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5월말까지 제출
-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에는 취득·처분, 행정재산 사용승인, 개발 및 사용허가·대부 등 국유재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영

  * 201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산림분야) 국유림관리과-3677(’15.11.25)호 참조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토보상 등도 협의단계에서 사전 파악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 후 집행

- 예산집행 전 디지털예산시스템에 일선관서 승인 또는 자체승인 형태로 입력

ㅇ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었더라도 환경부가 요청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저촉되거나, 당해 연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처분지침』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말 것

- 엄격한 실질심사 후 관련법령 및 『국유재산종합계획』,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처분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집행
- 당해연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

ㅇ 2016년도 국유재산처분지침 변경사항 이행 철저

- 「국유재산법」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법5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16년도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처분지침 제8조의 2

4) 국유재산 일반관리

ㅇ 「국유재산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인 후 제출하되, 청·관사, 양묘장, 임도(운재로 시설용 토지 포함), 자연휴양림, 시험포지 등 토지와 산림경영임야로 실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또는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 (예) 임도부지, 마을 숲 조성계획, 저목장 또는 운재로 시설계획 등

ㅇ 국유림의 종류가 현실 이용현황 및 장래 활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유림 구분 기준에 따라 재 구분 조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4호에 따라 대부되지 아니한 불요존국유림이 대부된 국유림과 서로 연접되어 그 합산 면적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

·특별시·광역시 : 2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동 지역만 해당)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 5만㎡ 이상

·그 밖의 지역 : 10만㎡ 이상

ㅇ 분할·합병 등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은 수시로 국유재산대장(카드대장, 전산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즉시 정리한 후 관리

ㅇ 청·관사 증축, 신축인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하고, 그 외 각종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신축이 반영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착공

ㅇ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 외의 용도로 타부처 등에서 장기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 일제정비

- 도로 등 산림 외 용도로 사용중인 공용·공공용 포함 타부처 대부(사용허가),무단점유 중인 재산에 대한 현황 및 시설물을 일제조사 하여 우리 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부처간 사용승인(관리전환) 협의하여 후속조치

5) 타부처 미활용 국유림 사용승인

ㅇ 기획재정부·국방부(DMZ지역) 등 타 부처 소관 국유림을 파악(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일반회계)하여 산림경영관리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경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총괄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ㅇ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림은 해당 관리청 소관의 다른 국유림과 교환 형식으로 상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

ㅇ 조달청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이관 대상으로 분류된 유휴 행정재산 중 우리 청에서 활용하고자 인계하지 않은 재산은 국유림경영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

6) 효율적인 국유림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ㅇ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2009~2050)”의 재검토

- 국유림 확대목표 32%의 타당성, 연도별 사유림매수 물량의 적정성 등

ㅇ 기타 국유림 확대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검토

라. 추진일정

ㅇ 국유림 확대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운영 : 2016. 1. 1부터

ㅇ 사유림매수

- ’16년도 사유림매수 계획 공고 : 2015. 12월
- ’16년도 사유림매수 추진 상황 : 연중(상반기 : 주간, 하반기 : 월간·주간보고)
- ’15년도 사유림매수 실적보고 : 2016. 1월

ㅇ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등

- ’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 수립 : 2016. 1월

  ※ 기획재정부(총괄청)에 제출 : 2016. 1월

- ’1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제출(기획재정부) : 2016. 6월

  ※ 각 지방청은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6.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ㅇ ’15년도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제출 : 2016. 1월

ㅇ ’15년도 유휴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16. 1월

ㅇ ’15년도 국유재산 매각·교환실적 결과보고 : 2016. 1월

ㅇ 국유림의 종류구분 및 재구분 : 연중

ㅇ 타부처 소관 국유림 사용승인 신청 : 연중

9. 국유림 대부지 등 사후관리 강화

목 표

◇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사용허가 및 대부제도 정비
◇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의 입목 매수로 국가직영 확대

가. 정책여건

ㅇ (대외)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따라 국유림 이용 수요 다양화 예상
- '14년 현황 : 전년 대비 귀농 2%(11,144가구), 귀촌 56% 증가(33,442가구)

ㅇ (대내) 조림 대부를 받은 자 등의 대부분이 산림경영기술 및 경제력이 부족하여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산림경영이 부실한 상태

나. 기본방향

ㅇ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등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후관리 체계 확립

ㅇ 합리적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사례 적극 발굴

ㅇ 조림 대부·분수림의 현장조사 강화 및 조기 입목매수로 경영관리 정상화

ㅇ 중앙관서가 미지정된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을 통해 국유림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 국유림 대부 〉

1) 국유림 대부 제도 개선 적극 추진

ㅇ 국유림 대부 제도 관련 국민의견 수렴 방법 다각화
-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국유림 대부 제도 관련 국민 의견(건의)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해당 건의 처리사항을 건의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 국유림 대부 제도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및 홍보를 위해 권역별(지방 산림청별) 설명회 추진

ㅇ 국유림을 이용하고 있는 임업인·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림 대부료 등 부과 방법 개선 추진

- 산림청에서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는 '임가경제통계'의 '임업총수입'을 적용하여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임가경제통계 :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623호)

ㅇ 요존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위해 사용허가 범위 확대 추진

- 임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요존국유림 내 가축 방목 허용 검토
- 국유림과 인·연접하고 있는 공·사유림에서 실행되는 산림사업 지원을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8호 일부개정 추진

2)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등 공간정보 구축

ㅇ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국유림 중복 대부 등 산림행정 오류 사전 예방을 위해 국유림 대부지 등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 해당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의 건수 대비 20% 구축을 1차 목표로 추진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중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등 국유림 이용경계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용, 임업소득사업용 등의 공간정보를 우선 구축
- '15년 상반기 국유림 대부지 등 현황 : 대부(사용허가지) 8,691건 48,271ha / 무단점유지 5,672건 696ha

ㅇ 신규 발생 건은 허가(단속·적발) 시 공간정보를 획득하고 기 관리 건은 실태조사, 기간갱신 등 현장 조사 시 측량 실시

- 신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도를 종이도면 외 캐드파일 등으로 제출 받아 관리
- 측량 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 관리되고 있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신규건 포함)는 국유림관리소 장비(GPS, 모바일 장비 등)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취득

ㅇ 국유림 대부지 등의 공간정보는 속성정보(국유림 대부 대장, 무단점유지 대장) 등과 연계하여 관리

3)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개선 연구모임 운영

ㅇ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개선 연구모임' 구성·운영

- 각 기관의 추천으로 연구모임 참여 직원을 선정함으로써 소속감 및 책임감 증대
- 연구모임 운영의 효율성 및 참여 직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운영회의는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

ㅇ 동아리 운영회의 정례화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개선 사례 적극 발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선 과제 발굴 등

4)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분류 체계 정비

ㅇ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를 바탕으로 (舊)「산림법」의 용도를 참고하여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분류 체계 정비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 분류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시 적용 요율을 기관별로 달리 적용하는 등 문제발생 우려

ㅇ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용도는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기준이 되므로 각 기관의 담당자 의견 수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개선 동아리' 운영회의 등 신중한 검토 과정 필요

5) 체계적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사후관리 추진

ㅇ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강화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을 산림청(본청)에서 직접 검토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사항 관리·감독 철저
- 기관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업무 일관성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 간 교차 실태조사 추진
- 대학교 등에 대부한 학술림 1,885ha에 대한 일제조사 후 합리적인 관리 방안 모색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지

① '16년 신규 대부(사용허가)지 및 기간갱신 대상지

② 조림용 대부지・분수림 설정지 중 '16년 사유입목 매수대상지

③ '15년 실태조사 결과 '양호' 대부(사용허가)지 : 국립산림과학원・수목원은 '양호' 대부지도 모두 조사

④ 공용・공공용 대부(사용허가)지

⑤ 전기・통신・방송 시설 등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부(사용허가)지

ㅇ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지 대장 정보 관리 강화

- 국유림 소재지·지번·지목, 재산종류 등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지 대장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국유림 재산 명세 자료와 정기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각 종 통계자료의 신뢰 확보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적용 법률 및 수대부자(무단점유자) 정보 현행화 추진

ㅇ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기간 관리 강화

- 허가기간이 만료된 채 방치되고 있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분기별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기간갱신 처리 상황 지도·감독
- 지방산림청에서는 기간갱신 대상지를 2개월 단위로 각 관리소에 통보하여 대부(사용허가) 기간갱신 시기 일실 예방

6) 직원 소통·정보 공유를 위해 '찾아가는 대부 컨설팅' 운영

ㅇ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 하도록 컨설팅은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고, 컨설팅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을 위해 컨설팅 내용은 문서, 메모보고 등을 통해 공유

ㅇ 컨설팅은 지방청별 1회 실시(일정은 본청-지방청 간 협의하여 결정)

ㅇ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사항 교육 등을 병행

[건설팅 진행 체계]

대부 관련 현안 및 문제점 발표 (해당기관)	▷	컨설팅 (산림청)	▷	참석자 토론 (협의체 의견수렴 병행)	▷	해결방안 모색
기관별 특이사례, 민원처리 시 문제점 등 공유		산림청 국유림 대부 담당자 컨설팅		공론화된 과제에 대한 참석자 토론		

〈 국유림 무단점유지 관리 〉

7) 국유림 무단점유지 관리 철저

ㅇ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적극 운영

- (근　　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 (운영기간) '15. 9. 28 ∼ '17. 9. 27(2년 간)
- (주요내용)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하여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 추진

구분	적용 기준
주거용 시설부지	특별시·광역시 : 5백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 : 1천제곱미터 이하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이하 관련법에 따른 전통사찰이며, 해당 무단점유지가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
농지	특별시·광역시 : 5천제곱미터 이하 그 외 지역 : 1만제곱미터 이하

- (처리절차)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가 국유림관리소에 접수되면, 현장조사 실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여부 결정
  * 구체적인 처리방법 및 절차 등은 국유림관리과-3079(2015.10.5)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업무 지침 통보' 참조

ㅇ 국유림 무단점유 집중단속기간 운영

- 농번기를 국유림 무단점유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개인 소유 논·밭의 이용면적 확대를 위한 국유림 무단점유 사전 예방
- '15년 상반기 기준 국유림 무단점유 5,672건 중 2,222건(39%)가 경작용

ㅇ 불법 국유림 점유지역 색출 및 조치

- 2012년부터 산지관리과에서 한국산지보전협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항공영상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경계침범, 불법훼손 등을 확인하여 상황별로 조치
  * 2012년 충북지역, 2013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남, 전북, 2014년 대구광역시, 경남, 2015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남, 제주

8) 조림 대부지·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 매수

ㅇ ’16년도 사업량 : 1,500ha / 188천㎥

구 분	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제주도
면적(ha)	1,500	340	340	250	300	220	50
예산(백만원)	2,858	648	648	476	572	419	95

ㅇ 사유입목 매수 절차

사유입목매수계획공고

- 근거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6조
- 산림청장·지방산림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매수계획 공고

▽

사유입목매수계획 안내

- 국유림관리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림용 대부지의 수대부자와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에게 사유입목매수계획 안내문 발송 : 매도 권유

▽

매도승낙서 접수

-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림용 대부지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 받은 자가 사유입목 매도승낙서 제출

▽

현지조사

- 근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9조
- 조사대상지가 30ha 미만일 경우 :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조사
- 조사대사지가 30ha 이상일 경우 : 산림사업법인 등에 조사 의뢰

▽

매수가결 결정

- 근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9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계약체결

- 근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ㅇ 주의사항

-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임도 시설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사유입목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서 등에 임도 시설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설보상 소송 사전 예방
- 매매 대금 지급과 동시에 조림 대부를 받은 자 등에게 대부 계약 등 소멸통지하고, 해당 재산은 종류 재구분 실시
- 적극적인 사유입목 매수 사업을 위해 조림 대부를 받은 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실시

9) 입목조사 위탁사업비 산출 근거 마련

ㅇ 사유입목 매수 대상지가 30ha 이상인 경우 입목조사를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 산출 근거는 부재

- 입목조사 위탁 근거 규정 :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및 제29조

ㅇ 기관별 위탁사업비 산출 방법을 조사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목조사 위탁사업비 산출의 타당한 근거 마련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개선 동아리' 과제로 선정하여 개선 방안 마련 추진

〈국가 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10) 국가소송 승소율 제고 방안 마련

ㅇ 국유림관리소의 국가소송수행 지원을 위해 공익법무관 법률 자문 추진

- 필요 시 본청에 배치된 공익법무관 출장 자문 실시

ㅇ 산림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액 소송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ㅇ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 적극 활용

ㅇ 본청 및 지방청에 배치된 공익법무관 간 국가소송 업무 협의체 구성 및 소송 업무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공익법무관 워크숍 실시

11) 중앙관서 미지정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ㅇ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 상 소유주가 '국'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첨기 등기 등 권리보전 조치 이행

- 산림공간정책지원시스템, 웹 등의 항공사진·위성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태조사 실시
- 권리보전 대상지에 대한 중앙관서 지정요청은 산림청(본청)에서 일괄 처리
- 우선 조사 대상 : 541필, 163ha

라. 추진일정

ㅇ 찾아가는 국유림 대부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 2016. 1월

ㅇ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16. 2월

ㅇ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개선 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 2016. 3월

ㅇ 국유림 무단점유지 집중 단속기간 운영 : 2016. 6월 ~ 9월

ㅇ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기간 현황 점검 : 분기별

ㅇ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 연중

ㅇ 국유림 무단점유지 감시 및 정리 : 연중

ㅇ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 매수 계획 공고 : 2016. 1월

ㅇ 입목조사 위탁사업비 산출 근거 마련 : 2016. 5월

ㅇ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매수 추진 : 연중

ㅇ 공익법무관 법률 자문 : 연중

ㅇ 중앙관서 미지정 국유재산 실태조사 : 연중

ㅇ 공익법무관 국가소송 업무 워크숍 추진 : 연 2회

10. 산림복지법 시행 및 신규제도 준비

목 표

◇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 전문업, 바우처 등 신규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3.28)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가. 정책여건

ㅇ 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

-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 사회여건변화로 야외 휴양수요 급증

ㅇ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수요는 연간 1,30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법·제도적인 기반은 미흡

- 일반인을 위한 산림휴양·치유 서비스 외에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배려 등 산림을 '복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함

ㅇ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

나. 기본방향

ㅇ 산림복지법 시행(3.28)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ㅇ 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ㅇ 산림복지 분야 중추적인 기관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복지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후속조치

ㅇ 「산림복지 진흥계획('16～'20)」 수립

- 산림복지 기초조사 결과('15) 등을 반영하여, 산림복지정책 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ㅇ 산림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산림청 차장) 부위원장(호선, 1명), 총 20～30명으로 구성
- 심의 내용 : 진흥계획의 수립·변경,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 분과위원회(산림복지진흥/산림복지단지) 구성 및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산림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1.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 6인 이내
2.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3인 이상 6인 이내
3. 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1인
4. 농업·농촌·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 1인
5. 중앙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중 각각 2인 이내
6. 농림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 및 안전처의 고공단 7인 이내
7. 민간단체 3인 이내

2) 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

ㅇ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

- (대상) 산림복지소외자로 추정되는 잠재수요는 146.1만명('13년 기준)
  - * '1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35만명, 장애수당수급자 32만명, 장애아동수당수급자 22천명으로 이중 기초생활보장 중복인원을 제외하면 전체 146만명으로 추정
  - * '16년은 시범사업으로 9,100명에게 지급(상반기 - 개인, 하반기 - 시설단위)
- (내용) 1인당 약 10만원 상당의 바우처(신용·체크 카드 형태) 제공
  - *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카드 발급,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이용료 등 사용
- (사용처) 기존 산림휴양 시설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후 사용
  -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대상 시설('15) : 총 6종류, 366개소
-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복권기금 중 공익배분 분야 등) 확보 추진

ㅇ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 제도

- 산림복지 전문업 도입은 시범사업으로 소수기관을 집중 육성하여 성공모델 제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진흥원 시설 시범사업 → 국립 → 공·사립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프로그램 유료화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수요처(학교, 기업, 문화센터 등) 발굴도 병행하여 추진

- (대상)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법인, 단체

- (유형) 산림복지, 산림치유, 숲해설 등 5가지 분야로 구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시행령 제23조 관련)〉

구 분	업무 범위	등록 기준		
		기술인력(자격요건)	자본금	시설
산림복지	산림치유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지도	- 산림치유지도사 5명 이상(1급 2명 이상) -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산림치유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지도	- 산림치유지도사 1급 2명 이상, 2급 3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숲해설	산림에 대한 해설 및 지도·교육	- 숲해설가 3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유아숲 지도	유아 대상 산림교육	-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숲길체험지도	등산 또는 트레킹 해설·지도	- 숲길체험지도사 3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 미등록한 채로 전문업을 영위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

-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복지시설의 서비스 인증제(시설, 전문가, 서비스 등)를 시행

  * 4개 분야, 14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과학원장 세부기준 고시

- 신청에 따라 인증을 하며, 외부 평가단(5인 이내) 평가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증서를 발급

  * 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기준(시행령 제17조 관련)〉

구 분	인증 기준
가. 산림 환경	1) 친환경적인 산림공간을 개발 및 조성하고 관리할 것 2) 자원관리, 오염관리 등 책임 있는 산림환경관리활동을 시행할 것 3) 내·외부 산림자원을 파악하여 아름다운 산림환경 및 경관을 관리할 것
나. 시설	1) 이용객, 환경적 영향력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할 것 2)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고 안정성을 반영하여 책임 있는 시설 운영활동을 시행 3)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활동을 시행할 것 4) 기본시설 및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관리 등 안전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것
다. 프로 그램	1) 체험/해설/교육 등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2) 특색 있고 풍부한 컨텐츠를 구성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3) 전문인력 확보, 사전교육, 이용객 요청 대응 등 프로그램 수준을 제고할 것 4) 환경 및 지역사회를 고려한 책임 있는 프로그램 운영 활동을 시행할 것
라. 운영 및 서비스	1) 전반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운영·관리에 대한 장단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2) 안전관리, 지역사회 참여 등 책임 있는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3) 이용객에게 다양한 서비스(예약·결제·응대·정보제공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만족도 관리 활동을 시행할 것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 지원

ㅇ 진흥원 주요시설의 운영 · 관리 방안 수립

- '16년부터 운영 가능한 산림복지시설은 권역별 산림교육센터를 거점으로 치유의 숲, 수목장림 등을 통합하여 운영

* 3개 지역 거점 숲체원

- 국립횡성숲체원(27명) : 횡성 산림교육센터·치유의 숲, 양평 수목장림
- 국립장성숲체원(22명) : 장성 산림교육센터, 장성 치유의 숲
- 국립칠곡숲체원(15명) : 칠곡 산림교육센터

- '16년 이후 조성이 완료되는 시설은 기존 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특화시켜 조성하되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방안 마련

* 계획시설 : 대전(산림교육), 춘천(산림레포츠), 나주(산림문화 체험형)

* 조성시설 : 청도 산림교육센터('17년 준공), 대관령 치유의 숲('16년 준공), 대운산·양평 치유의 숲('17년 준공), 서천 수목장림('17년 준공)

○ 공정성 절차를 통해 역량 있는 임직원 신규 채용

- (임원 선임) 임원추천위원회를 10명(설립위원 7명 + 청장추천 3명)으로 구성하여 임원선발 추진(모집방법 결정, 후보자 심사 등)
- (직원 선발) 채용전문 리크루트 업체에 위탁하여 '16.1월부터 공개채용 추진(2차는 '16.7월경 채용)

○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 프로그램 시범운영 준비

- 산림치유원, 장성산림교육센터 등 신규 조성시설 시범가동 및 보완 추진

  *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81개 프로그램 개발완료) 시범운영

- 7개 시설의 운영 ·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물품 무상대부 추진

○ 홈페이지, CI 개발 등 용역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개원 준비

- 진흥원 홈페이지 도메인 확보, 컨텐츠 추가, 시설물 예약 · 결재시스템 마련
- 진흥원 CI와 기존 개발된 산림치유원, 숲체원의 BI 연계사용방안 마련
- 기재부 물가정책과와 산림치유원 등 시설사용료 협의 추진 및 확정

라. 추진일정

○ 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 2016. 1월말

○ 직원 채용절차 진행(서류심사,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등) : 2016. 2월

○ 진흥원 임원선임, 직원임용 및 진흥원 개원 : 2016. 4. 1

○ 산림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2016. 4월

○ 산림복지 진흥계획 수립 : 2016. 상반기

11.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목 표

◇ 다양화되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ㅇ 산림휴양시설 확충 : ('15) 32개소(설계5 조성23) → ('16) 31개소(조성 31)

가. 정책여건

ㅇ 계층별, 지역별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서비스 요구 증대

*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증가 : ('10) 944 → ('12) 1,161 → ('14) 1,395만명

ㅇ 자연휴양림의 경영적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

* 자연휴양림 운영 적자액 : ('12) 12 → ('13) 39 → ('14) 45억원

ㅇ 소외계층 지원강화 등 산림휴양시설의 공익기능 강화요구 증대

*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부족('13, 국정과제 평가), 교통약자 시설 부족('14 국정감사, 신정훈 의원), 사회적 약자 이용편의 시설 확충 필요('15 예산심사, 김영록, 안상수 의원)

ㅇ 산림휴양시설 이용객 증가 및 시설노후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전국 자연휴양림(162개소) 중 조성 후 15년 경과 시설 : 87개소(54%, 국 27, 공 45, 사 15)

나. 기본방향

ㅇ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시설유형의 다변화

ㅇ 국·공립 휴양시설 경영수지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ㅇ 산림휴양시설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한 교통약자 편의 시설 확충 및 소외계층 참여 프로그램 제공 확대

ㅇ 안전점검 강화 및 노후시설 보완, 안전시설 확충 등 시설 안전관리 강화

ㅇ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및 안전교육 등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시설유형의 다변화

ㅇ 자연휴양림 조성 : ('15) 설계 3, 조성 8(103억원) → ('16) 조성 14(76억)

- 국립 2개소 : 진도(4년차), 부산(4년차)
- 공립 12개소 : 경기(2), 강원(1), 충북(2), 전북(1), 전남(3), 경북(3)

ㅇ 자연휴양림 보완 : ('15) 89개소, 299억원 → ('16) 88개소, 352억원

- 국립 41, 공립 47(대전2, 강원4, 충북3, 충남11, 전북2, 전남6, 경북9, 경남6, 제주4)

ㅇ 산림욕장 : ('15) 8개소, 14억원 → ('16) 10개소, 12억

- 조성(5) : 경기 34, 전남 1, 경북 1, 보완(5) : 강원 5

ㅇ 숲속야영장 : ('15) 설계 1억원 → ('16) 조성 1년차 9억원

ㅇ 기타 산림휴양시설 : ('15) 12개소, 156억원 → ('16) 11개소 , 150억원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7), 산림바이오휴양밸리(3), 백암숲체험교육장(1)

2) 자연휴양림 경영수지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ㅇ 고객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통한 자연휴양림 이용률 제고

- 지방자치단체, 관광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상품개발로 주중 가동률 제고
- 사립자연휴양림 네이버 modoo(모두)[12] 제작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휴양림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고객유형과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운영

  * 전문기관 연계 ADHD 증후군[13] 산림치유, 자유학기제 연계 산림교육 등

ㅇ 이용자 편리성 강화를 위한 휴양림 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ARS 및 모바일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이용객 접근성 제고

---

12) modoo(모두) :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홈페이지로 제작에서 관리까지 무료로 제공
13)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3) 교통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산림휴양시설 공익기능 강화

ㅇ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숲체험 기회 제공 확대

-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나눔객실) 운영 확대

  * 나눔객실 : ('14년) 21실 → ('15년) 30실 → ('16년) 50실 → ('17년) 70실

-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가정, 사회공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초청행사 개최

  * '15년 소외계층 초청행사(숲으로의 아름다운 동행) 운영실적 : 5회, 1,105명 (장애인가족, 소외아동 등)

ㅇ 교통약자의 숲체험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확충(국립, 4억원)

ㅇ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ADHD증후군 아동 대상 및 스트레스 직군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대상 숲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안전점검 강화 및 시설 보완·확충을 통한 시설 안전관리 강화

ㅇ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 체계적 안전관리 지속 추진

- 4단계 안전점검 체계[14]에 따른 시설별 위험요인 사전 제거

<안전점검 정례화(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지침)>

- 매일점검 :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가 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매일 실시
-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반적인 시설물 등 안전점검
- 반기점검 : 중앙점검반과 함께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ㅇ 자연휴양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시설 확충

- 조성 후 15년이 경과한 공립자연휴양림 대상 복합재해 모니터링 사업 추진

  * 조성 후 15년 경과 공립 자연휴양림 중 시급성이 높은 10개소(경기1, 충남2, 전북2, 전남2, 경북1, 경남2)

14) 4단계 안전점검 체계 : 점검대상 및 규모에 따라 일별, 월별, 반기, 특별 점검으로 구분 추진

- 국립자연휴양림 노후시설 개량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
  * 노후자연휴양림 개량(39개소, 55억원), 기반시설 정비(13개소, 27억원),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5억원), 재해예방시설 확충(10개소, 32억원)
- 지능형 정밀 영상기기(CCTV) 확충을 통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사각지대 최소화(신규설치 35대, 교체공사 124대)

5) 모의훈련 및 안전교육 등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유관기관과 정례적 모의훈련을 통한 현장관리자 위기대응능력 강화
  *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한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각1회 실행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한 상황별 재난안전관리, 대처방안 숙지

6) 산림휴양문화 개선을 위한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지속 추진

○ 홍보매체 다양화 및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 중앙단위 대규모 캠페인 전개 및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실천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 등 대국민 행사 추진
- 기 제작 애니메이션의 지속적인 공중파 송출 및 이슈페러디 영상 제작을 통한 온라인(SNS 등) 확산 유도
- 휴대폰, IT기기 없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세트(윷놀이, 공기 등) 및 보드게임 제작·보급

라. 추진일정

○ 산림휴양시설 계속 및 보완사업 추진 : 2016. 2∼12월

○ 사유자연휴양림 이미지개선사업 공모 및 보조자 선정 : 2016. 3월

○ 자연휴양림 화재예방 안전점검 : 2016. 4월, 11월

○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추진 : 2016. 4∼12월

○ 성수기 대비 산림휴양시설 전수점검 : 2016. 6∼7월

○ 산림휴양시설 조성현황 점검 : 상·하반기 각 1회

○ 산림휴양시설 모의훈련 실시 : 상·하반기 각 1회

〈참 고〉

2016년도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보완 현황

가. 자연휴양림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개소별
합 계	102	42,856	
조 성	14	7,604	
<1년차>	3	1,200	
전 남	1	500	보성(야영장 500)
충 북	1	200	제천(200)
경 북	1	500	안동(720)
<2년차>	2	1,050	
강 원	1	300	철원(300)
충 북	1	750	충북(750)
<3년차>	5	2,656	
전 북	1	200	김제(200)
전 남	2	1,336	구례(436), 완도(900)
경 북	2	1,120	청도(720), 봉화(400)
<4년차>	2	2,238	
부 산	1	-	부산(달음산)
경 기	1	100	연천(100)
전 남	1	2,138	진도(2,138)
<7년차>	1	460	
경 기	1	460	안성(460)
보 완	88	35,252	
국 유	41	18,122	유명산 등 39개소(17,722), 제주(400)
공 유	47	17,130	
대 전	2	2,900	본청(2,900)
경 기	1	150	본청(150)
강 원	4	800	본청(200), 인제(200), 정선(200), 양양(200)
충 북	3	2,900	증평(2,000), 충북(500), 제천(400)
충 남	11	2,450	본청(200), 천안(500), 보령(200), 아산(350), 논산(200), 부여(200), 청양(200), 예산(200), 홍성(200), 금산(200)
전 북	2	500	본청(200), 장수(300)
전 남	6	1,500	여수(300), 구례(100), 보성(400), 화순(400), 장흥(200), 해남(100)
경 북	9	3,880	본청(900), 포항(1,280), 경주(800), 안동(150), 문경(100), 의성(50), 고령(100), 성주(500)
경 남	6	1,250	본청(250), 거제(100), 양산(100), 산청(100), 함양(500), 합천(200)
제 주	4	800	본청(200), 제주(200), 서귀포(400)

나. 산림욕장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개 소 별
산림욕장	10	1,183	
<조성>	5	683	경기(안산173, 시흥130, 양주100), 전남(담양100), 경북(포항180)
<보완>	5	500	강원(홍천100, 속초100, 춘천100, 고성100, 양구100))

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개 소 별
합 계	7	8,512	
조 성	7	8,512	
<2년차>	1	600	부산(사상 600)
<3년차>	2	1,700	경북(영천 500), 경남(함양 1,200)
<4년차>	1	2,000	경남(의령 2,000)
<5년차>	2	2,920	경기(가평 370), 전북(무주 2,550)
<6년차>	1	1,292	충남(금산 1,292)

라.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개 소 별
3년차	1	1,000	제주(서귀포 1,000)

마. 산림휴양시설(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개 소 별
합 계	13	5,280	
사립자연휴양림 지원	8	400	8개 사립자연휴양림(각 50백만원)
산림바이오 휴양밸리 조성	1	2,500	보은(2,500)
휴-포레스트 조성	1	500	옥천(1,800)
웰니스단지 조성	1	500	영동(1,700)
백암 숲체험교육장 조성	1	480	울진(480)
숲속야영장	1	900	국립(춘천)

12. 국립자연휴양림 정책(조성·운영) 패러다임 변화

목 표

◇ 휴양림 신규조성은 지양하고 기존 휴양림 운영 내실화 도모
◇ 국립자연휴양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차별화 및 역할 강화

가. 정책여건

ㅇ 산림휴양서비스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실적 및 만족도는 정체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 ('10) 250 → ('12) 297→ ('13) 293→ ('14) 282만명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 만족도 : ('10) 82.8 → ('12) 81.3 → ('13) 81.9→ ('14) 83.0점

ㅇ 국립자연휴양림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적극적인 경영수지 개선 필요

* 적자액(억원) : ('10)13 → ('11)18 → ('12)31→ ('13)46→ ('14)53억원

나. 기본방향

ㅇ 휴양림 이용객 분석을 통한 휴양림 정책 패러다임 전환

ㅇ 휴양림 운영 실적 및 여건 분석을 통해 휴양림 운영 및 지원 차별화

ㅇ 조직·인력구성 재편을 통한 부서별 정체성 확립 및 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ㅇ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예측 결과를 토대로 휴양림 신규조성은 지양하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가동율이 높은 휴양림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확충 추진

ㅇ (도서형)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살린 진도 자연휴양림 조성

- ('14년) 토목공사 → ('15~'16년) 건축공사 → ('17년) 조경·부대공사, 개장

* 2016년 진도자연휴양림 4차년도 신규조성공사(2,038백만)

2) 운영여건 분석을 통해 기존 휴양림 운영 내실화 도모

ㅇ 효율적인 동절기 폐쇄를 통해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

-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동파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한시적 폐쇄

ㅇ 다양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비큐장 및 물놀이장 보완 운영

- 야영장 중심으로 바비큐장 시범 운영(4개소) 및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휴양림 시설보완 및 관련규정 준수하여 물놀이장 운영(속리산, 변산)

ㅇ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으로 고객 불편 사전 차단 및 경영수지 제고

- (희리산) '16년 보완사업 기간 임시휴장으로 고객안전 확보 및 민원우려 해소

3) 휴양림 운영 실적을 반영한 휴양림 지원 차등 적용

ㅇ 휴양림별 우선 투자를 위한 휴양림 발전토론회를 통해 휴양림 지원 확정

- 운영실적(중력모형과 경영수지 분석)을 반영한 보완·유지보수 사업지 선정

- 운영실적이 저조한 휴양림은 민원해결 및 최소한 시설물 유지 보수 지원

* 중력모형을 통한 ROS 1, 2등급 - 경영수지 1등급 : 유명산, 운문산, 남해편백

* 중력모형을 통한 ROS 6-7등급 - 경영수지 4등급 : 청옥산, 천관산, 방태산, 검마산

ㅇ 시설물의 노후화정도, 가동률, 이용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이용객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적극 반영(산음, 삼봉)

* 유명산 숲속의 집 및 연립동 리모델링, 남해편백 숲속의 집 개량 등

ㅇ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절감 및 휴양림 운영 효율성 제고

- 숙박시설 보완은 가동률, 발전가능성이 높은 휴양림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희리산, 신불산, 변산)

- 세탁실 및 창고 시설은 경량구조로 시설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유니버셜디자인 및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 시설 적극 반영(운문산, 상당산성, 오서산)

4)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역할 재정비 및 지역팀 성과평가(안) 마련

ㅇ 지역팀과 본소간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지역팀의 업무범위·권한 재조정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
- 행정효율화 추진을 위한 부서별 기능 및 인력구성 재편 방안 마련
- 자연휴양림 시설공사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 ('14) 시설직 1명 → ('15) 시설직 2명 → ('16) 시설직 3명

ㅇ 지역팀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과 연계한 성과평가(안) 마련

- 지역팀별 사업계획서와 연계한 자율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성과 평가
- 공통과제(20점), 고유과제(60점), 자율과제(20점)로 구분하여 내외부평가 실시

라. 추진일정

ㅇ 2016년 휴양림 발전토론회 개최 및 보완사업 계획수립 : 2015. 12월

ㅇ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 : 2016. 1월

ㅇ 본소 및 지역팀 사무분장 및 위임권한 조정 : 2016. 1월

ㅇ 부서별 기능 및 인력구성 재편 방안 마련 : 2016. 1월

ㅇ 국립자연휴양림 성과평가 시행계획 : 2016. 4월

ㅇ 자연휴양림 신규조성사업(진도) 시공 : 2016. 2 ∼ 11월

ㅇ 휴식년제 실시(희리산 부분폐쇄) : 2016. 2 ∼ 7월(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ㅇ 국가공무원(시설직) 채용 : 2016. 7월

ㅇ 각 지역팀별 동절기 폐쇄 계획 수립 및 추진 : 2016. 9월

ㅇ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체 성과평가 : 2016. 12월

13.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 기반 구축

목 표

◇ 산림치유 공간 조성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치유의 숲 조성 · 운영 : ('15) 35개소 → ('16) 41개소

가. 정책여건

ㅇ 만성질환과 환경성 질환의 효과적 치유수단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증가

ㅇ 산림치유 가치가 부각되면서 산림치유 효과규명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중

나. 기본방향

ㅇ 국·공립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관리 강화

ㅇ 민간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ㅇ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홍보강화

ㅇ 민·관 협력을 통한 산림치유 기반 확대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ㅇ 치유의 숲을 확대 조성하여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

- ('14) 총 35개소(운영5, 조성30) → ('15) 총 41개소(운영5, 시범운영5, 조성31성)

  * 국립(10개소) : 운영 3개소(산음, 장성, 청태산), 시범운영 1개소(강릉), 조성 6개소(양평, 울진, 김천, 예산, 제천, 곡성)

ㅇ 중 · 장기 체류가 가능한 산림치유단지 신규 조성 기반 마련

- 지덕권 산림치유원 측량 및 조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

ㅇ 연초 신규·계속조성을 분리하여 예산심의회 개최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신규조성) 대상지 확보, 사전행정절차 검토여부, 사업규모 등 검토
- (계속조성) 예산집행현황, 조성시설 적절성, 프로그램 개발여부 검토

ㅇ 참여자 수요 및 계층에 맞는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요보호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AI방역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등 대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 고혈압, 당뇨환자 등 질환자 대상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2) 민간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ㅇ 국립 치유의 숲 운영방식 변경을 통한 민간 사업의 참여기회 확대

- 수요가 많은 기간 민간에서 치유의 숲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극성수기 제외)
- 산림복지서비스 전문업의 안정적 초기 정착을 위해 기업연수 유치 협조, 특화 프로그램 공모 등 지원 강화

ㅇ 임업인 등의 사립 산림치유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 지원

  * 보조금(지특) : 국비(50), 융자(산림사업종합자금) : 이율 3%, 10년거치, 10년상환 등

ㅇ 타부처 업무협력을 통한 산림치유 추진 기반 확대

- (보건복지부) 보건소 인력배치기준에 포함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경찰청) 범죄피해자 대상 상담프로그램과 산림치유 연계방안 모색
- (해군, 소방서 등)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속 운영

3) 산림치유 홍보 및 제도개선을 통한 산림치유 활성화 유도

ㅇ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및 사례 공유를 위한 홍보 확대

- 대중 관심사 및 주요이슈 등을 적극 발굴 산림치유전문지(에코힐링) 수준 제고
- 산림치유 수기공모전 실시 및 공모작 모음집 발간
- 주요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산림치유의 과학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

ㅇ 치유의 숲 타당성평가 기준 관련 행정규칙 제정

- 자연휴양림과 유사하나 피톤치드농도, 음이온농도 등 치유관련 지표 반영

ㅇ 치유의 숲 입장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 기준 마련

- 공립의 경우 자체 조례로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토록 범위기준 제시 검토

라. 추진일정

ㅇ 국·공립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 2016. 2월

ㅇ 공립 치유의 숲 예산심의회(신규 및 계속사업) : 2016. 3월

ㅇ 치유의 숲 운영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참고 1〉

2016년도 치유의 숲 조성 및 보완계획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2016년(국비)	비 고
계		17,011,000	
국립 (조성 7)	소 계	8,188,000	7개소(계속)
	북부청(양평)	1,777,000	조성3년차
	동부청(강릉)	841,000	조성3년차
	남부청(울주)	1,750,000	조성2년차
	남부청(김천)	1,040,000	조성1년차
	중부청(제천)	1,040,000	조성1년차
	중부청(예산)	1,040,000	조성1년차
	서부청(곡성)	700,000	조성1년차
공립 (조성 24, 보완 2)	소 계	8,823,000	22개소(설계 6, 조성 15, 보완 1)
	부산	-	조성2년차
	대구 달성	100,000	조성1년차
	대전	1,000,000	조성1년차
	경기 가평(본청)	50,000	보완
	경기 포천	263,000	조성3년차
	경기 양평	200,000	조성2년차
	강원 영월	300,000	조성3년차
	강원 삼척	100,000	설계
	충북 진천	600,000	조성1년차
	충북 충주	300,000	조성3년차
	충남 천안	150,000	설계
	충남 서천	150,000	설계
	전남 나주(본청)	900,000	조성3년차
	전남 광양	1,000,000	조성4년차
	전남 고흥	-	조성3년차
	전남 해남	300,000	조성1년차
	전남 완도(본청)	-	조성1년차(이월예산)
	전남 무안	250,000	설계
	전남 해남	250,000	설계
	경북 포항	540,000	조성2년차
	경남 합천	1,000,000	조성4년차
	경남 창원	-	조성3년차
	경남 함양	800,000	조성3년차
	경남 거창	350,000	조성2년차
	경남 산청	100,000	설계
	제주 서귀포	120,000	보완

〈참고 2〉

치유의 숲 운영현황

1. 치유의 숲 이용자

구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1말	비고
합계	3,778,446	1,067	76,063	157,571	314,797	787,029	1,152,921	1,288,998	
산음 치유의 숲	487,044	1,067	3,063	5,663	97,984	114,925	165,254	99,088	
청태산 치유의 숲	27,769	-	-	734	3,861	6,835	8,380	7,959	
장성 치유의 숲	1,491,742	-	73,000	151,174	212,952	330,030	359,354	365,232	
장흥 치유의 숲	1,675,504	-	-	-	-	335,239	608,487	731,778	
가평 치유의 숲	96,387	-	-	-	-	-	11,446	84,941	

2.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

구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1말	비고
합계	328,100	1,067	3,063	11,327	31,215	59,228	98,814	123,386	
산음 치유의 숲	215,860	1,067	3,063	5,663	20,247	41,149	75,309	69,362	
청태산 치유의 숲	16,732	-	-	343	2,840	4,214	5,344	3,991	
장성 치유의 숲	63,073	-	-	5,321	8,128	13,865	18,161	17,598	
장흥 치유의 숲	-	-	-	-	-	-	-	16,074	
가평 치유의 숲	3,010	-	-	-	-	-	-	3,010	
기타*								13,351	

* 기타 : 수목원 숲태교, 정몽구재단 요보호아동 대상 운영, 서울대공원 치유프로그램 등

14. 산림치유분야 전문인력 양성

목 표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

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 ('15) 338명 → ('16) 500명

가. 정책여건

ㅇ 친자연적인 삶과 건강에 관심 증가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 증가

ㅇ 국·공립 치유의 숲 연차별 개장에 따른 활동영역 확대

나. 기본방향

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계속

ㅇ 제도개선을 통한 양질의 전문가 양성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립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및 시설관리인력 운용

ㅇ 전문가 급수에 따라 업무 범위 및 급여수준 차등

- 1급 : 프로그램 기획, 참여자 모니터링, 결과보고 등 중간관리자 역할
- 2급 :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 예약관리, 보조업무 등 실무자 역할

ㅇ 치유의 숲 운영요원 폐지 및 시설관리인력 배치

- 산림치유지도사 전신인 운영요원의 역할이 중복되어 폐지하고 간단한 시설 보수 및 이용자 안전관리 가능한 시설관리인력으로 변경 배치

2) 산림치유지도사 제도개선 및 양성 확대

ㅇ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개편 및 시험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

- 관련학과, 연관과목, 산림교육전문가, 기사 등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격 기준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개선

- 이수자격 평가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시험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여 양질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문으로 정착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이수평가 시험을 통한 양성계속

- 양성교육 질 제고 및 고용기회 제공을 위한 평가시험 시기 변경(8월→1월)

  * 산림치유지도사 : ('15.11월) 338명(1급 36명, 2급 202명) -> ('16년) 500명

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산림치유지도사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서는 연1회 지도점검 실시

- 산림 및 보건·의학 교육기능이 있는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기관·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추진

  * 양성기관(13개) : 가톨릭대('12.8월), 순천대, 한림성심대, 광주보건대('13.7월), 충북대, 전북대, 전남대, 동양대, 대구한의대('14.5월), 서울대, 국민대, 충남대, 인제대('15.6월)

○ 기 지정된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 추진

- 방향이 어긋난 강의, 강사전공 위주 강의 등을 지적하는 등 양질의 교육 운영을 위해 강사 및 교육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일반 자격취득자, 수강생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축 등 방식 검토

라. 추진일정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이수자격 평가시험 : 2016. 1월

○ 산림치유지도사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 2016. 3월

○ 권역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현황 점검 : 연 1회

〈참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현황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현황

기관명	계	1급	2급	비고
합계	338	36	302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160	34	126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	43	-	43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17	-	17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39	-	39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	-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28	-	28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	19	-	19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	17	1	16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5	1	14	

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현황

연번	기관명	등급	지역	연락처	지정일자
1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1급, 2급	경기 부천시	02-2164-6586	'12.8.27
2	한림성심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강원 춘천시	033-240-9490	'13.7.23
3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전남 순천시	061-750-5076	'13.7.23
4	광주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광주광역시	062-958-7572	'13.7.23
5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1급	광주광역시	062-530-3873	'14.4.4
6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충북 청주시	043-261-2076	'14.4.4
7	동양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경북 영주시	054-630-1036	'14.4.4
8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	1급, 2급	경북 경산시	053-819-1846	'14.5.14
9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급, 2급	전북 전주시	063-219-5394	'14.5.14
10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급	서울 종로구	02-880-2567	'15.4.3
11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1급, 2급	서울 성북구	02-910-4810	'15.4.3
12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급	대전 유성구	042-821-7834	'15.6.1
13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	2급	경남 김해시	055-320-3484	'15.6.1

15.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 인프라 확대

목 표

◇ 친환경적인 수목장림 홍보강화로 수목장림 인식 전환 및 수목장림 인프라 확충

ㅇ 국 · 공립 수목장림 조성 · 운영 : ('14) 3개소 → ('15) 5개소

가. 정책여건

ㅇ 전국 묘지면적은 국토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ha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900ha 묘지 발생

ㅇ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편리성 선호,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치공간은 부족한 실정

ㅇ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수목장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수목장림 조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

나. 기본방향

ㅇ 국·공·사립 수목장림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수목장림 수요 충족

ㅇ 친환경적인 자연장인 수목장림의 홍보강화로 대국민 인식 전환

ㅇ 범국민 수목장림 실천운동 및 '작은 장례' 운동 전개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 확대

ㅇ (국립) 충남 서천에 제2국립수목장림 조성 추진

- 주민과 협력하여 '16년 1차년도 조성공사 추진

ㅇ (공립) 국고(지특회계)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참여(광역 시·도별 모델사업) 유도

- 공립 수목장림 1개소(충남 보령) 조성 추진 중(계속)

ㅇ (사립) 사립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제도지원 정리 및 확대

- 산림조합 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직의 수목장림 조성시 적극 검토
-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등 산림사업 우선 지원 및 안내

2) 수목장림 활성화 캠페인 추진 및 건전한 운영·관리 도모

ㅇ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노력

- 일반 국민이 수목장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TV, 신문, 기획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강화(산림청·유명인사 참여운동 전개 등)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 안내 리플릿 배부로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ㅇ 불건전 수목장림 단속 및 권한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민원, 보도자료 등을 모니터링하여 불건전 수목장림 방문 후 개선 권고
- 보건복지부 협의하여 장사법 상 수목장림에 대한 산림청 역할 명시

라. 추진일정

ㅇ 중부권 수목장림 1차년도 공사 추진 : 2016. 3 ~ 12월

ㅇ 수목장림 제도 이해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 연중

16. 산촌의 6차산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목 표

◇ 시대변화 등을 반영한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 산촌마을 지원과 도시민 산촌체험 확대로 산촌경제 활성화

가. 정책여건

ㅇ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 평가와 2014년 전국산촌기초조사 분석을 통해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

ㅇ 산촌주민 평균소득(21백만원)은 농가 평균소득(33백만원)의 64%로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산촌 지원정책이 필요

ㅇ 인구감소, 고령화 등 산촌의 내부 현실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산촌 증가 등 각종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

나. 기본방향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18~'27)에 전국산촌기초조사('03년·'14년) 결과 및 미래전망을 반영

ㅇ 조직·역량을 갖춘 마을, 갈등이 없는 마을, 체험시설 운영 인허가 조건을 구비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

ㅇ 산촌 마을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행정기관과 마을간 소통강화를 위해 산촌마을 중간지원조직(산촌생태마을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촌의 경제·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ㅇ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제시

- 제1차 산촌진흥계획 이후 사회적 여건 변화와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10년간의 변화를 예측

- 산촌과 관련 있는 우리청의 계획 및 대책을 포괄적으로 수렴
- 농식품부 등 타부처에서 추진하는 상위 계획과 연계방안 마련
- 산촌의 유형별 정책 추진방향 수립과 추진 과제 제시

ㅇ 산촌진흥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T/F팀 구성 및 세미나 추진
- 산림청, 과학원, 지자체, 학계, 관련 NGO, 시도 협의체
-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ㅇ 추진절차

2016. 1.	⇒	2016. 2.	⇒	2016. 7.	⇒	2016. 8.～10.	⇒	2016. 11.
계획수립 및 공고		용역수행자 선정및계약		기본계획 (안)작성		기관협의 및 의견수렴		기본계획 고시

2)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촌 6차산업화 지원

ㅇ (규모) 20개 마을(2개 권역, 권역별 10개 마을)
- 중부권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영·호남권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각 도별 2개마을 추천(16개 마을) + ’15년 평가 우수마을(4개 마을)

ㅇ (대상) 산촌 및 산촌생태마을

ㅇ (방법) 기획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을 역량과 6차산업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마을별로 차등 지원(6차, 자립, 발전, 예비)
- 권역별로 컨설팅을 실행하여 6차산업화를 지원(1권역 1컨설팅)
- 6차 마을(10%) : 5천만원 내외의 지원 + 컨설팅
- 자립마을(30%) : 3천만원 내외의 지원 + 컨설팅
- 발전마을(30%) : 1천만원 내외의 지원 + 컨설팅
- 예비마을(30%) : 컨설팅(마을의 발전 전략 제시, 주민갈등 관리)

ㅇ (예산) 총 740백만원

ㅇ (평가기준) 마을의 단합과 자립의지, 사업화 아이템 및 성공 가능성 등

○ 추진절차

2016. 1.		2016. 2.		2016. 4.		2016. 5.		2016. 11.
마을 추천 (도→산림청)	⇒	컨설팅 계약 및 권역별 컨설팅	⇒	마을평가 (지원규모 결정)	⇒	마을별 6차 산업화 추진	⇒	성과평가 및 환류

≪임업·산촌 6차사업 아이디어 공모≫

○ (주제) 임업·산촌의 소득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 아이디어 발굴

○ (기간) 2016. 9월~10월

○ (대상) 임업 및 산촌 발전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 (시상) 산림청장 상장, 임업진흥원장 상장 및 부상

○ 최종 발표·심사 및 시상식 : 11월 초

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현장학교' 개설

○ (규모) 8개소(현장학교 1개소 당 10백만원)

○ (대상) 마을리더, 협의체 구성원, 교육이 필요한 마을 주민

○ (방법) 산촌생태마을협의회('16년 구성)에서 주관하여 추진

○ (예산) 총 80백만원

○ 주요 내용

· 산촌의 가치와 비젼 공유 · 마을 공동체 회복 · 마을사업 개발 및 구상 · 마을 리더의 역량강화	· 마을의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 마을·리더간 정보교류 기회 제공 · 주민간 갈등과 스트레스 해소 ·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등

○ 추진절차

2016. 1.		2016. 2.		2016. 2.		2016. 3. ~		2016. 11.
계획수립	⇒	계약 체결	⇒	추진계획 제출·협의	⇒	주민현장학교 추진	⇒	성과평가 및 환류

4) 귀산촌 정착을 위한 '산촌미리살아보기' 캠프 실시

ㅇ (목적) 귀산촌인(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지원 및 산림자원활용에 대한 인식 증대

ㅇ (대상) 귀산촌 예정자, 귀산촌에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ㅇ (방법) 귀산촌 희망자를 모집하여 귀산촌에 필요한 이론·정보·체험 제공

- 귀산촌인의 성향, 관심정도를 분류하여 단계별로 실시
- 이론교육(1일), 단기체험(2박 3일), 1:1 맞춤형 체험(2주일 이상)

ㅇ (예산) 총 80백만원

ㅇ 주요 내용

· 귀농·귀산촌의 이해 · 산림농업의 이해 및 현장견학 · 귀산촌 생활 체험 · 산촌사업의 이해	· 임산물 소득 및 재배 기술 교육 · 임산물 수확 및 가공 실습 · 산림 6차산업화 교육 · 리더쉽 함양교육

ㅇ 추진절차

2016. 1.	⇒	2016. 2.	⇒	2016. 2.~ 4.	⇒	2016. 5.	⇒	2016. 5. ~	⇒	2016. 11.
계획수립		계약체결		교육희망자 접수		귀산촌인 성향분석		교육 실시		성과평가 및 환류

* 농식품부의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조건(교육 100시간 이수)에 반영

* 교육생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프로그램 운영(임업진흥원)

5) 신규 산촌개발사업 추진

ㅇ 농식품부와 협업과제로 산촌 활성화사업, 6차산업화 지원 등과 연계 추진

≪사업추진방안≫

ㅇ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이 가능하나 산촌의 형편상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ㅇ (소관) 예산 편성과 총괄관리권은 농식품부에서, 신청·실행·사후관리는 지자체(산림부서)에서, 산촌개발사업 총괄관리는 산림청이 주관

ㅇ (절차) 사업신청(시군 산림부서→시도 산림부서→농식품부·산림청), 검토의견(산림청→농식품부), 최종선정(농식품부), 실행 및 사후관리(산림청, 지자체)

○ 사업신청 절차 및 일정

내 용	절 차		기 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RAISE 입력 및 공문제출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4부 우편제출	시·군 →	농식품부 시 · 도	’16.1.15(24시)
신규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시 · 도		’16.1.16～2.4
신규사업계획서 사전 정량검토	농식품부		’16.1.16～2.27
시 · 도 검토결과 RAISE 입력 및 공문제출	시 · 도 → 농식품부		’16.2.5(24시)
신규사업계획 종합 검토	농식품부		’16.3.2～4.24
2017년 예산신청	시 · 도 → 농식품부부		’16. 4월말
예비 사업대상지구 자체 역량강화	시·군		’16. 5～12월

6) 산촌생태마을 홍보·지원사업

○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 일시/장소 : 2016. 5월중/ 지자체 추천마을(* ’14년 충남, ’15년 충북)
- 사업내용 : 산촌생태마을 주변 환경정화 및 꽃동산 조성

○ 산림공무원 산촌생태마을 체험하기

- 일시/장소 : 2016. 6~9월(가능한 여름 성수기를 제외)/ 우수 산촌생태마을
  * 지자체 추천으로 전국 10개 내외 마을
- 사업내용 : 산림청 직원들이 산촌생태마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 40여명을 선정하여 산촌생태마을 이용권을 지급

○ 계절·테마별 우수 산촌마을을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규모 : 30여개 마을(우리청 및 지자체 지원사업 마을을 중점 홍보)

7) 산림분야 세계중요농업유산(지하스) 등재

○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개요

- (대상) 농림어업적 토지이용, 문화적·경관적 가치, 생물다양성 등에서 중요한 역사적 지역과 모든 산물
  * FAO는 2002년부터, 우리나라(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도입
- (절차) 제안서 작성·제출(지자체, 단체 등)⇒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FAO)⇒ 운영위원회 승인(FAO)⇒ 모니터링(FAO, 2년)

- (현황) 우리나라 2개소를 포함하여 세계 14개국 32개 지역이 등재
  * 산림분야(2건) : 일본(우사지역 상수리나무숲), 중국(콰이지산 비자나무숲)
  * 우리나라(2건) :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밭담

ㅇ 산림분야 도입계획

- 산림분야에서도 세계중요농업유산 인증시스템 도입 추진
-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 가능한 지역 발굴 연구(보호구역, 마을숲, 송이 등)
-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산림분야 시범사업(울진 소나무숲) 추진
  * 울진군이 세계자연유산(UNESCO) 등재를 위해 준비한 기초자료 활용
  * 주민협의는 지자체가, 세계농업유산 등재는 우리청・울진군이 협력 추진
- 기대효과 : 산촌지역의 브랜드화,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라. 추진일정

ㅇ 산촌 6차산업화 지원 사업 : 2016. 1월

ㅇ 산촌생태마을가꾸기 사업 : 2016. 5월

ㅇ 산림공무원 산촌체험하기 : 2016. 6～9월

ㅇ 임업·산촌 6차산업 아이디어 공모 : 2016. 9～11월

ㅇ 산촌생태마을 컨설팅 실시 : 연중

ㅇ 산촌 미리 살아보기 캠프 운영 : 연중

ㅇ 우수산촌마을 주민현장학교 개설 : 연중

17.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목 표

◇ 산림교육을 통한 국민의 정서함양과 산림가치 인식제고

가. 정책여건

ㅇ 교육 패러다임이 주입식에서 자기참여·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자연 중심의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ㅇ 교육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산림교육 수요 확대 전망

ㅇ 유아·청소년의 창의성 및 인성함양을 위한 대안으로 산림교육이 자리매김

* 산림교육 참여 현황 : ('13) 171만명 → ('14) 181만명 → ('15) 217만명

나. 기본방향

ㅇ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 인프라 확충

ㅇ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ㅇ 산림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ㅇ 수요, 접근성, 자연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수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유 유아숲체험원 확대 조성 및 운영

- 신규조성 : ('15년) 35개소 → ('16년) 43개소(국가 9, 지자체 34)
- 유아숲 조성대상지의 입지환경여건·교육수요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 주변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유아 숲교육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ㅇ 등록주체·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등록기준 개선(산림교육법령개정)

- 등록 : (국가조성) → 산림청장, (지자체, 법인, 개인)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일정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정(법령개정)

ㅇ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민간단체 참여,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유아숲교육 품질 향상 도모

  * ('15년) 1개소: 북부청 → ('16년) 4개소 : 북부 1, 동부 1, 남부 1, 서부 1

ㅇ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 보급 및 정기점검 시행

- 낙상, 유해동물 대처 등 응급상황 대응 안전매뉴얼·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보급

ㅇ 지방청·지자체의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운영의 정보 공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현장 워크숍과 해외 선진사례 견학 실시

ㅇ 민간분야의 유아숲체험원 등록 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2) 권역별 산림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모색

ㅇ 국가 및 지자체 교육센터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 (국가) 경북 청도('14~'17), 전남 장성('15 완공) 시범운영 및 개원
- (지자체) 2년차 사업으로 시설공사 착수 : 충북 청주 미동산수목원, 전북 완주 고산자연휴양림

ㅇ 권역별 산림교육센터의 역할 조정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 (국가 산림교육센터 : 횡성·장성·청도) 산림교육전문가 지도자 양성,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평가 등 총괄기능 수행
- (지자체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권역별 산림교육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

ㅇ 지역별 교육수요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목원, 산림환경연구소 등을 지역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추진

3) 유관기관 협업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교육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인성교육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한 산림교육 협력 도모

- 산림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식물학자, 산림항공사, 산림기술사 등 산림전문 직업 탐색으로 구성하여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는 진로체험 기회 제공

  * 각 권역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산림교육센터·숲사랑소년단 중심으로 교원연수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연계 방안 모색

ㅇ **(법무부)**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전국확대 추진 및 워크숍 개최(2월)

ㅇ **(여가부)** ‘방과 후 아카데미’와 연계한 숲 교육, 교육부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숲 교육 실시

ㅇ **(기타)** 군 생활 부적응자,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취약 계층에 대한 산림교육 협업사업 발굴·추진

4) 학교 내 산림교육 기반 확립

ㅇ 산림교육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추진되도록 기반 마련

- 전북교육청(숲꿈학교)과 협업으로 산림교육과 정규교육과의 융합을 위한 산림교육사업 등을 추진

  * 15년 전라도 관내 6개교 45회 1,879명 산림교육 실시

ㅇ 학교장, 교사 등 교원의 산림교육 역량 강화

-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원 등 산림교육 인프라를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추진
- 교원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 교원 희망과목 및 현장체험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

5)「산림교육정보시스템」운영을 통한 산림교육 정보제공

ㅇ 온라인상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 탑제

- ‘산림교육정보시스템’ 본격 운영(’15년 개설 완료)으로 산림교육 관련 인프라, 전문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산림교육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 (일반 국민)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
- (산림교육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

6)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통합시행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심사

ㅇ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심사 강화

- 인증자문단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ㅇ 온라인 인증심사를 위한 담당자(인증자문단 등) 교육 실시

ㅇ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우수 프로그램 지속 발굴

7) 숲사랑소년단 육성

ㅇ 지역단위 조직 보강 및 청소년 교육·수련 관련단체와 협력 강화
- 권역별 지역회 확대(4개회 → 9개회)에 따라 조직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숲체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캠프형 체험활동 활성화

ㅇ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한 청소년단체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 기재가능 청소년단체는 매년 갱신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소년단체협의회)

ㅇ 전국대회, 교원연수 등 숲사랑소년단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지원

8) '숲교육 어울림' 등 숲으로 가자 캠페인 추진

ㅇ 제3회 숲교육 어울림 개최(10월)
- 일반국민 대상 산림교육을 알리고, 산림교육전문가 상호 간의 정보 공유

ㅇ '숲으로 가자' 켐페인 지속 추진 및 산림교육 홍보강화
- 청소년박람회, 자유학기제박람회, 교육기부박람회, 산림박람회 등에 홍보 부스 운영 및 각종 홍보 이벤트 개최

9) 산림교육 만족도 조사 및 산림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각 기관별, 지자체별 실시하는 산림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분석

ㅇ 산림교육 통계를 분석하여 체계적 관리(분기별, 기관별)

라. 추진일정

ㅇ 산림교육정책 시책회의 : 2016. 1월

ㅇ '보호관찰성소년' 산림교육 워크숍 : 2016. 2월

ㅇ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자문단 워크숍 : 2016. 4월

ㅇ 산림교육 교원직무연수 : 2016. 7~8월

ㅇ 숲사랑소년단 전국대회 : 2016. 8월

ㅇ 제3회 숲교육 어울림 개최 : 2016. 10월

ㅇ 우수 산림교육인증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 2016. 11월

ㅇ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 분기별

ㅇ 산림교육센터 조성·운영 : 연중

ㅇ 범국민적으로 '숲으로 가자!' 운동 추진 : 연중

18.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운영

목 표

◇ 산림교육전문가 체계적 육성·관리 및 양성기관 운영 내실화

가. 정책여건

ㅇ 산림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자질 향상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의 내실화 필요

ㅇ 민간분야 산업화 육성 등을 통해 장기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 도모

나. 기본방향

ㅇ 산림교육 전문역량 강화 및 활동영역 확대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내실화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교육전문가 역량강화 등 체계적 육성·관리

ㅇ 전문가 수급 및 지역균형을 고려한 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

- 지역별 인구현황, 숲교육 수혜인원, 산림교육전문가 활동현황 및 양성기관 지정현황 등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
- 양성인원, 전문가 수급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을 지정,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중점 육성

* ('15.11 기준) 숲해설가 6,591명, 유아숲지도사 889명, 숲길체험지도사 731명

ㅇ 산림교육전문가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등급제 도입방안 연구

- 등급별 역할, 교육내용·방법 등 등급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실시

ㅇ 산림교육전문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과정 운영

- 산림교육전문가 직무교육, 산림교육전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 과정,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보수교육 등

2) 산림교육전문가 민간분야 활동영역 확대

ㅇ 민간분야 산림교육전문가 장기·전문일자리 전환 방안 추진
- 민간분야 산림교육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공모·위탁방안 등

ㅇ 산림교육전문가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보급
- ’14～’15 개발한 산림교육 비즈니스 모델 보급(방과후 숲학교 등 5개 분야)

ㅇ 산림교육전문가 신규 일자리 지속 발굴 추진
- 숲해설가 자원봉사, 숲길체험지도사 수학여행 안전요원 활동 등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ㅇ 교육과정 개편 등 내실있고 합리적인 양성과정 운영
- 산림교육전문가 전문과정을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으로 분리 시행, 공통과정 표준교재 보급을 통하여 교육내용의 표준화 도모
- 공통과정 이수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생 부담을 경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강화
- 전년도 교육 실적이 없거나 운영이 미흡한 기관은 등록취소 등 정비 추진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워크숍,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개최 등

라. 추진일정

ㅇ 산림교육전문가 장기인력 수급 계획수립 : 2016. 1∼5월

ㅇ 숲해설가 자원봉사 사업자 모집 : 2016. 3월

ㅇ 숲해설가 직무교육 실시 : 2016. 3월

ㅇ 산림교육전문가 등급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 : 2016. 3월

ㅇ 산림교육전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 과정 운영 : 2016. 4월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도 및 점검 : 2016. 5월, 9월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워크숍 : 2016. 6월, 11월

ㅇ 숲해설가 자원봉사 사업 점검 : 2016. 7월

ㅇ 제10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 2016. 10월

19.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 관리

목 표

◇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을 통해 숲을 찾는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 휴양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

- 운영 : 936명, 예산 : 100억원 -

가. 정책여건

ㅇ 휴양림, 도시숲, 숲길 등 산림복지 인프라 확산 및 웰빙,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다양한 산림서비스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ㅇ 취약계층, 장년층에게 산림서비스분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제공

ㅇ 휴양림, 숲길 등 산림휴양시설에 산림서비스도우미를 배치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ㅇ 전문지식이나 일정자격이 요구되는 일자리부터 전문·장기일자리로 발전시켜 안정적 일자리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16년 예산 및 운영계획

세부사업명		운영계획(명)	예산(백만원)	운영기간
산림서비스 도우미	계	936	9,971	
	숲해설가	373	4,570	10개월
	숲생태관리인	122	1,438	
	숲길체험지도사	168	1,633	
	수목원코디네이터	65	534	
	도시녹지관리원	158	1,281	
	명상숲코디네이터	45	349	
	일자리DB요원	5	166	

2) 장년층 및 여성 참여자 안정적 일자리 제공

ㅇ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네이터 등 3개 사업은 장년층 고용 비율(60%)을 준수하여 선발·운영

ㅇ 여성가족부의『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반드시 양성 평등한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여성 참여비율(33%)을 준수하여 선발·운영

3) 국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 제공

ㅇ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자격요건을 적용하여 선발
-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ㅇ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 산림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별 만족도 조사 실시

ㅇ 사업별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 2월~4월, 산림교육원 등에서 직무교육 실시

4) 참여자 노무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

ㅇ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활용한 참여자 노무관리 철저
- 모집공고, 신청·선발현황, 참여자 등록, 지원금관리 등 입력 관리 철저
  * 참여자에 대한 중복취업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여 부정수급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ㅇ 산림서비스분야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상·하반기)

ㅇ 세부사업별 선발기준, 근로계약, 사업추진 요령 등은『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종합지침』에 따라 추진

라. 추진일정

ㅇ 산림서비스도우미 모집공고 및 선발 : 2015. 12월 ~'16. 1월초

ㅇ 산림서비스도우미 착수(예산배정 즉시) : 2016. 1월초

ㅇ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훈련 실시 : 2016. 2~4월

ㅇ 산림서비스도우미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상·하반기 각 1회

ㅇ 산림서비스분야 모니터링 실시 : 연중

20. 산림문화자산 발굴·보전 및 산림문화 확산

목 표

◇ 산림문화자산 발굴·지정으로 전통 산림문화 보존
◇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기회 확대 및 행사 내실화

가. 정책여건

ㅇ 전통 산림문화의 계승 발전 의식 고조

ㅇ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조사 · 발굴 및 보전 · 관리 필요성 증대

나. 기본방향

ㅇ 산림문화자산 발굴 및 지정 확대로 전통 산림문화 보존 및 이용가치 증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9조)

ㅇ 국민의 숲, 숲사랑체험관 운영 활성화로 다양한 산림문화 체험기회 제공

다. 세부 추진계획

1) 산림문화자산 발굴 · 지정 확대

ㅇ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발굴,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 ('15까지) 17개소 → ('16) 30개소(예산 210백만원)

ㅇ 산림문화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확대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산림문화자산 표지판 정비를 비롯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발굴·개선
- 산림문화자산의 보존과 관광자원 등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강화
- 산림문화자산에 얽힌 이야기를 수집·정리하여 스토리텔링집 발간

ㅇ 전통 산림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산림문화전집 발간
- ('14) 숲, 산림의 역사 → ('15) 신앙, 문학 → ('16) 음악, 미술
* 전 25권으로 매년 2권 발간 '25년 완료('16년 예산 80백만원)

2) 「국민의 숲」 운영 내실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ㅇ 운영현황 모니터링, 산림치유.교육.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 발굴

ㅇ 「국민의 숲 지정 운영지침」 정비를 통해 산림레포츠 활성화 기반 마련

○ 운영 성과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증진
- 운영 실적이 우수한 개소는 지원 강화, 부진 개소 지정 취소 등

○ 리플릿·미디어 제작 등 홍보 강화

3) 다양한 산림문화행사 개최 및 내실화

○ 산림문화박람회 개최(410백만원)
-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림정책 홍보를 위한 산림박람회 개최
- 산의 날 기념식과 산림박람회 개막식 연계, 산림행사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 국가적 산림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박람회의 전문성과 민간 역량 향상에 역점

○ 제15회 산의 날 기념식 개최(10월)
- 산림의 가치·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의 날 기념식 개최
- 산림박람회와 연계하되 산의 날 지정 의미를 집중 재조명하도록 기획

○ KBS열린 음악회 개최(4월)
- 식목일을 전후하여 봄철 나무심기와 산림복지·국민행복을 주제로 음악회 개최
- 국민과 임업인과 산림관련 공무원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준비

○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숲속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저변 확대

4) 숲사랑체험관 운영 활성화

○ 숲사랑 체험관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유아·청소년 대상 숲 교육·체험, 직원 틈새 숲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09) 7천명 → ('11) 17천명 → ('13) 21천명 → ('14) 22천명

○ 숲사랑체험관 전시·홍보 장비 교체(22백만원)
- 전시물을 현행화하여 산림의 가치를 알리고 최신 산림정보 제공

라. 추진일정

○ 산림문화행사 추진 계획 수립 : 2016. 2월

○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지정 : 2016. 3~11월

○ 제15회 산의 날 기념식 및 산림박람회 : 2016. 10월

○ 국민의 숲 운영 등 산림문화 활동 및 산림문화 행사 추진 : 연중

○ 숲사랑체험관 운영 및 국민의 숲 지정·정비 : 연중

21. 산림레포츠 활성화

목 표

◇ 산림레포츠 인프라 구축 등 저변 확대
◇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가. 정책여건

ㅇ 산림레포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림레포츠 기반 미비

ㅇ 임업용 산지에 산림레포츠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산지 규제 완화

ㅇ 산림레포츠시설 종류·기준 마련 등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여건 조성

나. 기본방향

ㅇ 언제 어디서나 레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산림레포츠 인프라 확대

ㅇ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확대

ㅇ 산림청장배 레포츠 대회의 효과적 운영으로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레포츠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육성분야 발굴·지원정책, 국내·외 세미나 개최, 선진사례 수집 등

ㅇ 제도적 기반 마련, 인프라 확대,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전략 마련

2) 산림레포츠 인프라 확대

ㅇ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산림레포츠시설 조성
- ’16년 설계 3개소 13억원(문경·군위·함양)
-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로프체험시설 등 조성

ㅇ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지정 및 운영 확대
- 산림레포츠에 적합하고 산림레포츠 인프라나 수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
- 지방산림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각 2개소 이상 지정

ㅇ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 지정 확대
-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현재 442km에서 600km까지 확대
- 도시와 연접한 곳, 승마장, 스키장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 우선 선정
- 테마임도에 간이마사나 휴게시설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보완

ㅇ 자연휴양림 연계 산림레포츠 활성화
- 산림레포츠시설과 휴양시설을 임도로 연결 다양한 휴양 레포츠 제공
- 지역 승마장, 레포츠 단체와 연계하여 특화 휴양림으로 운영

3)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산림레포츠 운영

ㅇ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

ㅇ MOU체결, 공동산림사업이나 대부·사용허가 등의 방법으로 협업

ㅇ 중앙-지방, 중앙-지방-공기업, 지방-민간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 (산악승마) 동부지방산림청-강원랜드-강릉영동대학교 사례 전파

4)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및 홍보 강화

ㅇ 산림레포츠 소개, 산림레포츠 축제, 산림레포츠 맵 등 「숲에 온」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

ㅇ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지원으로 저변확대 도모
- 산악스키, 숲길달리기, 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대회 등(150백만원)

ㅇ 산림레포츠 협회 등의 대회에도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교부 등 지원 추진

라. 추진일정

ㅇ 산림레포츠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 및 시행 : 2016. 1월

ㅇ 산림레포츠 활동의 민간보조 지원 사업 공모 추진 : 2016. 1월

ㅇ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실태조사 실시 : 2016. 3~4월

ㅇ 지역의 특성·여건에 부합하는 산림레포츠시설 설계 및 조성 : 연중

ㅇ 산림청장배 종목별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연중

22.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목 표

◇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역사와 문화가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

- ㅇ 훼손 등산로 정비 : 1,094km, 20,251백만원
- ㅇ 등산로 연결사업 : 5개소, 2,500백만원
- ㅇ 트레킹길 조성사업 등 : 346km, 7,777백만원

가. 정책여건

- ㅇ 쾌적한 산행문화의 정착을 위한 역할 수행과 낙후된 산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숲길조성 수요 증대
- ㅇ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걷기와 등산에 대한 수요 증가
- ㅇ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숲길이용 활성화 전망
- ㅇ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의 보전적 이용을 위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조성과 지속적인 관리 필요

나. 기본방향

- ㅇ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및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
- ㅇ 숲길 및 숲길 주변의 환경 보전과 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물 설치, 훼손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ㅇ 숲길의 노선선정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며, 향후 운영·관리방안 마련 추진
- ㅇ 숲길 노선의 수평적 선형을 유도하여 보행활동에 제약을 가진 이용객도 산림휴양 등 숲길의 공익적 기능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ㅇ 도시근교, 마을뒷산 등 생활권 중심 및 주요명산의 훼손등산로 정비

- 등산로정비 : ('15까지) 9,465 → ('16) 1,094 → ('21까지) 13,505km

ㅇ 5대 트레일 및 5개 둘레길, 백두대간·정맥 및 100대 명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전국 숲길 네트워크 구축·관리

- 트레킹길 조성 : ('15까지) 2,566 → ('16) 288 → ('21까지) 7,614km

  * 국가트레킹길(160㎞) : 속리산둘레길,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낙동강풍경트레일 등

  * 지역트레킹길(128㎞) : 지역별 특색있는 트레킹길 조성

ㅇ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숲길을 조성·운영관리

-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한라산둘레길, 서울둘레길, 내포문화숲길 등

1) 훼손 등산로 정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지원형태
계	1,094	20,251	
국가등산로	47	1,496	직접
지역등산로	1,047	18,755	보조

〈 대상지 선정 〉

ㅇ 백두대간 및 정맥 등산로 구간 중 이용자 증가 등으로 훼손이 심화되어 정비가 시급한 곳과 민원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 우선 선정

ㅇ 100대 명산, 생활권 주변의 등산로 등 이용객이 집중되어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을 우선 선정

〈 사업 추진방향 〉

ㅇ 대상지의 규모, 훼손 상태 및 주변 산림생태 환경을 고려한 설계 추진

- 동일 노선은 숲길관리청별로 설계 단계부터 협의하여 유역 완결 추진

ㅇ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

- 가급적 친환경 소재와 주변 경관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과다한 구조물과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여 설치

- 정비 구간은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안내 및 편의 시설 등 주요 공종을 반영하여 등산객의 민원요구가 없도록 정비
- 등산로 주변 경관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병행 추진(숲가꾸기 등)

ㅇ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 재해 취약지 등 위험지역의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편의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 급경사로 훼손이 반복되는 구간은 유실방지를 위한 공법 반영 및 재해예방 시설의 집중 설치
- 산행사고 빈발 지역은 산행안전수칙, 해지는 시간 등 하산정보, 신고 전화번호, 사고내용에 대한 안내판 및 간이 구급함 설치

ㅇ 등산객의 산행안전 지원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등산객의 조난 대비 신고처(좌표 등) 등을 표기한 위치 표지판 설치
- 정비, 보수 등을 위하여 표지판은 위치데이터(GPS)로 유지·관리
- 안내판, 표지판 등 설치 시에는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을 적극 활용
  * 안내판 및 표지판 신규 설치 시 반드시 산림청 로고 병행 사용
- 등산로 정비시 안내판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설계에 반영 추진
  * 기존 안내판은 스티커형 부착 가능하며, 설치대상 물량 파악

ㅇ 등산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는 가급적 상반기에 정비 완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전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이행
- 관내의 등산로 현황과 관리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숲길관리청별 노선거리 20㎞이상 등산로는 안내센터 설치·운영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 안내센터 설치기준 거리축소 건의에 따라 "20km 이상"을 삭제하는 산림휴양법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3호 개정 추진중
-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 학계 등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만족도 제고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시(설계, 시공) 현장심의회 구성·운영

2) 등산로 연결

〈 **사업량 및 사업비**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지원형태
등산로 연결	5	2,500	보조

〈 **대상지 선정** 〉

ㅇ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 우선 필요한 대상지 선정

- 교량과 같은 녹지공간형과 보행가교형(소형, 대형)으로 구분

〈 **사업 추진방향** 〉

ㅇ 녹지공간형은 산림식생복원 등 사업을 통해 경관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안정감과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

ㅇ 보행가교형은 아치교량 형태의 케이블공법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며, 노폭이 좁은 등산로 연결과 산정의 단절된 암석 구간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전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

ㅇ 규모가 큰 등산로 연결은 설계부터 반영하고 당해연도 행정절차 이행 추진

- 디자인 심의, 부지확보 등 민원사항 해소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 방지
- 소요예산 확보 등 사업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철저

ㅇ 단절된 훼손지의 연결 등 녹지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 및 안전성이 강화된 등산로의 네트워크 구축

-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시설 도입
- 주요자재는 이용객의 안전성, 편의성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추진

ㅇ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품질향상 노력

-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 이용자 만족도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식사업 명칭과 산림청 지원사업 명시

3) 트레킹길 등 조성

〈 **사업량 및 사업비** 〉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지원형태	비 고
계	346	7,777		
국가트레킹길	160	2,607	직접, 보조	직접 13, 보조 147
지역트레킹길	128	3,875	보조	
레저스포츠길	54	745	보조	
휴양·치유숲길	4	550	보조	

〈 국가트레킹길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연도	수립기관
o DMZ트레일 조성 기본구상	2010	동국대
o 낙동정맥트레일 기본노선 조사보고서 및 낙동정맥 CI 개발	2011	경북
o 백두대간트레일 기본계획	2012	(사)백두대간숲연구소
o 서부종단·남부횡단트레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2012	(사)한국문화관광연구소
o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 기본설계	2012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경북)
o 평창올림픽트레일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2012	강원대
o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2013	숲산사 산림기술사사무소(전남)
o 속리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013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
o 팔공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15	대구

〈 사업 추진방향 〉

o 트레킹길 노선선정 기본원칙에 따라 노선을 선정하고, 기 조성된 트레킹길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o 국가트레킹길의 일관된 정보제공 및 연결을 위해 기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에 따라 노선 선정·조성 및 동일한 안내체계 적용

- DMZ펀치볼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울진금강소나무숲길, 한라산둘레길은 기본계획에 의한 노선을 기본으로 기 조성된 숲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거점지역별 안내센터 설치, 고유 CI 및 안내체계 구축 등 운영·관리방안 마련 추진

- 속리산둘레길,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낙동강 풍경트레일, 팔공산둘레길 등은 노선이 통과하는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o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안내시설 설치

- 안내시설에는 사업명칭과 산림청 로고를 반드시 표시

o 조성 완료되거나 일부구간 완료되는 트레킹길은 개통식 및 걷기행사를 추진하여 숲길사업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

ㅇ 기타 휴양·치유숲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조성 등은「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성하고 자체 유지·관리 실시

ㅇ 타 부처 또는 각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걷는 길'과 중복 노선 배제

- 타 부처(지자체)에서 산림 내를 통과하는 걷는 길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협의 등 의견 요청 시 숲길 노선을 반드시 확인

라. 추진일정

ㅇ 숲길사업계획 수립·배부 : 2016. 1월

ㅇ 숲길 실태조사 : 연중

ㅇ 숲길관리청별 특별현장책임관 지정 : 2016. 5월

ㅇ 숲길 걷기행사 : 2016. 상·하반기

ㅇ 숲길 현장모니터링 : 2016. 상·하반기

ㅇ 숲길 조성 완료 : 2016. 하반기

ㅇ 숲길 이용 만족도 조사 : 2016. 하반기

ㅇ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 수립·제출 : 2016. 11월까지

ㅇ 2016년도 숲길사업 추진결과 제출 : 2017. 1월

23.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목 표

◇ 청소년·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등산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 확산 도모

- ㅇ 등산·트레킹학교 및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 ㅇ 민간단체와 클린활동 등 협력강화를 통해 산행문화 개선

◇ 숲길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위한 서비스 증진으로 만족도 제고

- ㅇ 숲길안내센터 및 산악구조대 운영, 숲길 안전대책 추진 등
- ㅇ 숲길체험지도사(168명)를 통한 산행서비스 품질 향상

가. 정책여건

- ㅇ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와 함께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체제형·체험형 위주의 다양한 산행수요 발생
- ㅇ 산행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산행객들의 산악사고 지속증가

  * 산악사고 구조건수 : ('10) 7,718 → ('11) 7,825 → ('12) 8,602 → ('13)10,882→ ('14) 10,747건

- ㅇ 올바른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참여 기회제공 부족
- ㅇ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악구조 활동 구축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나. 기본방향

- ㅇ 올바른 산행 유도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등산관련 정보 및 양질의 산행 안내서비스 제공
- ㅇ 숲길훼손 및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의식수준 제고
- ㅇ 지속적인 숲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DB 구축
- ㅇ 올바른 산행방법 등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의 체계적인 보급·지원
- ㅇ 산악구조 활동의 민·관 공조체계 유지 및 교육훈련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등산·트레킹 학교 운영

ㅇ 교육기간 : 2016. 3 ~ 11월(9개월)

ㅇ 교육인원 : 845여명

ㅇ 교육과정 : 사회적 약자, 백두대간·청소년 백두산 탐방과정 등

ㅇ 사 업 비 : 263백만원

ㅇ「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산악구조대원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는 하반기에 산악구조 교육 및 훈련(20명 계획)

  * 산불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시기 조정 가능

ㅇ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교육과정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정

  ·교육인원 : ('13) 1,710 → ('14) 1,620 → ('15) 1,520 → ('16계획) 845명

ㅇ 제16회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과정 운영

-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등산교육과 백두대간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산림생태계의 올바른 이해와 국토사랑 정신을 고취

- 대 상 : 중·고등학생

- 기 간 : 2016. 7월 말 ~ 8월 초

- 장 소 : 백두대간(684㎞) 약 10개 권역

- 참가인원 : 약 240명

- 참여방법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msc.kr)를 통해 공고(6월 게시 예정)

  * 지원 협조사항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 협조 및 인력, 차량, 야영장 등 협조·지원

ㅇ 교육의 성과제고,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장·단점 분석, 개선방안, 성과 평가 도출을 위해 자체만족도 조사를 위탁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 전과정(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정 제외)

ㅇ 제1회 청소년 백두산 탐방과정 운영(2016년 신설)

- 청소년들에게 백두산 및 주변지역 산림생태·문화 탐방을 통해 남북분단의 현실 체험과 항일독립투쟁 발자취 체험으로 애국정신 함양

- 대　　상 :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우수 학생(인솔강사 등 포함)
- 기　　간 : 2016년 5월중(5박 6일간)
- 장　　소 : 중국 백두산 일원
- 참가인원 : 약 41명
- 교육과목 : 등산의 기초, 백두산의 이해, 체험활동(생태교육, 백두산 탐방 등)

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ㅇ「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 지원

ㅇ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산악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및 지원사업 추진

-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 홍보 활동
- 숲길체험지도사 교육 및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실행

ㅇ 센터 발전방안(2014년)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 및 자립기반 구축

-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경쟁력 확보방안 모색
- 센터가 등산·트레킹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확대

ㅇ 숲길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전국 걷는 길 DB 구축 및 정보 공유화 추진

- 전국 걷는 길 네트워크 구축 및 숲길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 연차별 구축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ㅇ 유관 기관 및 기업, 산악단체 등을 활용한 등산로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이용도가 높고 특색 있는 등산로는 민간단체를 이용한 사후관리 도모
- 지자체별 등산단체를 활용하고, 관내 등산로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 추진
- 숲길관리청별로 관내의 등산로를 선별하여 단체 등과 협약 체결

ㅇ 전년도 성과를 분석한 후 실적이 저조하거나 타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기하고 전체 국민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신규사업 발굴

3) 숲길 안전대책 추진

ㅇ 숲길관리청별로 숲길 안전관리대책 마련·추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5항에 근거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 근거

ㅇ 숲길관리청 및 숲길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경찰서, 소방서 등 24시간 상황유지 유관기관 및 지역숲길 단체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보 공유
-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 강화

·산림청 홈페이지 및 각 숲길 관련 사이트에 '산행 안전수칙' 및 비상연락망 게재

·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119상황실과 산림항공구조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산악사고 구조 활동 전개

·주요 숲길 출입구에 산행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ㅇ 숲길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숲길관리청은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이용자 정보제공 및 안전조치 사항 기록 유지
- 숲길체험지도사(168명) 등을 활용하여 숲길별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순찰
- 지역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산림보호협회 등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한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한 정기 순찰 실시
- 거점 마을별 자율방범조직 구성·운영
- 각종 이정표 및 안내판 등 보수·보완 및 추가 확충

ㅇ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의 효율적인 운영

-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운영
- 산림재해 및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한 숲길의 일시적 이용 통제

ㅇ 국가지점번호 제도 도입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에 설치된 안내판, 이정표 등에 국가지점번호 부여 및 번호판 설치

4) 산악구조대 운영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공중, 산림항공본부) 〉

ㅇ 산림항공구조대(산림항공본부) 운영 및 교육 강화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구조대 운영계획 수립·제출
-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1회 이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참여

* 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산악구조대원반 교육 수행

- 등산객이 집중되는 봄·가을철 및 공휴일·주말 등 산악구조 대응 및 상황 유지 철저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산악사고 대응

〈 민간산악구조 활동의 협력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

ㅇ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민·관 합동 구조체계 구축
- (사)대한산악구조협회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정책방향 공유
  ·구조협회 : 1본부 17개 시·도 연맹소속 민간구조대 운영(17개대 700명)
- 해외(중·일) 산악구조대와의 합동훈련에 교류 참여(산림항공구조대)
-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 대처

ㅇ 제7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개최(6월, 500명)

5) 숲길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안내센터 운영

ㅇ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조성된 트레킹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추진

ㅇ 숲길관리청은 20km 이상의 숲길에 숲길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숲길 운영·관리 계획(예산 및 인력운영 계획 포함) 수립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 안내센터 설치기준 거리축소 건의에 따라 “20km 이상”을 삭제하는 산림휴양법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3호 개정 추진중

ㅇ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숲길안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21개소)

6) 숲길체험지도사 효율적 배치·운영 및 전문성 강화

ㅇ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올바른 산행문화 교육·홍보 등을 위해 숲길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배치·운영
- 운영 계획 : 168명(지방청 등 41명, 지자체 127명)

ㅇ 100대 명산과 기 개통·운영 중인 트레킹길의 숲길안내에 우선 배치
- 100대 명산 등 주요 산의 숲길에 대한 GPS 좌표 보완조사 및 현재까지 미조사된 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
  * 숲길안내센터에 우선 집중 배치하고 숲길안내센터가 아닌 사무실 근무 등은 지양

ㅇ 숲길체험지도사 표준교재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능력배양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4년 용역사업 결과 보급

ㅇ 숲길체험지도사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 실시

- 교육일정 : 2016. 2～4월중
- 교육인원 : 기당 40명(4회)
- 교육기관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7)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숲길이용 문화 정착

ㅇ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 등 지역 산악단체 참여 활성화

  * 과도한 산행열풍 및 과시를 위한 고가 아웃도어 열풍 자제

ㅇ 숲길 이용과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숲길 홍보를 위해 스토리텔링 개발 운영

- 숲길 스토리텔링의 운영을 정착하고 운영내용 및 결과를 다른 숲길에 확산
- 숲길체험지도사 등이 숲길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재미있게 안내하여 숲길 주변의 역사성 재조명

  * 예) 숲길별 구간명칭을 '남명 조식의 길', '화해와 상생의 길', '묵언의 길' 등

라. 추진일정

ㅇ 트레킹길 운영·관리 위탁계약 체결 보고 : 계약체결 즉시

ㅇ 2016년도 등산·트레킹학교 운영계획 수립 : 2016. 2월

ㅇ 등산·트레킹학교 운영·위탁 계약 : 2016. 2월

ㅇ 숲길체험지도사 위탁교육 : 2016. 2~4월

ㅇ 등산·트레킹학교 운영 : 2016. 3~11월

ㅇ 제7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개최 : 2016. 6월

ㅇ 트레킹길 운영·관리 상반기 실적보고 : 2016. 7. 15일까지

ㅇ 제16회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 2016. 7~8월

ㅇ 등산·트레킹학교 운영결과 제출 : 2016. 12월

ㅇ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업 추진 : 연중

ㅇ 2016년도 트레킹길 운영·관리 실적보고 : 2017. 1. 15일까지

24. 국립등산학교 건립

목 표

◇ 국립등산학교 건립으로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및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ㅇ 건축 설계 및 1년차 공사 : 2,200백만원(총 사업비 5,000백만원)

◇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 관리 내실화

ㅇ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위탁사업 : 2,269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국민소득 수준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등산인구 급증
- 등산인구(연1회 이상) : ('01) 27백만명 → ('10) 30백만명 → ('15) 32백만명

ㅇ 산행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산행객들의 산악사고 지속증가
- 산악사고 구조건수 : ('10) 7,718건 → ('13) 10,882건 → ('14) 10, 747건

ㅇ 올바른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참여 기회 부족

나. 기본방향

ㅇ 등산역사·문화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교육·전시·홍보체계 강화 필요

ㅇ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국립등학교 건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등산관련 교육·체험·정보전달 등 안전교육 기능수행은 물론 등산교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여 등산교육 서비스 질 향상

ㅇ 박물관 소장품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기록·전시 등을 통한 국립산악박물관의 운영 내실화

ㅇ 등산·트레킹 교육·체험·정보전달 등 복합 문화시설 기능 수행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립산등산학교 건립

ㅇ 총사업비 : 5,000백만원(설계비 200, 건립비 4,600, 감리·부대비 200)
- 장 소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35-3번지 국립산악박물관 부지내
- 설 계 : 2015. 12월 ~ 2016. 5월(135일)

- 건 축 : 2016. 9월 ~ 2017. 9월
  * 총 공사비 4,600백만원, 1년차 2,000백만원, 2년차 2,600백만원
- 주요시설 : 강의실, 사무실, 기숙사, 식당, 자료실 등

○ 국립등산학교의 건립취지·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가 참여
- 등산·트레킹지원센터, 동부지방산림청, 건축, 교육프로그램 분야 등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최초 국립등산학교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상징적 디자인 등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 국내·외 등산학교의 건축기술의 벤치마킹 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여 설계에 반영
- 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및 현황 측량, 입지여건 및 환경분석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등의 구체적인 설계도서 마련

○ 건축 부문 중간·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추진(상반기)

○ 건축공사 및 감리 추진(동부지방산림청 수행)
- 공사비 관련 예산 재배정('16. 3월), 건축공사발주('16. 7~8월 예정)
- 공사 착공 및 기공식('16. 9월 예정), 2016년도 건축공사(1년차 시공) 추진

2)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활성화

○ 산악단체와 산악인을 통한 박물관 소장품 자료 지속적 확보
- 자료 구입 규모 : ('15) 4억원, 437건 →('16) 5억원, 약500여건 이상
- 기 구입한 유물은 표준자료관리방식에 의한 철저한 자료 구축·등록

○ 박물관 소장자료 등을 활용한 기획전시(4회) 및 상설전시실 확대 운영
- 테마별 주제 선정 전시 및 소장·기탁 자료로 전시물 교체

○ 국립등산학교의 운영비 절감을 위한 국립산악박물관의 기존 인력 활용 및 시설물 통합 관리운영 방안 마련 등
- 인적자원 및 사무실·홈페이지 운영 등 박물관 인력 및 시설 활용

라. 추진일정

○ 국립등산학교 건축설계(기본·실시) 추진(인·허가 포함) : 2015. 12월 ~ 2016. 8월

○ 국립등산학교 건축공사 착공 : 2016. 9월(동부지방산림청)

○ 국립등산학교 건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연중

○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 연중

25.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 · 관리

목 표

◇ 전시원 및 조경지 보완(식물 식재, 경관개선)으로 '17년 개원 대비
◇ 주요시설(건축물, 장비), 사무기기, 가구 등의 완벽한 준비
◇ 수목원 안내·운영 인력 확보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시개방

가. 정책여건

ㅇ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감소로 인하여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ㅇ '17년도 개원 예정인 수목원이 봉화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지역주민의 기대가 크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필요성 증대

나. 기본방향

ㅇ 완공시설(전시원, 건축물, 장비)의 보완과 시범운영을 완벽히 하여 최고 성능 유지

ㅇ 수목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시개방

ㅇ 종자 영구저장을 위한 Seed Vault 시설 운영 및 연구시스템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원 주제별 전시원 및 조경지 보완

ㅇ 주제별 전시원 식재 식물을 다양한 경로로 추가 확보
- (구입) 진달래·양치식물·조팝나무류 등 특정 분류군 식물 200종 20천본
- (증식) 백두대간 자생식물 중심으로 자체수집 및 증식 50종 100천본
- (기증) 공·사립수목원, 각급 학교 및 기관 등의 기증을 유도하여 식물 추가 확보
- 식물자원은 원산지정보 및 생산·관리 이력을 철저히 기록 → DB구축

ㅇ 유보 조경지에 대한 식재디자인 및 식물 식재
- 수목원 부지 내 유보조경지(약 20ha, 절성토경사면·하천변·나지 등) 식재기반 정리(5월)
- 경관식물 추가 확보 및 식재(자체 증식분을 활용하여 식재, 5～10월)

ㅇ 전시원 및 조경지 관리 전문가 추가 확보('15년 4명 → '16년 12명)

ㅇ 전시원 내 안내판, 해설판, 식물표찰 추가 설치 등 일제 정비

2) 완공 건축물과 장비의 시운전 및 관리

ㅇ 완공 건축물 및 장비 시운전 계속

- 방문자센터, 산림환경연구동 등 20개 건물의 시운전을 통해 전기·통신·소방·기계 등 시설부문 운전 안전성 확보
- 건축물 관리매뉴얼 제작, 관리이력 기록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리체계 확립
- 전기·통신·소방·기계·환경 부문 통합 관제시스템 시운전 및 24시간 감시체계 확립

ㅇ 시범운영 및 관리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향상

-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임시채용) 및 담당 업무 부여

  * 추가확보계획 : '15년 7명(기채용) → '16년 15명(신규채용 8, 전기·통신·기계·영선)

-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수시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담당분야 업무 전문성 강화

  * 분야별 법정교육 필수 이수, 유사시설 견학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능력 배양

3) 수목원 주요시설 운영 준비(3,238백만원)

ㅇ 사무기기, 연구장비, 가구류 등 설치

- 상반기 수목원 임시개방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하반기 수목원 조직 및 인력이 확정되면 사무실비품 등 추가구입(439백만원) 추진
- 전시원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백두대간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구입 설치(2,799백만원)

  * HPLC, GC, 생태기상장비, 전시원 트램, 대형버스 등 35종류

ㅇ Seed Vault 운영

- 산림청 소속기관 및 공·사립수목원 보유종자 중복보존('16년 3만점)
-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연구기관 및 식물원 종자 중복보존 기반 마련

  * 개원전까지 국립수목원 MOU 체결국가 종자 중복보존(7개국 2,000점)

- 종자 저장병 및 케이스 등 필수재료 구입(250백만원)

ㅇ 호랑이 이전 및 사육관리

- 대전동물원 및 국립수목원(광릉) 사육중인 백두산호랑이를 수목원(봉화) 호랑이 숲으로 이전('16년 하반기) 및 사육관리 철저

4) 수목원 안내·운영인력 확보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시개방

ㅇ 인력 확보(안내, 해설, 교육 등) 및 전문성 강화(워크숍 및 리허설)

- 수목원 운영 및 안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담당업무 부여

  * 총 소요인력 : 교육, 해설, 안내 등 30명(기확보 13명, 신규채용 17명)

-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수시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담당분야 업무 전문성 강화

ㅇ 수목원 정보화 사업 및 운영시스템 구축
- 수목원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수목원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 종관리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1,542백만원)

ㅇ 하반기 임시개방(방문자센터, 전시원)
- 수목원 일부 시설물 및 전시원을 임시개방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사항과 문제점 보완하여 '17년 개원 준비 대비

5)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대내·외 홍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백두대간수목원 대내·외 홍보(500백만원)
- 임시운영 및 개원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매체별 홍보 추진
- 수목원 홍보물품 제작, 리플릿 및 책자 발간 추진

ㅇ 백두대간수목원 개원준비를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 수목원 운영, 전시원 관리, 교육프로그램운영, 종자보존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 운영하여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라. 추진일정

ㅇ 전시원 관리 장비구입 : 2016. 2월~

ㅇ 사무실비품구입 : 2016. 2월~

* 조직구성 규모 및 방향에 따라 일부 연구장비 및 비품은 6월 이후 구입

ㅇ 전시원 식재식물 확보 : 2016. 2~10월

ㅇ 유보조경지 식재디자인 및 식물 식재 : 2016. 2~10월

ㅇ Seed Vault 종자 중복보존 추진 : 2016. 2~12월

ㅇ 수목원 정보화 사업 및 운영시스템 구축 : 2016. 2월 용역 발주

ㅇ 수목원 추가인력 확보 : 2016. 3~7월

ㅇ 식물 안내판, 해설판, 표찰 등 일제 정비 및 추가 설치 : 2016. 4~10월

ㅇ 수목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 2016. 6월

ㅇ 전시원, 시설 등 관리 전문가 채용 : 2016. 7월

ㅇ 백두대간수목원 개원준비 자문단 구성·운영 : 2016. 5월, 10월

ㅇ 임시개방 : 2016. 7월(예정)

ㅇ 호랑이 이전 : 2016. 하반기

ㅇ 백두대간수목원 대내·외 홍보 : 연중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후속조치 : 연중

ㅇ 완공 건축물 및 장비 시운전 : 연중

26. 국립산림치유원 조성·운영

목 표

◇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우리나라 산림치유 메카 조성 완료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의 원활한 인계를 통한 개원 준비

가. 정책여건

- ㅇ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의 증가로 산림 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ㅇ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실현의 구체화
- ㅇ 산림치유의 기초연구, 교육, 체험, 체류 기능을 연계하는 세계 최초의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치유 활성화 기틀 마련

나. 기본방향

- ㅇ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회도로 및 산림치유문화센터 조성 등 2단계 사업 마무리 철저
- ㅇ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산림치유시설의 성공적 개원 및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및 운영프로그램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의 인계인수 철저
- ㅇ 국립산림치유원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운영관리 기반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ㅇ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원
- ㅇ 면　　적 : 2,889ha(중심시설지구 152ha)
- ㅇ 총사업비 : 1,480억원(국비 100%)
- ㅇ 사업기간 : 2010～2016년(7년간)
- ㅇ 주요시설 : 건강증진센터, 수치유센터, 수련센터, 치유마을, 치유숲길 등

2) 우회도로 및 산림치유문화센터 등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ㅇ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중심시설지구 우회도로 조성(38억원)

- 공정계획, 일정계획, 진도관리, 통제·조정 관리로 공사의 품질향상 제고
- 공기준수, 품질확보, 원가절감, 안전확보, 환경보전 등을 통해 공기 내 완료

ㅇ 체계적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치유문화센터 조성

- 산림치유,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시공 품질 향상
- 목재 등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여 산림치유 컨셉에 부합하는 시설 조성
- 예천지구 장기체류자를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치유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명상, 티테라피, 아로마요법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3) 국립산림치유원 운영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ㅇ 이용객 관리시스템, 예약결제시스템, 운영관리시스템 등 정보화사업 추진

ㅇ 주간점검회의 및 정보화 전문감리를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

4) 국립산림치유원 개원 대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의 인계인수 추진

ㅇ 이용자별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과 시설분야 시운전을 통한 문제점 해소 및 원활한 운영 도모

  * 산림치유, 의료, 운동처방, 원예치료 등과 연계한 체계화된 치유서비스 제공
  * 전기, 통신, 기계 등 시설관리 인력 수급을 통한 원활한 시설관리 체계 구축

ㅇ 산림치유원 국유재산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의 인계인수 추진

  * 산림치유원의 토지·건물은 관리위탁, 물품은 무상대부 등 추진

라. 추진일정

ㅇ 산림치유원 조성공사 주·월간 공정회의 : 주·월 1회

ㅇ 산림치유원 정보화시스템 주간점검회의 : 주 1회

ㅇ 산림치유원 자문위원회 개최 : 반기별 1회

ㅇ 산림치유원 국유재산 인계 및 관리위탁 추진 : 2016. 3월

ㅇ 산림치유문화센터 공사 발주 : 2016. 3월

ㅇ 산림치유원 우회도로 및 산림치유문화센터 준공 : 2016. 12월

ㅇ 산림치유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 2016. 12월

27.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목 표

◇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인 중앙수목원의 위상에 걸맞은 최적화된 실시설계 및 조성 추진

ㅇ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행복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건축·조경 설계

ㅇ 전시·연구 및 식물생육에 적합한 환경 조성

가. 정책여건

ㅇ 이전 대상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구획별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시민 등의 요구 증대

-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수목원의 조기 준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여론 악화 우려

* 당초 : '12～'16 → 변경 : '12～'20

ㅇ 중앙공원내 금개구리 보존에 따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간 갈등과 이견으로 중앙수목원 공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우려

- 행복도시건설청, LH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필요

ㅇ 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

- 금리인상 등 한국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세수 확보 곤란

나. 기본방향

ㅇ 한국적인 도심형 수목원으로의 기능구현을 위한 국내외 수목원 벤치마킹과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실시설계 완료

ㅇ 주변경관을 고려한 수목원 조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건설청, LH공사, 세종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과 호의적인 여론 조성

ㅇ '16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립중앙수목원 기반조성공사(토목공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내(세종시 세종리)
○ 면　　적	: 65ha(건축 연면적 2.2ha)
○ 총사업비	: 1,350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2020년(9년간)
○ 주요시설	: 한국전통정원, 희귀·특산식물원, 민속식물원, 분재정원, 사계절 전시온실, 연구동, 방문자 센터 등

○ **연차별 추진사항**

’12~’16	’16~’20	’20~
《계획·설계단계》	**《주요시설 공사 단계》**	**《운영 및 개원 준비단계》**
◦총사업비 관리사업 등록 ◦일괄대행서비스 약정체결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수목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수목원 기본계획 관보고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기본설계 완료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심의입찰 ◦인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금개구리 보존 협의·반영 ◦실시설계 완료 ◦조성공사 계약(’16.5월)	◦공사착공(’16.6월) ◦주요 시설공사 추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전시원, 디자인 등) ◦도입 가능식물 수집·전시 - 식물조사 및 자료 수집 - 국내·외 식물 확보·식재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수목원의 효율적인 전시프로그램 구성 ◦수목원 운영·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 종료 - 시설·연구 기자재 구입 및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전시식물 및 자료 관리 ◦연구시설, 기자재 등 설치 ◦연구·전시 및 교육·홍보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운영·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조직인력·규정 등 운영체계 구축

2) 랜드마크적인 도심형 국립수목원으로 조성되도록 실시설계

○ 한국적인 도심형 수목원으로서 기능구현을 위해 국내외 수목원 벤치마킹 등 정보를 수집하여 설계에 반영

- 기술제안 심의위원 지적사항 보완과 주요 기능별 벤치마킹으로 최적의 설계안 도출
- 수요기관(산림청)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과 전시·연구기능 구현에 적합하도록 실시설계

ㅇ 설계 완료 후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중앙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 조성 유도

ㅇ 실시설계 완료 후 상반기 중 조달청 적격심의 완료('16. 5)

3) 건설청·환경부 및 LH공사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차질없는 추진

ㅇ 국립수목원, 환경부, 건설청, LH공사, 조달청 및 협력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산림청, 국립수목원, 자문위원, 용역사 및 시공사 간 주기적 워크숍 개최
  * 도입가능 식물목록 보완·확정, 주요시설 및 주제원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 건설청, 환경부, LH공사, 세종시 등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 추진
  * 사업지 인수인계, 토공반입, 유지용수 확보 및 금개구리 보존대책 등 협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추진 중인 중앙공원*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마련

- 주차장, 동선연결, 생태축, 수경축, 경관축 등 수목원과 중앙공원의 연계 추진
  * 중앙공원 : 2019년까지 LH공사에서 조성 예정
-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보존지역과 연접된 수목원 부지를 완충지역*으로 조성
  * 수목원 금개구리 보존 완충지역 : 3.5ha(50m×700m)

ㅇ 중앙수목원과 중앙공원에 필요한 취수펌프장 및 관입·배수관로 설계 단일화 추진

- 중앙수목원 필요 용수량 : 3,000톤/일(8시간)

4)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기초 토목공사 시행 및 조경계획 수립

ㅇ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중앙수목원 기반조성공사 추진('16년도 : 288억원)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적정 시공물량 확정

ㅇ 도입예정 식물자원의 활착에 유리한 양질의 토량(143만㎥) 확보

- 실시설계에 따른 적정량의 토량 산출후 적치장 등을 운영하여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최적의 토질의 물량을 확보

ㅇ 국립수목원과 수목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전시원과 주제원, 조경용 등 대상지·용도별 식재대상 수종 선정 및 식재계획 수립

- 국내 확보 가능수종, 해외도입 필요 수종, 식물이력관리가 필요한 수종 등으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식물종 분류 및 식재계획 수립

5) 전시원·주제원별 도입가능 식물종 선정 및 도입 추진

ㅇ 효율적인 식물유전자원의 도입을 위해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식물리스트 작성

- 조경식물(조경수협회 등), 국내·외 희귀·특산식물(사립수목원 등) 조사·반영

ㅇ 증식온실·묘포장 우선 설치 등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통해 확보된 식물종을 증식하여 식재하는 방안 추진

- 수로공사, 증식온실, 묘포장 등 우선 시공으로 확보가 어렵거나 국립수목원에서 제공한 수종을 증식하여 식재하는 방안 추진

ㅇ 산림청 산하기관 및 공·사립·학교수목원에서 무상 제공 가능한 기부 검토

- 이식 가능한 식물에 대해 교환 및 기부를 통한 도입가능 식물 검토

라. 추진일정

ㅇ 중앙수목원 실시설계 현황보고회 개최 : 2016. 1월

ㅇ 수목원 전문가 워크숍 개최 : 2016. 1월

ㅇ 국립중앙수목원 실시설계 위한 자문위원회(2차) 개최 : 2016. 2월

ㅇ 중앙수목원 조성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개최 : 2016. 2~3월

ㅇ 중앙수목원 조성 실시설계 적격심의 개최(조달청) : 2016. 4월

ㅇ 중앙수목원 조성을 위한 관급자재 심의 : 2016. 4월

ㅇ 중앙수목원 조성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및 완료 : 2016. 5월

ㅇ 중앙수목원 조성 공사 계약체결 및 착수 : 2016. 6월

ㅇ 중앙수목원 조성 1차 공사 완료 : 2016. 12월

ㅇ 중앙수목원 조성 기반조성공사 등 토목공사 실시 : 연중

ㅇ 중앙수목원 조성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연중

ㅇ 중앙수목원 조성 관련 인·허가 추진 : 연중

산림보호국 소관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목 표

◇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호·관리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 ㅇ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3~'17)」의 체계적 추진
- ㅇ 산림소생물권(biotope) 관리 및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ㅇ 야생화 등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체계 강화

가. 정책여건

ㅇ 인간의 환경 파괴에 기인한 생물종 감소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생물다양성 협약(CBD), 나고야 의정서(ABS)[15] 채택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대책 추진

ㅇ 국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전을 추진

ㅇ 산림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사라져 가는 산림생물에 대하여 현지 내·외 보전 요구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추진 필요

나. 기본방향

ㅇ 국가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한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3~'17)」의 지속적 추진

ㅇ 산림 내 주요 산림생물종 및 소생물권(Biotope)의 서식지(분포지) 조사·관리를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

ㅇ 산림생태계의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추이를 예측하는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을 위한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추진

ㅇ 야생화 증식기술 개발 및 식재매뉴얼 보급으로 야생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15)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자원제공국의 승인, 자원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시 채택되어 제12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발표('14.10.12)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지속적 정책 추진

ㅇ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3~'17)」 4차년도 중점과제의 체계적 시행
- 평창 CBD 등에 대응하여 DMZ, 백두대간, 대관령초지 등 산림생태계 복원 추진
- 자생식물(야생화 등)을 포함한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 기반 마련

ㅇ 특별산림보호대상종(53종) 정비 및 자생지 보전사업 추진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선정기준 및 보전방안과 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2013)」 결과를 반영한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변경 지정 및 자원화 추진
- 산림사업 추진 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2) 우리 꽃 야생화 자원의 지속적 발굴, 관리 및 홍보 강화

ㅇ '야생화 100대 명소'에 대한 자원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야생화 군락지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를 지자체, 지방청 등과 합동 추진
- 기존 100대 명소 외에 야생화 명소 지속적 발굴 및 목록화

ㅇ 야생화 명소별 합리적 이용 및 보전 관리방안 마련
- 사립 수목원·식물원 등과 야생화 명소 관리협약 체결 및 위탁관리
- 개화시기, 지리적 정보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꽃길 지도' 제작·보급
- 야생화 대중화를 위한 재배매뉴얼 개발 및 환경적응성 연구 추진

ㅇ 야생화의 문화관광 상품화 및 야생화 향유 문화 확산
- 야생화 및 작품 전시회 개최로 국민 생활 속 향유문화 확산
- 고유종을 개량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 전국의 수목원, 식물원, 자연휴양림,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등 녹색공간에 야생화 식재를 확대하여 관광인프라 확충

  *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등과 협업을 통한 야생화 관련 관광상품 개발 추진

3) 산림습원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ㅇ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Biotope) 관리를 위해 '16년 전남,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

  * ('06~'08) 국유림조사 → ('10~'14) 공·사유림 조사 → ('15~'19) 정밀조사·모니터링

ㅇ 산림습원조사지의 보전가치 평가 등급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① 산림습원 중요식생, 희귀식물 등을 감안하여 완충지역 면적을 포함
② 산림습원 핵심구역 주변에 늪, 소택지 등이 연접된 경우 이를 단지화
③ 주변에 산림습원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된 경우, 이를 유역화 하여 검토·지정

4)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추진

가)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모니터링 및 취약종 생육환경 조사

ㅇ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100종)의 개화·개엽시기 모니터링 추진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22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ㅇ 고산지역·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분석 실시

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유용산림식물종 보전 · 적응사업 추진

ㅇ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 · 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 · 증식 · 보존 및 현지(서식지) 내 복원 · 적응사업 실행

ㅇ 식생 권역별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의 보존 · 적응사업 추진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73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다)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종 증식 및 복원 추진

ㅇ 산림과학원과 협업으로 한라산 구상나무 군락지 복구
- (현지내 보전) 천연하종 유도 등 자연적인 복원방법 추진
- (현지외 보전) 전나무에 구상나무를 접하는 이종접목기술 및 대량 증식기술 개발, 현지외 보전을 점진적으로 확대

5)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실시

ㅇ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는 정도를 조사 · 분석하여 국민에게 산림의 건강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책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전국 1,000개소 고정표본점(매년 200개소/5년)
- 조사 항목 : 4개부문(수목건강, 식생건강 등), 12개 지표(수관, 임분, 토양 물리성, 지의류 군락 등), 27개 항목(수관 활력도 등)
- 추진체계 : 산림청 총괄, 국립산림과학원 주관, 한국임업진흥원 수행

ㅇ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6～'20)와 통합 · 시행

수목건강

지표	조사항목
수관	수관활력도
	수관급
	형질급
수간	줄기피해 (피해정도)
잎	잎 피해상태 (병해충 등)
생장	수고생장
	직경생장
고사목	부패정도

식생건강

지표	조사항목
상층	수종
	종다양성
	밀도
	피도
	외래식물침입
하층	초본층
	관목층
	치수
임상층	임상층 두께
고사율	생목대비 고사목 직경생장 비율

토양건강

지표	조사항목
이화학적 상태	토양산도(pH)
	전질소 함량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양이온 치환용량
물리적 상태	유효토심
	견밀도
	건습도

대기건강

지표	조사항목
지의류 군락	수도(종수)

산림건강성 지표 및 조사항목 (▭: 조사 및 채집 후 분석항목)

라. 추진일정

- ㅇ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시행 : 2016. 1~12월
- ㅇ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실시 : 2016. 1~12월
- ㅇ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6. 1월
- ㅇ 산림습원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16. 1월
- ㅇ 야생화 관광상품 개발 관계기관 협의 : 2016. 5월
- ㅇ 우리 꽃 야생화 전시회 개최 : 2016. 5~6월
-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실태 점검 : 2016. 6월
- ㅇ 산림습원 현장조사 점검 : 2016. 7월
- ㅇ 산림습원 현장조사 완료 및 최종 보고회 : 2016. 12월
- ㅇ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최종 평가회 : 2016. 12월
- ㅇ 산림습원조사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 2016. 12월

2.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확립

목 표

◇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적극적 보호·관리

- ㅇ 산림보호구역 : 446,964ha(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52,168ha)
- ㅇ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설 : 1개소 / 운영 : 8개소, 1,708백만원
-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 4개소(전남, 경북), 200백만원

가. 정책여건

ㅇ 산림식물의 유전자·종 보존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필요성 증대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 필요

ㅇ 국토의 이용 및 개발 수요 확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구 증가

나. 기본방향

ㅇ 산림보호구역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효율적 운영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산림생태관리센터의 기능 활성화

ㅇ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공간정보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보호구역 유형 및 관리제도 개편으로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ㅇ 산림보호구역 유형을 다양화 및 체계화하여 보호기능 강화

- 지정면적이 적고 보완적 성격의 생활환경, 재해방지 보호구역 등을 통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유형을 세분화하여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 산림보호구역 개편안 마련 후 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추진

ㅇ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 정비 및 실태조사 추진

- 지자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위한 기준 및 매뉴얼 작성·보급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관리계획 수립·시행
- 산림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관련 공간정보 현행화 추진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 및 관리의 효율성에 관한 평가 기준·방법 마련

2) 산림보호구역 확대 및 산림생태관리센터 기능 활성화

ㅇ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산림부문의 '아이치 타겟' 이행 강화

- 사찰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협약 체결 확대

  * '14년말 현재 사찰림은 66천ha로 이중 2.3천ha가 보호구역으로 지정, 향후 사찰림 50천ha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

- 국립공원 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 추진

  * 한라산(구상나무, 왕벚나무), 설악산(눈향나무, 난쟁이붓꽃), 무등산(털조장나무)

-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산림보호구역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주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센터를 지역거점 기관으로 활용

ㅇ 산림생태관리센터 확대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사업 활성화

- 구상나무 보전·복원을 위한 '한라산 산림생태관리센터' 설치 추진

  * 산림생태관리센터 설치 : 1개소 / 운영 : 8개소

- 산림생태관리센터별 관리구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식생조사·모니터링, 식생복원 등 보호구역 관리 강화

구 분	조성년도 (예정)	위 치	건축규모 (㎡)	사업비 (백만원)	관리기관
점봉산	2010.10.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218-1	107	235	인제관리소
계방산	2010.10.	홍천군 내면 자운리 12-16	59	121	홍천관리소
민북지역	2012.12.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45	504	1,112	춘천관리소
울진소광리	2013.05.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9	1,170	3,039	울진관리소
가리왕산	2013.12.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53	486	1,338	평창관리소
도서지역	2013.12.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산146	594	954	영암관리소
DMZ	2016.03. 예정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43	7,495	-	양구관리소
향로봉	2015.12.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2	235	570	양양관리소
한라산	'16 개원 예정	제주 서귀포시 돈내코로 22	-	-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

3)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육환경개선사업 추진

ㅇ 생태관리센터가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기능 유지·증진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내용 >

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별 특성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생태탐방 시설 정비
- 종 보존과 증식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생육환경개선 실시
- 산림유전자원의 인위적 피해 예방 시설 및 생태탐방로 설치

②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ㅇ 사유림(사찰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육환경개선 사업 시행

- 사업대상지 : 5ha이상(보전가치가 높은 경우 1ha 이상도 가능)
- 2016년 사업 : 4개소(나주, 장흥, 문경, 울진)

소 재 지	지정유형	지정면적 (ha)	지원예산 (백만원)	주요 분포식물	소유자 (관리자)
합 계		2,594	200		
①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210 외2	유용식물	40	90	비자나무	사찰림(불회사)
②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10-1	유용식물	3	30	비자나무	사찰림(보림사)
③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외1	희귀식물	2,290	42	고란초 등	사찰림(봉암사)
④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산30-1	원시림	261	38	소나무	사찰림(불영사)

라. 추진일정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지침 시행(산림청) : 2016. 1~12월

ㅇ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2016. 1~12월

ㅇ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 2016. 1~12월

ㅇ 산림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추진 : 2016. 5~12월

ㅇ 한라산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설 협의 : 2016. 6월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 사업지 점검 : 2016. 7월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실태 점검 : 2016. 7월

ㅇ 한라산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설 : 2016. 10월

ㅇ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및 조성현황 점검 : 2016. 12월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 내·외 보전기반 구축

목 표

◇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증식·연구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환경 보전·관리기반 확충

ㅇ 국가수목원(새만금, 1개소), 지방수목원(27개소, 65억원), 산림박물관(3개소, 8억원), 지역생태숲(5개소, 22억원), 자생식물원(5개소, 13억원) 조성

가. 정책여건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식물보전전략(GSPC) 등 자생식물자원의 이용가치 증대로 국가 간 식물자원 확보경쟁 및 식물분야의 국제협약 이행 노력 강화

ㅇ 2020년 국내 등록 수목원이 84개소(국가 3, 공립 40, 사립 39, 학교 3)가 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수목원별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재정립 필요

ㅇ 국립수목원, 국가수목원과 공·사립수목원간 기능별, 특성별 등 역할분담 및 지원·활용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나. 기본방향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증식 및 연구기반 확충

ㅇ 식물유전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식물원·수목원간 네트워크 구축

ㅇ 교육, 체험, 치유 등 산림문화 및 복지공간으로서 수목원의 기능과 역할 확대

ㅇ 사립수목원·식물원 운영 활성화 및 전문일자리 창출 기여

ㅇ 식물원·수목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향상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원의 진흥·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지속 추진

ㅇ 「제3차 수목원진흥 기본계획(2014~2018)」 체계적 시행

ㅇ 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유용생물자원의 수집·관리·보전체계 구축

ㅇ 수목원의 전문성을 부각시킨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기반 구축

- 국·공·사립별 특성에 맞춘 수목원교육 및 해설 체계화
- 온라인, 모바일 교육 제공으로 자기학습식 해설의 첨단화

ㅇ 수목원의 산림치유 기능 강화를 통한 산림복지 향유계층 확대 및 수목원 자원봉사제도 개발

- 치유전문수목원 모델 개발 및 조성으로 산림복지 기반 확대
- 수목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도입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수목원 서포터즈 제도 도입

2) 국가수목원(새만금) 조성사업 추진

ㅇ 해안.도서식물의 보전 및 연구.교육.전시를 위해 해안형 국가수목원 조성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내용 추진내용 및 당위성 설명

* (총면적) 151ha, (총사업비) 1,705억원, (사업기간) '16～'24년(9년간)

'16~'18	'19~'23	'24
《계획·설계단계》	《주요시설 공사 단계》	《운영준비·개원 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측량 및 지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식물 수급계획 수립 ◦인허가 및 건축 협의 등 ◦조성공사 계약	◦주요 시설공사 시행 -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조경, 전시원 등 ◦전시식물 및 자료 본격 수집 - 식물조사 및 자료 수집 - 국내외 식물 확보·식재 ◦수목원 연계 산림사업 추진 ◦수목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시설공사 및 공사감리 마무리 - 시설·연구 기자재 설치 및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전시식물 및 자료 관리 ◦연구·전시 및 교육·홍보 ◦운영프로그램 개발·운영 ◦조직인력·규정 등 운영체계 완비

3)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확대 및 운영 활성화

ㅇ 공·사립수목원을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 확대 및 운영 지원

- 공·사립수목원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15년 18개소 → '16년 20개소)
-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식물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 기 확보된 국내 희귀·특산식물 및 국외 유용식물자원 활용 방안 모색

* 특화된 전시원 조성, 책자발간, 식물원·수목원간 식물자원교류방안 모색 등

- '16년 사업추진 : 위탁연구사업 수행기관 확대(4기관 이상, 7억원)

4) 수목원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ㅇ 수목원전문가 교육제도 개편 및 인증기관 확대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0 교육과정 인증을 교육기관 지정으로 법률 개정

  * 입안('16.2월) → 관계기관 협의('16.3월)→입법예고('16.4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6.5월) → 법제처 제출('16.6월) → 국회('16.7월) → 공포('16.8월) → 시행('17.2월 예정)

- '16년도 상·하반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접수 및 심사(2회/년)

  * 인증교육기관(종료일) : 천리포수목원('16.4), 자굴산수목원('16.12), 신구대학교식물원('20.11)

ㅇ 청장년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학생 50%, 일반 50%)

- 교육대상자 확대(미취업자, 실버 등 우선선발)

  * '16년 사업추진 : 50명 교육, 6억원

ㅇ 수목원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및 평가제도 도입

- 수목원전문가 이론공통수업 통합 운영 및 교재 보완
- 수목원전문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제도 도입('16.12월말)

5) 수목원·식물원 및 산림박물관 특성화·전문화 추진

ㅇ '16년 수목원·식물원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수목원·식물원협회, 대학교수 등 민간단체 및 전문가 정책 참여 활성화
- 기능별, 특성별 등 각 수목원의 역할분담 및 지원·활용 강화 방안 논의

ㅇ 공·사립수목원의 운영 내실화·기술지원 및 미등록 사립수목원 등록 장려

- 전문가 경영역량 분석을 통한 사립수목원별 핵심가치 발굴
- 올해의 수목원·식물원 시상을 통한 수목원 홍보 및 활성화

ㅇ GSPC 2020 16개 Target에 대한 역할 분담과 수목원별 이행계획 수립

ㅇ 공·사립수목원의 식물자원 보전 · 증식 · 전시 및 연구시설 설치 지원

- 사업규모 : 지방수목원(5억원/년), 산림박물관(3억원/년)

  * '16년 사업추진 : 지방수목원(27개소, 65억원), 산림박물관(3개소, 8억원)

6) 식물원·수목원 홍보 및 국민적공감대 형성

ㅇ 식물원·수목원 홍보 및 박람회, 전시회 등 콘텐츠 개발

ㅇ 월간지, 소식지, 책자 등을 활용한 홍보방안 수립

ㅇ 지역별, 유형별 수목원·식물원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ㅇ 송출지역·시간대·타깃 등에 따른 차별화된 식물원·수목원 홍보
- TV, 신문, 지하철, 고속도로 전광판 등 매체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추진
- 비즈링, 온라인 이벤트,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대형마트 카트 등 매체 활용

7) 자생식물 보전 강화를 위한 생태숲 및 자생식물원 육성

가) 지역 생태숲 조성·관리

ㅇ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다양성이 높아 자연상태로 보존 · 관리할 가치가 있는 숲으로 30ha 이상인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정
* 자연휴양림 • 도시숲 등과 연접되어 교육 • 탐방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 20ha 이상

ㅇ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심사 실시 및 친환경적 조성 유도
- 생태숲 지정시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를 심의·지정
- 조성시 인공시설물의 설치는 최소화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시설
- 산림생태원을 시설할 경우 건축물 설치비용은 총예산의 2분의 1이내로 하고 식재식물은 인접 시·군에 자생하는 식물을 70%이상 식재
* '16년 사업추진 : 5개소(설계 1, 조성 2, 보완 2), 22억원

ㅇ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숲 운영·관리
-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으로서의 생태적 기능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보전되거나 복원될 수 있도록 관리
- 산림생태와 생물다양성의 연구, 교육, 탐방, 체험 등을 위한 기능이 증진되도록 하고, 자생식물 중심의 보전·관리로 생태계 교란 방지
- 생태숲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전문관리인을 배치
* '15년 12월 제작 배포한 '생태숲 조성 · 관리 매뉴얼'에 따라 운영 · 관리

나) 자생식물원 조성 · 관리

ㅇ 우리 고유의 향토 · 자생식물 등 초본류 · 관목류의 체계적인 보전 · 육성으로 식물종다양성 · 자원화 연구의 활성화 촉진
- 지방고유의 향토 · 특산식물을 보존 · 전시할 수 있는 자생식물 전시원 조성
- 자생식물의 교육 · 탐방 · 체험 등을 위한 전시관 · 체험관 · 산림생태관찰원 · 탐방로 등 설치 · 조성

ㅇ 지역특산 자생식물의 현지외 보전 기능 강화

- 자생식물원 조성시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경관과 조화되도록 시설
- 식재되는 식물은 인접 시·군에 자생하는 식물로 식재하여 자생식물의 현지외 보전기능 수행

* '16년 사업추진 : 5개소(설계 1, 조성 2, 보완 2), 22억원

라. 추진일정

ㅇ '16년 수목원전문가 교육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6. 1월

ㅇ 수목원코디네이터 교육실시(산림교육원) : 2016. 2월

ㅇ '16년 수목원·식물원 운영 발전방안 간담회 : 2016. 3월

ㅇ '17년 수목원 · 생태숲 · 자생식물원 등 사업대상지 사전심의 : 2016. 4월

ㅇ 우리생물 바로알기 추진 : 2016. 5월

ㅇ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 2016. 6월

ㅇ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지 현장 지도 · 점검 : 2016. 6월

ㅇ 상반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접수·심사·지정 : 2016. 7월

ㅇ 풍수해(태풍·호우) 대비 수목원 · 식물원 점검 : 2016. 7월

ㅇ 생태숲 · 자생식물원 추진상황 지도 · 점검 : 2016. 8월

ㅇ 수목원 · 박물관 조성사업지 현장점검 : 2016. 9월

ㅇ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지 현장지도·점검 : 2016. 10월

ㅇ 하반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접수 및 심사 : 2016. 11월

ㅇ 겨울철 대비 수목원·식물원 점검 : 2016. 11월

ㅇ '17년 수목원·식물원 홍보계획 수립 : 2016. 12월

4.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목 표

◇ 정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정원조성 확대
◇ 정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 운영
◇ 순천만국가정원을 정원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육성

가. 정책여건

ㅇ 정원에 관한 제도를 규정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 조성·등록으로 정원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정원박람회, 가든쇼 등 정원관련 문화행사 증가

ㅇ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추진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ㅇ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

ㅇ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 조성 확대로 붐 조성 및 산업기반 구축

ㅇ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 등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ㅇ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코리아가든쇼, 산업디자인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ㅇ 관련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 협업을 통한 정원분야 발전방향 모색

다. 세부추진계획

1) 중·장기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추진

ㅇ「수목원정원법」제6조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 기 수립한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대책('15. 6월)과 '정원산업 현황과 전망' 연구용역('15. 9～12월)을 토대로 중·장기 대책 수립

○ 관계부처, 정원정책자문위원회 등 토론회 및 지자체 담당자 시책설명
- 관계부처 등 토론회(2월), 지자체 담당자 시책설명(3월)

2) 정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 정원산업화 기반 마련

○ 지방정원 조성 확대로 민간정원 확산 유도 및 정원문화 붐 조성
- '16 조성계획 : 3개소(강원·영월, 충남·태안, 경북·경주)
  * 영월('16~'18, 12ha, 60억원), 충남('16~'18, 14ha, 60억원), 경북('16~'18, 30ha, 100억원)
- 향후 3년간 조성계획(10개소) : ('16) 3개소 → ('17) 3개소 → ('18) 4개소
- 민간정원 조성 확산유도 및 민간정원 등록에 대한 세부적 기준요건 마련

○ 정원산업에 대한 정책개발, 교육 등을 위한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
- 정원에 대한 정책개발, 정원식물 및 기자재 브랜드 개발, 정원기술교육 및 상담, 전문정원사 육성 등을 위한 정원전문시설 구축
- 총사업비 : 70억원(국비 35, 지방비 35), 사업기간 : '15~'17(3년간)

○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발전을 위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 관계부처 협의체 : 행자부,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문체부, 문화재청, 농진청
- 정원활성화 민간자문위원 : 조경·원예·정원 전문가, 교수 등 10명
- 정책추진 계획수립 및 방향 결정 등에 대한 토론회 등 개최 : 수시

3) 정원관련 공모전 개최 및 홍보로 정원문화 확산

○ 정원문화 확산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2016코리아 가든쇼 추진
- 현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정원디자인 재창출 및 전문가 발굴
- 일시 및 장소 : '16. 4~5월, 경기 고양꽃박람회장
- (1월~2월) 디자인 공모 → (3월) 1차 심사 및 전시작품 선정
  → (4월 초) 작품설명회 → (4~5월) 작품설치(2차심사) 및 전시행사

○ 정원정책 홍보 강화로 정원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코리아가든쇼, 정원박람회, 오피니언리더 간담회, 워크숍 등 개최
- 정원작가 등을 통한 기고 및 기획보도로 정원문화 확산
- 오피니언리더 및 전문가 등과 정책간담회 추진 및 여성잡지 등에 정원 소개

4) 순천만국가정원을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발전 중심지로 육성

ㅇ 국가정원 위상에 걸맞은 운영 및 관리 체계 확립

- 순천시와 공동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발전계획 수립

· 상업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공성과 문화가 있는 국가정원 운영

· 산업기반 구축, 문화행사 및 일자리 창출로 성장동력 모델 제시

ㅇ 정원문화 국제교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원산업 디자인전 개최

- 정원산업 쇼케이스, 해외 정원디자이너 초청전시, 가드닝 시연 및 체험, 정원조성 경진대회 등 정원문화 행사 추진

- 행사기간 : 2016. 9. 30 ~ 10. 16(17일간)

ㅇ 터키 안탈리아 국제정원박람회 참가 및 한국정원 조성

- 민관이 참여하는 한국정원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치 높은 한국정원 출품

- 안탈리아 국제정원박람회 : '16. 4. 23 ~ 10. 30(6개월간)

라. 추진일정

ㅇ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 2016. 1월~3월

ㅇ 안탈리아 국제정원박람회장 한국정원 조성 : 2016. 1월~4월

ㅇ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 : 2016. 1월~12월

ㅇ 지방정원 조성(3개소) 설계 : 2016. 3월~12월

ㅇ 2016 코리아가든쇼 작품공모 : 2016. 1월~2월

ㅇ 안탈리아 국제정원박람회 참가 및 협력관계 구축 : 2016. 4월

ㅇ 2016 코리아가든쇼 작품전시 : 2016. 4월~5월

ㅇ 정원산업디자인전 행사개최 : 2016. 9월~10월

ㅇ 정원담당자 및 관계관 워크숍 : 2016. 10월

5.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목 표

◇ 국민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을 통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 정상화과제 이행성과 달성 및 가시적 개선효과 창출
◇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산림보호 행정지원체계 강화

가. 정책여건

ㅇ 비인가 야영장, 불법 야영에 따른 사고 급증으로 안전재해 노출 및 무분별한 임산물채취로 산림훼손도 심각

ㅇ GIS/RS 기술을 활용해 매년 약 16천 건의 산지훼손 의심지를 색출하고 있으나 사건처리 등 적기대응을 위한 행정력 부족
- 1인 평균 산림특별사법경찰 관할면적 5,425ha으로 현장 인력은 부족

ㅇ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성과창출 및 적극적 홍보 요구
- ’17년까지 우리 청 대표과제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과제 지속 추진

나. 추진방향

ㅇ 산림사법 전담조직 구성 및 역량 강화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ㅇ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지속 추진

ㅇ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산림보호·단속의 핵심주체로 육성

다. 세부 추진계획

1) 산림 내 위법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계도·단속 강화로 법질서 확립

ㅇ 모니터링 강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제적 예방단속 실시
- 산림 내 위법행위 관련 방송, 인터넷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 불법 산행, 비박 등 위법행위 유형별 맞춤형 단속 실시
- 지자체·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
  *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 참고 1, 2

ㅇ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 단속 실시

- 산림훼손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기획 수사 확대
- 항공사진을 이용해 색출한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확인·조치

한국산지보전협회		산림청		시·군, 소속기관
항공사진 분석 후 훼손 의심지 색출	⇒	현지 확인 후 사법처리 대상 확정 및 증거 확보	⇒	사건처리 (수사대와 공조)

* '12년부터 GIS/RS 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 실태조사 실시, '14년부터 의심지 사법처리 추진

- '11~'15년 실태조사지역의 무허가 의심지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완료
- 산지훼손 실태조사 후속조치 이행상황 수시 점검

ㅇ 민간단체 및 기업과 함께 캠페인 등 지속적 협력 추진

- 민간감시단 위촉 등 참여기관 특성을 살린 협력방안 발굴·추진
- '숲사랑' 연합단체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 '숲사랑' 단체의 운영제도 개선 및 운용실태 점검(분기별 1회) 강화
- '산림훼손신고 앱' 연계한 숲사랑 프로그램 운영

ㅇ 임자선언 등 '임(林)자 사랑해' 대국민 캠페인 확산 및 홍보 전개

-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연중 추진
- 신문·방송 기획보도, 도심전광판 홍보이벤트,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 배포
- KTX, 서울 지하철방송 활용 대국민 산림보호정책 영상물 제작 보급

2) 산림사법 전담조직 구성 및 역량 강화로 산림보호 기반 확충

ㅇ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신설 추진

- 수사대에서 국·사유림에 모두 수사를 지원하여 지방 역량도 강화
- 의심지 색출, 현지확인, 증거확보 등 주요 기능을 수사대가 기획·총괄
- ICT 기반 산림불법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증진
- 산림청 과 단위 조직 신설 및 사법자문관 채용으로 수사·단속의 전문성 강화

ㅇ 산림내 순찰 및 위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구성·운영

- 산림보호지원단 운용규모 : 63개팀 250명(4인 1팀 : 팀장 1, 팀원 3)

- 관할 국유림 면적에 따라 지방산림청별 팀 배치규모 결정

계	본청	북부지방청	동부지방청	남부지방청	중부지방청	서부지방청
63개단	1	15	15	12	10	10
250명	2	60	60	48	40	40

* 4·5급 이상 기관 3팀, 5급 기관 2팀 배정(중부청 본청지원 1팀 포함)

- 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거주자 중 산림사법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체력이 뛰어난 청·장년 및 관련업무 경력자 등을 채용

ㅇ 산림사법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장비 확충

- 산림보호 신규직원의 법무연수원 수사실무교육 이수 의무화
- 산림보호 전담인력 근무복 제작·착용 및 단속 차량·장비 등 확충

3)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산림보호·단속의 핵심주체로 육성

ㅇ 산림보호업무 전담 및 교육확대 등 청원직 운영 효율화 추진

- 사무·시설관리 담당자는 보호분야로 재배치하고, 지역간 전보제도 도입
- 맞춤형 산림사법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위주 실무교육 강화

ㅇ 사법경찰권 부여 및 채용방식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법무부와 협의하여 산림사법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사법권 부여 추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법무부)

- 우수인재 채용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필기시험(산림보호, 일반상식) 확대

ㅇ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청원산림보호직원법 개정

- 청원경찰 등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보수기준 및 경력산정 방식 개선

  * (신규) 9급 → (10년 이상) 8급 → (20년 이상) 7급

- 승급심사위원회의 정기심사를 거쳐 승급대상자 선정
- 경력 인정 범위를 산림 및 보안 업무 등 관련 업무로 확대

  * 산림조합, 영림단,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관련 업무를 우선 인정

- 장기적으로 청원경찰 등 보안관련 업무에 대해 경력 인정 추진

ㅇ 2016년 청원산림보호직 증원 계획 : ('15년) 13명 → ('16년) 17명

- 신규배치 요청 시 산림보호 분야 외 업무는 원칙적으로 배정 제외

  * '16년 청원산림보호직 선발 : 17명(지방청 11, 과학원 2, 휴양림 2, 품종관리 2)

-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부위탁을 통해 채용절차 진행

  * 채용과정 : 서류평가 → 필기시험 → 면접평가 → 신원조회 → 채용

라. 추진일정

ㅇ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계획 통보 : 2016. 1월

ㅇ 불법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통보(산림청) : 2016. 2월

ㅇ 산림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육(자체) : 2016. 2월

ㅇ 산림사범수사대 신설 협의 : 2016. 2월

ㅇ 산림보호지원단 운영계획 통보 및 구성 : 2016. 1월

ㅇ '15년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물 통보 : 2016. 3월

ㅇ 「청원산림보호직 배치법」 등 관련법령 정비 추진 : 2016. 5월

ㅇ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 2016. 7~8월

ㅇ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추진 : 2016. 8월

ㅇ 산림보호 워크숍 개최 : 2016. 12월

〈참고 1〉

산림피해 시기별 중점 단속사항

월별	중 점 단 속 대 상	단속방법	주관
1월	o GIS/RS 활용 불법산지전용 의심지 현지 확인 및 조치	수시	산림환경보호과
2월	o 고로쇠수액 불법 채취 및 '수액의 채취 및 관리지침' 준수 등	수시	산림경영소득과
	o 불법야영, 무단 취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 등	수시	산림환경보호과 산불방지과
3월	o 산지훼손지 실태조사	수시	산지관리과
	o 소나무재선충병 이동제한 위반	수시	산림병해충과
4월	o 산지전용 허가지 및 토석채취 지역 사후관리 실태 점검	수시	산지관리과
	o 모집산행, 동호회 등 임산물 불법 채취 - 산채, 산약초·약용수목 등 불법 굴·채취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5월	o 야영장 일제조사·단속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산림휴양치유과
	o 산림내 자연석 불법채취·운반	수시	산림환경보호과
6월	o 국유림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및 조치	수시	국유림관리과
	o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굴취·운반	수시	목재산업과
7월	o 산림 내 불법 상행위 및 산림정화 위반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8월	o 토석채취허가지(채광지 포함) 실태조사·점검	수시	산지관리과
9월	o 골프장조성지 내 불법행위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10월	o 백두대간지역 불법행위(약용수목 벌채 등)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산림생태계복원팀
11월	o 수종갱신 및 표고자목 등 벌채지 불법행위	수시	목재산업과
12월	o 화목용 입목 벌채 등	수시	목재산업과
	o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 불법 채취	기획	산림환경보호과

〈참고 2〉

산림피해 유형별 중점 단속사항

유형별	세부 점검사항	지역별	시기별	단속방법
불법산지전용 등	o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전국일원	연중	기획・수시 단속
	o 비인가 야영장 조성 등			
	o 수목장림 조성, 분묘 조성지 과다 훼손			
	o 건축물 증・개축 빙자 불법훼손			
	o 농지전용 등 허가지 경계침범 및 훼손			
	o 도로개설지 과다훼손 등			
불법임산물 굴・채취 및 유통	o 산나물・산약초, 특용수목 굴・채취	전국일원	연중	기획・수시 단속
	o 고로쇠 등 수액 무단채취			
	o 관상・조경수 굴・채취, 유통			
	o 산림내 자연석 밀반출			
	o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백두대간 등 산림보호지역, 민통선북방, 도서 지역 등에서의 불법행위	o 희귀수목・약용수목 굴・채취	백두대간・산림보호지역	4~9월	기획・수시 단속
	o 불법 산지전용			
	o 무속행위 시설물 불법설치			
	o 국유림 불법점유 행위 등			
산림오염 등 불법행위	o 쓰레기 무단투기	휴양림 관광지 주변	6~9월	기획・수시 단속
	o 계곡 등 경관지역 훼손			
	o 자릿세 징수 증 불법 상행위			
기타 사업지 등 불법행위	o 벌채사업지 잘못베기 - 수종갱신지, 숲가꾸기사업지 - 표고자목 생산 벌채지	사업지	연중	수시단속
	o 토석채취허가지(채광지 포함) 실태조사・점검			
	o 화목용 입목 벌채 등			

6. 산불예방대책 추진

목 표

◇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가. 정책여건

ㅇ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불예방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ㅇ 입산자 및 농·산촌 주민들의 산불방지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 다변화 요구

ㅇ 산불방지 기반시설의 적지적소 설치 및 관리 내실화 필요

ㅇ 산림 내 보호대상물 주변의 산불 위험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 수요

ㅇ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 필요

나. 기본방향

ㅇ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기별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

ㅇ 다양한 통계정보 등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산불감시와 산불위험요인 차단

ㅇ 입산객 관리 효율화 및 마을단위 소각산불 억제를 위한 방안 마련

ㅇ 산림 내 보호시설물의 산불예방 및 확산 억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ㅇ 산불예방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산불 위험도 실태조사 실시

ㅇ 지역·시기·원인·타깃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조심 홍보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다양한 정보 등 과학적 기반을 근거한 감시로 산불위험 사전차단

ㅇ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가용인력을 집중고용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 패턴을 고려해 근무 및 단속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감시 효율성 제고

- 감시원(12천명) 적극 활용, 감시원 외 관서별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적 자원을 감시에 적극 참여 유도
- 소각산불 관련 다양한 자료 분석에 따른 기관·지역별 근무시기 등 효율적 운영 및 집중 근무시간대 설정을 통한 단속 강화

* 집중근무 : 1~4월/남부, 2~4월/중부, 3~4월/북부

ㅇ 산불감시 인력의 합리적 근무관리 및 취약지 효율배치로 감시 효과 극대화

-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 운용 중인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감시원 GPS 단말기 이동이력을 분석해 산불취약지 위주 근무 순찰을 조정·관리

- NFC 전자순찰함 제도 운영을 통한 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1,300개소)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10cm 이내 근거리 상호통신 체계로 단말기를 Tag에 대면 감시 시간, 위치정보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2) 입산객 관리 효율화 및 마을단위 소각산불 억제를 위한 방안 마련

ㅇ 입산이 가능한 전국 등산로 구간 정보에 대한 대국민 웹서비스 지속 추진

- 포털 지도에 산불방지 등산로 개방, 통제구간을 색깔로 구분 표식

-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 기관별 통제구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연 2회)

* 연중 개방이 가능한 트레킹 등 숲길은 현지여건을 감안해 신축성 있게 운영

- 통제구간에 대한 감시 및 온라인 상 블로그·카페 등 게시물 감독 강화

* 위법행위물 등록사항에 대한 경고 및 계도와 반복될 경우 강제 조치 요청

ㅇ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으로 소각 산불 예방 강화

- 봄철 '소각 금지기간' 운영 이전까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은 공동소각·집중 수거·부산물 파쇄 등 다각적 방법으로 제거 실시(2만2천ha)

* 소각 위험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임대 시범사업(전국 100대)

- 산불위험이 낮은 시기에 마을별 공동소각을 적극 추진하되, 지역별 위험지는 신청 전이라도 산불방지 인력을 투입하여 제거사업을 실행

ㅇ 농·산촌 자발적 소각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속 추진

- 소각 근절 및 자발적 산불예방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선정하고, 부락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현판 및 포상금 수여

* '16년 계획 : 300개 마을, 포상금 각 50만원 및 현판, 우수마을이장 34명 표창

- 인센티브 정책과 별개로 불법소각은 엄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철저

- 농촌진흥청 주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영농교육 시 소각산불 예방 안내 및 불법소각 처벌사항 등 교육 강화

3) 산림 내 보호시설물의 산불예방 및 확산 억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ㅇ 무속행위 다발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야영지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반복되는 산불예방을 위한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 고해상도 카메라, 영상 저장장치, 자동 방송 및 문구 송출 기능 등 관할 지역여건에 맞는 최신 기능 탑재로 예방 효과 극대화

  * '16년 계획 : 17개소, 946백만원(지자체 14개소, 소속기관 3개소)

ㅇ 기존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HD급으로 교체를 지속 추진하여 신설 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상호 보완하고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영상 연계가 가능할 경우 인접기관 영상 확보 및 자체 상황관리에 활용

  * '16년 ┌교체계획 : 40개소, 960백만원(지자체 40개소)

  └유지보수 계획 : 967대, 953백만원(지자체 817대, 소속기관 150대)

ㅇ 설치·교체는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산불조심기간 중 미작동 또는 고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카메라 설치 및 교체장소에 규격에 적합한 국가지점번호판을 함께 설치

  *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5

나) 산불소화시설

ㅇ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내 문화재, 자연휴양림, 요양원 등 보호대상 시설물 주변에 산불소화시설 설치로 안전성 확보

- 시설물 품질 향상과 함께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시공 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심의회 의무화

- 산불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운영이 가능 하도록 스마트 원격 가동·정지 시스템을 정착화

- 엔진, 펌프 등 장비는 정기적·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건조기) 타워에서 물을 정기적으로 분사하여 시설물 주변 산불발생 위험도를 저감시키고, 주기적 가동으로 고장 방지

  ·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송수관 배수 및 장비 보온 등 관리 철저

  * '16년 시설계획 : 18개소, 1,302백만원(지자체 16개소, 소속기관 2개소)

  * '16년 유지보수점검 예산반영('12~'13년 시설 48개소, 230백만원)

4) 산불예방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산불 위험도 실태조사 실시

ㅇ 주요 산림 및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산불취약 정도 등급화

〈조사방법 및 적용인자〉

- (순서) 기본현황조사 → 현지조사 → 위험인자 반영 → 정리 → 등급화
- (인자) 보호 우선순위, 발화원인, 임상, 경사위치, 경사도, 풍속·풍향 등

〈등급기준〉

-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Ⅰ등급지)에 대한 구분 관리

〈추진일정〉

- 담당자 교육(~2월까지) → 위험지 조사 실시(5~7월) → 자료 정리 및 조사결과 확정(10월) → 산불예방대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ㅇ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지역을 산림지역과 인명·재산피해 우려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관리 방안 마련 등 예방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

- (행정적 관리) 입산통제, 화기물 소지금지, 인화물질 제거 등
- (임학적 관리) 내화 수림대 조성, 산불방지 숲가꾸기 추진 등
- (공학적 관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 '16년 계획 : 8개소, 199백만원(지자체 7개소, 소속기관 1개소)

5) 시기·원인·타깃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ㅇ 송출지역·시간대·타깃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산불예방 홍보

- 공익광고를 농·산촌 주민 주요 시청 시간대 송출
- TV, 신문, 지하철, 고속도로 전광판 등 매체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추진
- 비즈링,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지역별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추진

ㅇ 기상예보(방송사·기상청), 집배원(우정사업본부)을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

- 언론사 기상캐스터 간담회 개최, 집배원 산불감시 도우미로 활용

ㅇ 오피니언 리더 등을 적극 활용해 산불예방 의식 고취

- 산불예방 정책에 대한 인포그래픽, 만화 제작 · 제공 등으로 관심 유도
- 산불방지 관련 언론홍보(기고 · 칼럼 등) 주체로 참여 유도

ㅇ 스마트폰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앱) 운영 활성화

- 산불신고 앱에 대국민 산불예방 및 신고 요령 등 안내

라. 추진일정

ㅇ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2016. 2. 1.~5. 15, 11. 1.~12. 15.

ㅇ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2016. 3. 20.~4. 20.(잠정)

ㅇ 산불감시인력 배치 : 2016. 1~5월, 11~12월

ㅇ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 가능지역 웹서비스 : 2016. 2~5월, 11~12월

ㅇ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 운영 : 2016. 3~4월(권역별 탄력 운영)

ㅇ 산불예방 시설 운영·관리 상·하반기 현지지도·점검 : 2016. 1월, 10월

ㅇ 산불예방 유공 기상캐스터 간담회 및 포상 : 2016. 12월

7. 산불상황관리 및 지상진화

목 표

◇ 산불발생 시 일사불란한 산불현장통합지휘체계 유지
◇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 ㅇ 동시다발 산불발생에 따른 선제적 산불진화 대응역량 강화가 요구
- ㅇ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확대
- ㅇ 유관기관 협업에 대한 정책여건 조성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공유 확대
- ㅇ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의 지상진화 대응역량의 체계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 ㅇ 산불 발생 시기 연중 확대 및 도시·야간산불 피해 대형화 추세에 대응 필요
- ㅇ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산불조사 · 감식기술의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요구

나. 기본방향

- ㅇ 산불위험지수 및 기상여건에 따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불경보 발령
- ㅇ 통합지휘본부장(지자체장, 국유림관리소장)의 산불현장 주도 역할 강화
- ㅇ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 지상진화대 편성 · 운영 및 지상진화 역량 강화
- ㅇ 산불조사 · 감식 기술의 과학화 및 산불현장 대응능력 평가 · 분석기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기상여건 등을 반영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불경보 발령 추진

- ㅇ 산불위험성 고조,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집중도 저하 대비 산불경보 발령· 해제를 유연하게 대처하여 산불재난 위기 상황에 따른 역량 강화

  * 산불경보 구분「산림보호법 시행령」제23조 [별표1]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ㅇ 지역산불관리기관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산불경보 발령을 능동적으로 실시

- 특히 영농준비시기, 강풍경보 발령 등 지역별 산불위험여건이 높을 때 산불경보를 상향 발령하여 대응역량을 집중
- 기상여건 완화 시는 일시적 해제도 적극 검토하여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업무경감 필요

ㅇ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지역산불관리기관 통보 및 산불예방에 총력 집중

- 주변 소나무 숲 간 최대 이격거리 2km 범위 내의 30ha이상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실효습도 및 풍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령(지역 담당자 문자전송)
- 주의보는 산불경보 '경계' 수준, 경보는 '심각' 수준의 대응조치 선제적 실시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대형산불 주의보	실효습도 45%이하가 2일이상 계속, 초속 7m 이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 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대형산불 경보	실효습도 30%미만이 2일이상 계속, 초속 11m 이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주 4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2) 자치단체장 등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임무 수행

ㅇ 산불발생 시 신속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산불진화에 적극적인 참여(기관별 연락관 파견 및 대책회의 책임자 참여)

  * 소방(인명 및 시설보호)·군(진화지원)·경찰(교통통제) 등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전략 등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진화 추진

ㅇ 산불발생 초기부터 현장을 지휘, 산림부서장은 반드시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

- 「산림보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장 지휘

ㅇ 산불상황의 정확한 언론 정보제공을 위한 「산불상황 보도요원」 지정·운영

-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기관의 명칭(산림당국), 투입장비(산림헬기 등), 산불규모 등 사실관계에 맞는 보도용어 사용을 위해 취재기자·언론사 협조 요청

  * 산불현장 조망 및 언론사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산불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신속한 신고체계 운영 및 보고 철저

ㅇ 산불 발생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원은 반드시 산불신고 단말기로 신고

(절차) 산불신고 접수(신고 단말기, 스마트폰 앱) → 시·군(관리소), 시·도 (지방청),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 산불신고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철저

- 산림 내 숲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 실시로 폐잔목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풍속기를 사용, 현장기상(온도, 풍속)을 산불상황실 등으로 보고

ㅇ 산불보고 지연 및 진화를 소홀히 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 유의

- 임차헬기로 자체 진화하다 늦게 보고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산불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신고를 담당공무원이 통제하지 않도록 주의

4)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편성 및 운영

ㅇ 시·군 · 구 및 관리소별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최소한 1개팀 운영

- 산불발생 시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1개 팀은 반드시 산불현장에 상주
  ·산불현장에 펌프 등을 이용하여 산불현장까지 급수체계 구축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는 분산 배치하지 않고 한 개소에서 반드시 통합관리
- 1개 팀은 14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 빈도가 높은 10:00~21:00 신축적으로 근무
- 주 2회 이상 호스설치(600m이상), 분배기 연결, 수조 설치, 분사(20분 이상) 등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반복 훈련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출동차량 지원 및 관리 철저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5개월) 동안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국고지원
  ·진화대원 12명당 출동차량 1대(승합) 임차비 및 유류비 배정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사적 운영 금지 등 관리에 철저

○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상진화 역량강화 유도

- 시·도, 지방청별 자체 경연대회(5, 10월), 전국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11월)
  ·호스 설치거리 600m 이상, 저수조 설치 및 분배기 사용, 호스내경 13㎜(8.5㎜)

○ 뒷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불정리를 철저히 이행

- 반드시 동력펌프·진화차, 분배기, 간이수조를 이용하여 지상진화 실시
- 산불현장에 간이수조를 설치하여 등짐펌프 운반거리를 최소화
- 잔불진화 후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 감시 인력을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여 뒷불감시 철저

5)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내실화 및 산불조사·감식 전문가 양성

○ 산불전문조사반 전문성 배양 및 활동 강화

- 산불발생 시 신속히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원인 규명 주력
  * 관련 매뉴얼에 따라 투입하고 산불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후 정정 보고

○ 방화성 산불 등이 발생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여 방화성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

- 구성 : 반장(관할 경찰서 과장·산불담당 팀장), 반원(경찰, 산림공무원 합동)
- 임무 : 방화·대형 산불발생 시 전담수사
-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는 관할지역 경찰서에「산불방화범 검거팀」협조요청

○ 산불가해자 검거 시 다양한 매체 활용, 적극적인 홍보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산불조사·감식과정 교육(기초과정) 실시(20명 내외, 캐나다 등)

- 산불조사·감식교육 대상자 선발 시 고려사항
  · 교육이수 후 최소한 3년 이상 관내 산불발생 시 조사·감식이 가능한 자
  · 일상적인 영어 사용이 가능한 자 우대
- 협회 전문가 및 교육원 강사로 활동할 민간 전문가(2명 이내)
  * 산림보호법 산불전문조사반 구성 · 운영에 근거하여 제한적(항공료, 교육비) 지원

6) 산불방지의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대응 능력 향상

ㅇ 대형·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불발생 시 대응과정 평가분석

* 산불발생 보고 지연, 현장지휘 미흡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선 조치

ㅇ 산불통계의 과학화로 통계 품질 제고

- 산불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확도 제고(정정보고 등 철저)
- 산불통계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산불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라. 추진일정

ㅇ 보고체계 구축 및 통합지휘본부장의 현장 직접 지휘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ㅇ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등 : 지역(5, 10월), 전국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11월)

ㅇ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편성 및 운영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ㅇ 산불전문조사반 및 방화범 검거팀 운영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ㅇ 산불조사·감식반 전문교육 실시 : 2016. 9～10월

8. 헬기 진화역량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목 표

◇ 산불재난 '골든타임제' 준수를 통한 산불현장 진화역량 극대화
◇ 산림항공 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ZERO화 실현

가. 정책 여건

ㅇ 강풍, 기후변화, 고온현상 등으로 동시다발 산불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 재선충병 방제 등 헬기 의존도 증가

ㅇ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유관기관(임차·소방헬기 등) 지원헬기 증가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중지휘 통제 등 협력체계 필요

ㅇ 항공기 사고에 대한 대내·외 관심 및 우려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항공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임무환경에 대한 규정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나. 기본 방향

ㅇ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를 위한 '골든타임제' 정착을 통한 신속한 출동체계 강화

ㅇ 재선충병 항공방제 확대에 따른 산림헬기 지원체계 확립

ㅇ 산불진화 시 지자체 임차 및 지원헬기 등의 통합지휘체계 강화

ㅇ 헬기 운영기관 간 장비시설 공동 활용으로 상호협력 강화

ㅇ 산림헬기 임무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감독

다. 세부 추진계획

1)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출동체계 강화

ㅇ 산림헬기 '골든타임제' 운영으로 전국 30분 이내 산불현장 도착체계 확립

- 이동정비팀(2팀, 8명) 또는 야간·휴일정비팀 운영으로 산림헬기 가동률 제고
- 전국 11개 격납고*에 산림헬기(45대) 분산배치 및 산불위험지역에 수시 이동 배치를 통한 공중진화 대응력 극대화

* 본부 및 10개 관리소('17년 전반기 제주격납고 추가 준공 계획)

* 건조일수 지속에 따라 감시·계도비행 실시 및 산불발생 시 즉각 투입

ㅇ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대기 및 전진배치 이행 철저

- 비상대기 헬기의 상황별 휴식 및 집중운영을 통한 승무원 피로관리
- 주중 기본 1대 이상, 주말 2대 이상으로 증대 운영(봄철기준)

  *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중보다 주말 공휴일 대기 강화

ㅇ 재선충병 항공방제 지원을 위한 방제헬기 사전준비 철저

- 재선충병 방제면적 등 물량에 대비 준비('16년 89만본)

ㅇ 동절·갈수기 대비 헬기 취수시설 확충 및 급수체계 확보

- 봄철 가뭄에 대비 하천 굴착 등을 통한 담수지(3,843개소) 정비 및 현행화
- 담수지 확보를 위해 북부지방청 관내 얼음깨기 및 담수훈련 추진
-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한 헬기 진화체계 구축

  * 헬기 취수장 관리 매뉴얼(참고 1)

2) 임차헬기·유관기관 지원헬기 등 협력체계 강화

ㅇ 군·소방 임차헬기(97대) 공조진화 실시

- 임차헬기는「지자체 상호간 임차헬기 지원 MOU」에 따라 인접 시·도, 시·군간 산불발생시 진화 지원
- 대형 산불발생시 유관기관 헬기(소방 27, 군 16) 조기 지원 추진

ㅇ 산불현장 투입 임차, 군, 소방헬기의 공중지휘 통제 등 헬기 공조체계 구축

-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자원운용 위해 다수(5대 이하) 헬기 투입 시 산림청 선임기장이 통제하여 공중진화를 실시
- 다만, 6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중진화지휘기를 운용

  * 공동사용 주파수(주. 122.0MHz, 예비. 127.8MHz)

ㅇ 군부대, 지자체 등 산불진화 헬기 공조 투입 강화

- 전국동시산불 발생 시 군헬기의 신속동원 가능체계 구축
- 사격장 및 군사시설 지역 산불은 군 헬기로 책임 진화

  * 물탱크 7대, 물바켓 보급 68개(육군 48, 해군 5, 공군 15)

  ⇒ 군 진화헬기 출동 승인후 30분내 이륙 원칙('14.11.18 군관계관 회의시 협의)

ㅇ 산불진화헬기(임차헬기 포함) 안전교육 실시

- 시·도소방, 국방부 헬기 승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14년부터 계속)

  * 민·관·군 통합교육 실시 및 임차헬기 운영관리 애로사항 수렴

3) 헬기 운영기관 간 대형재난 발생 시 공동대응 및 장비시설 공동 활용으로 상호협력 강화

ㅇ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통한 산불 등 재해·재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적극 준수·활용하여 재해·재난 발생 시에 공동 대응태세 확립
- 재난유형별 재해·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정착으로 정례화 구축
- 안전운항정보시스템(산림청/SIS)과 위치정보시스템(해경/AIS)을 연계한 국민안전처(소방헬기) 안전운항정보시스템 구축에 정보공유 등 적극 협조

  *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과제 3년차 추진 〔산림·경찰청, 국민안전처(소방·해경) 참여〕

ㅇ 산불현장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현장실황(동영상) 공유

- 영상전송시스템(27대 장착)을 통한 실시간 상황전파 및 진화 활용

ㅇ 헬기 운영기관(산림청, 국방부, 지자체 등) 항공안전교육 실시 및 모의비행 훈련장치, 격납고, 착륙장 공동 활용을 통한 부처 협업 강화

- 통신체계, 담수요령, 공역에서의 임무 및 역할 지정 등 기관 간 역할 정립
- 공동 정비 및 항공기 계류 등 상호 시설물 공동 사용 및 기술 공유

4) 산림헬기 임무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감독

ㅇ 계류장 및 이·착륙장 안전성 확보

- 산불진화 등 일몰로 현장계류 시 시·군 사전 계류장 확보
- 전진배치지역, 항공방제현장 이·착륙장, 계류장 최우선 안전성 확보
- 산림헬기 계류시 보호펜스(폴리스라인) 및 지킴이 배치(헬기 손상사례 발생)

  * 대형헬기 대당 안전구역(33.5m×33.5m) 이내 장애물 금지

ㅇ 산림항공기 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 안전운항정보시스템의 위험감지분야, 자동보고체계 개선
- 모의비행훈련장치 교육 확대로 조종사 비상 대처 능력 강화
- 영상전송시스템 활용을 통한 현장상황 공유 및 효과적인 진화자원 배치 등 전략수립

ㅇ 조종사 피로도 증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일일 최대 비행시간(8시간)이 넘지 않도록 사전 운항관리
- 연속 비행근무(7일)를 고려하여 승무원 편성
- 산림헬기 종사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운영(2년차)

ㅇ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현장위주의 점검 추진

- 산불진화, 항공방제, 산악구조, 산림자재 화물운반 등 4대 임무 중점 관리
- 위험환경에 필요한 생존지원장비 관리 및 활용현황 집중점검

5) 헬기 야간산불진화 대비 안전운항체계 사전 구축

ㅇ 산림헬기 야간산불진화 시범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및 사전준비

- 야간산불진화에 필요한 승무원 및 지상준비 인력의 교육 등 여건 마련

* '17년 신규도입 헬기(1대)에 야간 진화장비(야간 투시경, 고정식 물탱크 등) 구비

6) 산불진화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진화첨가제 활용 강화

ㅇ 산림연접 주거지, 군사격장, 암석지, 숲가꾸기지역 등 신속한 진화가 필요하거나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진화첨가제 활용을 통한 진화효율 제고

- 지연제(리타던트) 활용을 위한 이동식 장비세트(차량, 접이식 수조, 발전기 등) 시범운용 검토
- 친환경 포소화약제 성능규격 및 운영지침 마련·고시

라. 추진일정

ㅇ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 산불조심기간

ㅇ 산불진화헬기(임차헬기/시·도소방/국방부포함) 안전교육 : 2016. 1월

ㅇ 동절기 결빙저수지 급수원 확보 시범훈련 : 2016. 1월

ㅇ 산림헬기 임무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운항 평가 : 정기·수시

- 산불진화(수시), 항공방제(월별 정기), 산림자재 화물운반(수시)

ㅇ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추진 점검 : 상·하반기

9. 산불방지 기반 구축

목 표

◇ 다양한 기반 구축으로 산불대응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

가. 정책여건

ㅇ 산불방지업무를 국가 전담 체제에서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지원

ㅇ 세계산불총회 개최국으로서 산불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 기대

나. 기본방향

ㅇ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ㅇ 세계산불총회 후속사업 추진을 통해 산불관리의 선도국가로서 위상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운영에 따른 지원

ㅇ 고용인력과 유관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 실시

- (교육대상) 전담인력(23천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보조인력(35천명) : 영림단, 국립공원, 일선공무원, 민간인, 학생 등
- (교육기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교육방식) 강사 방문형 위탁교육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교육기관 지정

ㅇ 지자체, 국유림관리 기관에서 교육 위탁 관련 사항 세부 추진

2) 산불방지 전문가 양성 추진

ㅇ 산림교육원 산불방지 민간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지속적 추진(6월)

- 자격증 소지자, 학력 · 경력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산림교육원에서 2주간 '산불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민간전문가로 육성(1회, 20명)

ㅇ 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사 평가제 및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협회)

- 강사평가제,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1월)

3) 세계산불총회 후속 사업 추진 및 산불분야 국제협력 강화

ㅇ 아시아 등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산불관리 분야 능력배양 선도

- 산불관련 국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및 정보와 기술 교류 등 국제협력 추진

ㅇ 아시아 산불훈련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관계기관 협의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구산불모니터링센터, 국립산림과학원 등
- 프로그램, 운영방안, 국제지원 및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예산 등)

ㅇ 양자 산림협력 회의시 산불방지협력을 의제화하여 선진 진화기술 공유 및 국내 관련산업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

- 주요 관심국가 : 아세안국가(인도네시아 등), 중국, 호주, 캐나다, 칠레 등

4)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2017~2021) 수립 추진

ㅇ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한 5년 단위의 장기계획('17~'21) 수립(9월)

- 목표 및 추진방향, 산불방지 인력·장비 확충, 제도개선, 교육훈련 등

ㅇ 효과적인 산불예방, 진화 및 국제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산불방지 대책, 자원 분석 및 예방강화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라. 추진일정

ㅇ 산불방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2016. 6월

ㅇ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2017~2021) 수립 : 2016. 9월

10. 산사태방지 추진기반 구축

목 표

◇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사태방지 현장 대응역량 강화

가. 정책여건

ㅇ 기후변화 및 엘니뇨 현상 심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우려

ㅇ 산사태방지 현장 실무인력의 적정 수 미확보로 예방·대응여건 미비

ㅇ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산사태재해 안전 욕구 증대

ㅇ 산사태방지 담당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및 대국민 산사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ㅇ 산사태방지 지원체계 정비 및 대응역량 강화

ㅇ 산사태방지 실무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ㅇ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ㅇ 산사태방지 국제교류협력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방지 지원체계 정비 및 대응역량 강화

ㅇ '16년 전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및 지역대책 수립·시행

- 전국단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산림청, 3월말까지)에 따른 지역 산사태방지대책 수립(지자체, 지방산림청, 4월말까지)
-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방지 대책 추진실적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3, 영 제32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 산림청장은 전국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3.31까지 수립, 시·도지사, 지방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자체, 지방청(국유림관리소)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4.30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 지방청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12.31까지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산림보호법 및 사방사업법 개정 추진

- (계획수립) 법률 상호간의 중복성·미비점 등 해소

·산사태예방장기대책과 사방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중복성 등을 개선

- (조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와 황폐지 실태조사 방법 정비

·산림청장이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는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

- (지정)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지로 지정하는 중복 해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방지로 추가 지정하는 중복을 개선

- (사방시설 관리) 산사태취약지역과 사방지 해제 후의 관리방안 명확화

·사방지나 산사태취약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사방시설의 유지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산사태방지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사방사업 단비 현실화(해안방재림 등)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확대

○ 가시적 정책 추진성과가 나타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정부3.0 협업과제 등을 역점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산사태 재해안전망 구축

※ 국정과제 : 홍수 · 산사태 등 재해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86-5)

·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선 등으로 현장관리 역량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 우선적 추진

· 산사태 발생 우려 시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 강화 등

-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풍수해 대비한 산사태 예방 및 임도시설 안전강화
> · 인명피해 예방에 역점을 둔 재해우려지역 실태조사 확대 및 재해저감시설 확충
> ·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 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

> ※ 소관 부처별로 분산 · 대응하던 도로변 산사태에 대한 피해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협업 지속 추진
> · 도로변 산사태우려지역(66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실시 및 실태조사 지속 추진
> * 국방부와 민북지역 군병영지 재해예방사업 신규 추진

2) 산사태 방지 실무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ㅇ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무위주 담당자 교육 추진

- 산사태방지 담당자 시책교육(순회교육)

·'16년 산사태방지 정책방향,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부처별 공동 재해예방 협업체계 등

-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순회교육 및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 산사태현장예방단(88단, 352명) 직무교육(사방기술원)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거주민 대피 등 현장중심의 관리체계

- 산사태 피해조사·복구 담당자 실무교육(순회)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요령, NDMS 입력, 복구사업 추진체계 등

- 사방공학 전문가 과정(산림교육원, 사방기술원)

·사방사업 설계, 시공, 감리 등 고급 전문가 양성

ㅇ 산사태방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회의

- 산사태방지 유관기관 간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등 상호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유관기관) 지자체 및 지방청,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ㅇ 산사태 예방·대응 연찬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 산사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방·대응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전파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사전예방·대응 체계 확립(대피체계, 상황전파, 실제대피로, 피해예방 사례 등)

·유역단위의 계통적 사방(산사태복구) 사업 및 자연친화적 시공 우수사례 확산
·우기 전 사방(산사태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 ’16년도 산사태방지 대책 공유 및 제도개선 등 발전방안 발표·토론
  * 시·도, 지방청, 사방협회, 산림공학회, 산림기술사협회, 산림사업법인협회 등 참여

3)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ㅇ 산사태 예방·대응 및 조사·복구 단계별 맞춤형 홍보

- (예방단계) 취약지역 주민 및 일반국민에게 산사태 발생위험 단계별 행동요령,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등 홍보
- (대응단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기상상황전파, 피해발생 및 대응상황 등 홍보
- (조사·복구단계)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원인조사 및 복구방향 등 홍보

ㅇ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일반국민 등 주요 타깃별 맞춤형 홍보

- TV,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기획홍보, 기고, 보도자료 등 배포
- 산사태방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케이블TV, 옥외전광판을 통한 ‘산사태대처요령’, ‘사방사업 효과’ 등 동영상 송출
- 산사태방지 포토툰·인포그래픽·리플릿 배부 및 주민센터 등에 홍보물 비치
- 산사태 재해우려 시 TV자막방송을 통한 산사태 예·경보 발령정보 전파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 방문 교육 및 홍보물 배부

ㅇ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등 국민안전에 초점을 둔 정책홍보 강화

ㅇ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협업체계를 활용한 홍보 강화

- 고속도로 및 국도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국토부 협의)

ㅇ 산사태 재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콘텐츠 개발 연구 추진

- 계층별, 연령대별 등 교육·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ㅇ 제5회 산사태방지 사진 콘테스트 실시

- 우수사례 사진 공모를 통해 산사태방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

4) 산사태방지 국제교류협력 추진

ㅇ 산사태방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정책연수 추진

-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 대응체계 모니터링 등을 위한 해외 선진 정책·기술 연수 실행

ㅇ 제12차 한·일 토사재해방지기술회의 자료 사전 준비

- 산사태방지정책, 신기술 사방공법, 자연친화적 도심형 사방기술 등에 대한 정보·자료 수집

* '02년부터 격년 단위로 양국을 교차 방문하여 정기회의를 개최

* 제11차('15년) 회의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제12차 회의 시 피드백

라. 추진일정

ㅇ 산사태방지 담당자 시책교육 : 2016. 1월

ㅇ '16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 : 2016. 3월

ㅇ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 2016. 5월

ㅇ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 담당자 워크숍 : 2016. 5월

ㅇ 산사태방지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회의 : 2016. 6월

ㅇ 산사태예방 대국민 홍보 : 2016. 4~9월

ㅇ 사방공학 전문가 과정 교육 : 2016. 6~10월

ㅇ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광고·자막방송 : 2016. 5~10월

ㅇ 제5회 산사태방지 사진콘테스트 : 2016. 10월

ㅇ 제39회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 : 2016. 12월

ㅇ '17년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수립 : 2016. 12월

11.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확립

목 표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현장 예방·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산사태재해 안전망 구축

가. 정책여건

ㅇ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예측 불가

ㅇ 생활권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상존

ㅇ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집중적인 현장 대응역량 제고 필요

ㅇ 산사태 재해저감 활동을 수행할 현장 대응인력 부족

나. 기본방향

ㅇ 산사태위기대응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ㅇ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ㅇ 산사태정보체계의 현장 활용도 및 안정성 제고

ㅇ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대응 전문인력 확충

ㅇ 산사태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ㅇ 겨울철 산림재해 방지대책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위기대응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ㅇ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해빙기 안전점검, 국가 안전대진단, 현장 대응체계 점검·정비 등을 위한 사전대비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6. 2. 1 ~ 5. 14

* 해빙기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여름철 산림재해 사전대비 추진계획 별도 통보

ㅇ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구성·운영

- 운영기간 : '16. 5. 15 ~ 10. 15(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 본부장(청장), 부본부장(차장), 총괄담당관(산림보호국장), 상황실장(산사태방지과장, 심각단계 산림보호국장)
-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지자체, 지방산림청 및 휴양림관리소 등)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합관리체계 확립
- 풍수해·산사태(태풍·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정비, 반복훈련(실제 대피훈련) 등 현장 대처능력 강화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사태 초기대응 역량 강화 및 실제 대피훈련 병행
  * 상황발생시 역할분담 등 지역유관기관(소방, 지대본 등)과 사전 공조체계 확립

※ 단계별 중점추진 사항
· (예방·대비) 연중을 대상으로 하며, 2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사전대비기간) 중점
  * 산사태재해 예방체계 구축, 취약지역 관리 및 역량 강화, 해빙기 안전점검, 국가 안전대진단, 산사태 위기대응 훈련 등
· (대응단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관심→주의→경계→심각)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현장점검(담당자 교육 병행), 피해 예방조치 및 신속대응 등
· (복구단계) 산사태 발생 직후부터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점추진
  * 산사태 피해조사, 복구재원 마련, 복구계획 수립 추진 등

2)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가)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 개정

ㅇ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시 활용하고 있는 현행 판정표에 대한 일부 미흡한 사항 개정(국립산림과학원 등 협조)

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ㅇ 신규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장컨설팅 병행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5,000개소),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을 위한 토질 분석(1,300개소), 지정심의 컨설팅 등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계획
· ('15까지) 27,500개소 → ('16추가) 5,000개소 → ('17까지) 36,000개소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ㅇ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별도 통보)에 대하여는 우기전 적극적 지정 및 사전점검·정비, 주민대피체계 구축

- 지정 대상지 현장 확인 후 대상지 공고, 이의신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등을 거쳐 지정고시 완료

※ **산사태취약지역** : ('13까지) 2,928 → ('14까지) 11,292 → ('15.10월말) 18,555개소

*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대상지 공고 등 지정절차 이행

* 대상지 공고 시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병기

* 자세한 사항은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 지침('15.9.24 개정) 참조

ㅇ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목적 달성 시 해제 조치(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

* 권고사항 : 해제 시 담당자 현장확인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제

라)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ㅇ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재해 저감을 위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ㅇ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자체 가용인력 활용)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관할지역 소방·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합동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15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관계기관 회의('15.5.13) 결과에 따라 경찰청(위기관리센터)의 요청으로 취약지역 지정현황 자료제공

ㅇ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16 예산, 직접) : 2,127개소 * 700천원 = 1,489백만원

* 지자체는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설치

*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 시 과태료(1차 500, 2차 1,000, 3차 2,000천원) 부과

ㅇ 산사태취약지역 하류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실시

* 유사시 주민 연락 방법 :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마을방송, 직접방문 등

ㅇ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사항 DB 입력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고시, 부결, 해제, 점검·정비사항, 거주민 연락처, 대피장소 등 산사태취약지역 개소별 관리대장 DB 입력

3) 산사태정보체계의 현장 활용도 및 안정성 제고

가) 산사태정보시스템 현장 활용

ㅇ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사태 예방·대응 적극 추진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 탱크모델 확인 등을 통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하고, 회의결과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유사시 대피 등 조치
- 시스템 담당자 및 취약지역 관리대장(지역주민, 담당자, 지정·심의 결과, 점검 이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수시)

ㅇ 기관별 현지 실정을 고려한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 시나리오 정비(4월말까지)

나)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안정화

ㅇ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팀' 운영

ㅇ 산림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산림지반특성지도 전국화 등

* 전국단위 실시간 산사태위험예측기술 개발을 위한 토양의 마찰력, 전단강도 등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도 제작

4)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대응 전문인력 확충

ㅇ 지자체 등의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산사태대응팀' 설치 추진

- 담당자 1인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산사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되어 신속한 산사태 예방·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조직·인력 필요

  * 전담조직 설치 : 서울시・관악구 및 5개 지방청('12～'14년), 경기도('15년)

- 지자체 등 조직담당 부서에 조직 개편 및 신설·확대 등 지속적 건의 필요

ㅇ 산사태방지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기간 : 6개월(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16.4월말까지 현장예방단 선발 및 구성 완료

- 운영규모 : 전국 88개단(1개단 4명)

  * 서울 6, 부산 4, 대구・광주 각 2, 인천・대전・울산 각 3, 경기 14, 강원・전남 각 7, 충북・전북 각 6, 충남 5, 경북 10, 경남 8, 제주·세종 각 1개단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5월중)

- 산사태취약지역의 순찰·점검 및 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교육·홍보 등 지원

5) 산사태 재난대응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ㅇ OPEN API를 활용한 산사태 예측정보 및 예보발령 정보 제공

* 산사태 위험에 대해 누구든지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국민안전처, YTN, KBS 등)

ㅇ 긴급구조 등 유관기관(소방, 경찰, 지역대책본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유지

6) 겨울철 산림재해 방지대책 추진

ㅇ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12.1 ~ 익년 3.15) 동안 대설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

라. 추진일정

ㅇ 해빙기 산사태 안전관리 추진대책 수립·시행 : 2016. 2월

ㅇ 산림분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 2016. 2 ~ 4월

ㅇ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4년차) 및 산사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016. 3 ~ 12월

ㅇ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2016. 5월, 6월

ㅇ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구성·운영 : 2016. 5 ~ 10월

ㅇ 겨울철 산림재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 2016. 11월

12.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목 표

◇ 사방사업의 우기 전 완료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안전 도모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ㅇ 사업량

- 산지사방 222ha
- 계류보전사업 575km
- 사방댐 825개소
- 사방댐관리 523개소
- 해안방재림조성 40ha
- 해안침식방지 15km
- 산림유역관리 5개소 등

ㅇ 사업비 : 372,259백만원(국고 286,407, 지방비 85,852)

가. 정책여건

ㅇ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우 등의 영향으로 산지재해 발생이 빈발화·대형화 추세

ㅇ 산사태로부터 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한 사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 증가

ㅇ 사방시설의 안전성과 환경성, 주민친화적인 사방기술 등 사회적 공감 필요

ㅇ 생태계의 보전, 주민친화 등 환경·사회적인 영역까지 융·복합하여 공존할 수 있는 사방사업 필요

나. 기본방향

ㅇ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집중 추진

ㅇ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의 전문화 체계 확립

ㅇ 사방사업 기술컨설팅 등을 통한 설계·시공의 품질 제고

ㅇ 사방시설의 사후관리 철저로 산지재해 안전기능 확보

ㅇ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 기술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집중 추진

ㅇ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대상으로 사방사업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중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 우선 시행

ㅇ 도로변(고속·국도) 산사태 재해방지 사방사업 지속 추진
- 고속도로 31개소(경부 3, 광주·대구고속 19, 중부내륙 9), 국도 6개소
  * 도로변 사방사업 우선 추진 및 안전 관련 소요예산을 설계에 반영

ㅇ 민북지역 군병영지 등의 안전을 위한 산사태 재해방지 사방사업 확대
- '15년 실태조사결과 산사태예방사업 대상지 총 49개소 중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9개소 우선 추진
  * '16년(9개소) : 서부전선(25사단/1, 28사단/3), 중부전선(6사단/1, 15사단/1, 21사단/2, 12사단/1)
- 북부지방산림청은 군부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 시행

ㅇ 농업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을 위한 저사·저수 겸용 사방댐 조성
- 안반데기 고랭지 반복적인 가뭄피해지의 용수공급 및 산사태·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저사·저수 겸용 사방댐 등 유역관리사업 시범 추진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2-1번지 일원(안반데기 고랭지)

2) 해안방재림 조성 및 해안침식방지 사업 추진

ㅇ 해안방재림 신규조성은 피해우려가 큰 지역부터 순차적 추진
-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추진
  ·(1년차) 객토 시행 → (2년차) 대묘식재·울타리 설치 등
- 단일수종 식재 보다 주변 경관 등을 고려 화본류 등과 혼합 식재
  * 해안사방 조성·관리계획(산사태방지과-4442(2013. 11. 18호)에 따라 추진

ㅇ 해안방재림 조성사업과 해안침식방지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제고

ㅇ 해안침식방지 사업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연속성 있는 경관유지가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

ㅇ 기 조성된 해안방재림 사후관리 철저 및 모니터링 실시
  ·토양비옥도 증진(시비·객토),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울타리 보수 등

3)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의 전문화 체계 확립

ㅇ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의 안전성·환경성 등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
- 산사태의 위험성, 사방공법의 적정성, 생태·경관·환경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으로 평가기준을 개선·보완
- 전문분야(사방, 산림, 환경 등)별 현장조사·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ㅇ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전문 인력 확충 및 과학적인 평가 실시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는 사방전문, 산림환경전문 분야별 각 1인 이상이 포함된 현장조사·평가체계 구축
  * 시행기관에서는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위원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지도
- 토석류 피해 예상범위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실시

ㅇ 사방협회에 위탁 시행하는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는 사업시행 전년도 상반기까지 위탁계약 추진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계획물량 전체를 일괄 계약하는 것보다 일정량이 충족되면 분산계약 추진

ㅇ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서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가 아닌 곳은 산림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

4) 사방사업 기술컨설팅 등을 통한 설계·시공의 품질 제고

ㅇ 사방사업의 안전성·환경성 등 품질 제고를 위한 사전설계 심의제도 시행
- 사방전문가, 산림환경전문가 등으로 사전설계 심의위원을 구성
- 설계도·서 검수(납품) 이전에 검토 기준(4개 항목 21개)에 따라 사전설계 심층 검토

ㅇ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시행으로 현장관리 강화
- ’16년부터 계류보전사업(감리계약 건당 2억원 이상 사업장) 감리 시행

ㅇ 사방사업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 기술자문 지원(2~6월)
- 사방시설 공작물의 위치선정, 견실시공방법, 공사감독요령 등 자문
- 각 시·도 및 지방청에서는「사방사업 현장 기술자문단」지원이 필요할 경우 산림청에 수시 요청

ㅇ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은 조기착수 등으로 우기 전(6월말) 완료
- 사방사업 적기 완료를 위한 시·도 및 지방청별 자체 TF팀 구성· 운영

ㅇ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또는 공사시행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 사방사업의 필요성, 주민 요구사항 적극 반영 등으로 민원사전 예방

ㅇ 사방시설은 현지여건과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는 재료·공법 적용
- 사방시설은 획일적·정형화된 설계를 지양하고 인공구조물 최소화
- 주거지 인근, 도시공원지역 등은 환경성·주민 편의성을 설계에 반영
- 사방댐 신설·유지관리를 위한 진입로 필요 지역은 설계에 반영
- 사방댐 설치 시 활엽수의 낙엽퇴적에 따른 수질오염 및 악취 등이 우려되는 곳은 투과형 사방댐으로 설계
  * 기존 댐의 형식 개량(중력식→도징댐) 및 유량조절밸브 장치 신설 등

ㅇ 단비부족을 원인으로 필요한 구조물이 누락·축소되거나 과다설계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단위 면적·개소·km당 기준단비는 개소별 여건에 맞게 가감하여 차등적용

ㅇ 야계사방 사업은 산지 ↔ 계류 ↔ 생활권을 잇는 계통적 사방사업으로 추진
- 주 공작물 상류지역(지류 포함)의 산기슭 고정과 토석류 발생을 억제하고, 계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횡 공작물이 계통적으로 설치되도록 설계

ㅇ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구조물 과다시공, 안정된 계류 훼손, 적정하지 않은 장비사용 등으로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검토 철저
- 무리한 시공, 형식적인 감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방시설물을 적용할 때에는 공법마다 설치 목적 등 당위성이 뚜렷해야 됨

ㅇ 신설되는 사방댐 반수면에는 저수·저사 수위(눈금)표를 댐 안에 표식

ㅇ '16년 사방사업 예산에는 익년도 사방댐 등의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 설계 부족예산은 계약 잔액 등 활용

5) 사방시설의 사후관리 철저로 산지재해 안전기능 확보

ㅇ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조치는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점검결과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정밀 안전진단 실시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ㅇ 노후 및 파손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댐은 안전조치는 물론 사방댐 상·하류 지역에 골막이·사방댐 등 필요한 공작물 추가조성

ㅇ 사방댐 준설 대상지는 우기 전(6월말)까지 실행완료하고, 준설이 불필요한 사방댐은 현장에 미실행 사유를 명기한 표지판 설치(언론·민원예방)
- 특히 저수용도의 사방댐(물가두기)은 농업용수 공급 등 기능 제고

ㅇ 사방댐 안에 저수(貯水)가 되어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하절기에 수문(水門)을 열어 배수조치 하고, 안전펜스·경고판 등을 점검·정비

ㅇ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신규지정·해제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적기 추진(토지정보시스템 등재 등)

ㅇ '16년도에 시설한 사방댐에 대한 시설관리 이력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사방시설의 관리·점검 및 안전관리·안전조치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기능 확보

ㅇ 사방협회 위탁사업 점검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물 점검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사방협회)

6)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 기술력 강화

ㅇ 사방사업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계층별 실무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공무원, 산사태예방단), 사방기술원(공무원, 산림법인), 산림조합중앙회(현장 대리인)

  * 산림조합중앙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추진

ㅇ 사방사업 실무자 현장워크숍 개최(2월)

- '16년 사방사업 정책방향, 사방시설의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한 설계·시공방안 논의 및 사방사업 현장견학 등

ㅇ 당해연도 사방사업 실행지를 대상으로 품질 경진대회 추진

- (대상사업) 산지사방, 해안사방,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 (주요내용) 주변 환경·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작업방법 개선 사례

  ☞ 시설규모·공법의 적정성, 자연친화적인 자재사용,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훼손정도, 계류의 생태보존성 등을 위주로 심사

ㅇ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설계·감리 대가 산정방식 개발·보급

- 공사비요율방식, 실비정액방식 등 장·단점 분석 후 사방사업에 합리적인 설계·감리 대기기준을 마련

ㅇ 전통사방기술의 재해석을 통한 신사방기술의 개발연구 추진

- 전통 사방기술의 과학적 근거와 이론적 체계 구축, 전통사방공작물의 안정성 해석 프로그램 개발 등

ㅇ 역사성·희소성 등의 가치가 높은 전통 사방시설을 발굴하여 브랜드화 추진

- 전통사방시설 화보집 발간, 기술 보존 등 유지관리 방안 모색

7) 기타사항

ㅇ 하천 등 임야 이외의 지목이 사방지에 편입될 경우 사업 착수 이전에 관련법에 따른 점용허가 등 필요한 협의 후 공사착공

ㅇ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신규설치 사방댐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

ㅇ 사업장 여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적정 추가비용 반영
- 차량진입 어려움·위험지역, 기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경우

라. 추진일정

ㅇ 사방사업 실무자 현장 워크숍 : 2016. 2월

ㅇ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추진상황 현장지도·점검 : 2016. 3~6월

ㅇ 사방사업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2016. 3~6월

ㅇ 사방사업 품질 경진대회 대상지 선정·제출 : 2016. 9월

ㅇ ’17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및 설계 지도·점검 : 2016. 4~12월

13. 산사태발생지의 신속 · 정확한 조사 및 복구

목 표

◇ 신속·정확한 산사태 원인·피해조사 및 항구복구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가. 정책여건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로 산사태 발생이 빈발하는 추세

ㅇ 관광지·주택·펜션시설 등 산지의 타용도 증가로 산사태 발생이 가중

ㅇ 산사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역단위 전체를 조망한 완벽한 복구 필요

나. 기본방향

ㅇ 산사태발생시 신속·정확한 피해현장 조사체계 구축

ㅇ 산사태발생지의 신속하고 견실한 항구복구 추진

ㅇ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 발생시 신속·정확한 피해현장 조사체계 구축

ㅇ 산사태 전문가로 “산사태 원인 전문조사단” 구성·운영
- 피해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원인조사·분석 및 복구방안 제시

ㅇ 대규모 산사태 발생지역은 시·도 주관 재해조사 T/F팀 구성·운영
- 신속·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무원, 산림조합, 산림법인 등으로 조사팀 편성

ㅇ 대규모 피해지의 정밀조사를 위한 헬기 지원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합동 조사
- 피해조사 시 누락·중복 또는 물량의 과대·과소치가 없도록 정확성 제고
  * 보고에서 누락된 피해지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자체복구계획수립 및 복구

ㅇ 기능복원사업으로 근원적인 복구가 되지 않거나 안전에 문제 있는 피해지는 개선복구계획에 적극 반영

ㅇ 재해복구사업 실시간 공정관리시스템 입력

- 사업시행부서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NDMS ID등록·부여
- 공공시설 예산확보부터 사업관리 등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실시간 입력

2) 산사태발생지의 신속하고 견실한 항구복구 추진

ㅇ 선제적인 행정절차 사전 이행으로 신속한 산지재해복구사업 추진

-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통보 시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 등 적극 활용
-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 등 사전준비

ㅇ 산사태 발생원인 및 피해유형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설계·복구

- 피해지역의 지형·지질별 붕괴유형 등에 맞는 복구공법 적용
- 생활권, 일반산지 등으로 설계를 차등화 하여 경제적·효율적인 복구

  * 산사태피해지의 지역성, 경제성, 피해의 경중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복구 실행

ㅇ 복구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전설계 심의제도” 운영

- 복구금액 5억 원 이상인 개소는 자체 사전설계 심의

ㅇ 복구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기술자문단’ 구성·운영

- 산림공학회, 산림기술사, 사방협회 등으로 구성하여 현장 기술지원

ㅇ 일선담당자의 조사·복구 추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NDMS입력, 복구계획 수립 요령 등

3)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ㅇ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안전점검 등 효과분석 실시

- 복구액 5억원 이상, 복구면적 1㏊이상, 생활권 복구지역 등

  * 효과분석 대상 : 76건('12년 43건, '13년 28건, '14년 5건)

ㅇ 땅밀림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기 복구지는 토량변화 추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기복구지 중 인장균열·단차 등 땅밀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응급조치 및 추가 사방복구사업 시행

ㅇ 전국 땅밀림 산사태발생지의 지속적 색출

- 땅밀림 산사태발생지의 기초자료(소재지, 피해규모, 조치계획, 위치도 등)를 산림청에 보고

라. 추진일정

ㅇ ’16년 산림분야 재해복구단가 산정기준 협의 : 2016. 1～5월

ㅇ 산사태 복구지 안전점검 등 모니터링 : 2016. 3～6월

ㅇ ‘산사태 원인 전문조사단’ 구성·운영 : 2016. 5～11월

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목 표

◇ 과학적 예찰, 권역별 맞춤형 전략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모니터링 강화로 가시적 방제성과 창출

ㅇ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를 달성하기 위한 피해 안정화 체계를 구축

가. 정책여건

ㅇ '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05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정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피해가 감소하였으나 '13년부터 다시 급격히 확산

- 예산부족에 기인한 소극적 방제, 현장의 관심도 저하 등과 고온·가뭄 등 매개충 활동에 유리한 기후적 여건이 맞물리며 피해 급증

ㅇ 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14.11)수립 후 피해목 제거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 방제법 적극 도입으로 피해를 감소추세로 전환

- 단목벌채에서 벗어나 모두베기를 확대하고 840개 사업장을 집중 관리
- 항공방제와 연계한 지상 연막·연무방제 확대(5→30천ha), 수집·파쇄 비율 확대(19→39%), 친환경 페로몬 유인트랩 시범도입(5천개) 등

* 피해목 발생 추이 : ('14.4) 2,180 → ('15.4) 1,740 → ('15.11 현재) 630천본

ㅇ 극심지 위주의 방제,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등으로 선단지 및 미발생지역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신규(재) 발생지역이 증가

- 다만, 신규(재) 발생지는 긴급방제 및 체계적인 관리로 타 병해가 누적되어 발견된 군산을 제외하고 10본 내외의 피해로 초기대응 성공

* '15년 신규(재)발생 : 영동·서천(3월), 군산·용산·천안(4월), 단양(6월), 거창(8월), 강릉(9월), 무안(10월), 논산(11월)

ㅇ '15년 우화기에 지속된 고온과 가뭄 등 기후영향으로 매개충의 증식·활동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고 11월 이후의 잦은 강수(우)로 인해 고사목 전량 제거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나. 기본방향

ㅇ 피해양상 및 방제여건 등을 고려한 방제전략 수립 및 협업방제 체계 구축

- 지역 방제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권역별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으로 피해 규모·유형 및 확산경로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추진
- 지방청, 지자체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단지 관리 및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우선순위에 따라 방제

ㅇ 책임방제를 강화하고 매개충 우화기 이전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위탁·대행을 확대하고 사업구별 책임방제를 도입하여 방제품질 향상 도모
- 기존 훈증 위주의 획일적 설계에서 탈피하여 현장에 가장 적합한 종합 공종을 설계에 반영하여 마감시한 내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ㅇ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고사목 재활용 촉진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법적 의무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미감염확인증에 위·변조 방지용 QR코드를 도입하여 단속의 실효성 확보
- 피해 극심지에 운영되는 대량방제시설(포항, 밀양, 서귀포)을 거점으로 버려지는 피해고사목 산물을 목재자원으로 적극 활용

ㅇ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조기에 운영하여 체계적 현장관리 강화

- 전국 3개 권역에 전담인력을 조기에 배치하여 방제 누락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상황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다. 세부추진계획

1) 피해양상 등을 고려한 방제전략 수립 및 협업방제 체계 구축

ㅇ 전국을 피해정도에 따라 6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 지방청이 주관이 되어 해당 시·군·구 지역을 포함한 권역별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기관별·주체별 역할분담 및 공동·협업방제 추진

  * 6대 권역 : 북부권(경기, 강원), 중부권(충북, 충남, 전북), 대구·경북권, 서남부권(전라, 서부 경남), 동남부권(부산, 울산, 동·중부 경남), 제주권

ㅇ 본청, 과학원, 모니터링센터 및 기술사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방제전략 및 현장 자문, 필요자료 제공 등 실시

- 미발생 지역도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조기발견 및 대응력 강화

ㅇ 완전방제를 위해 중앙-지방 간 동일한 목표로 방제협력 강화

- 관할 지역방제대책기관이 방제주체가 되어 완전방제를 추진하되 피해가 극심하거나 방제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가에서 직접 방제 수행
- 산림소유별 또는 행정구역 단위 경계 등 방제 사각지대는 예찰·방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점검·대응

ㅇ 방제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보공유 및 협업방제 추진

- 정례 실무협의회에 문화재구역, 국립공원, 군부대 등의 피해 예방 및 방제 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당면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
- 도로, 철도 개설 등 타 부처별 소관사업 추진 시 방제와 연관되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동 지도·점검

2) 책임방제를 강화하고 매개충 우화기 이전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ㅇ 참여업체별 방제구역을 설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모든 고사목을 책임방제

- 해당업체는 원칙적으로 내년 봄철 방제완료 시까지 모든 고사목을 전량방제하되 부실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타 산림사업 입찰 등에 페널티 부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4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위탁·대행

ㅇ 방제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추기방제를 본격화하여 전량제거 달성

- 제주도 이외 모든 지역은 매개충 우화 분포도를 감안하여 '16년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을 전량제거(제주는 4월)
- 극심, 심지역은 9월 고사목 전수조사 후 기관별 방제물량을 감안하여 추기방제를 위한 설계·시공을 발주하되 2월까지 나무주사를 병행

ㅇ 방제방식을 훈증에서 파쇄, 모두베기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상지별로 차별화

- 도로변, 민가 주변 등 임업기계장비가 접근이 가능한 임지는 최대한 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고, 훈증은 불가피한 지역에 한정 적용
- 신규 발생지, 집단피해지 등에는 모두베기 방제를 적극 적용하여 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형별로 방제방법을 다변화

3)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고사목 재활용 촉진

ㅇ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하여 무단이동 경각심 고취

- 단속초소는 봄·가을 특별단속 기간 등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위반행위는 온정주의를 배제하여 무단이동에 따른 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차단

- 소규모로 소나무류를 재배·판매하는 개인, 화목사용농가 등의 관리 강화
- 표준산업분류표, 과세코드 등을 기반으로 정비된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에 법적 의무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단속

ㅇ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되는 소나무류는 QR코드 등을 활용해 특별관리

-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되는 조경수 및 분재는 미감염확인증에 고유 QR코드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
- 생산자와 수요자의 미감염확인증 보관기간을 5년으로 의무화하고 발급매수, 이동장소 등 발급기준을 구체화하여 해당 지역 소나무류 관리 강화

  * QR코드 :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로 입력된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캔하면 미감염확인증에 기재된 정보, 사진, 위·변조여부 조회가 가능

ㅇ 대량방제시설을 거점으로 버려지는 고사목을 친환경 자원으로 본격 활용

- 재선충병 극심지인 포항, 밀양, 서귀포에 시설되는 대량방제시설로 피해목을 우선 반입하여 데크재, 탄화목, 펠릿 등으로 재활용

  * 기관별 주용도 : 포항(파레트), 밀양(발전용 칩, 톱밥), 서귀포(데크재, 탄화목, 펠릿)

- 자원활용도가 높고 단목벌채·훈증보다 재발생률이 낮은 수집·파쇄를 대폭확대하여 지역 내 친환경 목재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 전체대비 파쇄 비율 : ('14) 19% → ('15) 37% → ('16년 목표) 60%

- 방제지 인근 농가의 무단사용, 매개충 재산란 우려가 있는 훈증더미를 최대한 수집·파쇄하여 축산용 퇴비 등으로 재활용('16년 5만여개)

4)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의 조기 운영으로 체계적 현장관리 강화

ㅇ 발족과 동시에 봄철 피해고사목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업무 수행

- 본청 방제담당(6명)과 센터 현장조사팀(15명)으로 반원을 편성하여 점검반별 담당 지자체를 책임 관리하고 제주도는 상주 배치하여 특별관리
- 기관별로 추진 중인 방제사업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방제성과 제고

ㅇ 발생률 조사, 피해추이 분석·예측, 원격탐사 등 고유 모니터링 업무 본격 실시

- 피해지의 재발생률 조사, 피해양상 분석을 통한 확산을 과학적으로 예측
- 미발생지, 선단지, 금강소나무림 등 주요 핵심지의 입체적 예찰활동 강화

  * (1단계) 광역단위 무인항공 예찰 → (2단계) 지상 전문예찰

- 방제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 기준마련
- 공무원, 예찰·방제단, 방제업체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연 2천명)

라. 추진일정

- ㅇ 재선충병 예찰·방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광역권 점검회의 : 연중
- ㅇ 재선충병 담당자 및 예찰방제단 직무역량 강화 교육 : 2016. 1월
- ㅇ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항공 및 지상 정밀예찰조사 : 2016. 1～2월, 9～10월
- ㅇ 소나무류 예방나무주사 실행 : 2016. 1 ~ 3월, 11 ~ 12월
- ㅇ 봄철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 : 2016. 1～4월(북방·혼생 3월, 솔수염 4월)
- ㅇ 재선충병 피해지역 특별 집중점검 : 2016. 1～4월
- ㅇ 재선충병 피해극심지역 책임담당관 지정·운영 : 2016. 1～4월
- ㅇ 소나무류 이동 전국일제 특별단속 실시 : 2016. 3～4월, 10～11월
- ㅇ 재선충병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 2016. 4～10월
- ㅇ 재선충병 매개충 페로몬 유인트랩 설치·운영 : 2016. 4～10월
- ㅇ ’15년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사업 평가 : 2016. 5월
- ㅇ 소나무재선충병 지상 및 항공방제 실시 : 2016. 5～10월
- ㅇ 재선충별 피해지별 표본구 재발생률 조사 : 2016. 5～12월
- ㅇ 재선충병 벌채지, 훈증더미 집중호우 대비 사전 점검 : 2016. 6～7월
- ㅇ 가을철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전수조사 실시 및 제거사업 : 2016. 9～12월
- ㅇ 재선충병 지자체 합동평가(재발생률) : 2016. 11월
- ㅇ ’16년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사업 완료 : 2016. 12월

15.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 유지

목 표

◇ 임업적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피해 안정화 유지에 주력

ㅇ 사업량 : 나무주사 2,735ha, 해송림 종합방제 8개소

- 임업적방제(재해저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숲가꾸기와 병행 추진

가. 정책여건

ㅇ 솔껍질깍지벌레는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동·서해안을 따라 지속 발생

ㅇ '07년까지 확산되었으나, '08년부터 적극적인 방제로 연평균 11%가 감소

- 발생추이(ha) : ('07) 47,207 → ('09) 32,497 → ('11) 12,524 → ('12) 8,945 → ('13) 7,051 → ('14) 7,436 → ('15) 6,400

ㅇ 해안가 우량 해송림이 관리 미흡 및 기상여건, 인위적 영향으로 생육환경 열악

- 해안방재림 1,229개소(1,479ha), 해수욕장 주변 해송림 351개소

나. 기본방향

ㅇ 피해 병징이 뚜렷한 5월중 전국 실태조사 및 리·동별 특별관리체계 구축

ㅇ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재선충병 방제방법으로 처리하고, 미발생지역은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 "재해저감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림 건강성 확보

ㅇ 피해도 "중" 이상 지역 및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은 임업적 방제 후 나무주사 실시

ㅇ 동·서해안 선단지에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활동 및 임업적 방제를 집중

ㅇ 해안가 우량 해송림에 대한 종합방제 지속 추진 및 방제모델 개발·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1) 리·동별(권역별) 발생 및 방제계획 등 특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피해 유형별 맞춤형 방제 전략 마련

ㅇ 2015년 5월 조사·작성한 리·동별 발생조서를 활용하여 2016년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방제사업(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 지속 추진

ㅇ 지역적 특성(지황과 임분 등) 및 피해유형 등에 따른 방제 전략 마련
- 피해선단형, 피해초기형, 피해극심형, 피해회복형 등으로 구분·방제

2)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재선충병 방제법에 준해 처리하고, 미발생지역은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 임업적 방제 추진

ㅇ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고사목 전량을 재선충병 방제방법에 따라 처리
ㅇ 재선충병 미발생지역은 선단지,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부터 임업적 방제(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깍지벌레의 밀도저하 및 서식처 사전 제거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산물은 가급적 수집·파쇄
ㅇ 임업적 방제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산주에게는 산물 수집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지급
- 대상지선정 등 실행방법은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매뉴얼"에 따름

3) 나무주사는 가급적 사전에 임업적 방제를 실행하고 적기 방제 실행으로 방제 효율성 제고

ㅇ 임업적 방제를 실행하여 적정 본수를 남긴 후에 예방나무주사 실행
ㅇ "나무주사"는 주요지역 등 우량 소나무림에 적기 실행하여 방제효과 제고
- 실행시기 확대 : 6~7월(정착약충기), 11~12월(후약충기)

4) "해안가 우량 소나무림 종합방제" 사업 확대 추진

ㅇ 생활권 경관보전,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우량 소나무림에 방제사업 지속 추진
- 주민설명회 등을 사전에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고, 국립공원 지역(변산, 한려해상 등)은 공원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실행
- 토양개량, 가지치기, 솎아베기, 나무주사, 인위적 피해 방지, 비료주기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방제 추진(실시설계 반영)
ㅇ 2017년 우량소나무림 종합방제 대상지역은 사전 심의를 통해 실행여부 결정
- 시·도, 지방청에서는 2017년 대상지 기본설계 후, 산림청에 신청(9월말)
- 현장 확인 등 사전심의를 통하여 대상지 확정(10월까지)

5) 솔껍질깍지벌레 종합방제 모델 개발·보급

ㅇ 흑산도·태안 등 해안가 우량해송림에 대한 방제모델 개발·보급
- '16년 흑산도(국립공원)와 태안(극심 및 선단지)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ㅇ 국립공원지역(흑산도) 산림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 공동조사·모니터링 및 유형별 방제 시범사업 추진

라. 추진일정

- ㅇ 시·구·군의 리·동별(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 2016. 1월
- ㅇ 흑산도·태안 시범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 2016. 1월
- ㅇ 소나무림재해저감 대상지선정·실시설계·계약 추진 : 2016. 2월
- ㅇ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추진 : 2016. 6~11월 집중
- ㅇ 2016년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실태조사 : 2016. 5월~7월
- ㅇ 2017년 해안가 종합방제 대상지 선정 및 기본설계 추진 : 2016. 8~9월
- ㅇ 나무주사 대상지 사전 임업적 방제 실행 : 2016. 9~11월
- ㅇ 나무주사 실행 : 2016. 6~7월, 11~12월
- ㅇ 흑산도 공동조사 및 시범사업 결과 보고 : 2016. 12월

16.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저지

목 표

◇ 유관기관 공동방제 및 사전 예방사업 확대를 통한 확산 저지

ㅇ 사업량 : 502천본(사유림 449, 국유림 53)

ㅇ 사업비 : 6,138백만원(국비 3,468, 지방비 2,670)

가. 정책여건

ㅇ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은 감소 추세이나 피해발생지역은 확대

- 발생지(시·군·구) : ('12) 87개 → ('13) 94개 → ('14) 102개 → ('15) 106개
- 피해목(천본) : ('12) 268 → ('13) 309 → ('14) 239 → ('15) 234(2%↓)

ㅇ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의 서식밀도가 높아지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

나. 기본방향

ㅇ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방제전략 수립·방제

ㅇ 매개충의 생활사 및 현지 여건에 맞는 복합방제 방법을 실행

ㅇ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부서와의 공동협력 방제 강화

ㅇ 친환경 방제 추진으로 경관 및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

다. 세부추진계획

1)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방제전략 수립 추진

ㅇ 국립공원, 등산로, 주요산 등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우선적인 방제 추진

ㅇ 리동단위 특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병해충에 대한 발생상황, 방제 계획 및 실행, 사후관리 등 세부 이력을 기록 유지 및 적극 활용

2) 매개충의 생활사 및 현지 여건에 맞는 복합방제 실행

ㅇ 매개충 잠복시기(11월~이듬해 4월)

- 근원적 방제가 가능한 소구역선택베기를 우선 실행하고, 반출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사목은 신속히 벌채·훈증 처리

ㅇ 매개충 우화시기(5～10월)

- 매개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끈끈이롤트랩, 고사목 벌채·훈증, 대량포획 장치법, 약제줄기 분사법, 유인목 설치 등의 방법을 현지에 맞게 복합적으로 적용

* 고사목 벌채·훈증은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막용 방수포” 사용

3)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공동방제 확대로 방제효율 제고

ㅇ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유역완결 방제 추진으로 방제효율 극대화

- ’15년 지자체(서울·경기), 북부지방산림청 긴급공동방제 추진 등 사례

ㅇ 현충원, 군부대 등 국방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협력 및 방제 기술 지원

4) 친환경방제 추진으로 경관 및 자연생태계 유지

ㅇ 주변 경관과 조화가 필요한 지역은 경관과 조화되는 방제법 활용

ㅇ 야생 조류 및 익충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은 안쪽면 점착성 롤트랩 설치

5) 사전예방 사업 확대와 신규 방제기술 개발을 통한 확산 저지

ㅇ 매개충 포획 및 침입방지 등 예방효과가 탁월한 끈끈이롤트랩 설치 확대

- 끈끈이롤트랩 확대(천본) : (’13) 276 → (’14) 289 → (’15) 294 → (’16) 380

ㅇ 방제방법 다양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적극 추진

- 곰팡이균(라펠리아)을 직접 방제할 수 있도록 나무주사용 약제 선발
- 매개충 포집을 위한 페르몬 개발 등 새로운 방제기술 적극 개발

라. 추진일정

ㅇ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 2016. 2월

ㅇ 2016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 추진 : 2016. 1～12월

* 고사목 벌채 : 2016. 7～이듬해 4월

ㅇ 수도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회의 : 2016. 6월, 9월

ㅇ 2016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 2016. 7～9월

ㅇ 2015년도 벌채·훈증목 처리상황 조사 : 2016. 10월

17. 솔잎혹파리 피해 안정화

목 표

◇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저지 및 안정화 유지

ㅇ 사업량 : 10,858ha(사유림 9,768, 국유림 1,090)

ㅇ 사업비 : 9,797백만원(국비 6,627, 지방비 3,170)

가. 정책여건

ㅇ 솔잎혹파리의 전체 피해 발생량은 감소 추세이나 강원,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적기 방제를 못할 경우 피해 확산 우려

- 발생면적(천ha) : ('08)183→('11)82→('12)68→('13)59→('14)57→('15)50

ㅇ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업적 방제 잠정 중단

- 나무주사(천ha) : ('12) 7 → ('13) 7 → ('14) 11 → ('15) 8 → ('16계획) 10

ㅇ 솔잎혹파리 피해는 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적 방제작업 추진

나. 기본방향

ㅇ 솔잎혹파리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체계 관리 강화

ㅇ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적기에 나무주사 추진

ㅇ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선단지) 인근 재해저감사업 미 실행

다. 세부추진계획

1) 특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발생지에 대한 책임방제 및 관리 강화

ㅇ 리·동별 발생상황, 경급, ha당 본수, 사업실행 등에 대한 특별 이력관리를 통해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여 추가 확산 방지

ㅇ 리·동별 발생면적 50ha이상 지역은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 및 방

제를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변경시 인계·인수 철저

2)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적기 방제를 통한 산림경관 보호

ㅇ 경기장 주변 및 가시권역 솔잎혹파리 집중방제 실시

- 고속도로(영동·중앙) 및 국도 주변 가시권지역 권역완결 방제 추진

ㅇ 친환경방제 추진을 위하여 고독성 농약사용 전면 금지

* 산림병해충과-3658호('15.9.15)

3) 지역별 적기 나무주사 실행으로 방제효과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ㅇ GIS 기반의 우화시기 예측모델에 따른 적기 나무주사 실시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우화 최성기 지도"를 확인하고 고도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기 및 방제방법에 따라 실행

ㅇ 약제 처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제 작업 실행전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4) 나무주사 표준지에 대한 상세도 작성

ㅇ 설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조사를 세밀히 하고 설계도 작성시 대상목의 경급 및 약제 주입량 등을 표시

라. 추진일정

ㅇ 방제용 농약 조달을 위한 단가계약 체결 요청 : 2015. 12월

ㅇ 솔잎혹파리 담당공무원 실무(안전관리) 교육 : 2016. 5월

ㅇ 솔잎혹파리 천적 방제작업 실시 : 2016. 5~6월

ㅇ 2016년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실행 : 2016. 6~7월

ㅇ 솔잎혹파리 발생 상황 및 모니터링 : 2016. 8~9월

18. 기타(돌발·외래 등)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

목 표

◇ 돌발·외래병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조기발견·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 ㅇ 사업량 : 38,691ha(사유림 32,565, 국유림 6,126)
- ㅇ 사업비 : 7,545백만원(국비 4,490, 지방비 3,055)

가. 정책여건

- ㅇ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과 농경지 동시발생 병해충의 발생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나. 기본방향

- ㅇ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 체계 정착으로 피해 최소화
- ㅇ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면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확산 조기 저지
- ㅇ 지역별 방제여건에 따라 방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 ㅇ 항구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의 공동협력 방제
- ㅇ 주민생활 불편 및 안전을 저해하는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
- ㅇ 밤나무 해충 등 돌발해충 항공방제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1) 돌발.외래.일반병해충의 적기방제

- ㅇ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돌발해충의 예찰조사 철저
- ㅇ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경관을 저해하는 해충은 정확한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발생초기 적극 방제하여 피해 최소화
- ㅇ 돌발 · 외래병해충은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를 초기에 차단

2)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공동협력 방제 강화

ㅇ 동절기 기주나무에 산란하는 알 덩어리에 대한 제거작업을 농업관련 부서와 공동협력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제고

- 농작물 재배지와 주변 산림을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공동방제

ㅇ 성충 시기는 발생 초기에 지상 약제방제 반복 실시

*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매뉴얼('15.7)」에 따라 적기·공동방제

3) 주요 항구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 협력 예찰·방제

ㅇ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요항구(21개항) 주변(2km 이내) 녹지대 및 산림지역에 대한 주기적 예찰 및 방제 지원

- 부산, 인천, 울산, 평택, 동해, 옥계, 군산, 목포, 광양, 여수, 포항, 마산, 당진, 온산, 영일만, 대산, 당진화력, 영흥화력, 하동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21개항)

ㅇ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공동방제 추진으로 방제효과 제고

4)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병해충 방제 적극 지원

ㅇ 도시·생활권 주택가 및 녹지대에 주로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돌발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로 주민 불편 해소

ㅇ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의 돌발 별해충은 항공방제 적극 지원

5) 과수화상병 적기 예찰·방제로 농산촌 피해 최소화

ㅇ 사과·배를 중심으로 '15년 최초발생한 화상병에 대하여 관계기관(농촌진흥청 등) 협업을 통한 적기 방제 추진

- '15년 경기(안성), 충북(제천), 충남(천안)지역 15개소 6.26ha 방제

ㅇ 화상병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산림에 분포하는 기주식물 제거

* 「2015 배 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산림청)」에 따라 방제

라. 추진일정

ㅇ 꽃매미 발생억제를 위한 알집 제거작업 실시 : 2015. 12 ~ 2016. 4월

ㅇ 아시아매미나방(AGM) 유충발생기 집중관리 : 2016. 5 ~ 6월

ㅇ 항구 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 발생상황 공동조사 : 2016. 7월

ㅇ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2016. 6 ~ 8월

ㅇ '16년 산림병해충 방제 약종선정 회의 개최 : 2016. 8월

19.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 구축

목 표

◇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 구축 및 병해충 관리강화

- ㅇ 나무의사 제도 도입 등 전문적 진료체계 구축(산림보호법 개정)
- ㅇ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 4,000건, 1,000백만원(국비500, 지방비 500)
- ㅇ 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 2,300백만원
  - 국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 1,100백만원(국비 100%)
  - 공립나무병원(12개소) : 1,200백만원(국비600, 지방비600)

가. 정책여건

- ㅇ 도시 생활권에서 전문가에 의한 수목방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고독성농약 사용 등의 문제 발생
- ㅇ 아파트 등 수목진료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나, 전문성 부족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나. 기본방향

- ㅇ 나무의사 제도 도입 등 전문화된 수목진료 기반 구축
- ㅇ 생활권 수목진단 및 진료를 통한 건전한 수목관리
- ㅇ 민간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 ㅇ 수목진료 발전을 위한 산 · 학 · 관 · 연 협의체 구축·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나무의사 제도 도입 등 전문화된 수목진료 기반 구축

- ㅇ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16.2) 및 하위법령 개정('16.8)
- ㅇ 달라지는 수목진료 체계 대국민 홍보 및 법 시행 기반 마련
  - 전문가 양성기관 운영방안 마련 및 불법 수목진료 단속 강화

2)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운영

ㅇ 민간컨설팅은 민간(나무병원)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해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단·치료 체계 구축

ㅇ 아파트 녹지, 학교숲, 도시숲, 도시공원, 사회 · 복지 · 청소년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민간 컨설팅 실시

- 민간컨설팅 : 4,000건, 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ㅇ 컨설팅 대상 선정 후 나무병원 등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업체 및 기관 : 나무병원, 산림조합,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나무병원 등 민간업체 : 컨설팅을 실시하고 처방전 발급
- 국립산림과학원 : 컨설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분석 실시

* 민간컨설팅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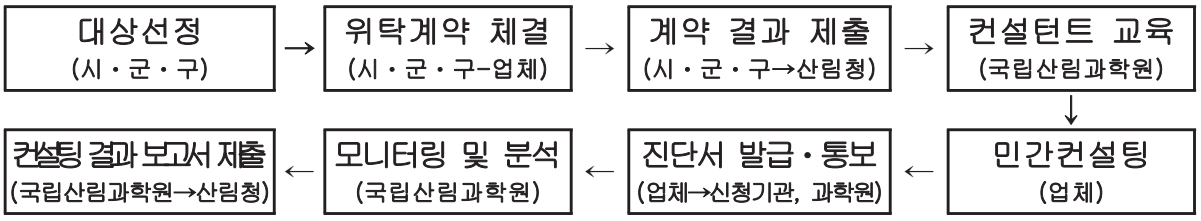

3) 국·공립나무병원의 내실화 및 지역거점 수목진료 체계 구축

ㅇ 생활권 수목진료의술 발전촉진 및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 보급 등 수목진료체계를 구축

ㅇ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수목진단센터는 관련 대학을 지정·운영하며, 공립나무병원은 각 시·도에서 운영(21개소)

- 국립나무병원 : ('16) 1개소, 460백만원
- 수목진단센터 : ('16) 8개소, 640백만원
- 공립나무병원 : ('16) 12개소, 1,200백만원(국비600, 지방비600)

ㅇ 생활권 수목진료 관련 실연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자 교육, 병충해 진단·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필요성 홍보 및 제도정착 유도

-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 실연연구 사업을 1과제 이상 수행
- 민원발생 병해충 진단 및 분석, 방제관계자 · 수목관리자 교육
-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물 제작 · 배포
-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수목진료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ㅇ 수목진료의 품질은 높이기 위해 민간나무병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는 운영결과에 대해 평가 실시

- 민간 나무병원 운영자 교육 : 5월
-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결과 평가 : 11월말까지

< 수목진료 전문 기관별 역할·업무 >

구 분	연구실연과제	주된 역할	세부 업무
국립나무병원 (산림과학원)	방제농약 직권등록	생활권 민간컨설팅 모니터링 등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운영 총괄	◦ 생활권 병해충 컨설팅 모니터링, 컨설턴트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 공립나무병원 운영 총괄, 보고서 작성
수목진단센터 (관련대학)	실태조사 등 기초과제 수행	방제관계자 교육 및 전문 인력양성, 수목진료 및 수목의술의 조사연구	◦ 학술회의, 강연회, 강습회 등 개최 ◦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개발
공립나무병원 (시·도)	시범사업 등 현안과제 수행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분석 공공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진단 ◦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보급
나무병원 (사업법인)	-	민간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생활권 민간컨설팅)	◦ 아파트 녹지 등의 수목진단서비스 제공 ◦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

4)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ㅇ 산림교육원에 개설된 수목보호기술 전문가과정 운영(5회, 150명) 및 국가공인 수목보호기술자 지속 양성(3회)

ㅇ 대학 등과 수목진료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교육 추진

- 대학, 단체 등 산·학·연과 연계한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 실시

라. 추진일정

ㅇ 민간컨설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선정 : 2016. 2월(시 · 군 · 구)

ㅇ 민간컨설팅 위탁용역 계약체결 및 계약결과 제출 : 2016. 3월(시 · 도)

ㅇ 민간컨설팅 컨설턴트 교육 : 2016. 5월

ㅇ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 2016. 5월, 11월

ㅇ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 2016. 11월(국립산림과학원)

ㅇ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결과 평가 : 2016. 11월

20. 훼손 · 단절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

목 표

◇ 백두대간 DMZ일원 등 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ㅇ 사업량

- 산림생태복원 45.5ha -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1개소
- 대규모 산림복원 4개소 - 훼손 산림 실태조사 및 복원사업지 모니터링

ㅇ 사업비 : 11,469백만원(국비 9,402, 지방비 2,067)

가. 정책여건

ㅇ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훼손 면적이 매년 증가

* 자연적·인위적 훼손규모 : ('80년대) 8,221ha/연 → ('00년대) 13,717ha/연

ㅇ 통일을 위한 한반도 생태계 연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백두대간, DMZ 등 산림생태계를 중심으로 핵심 생태축 복원 필요성 대두('14.8월, VIP 광복절 경축사)

ㅇ 생태축으로서의 백두대간 인식과 훼손지 복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백두대간 중요가치 1위는 '생태축', 최우선과제는 '훼손지 복원'('13. 한국갤럽)

ㅇ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16], 생물다양성협약[17] 등 국제회의에서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훼손지 복원이 이슈화

나. 기본방향

ㅇ 주요 산림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 한반도 핵심생태축 외에도 섬지역, 도시생활권 주변 등 대상 확대

ㅇ 산림생태복원 사업지에 대한 사전조사 및 사후 환류체계 정립

- 산림복원 대상지 실태조사 실시 및 사업대상지 선정요건 강화
- 복원사업지의 자생 식생이입 등 생태계 회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ㅇ 산림생태복원 기술 확산 및 소통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 복원대전, 현장 워크숍 등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교육과정 내실화

16) 훼손된 산림복구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이 주요이슈 중 하나(REDD+)
17) 훼손 생태계 면적의 15% 복원 권고(제10차 당사국총회, '10.10월)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 등 주요 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ㅇ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정맥, 지맥까지 확대하여 훼손 및 단절지 복원
- 과거 도로 개설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복원
  * 지리산 정령치(전북 남원) 사업완료 예정(서부지방산림청)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대관령 산림습원 내 황폐지 복원(5.0ha)
- 성주지맥 부근 폐채석장 및 도로 가시권 지역 훼손지 복원(6.5ha)

ㅇ DMZ 일원 전술도로 주변 산사태 피해지, 폐군사시설 등 복원(23.0ha)
- 산림청·육군본부 민북지역 산림복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09년) 지속 이행
- 폐군사시설 산림복원 전국 확대 추진(민북이남지역 내륙 및 해안 2개소)
  * 경북 안동(남부지방산림청), 전남 장흥(전라남도) 시범사업 추진

ㅇ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지역 산림생태계복원 및 사후관리
- 독도 산림생태계복원 완료('11～'14년)에 따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제2차 독도산림생태계복원 계획 수립 추진

ㅇ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복원대상 및 범위 다양화
- 도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인접 훼손 산림 복원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인구밀도가 높은 대상지 일원
- 특수공법이 필요한 대규모 훼손산림 4개소 산림복원 사업완료
  * 포항 산불피해지, 익산 미륵산, 울산 신불산, 영동 폐채석장
- 한반도 자생 산림식물종 서식지 복원 등 사업대상 확대 검토

2) 산림생태복원 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복원이 시급한 훼손산림 실태조사 실시
- 훼손지 정보의 현행화를 통해 복원전략 및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ㅇ 사업대상지 선정 요건 및 현장소통 강화 등을 통해 사업 부진 요인 해소
-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산주동의 여부 등 각종 협의환경 및 추진역량 고려
- 분기별 정례 협의, 현장 합동 점검, 전문가 기술지원 등 활성화

ㅇ 복원사업지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우수사례 발굴 등 환류 실적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체계>

모니터링 결과	⇨	우 수 보완필요 실 패	⇨	원인분석	⇨	사례 공유 보완사업 지시 재설계/종료

ㅇ 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방사업법의 일괄 적용 문제 발굴 및 개선

- 산림복원사업 특성에 맞는 타당성평가 기준 개정, 사방지 지정 효과성 검토

3) 산림생태복원 정착을 위한 담당자 역량 제고 및 협업 확대

ㅇ 관계기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산림복원 성과제고 및 중장기 추진기반 강화

-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참여(환경부, 국토부)
  * 관계부처 합동 '한반도 핵심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 수립('13.8월)
- 민북지역 산림복원 관계기관 회의개최 및 합동현장조사 실시(육군본부, 강원도)
- 전국 산림 내 폐군사시설 실태조사 및 대상지 선정(국방부, 육군본부)
  * 폐군사시설 전국 확대추진 시범계획 후속 조치 마련('17년 본격 확대)

ㅇ 산림생태복원포럼(가칭) 운영으로 법·제도 기술 개발등의 발전 모색

- 3~4개 분과별 학계, 현장실무자 등 전문가 섭외·구성(산지보전협회 등 연계)
- 연중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산림복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추진

ㅇ 우수복원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통한 산림복원 담당자 역량 강화

- 산림생태복원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한 전국우수 산림생태 복원대전 개최
- 현장워크숍, 간담회 등 중앙-지방정부 및 전문가집단의 소통의 장 마련

라. 추진일정

ㅇ 산림생태복원 담당자 교육 : 2016. 2월

ㅇ 산림훼손지 복원을 위한 권역별 실태조사 : 2016. 2~12월

ㅇ 산림생태복원 포럼 참가자 구성 및 연중 운영 : 2016. 2~12월

ㅇ 민북지역 산림복원 관계기관 회의 : 2016. 3월

ㅇ 미사용 폐군사시설에 대한 산림복원 사업 대상지 선정 : 2016. 3월

ㅇ 산림생태복원 사업지 현장지도·점검 : 2016. 4월(독도), 6월·11월(상·하반기)

ㅇ 2016 전국우수 산림생태 복원대전 및 현장워크숍 개최 : 2016. 5월~6월

ㅇ 산림생태복원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분석 : 2016. 5월~12월

21. 백두대간 보호·관리체계 강화

목 표

◇ 백두대간보호지역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관리기반 강화

ㅇ 사업량 : 6개도, 32개 시·군(백두대간 보호지역 인접)

ㅇ 사업비 : 1,388백만원(국비)

◇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을 자발적인 보호주체로 육성

ㅇ 사업량 : 6개도, 32개 시·군(백두대간 보호지역 인접)

ㅇ 사업비 : 6,002백만원(국비 4,222, 지방비 1,780)

가. 정책여건

ㅇ 국제적으로 연계 보호·관리(connectivity conservation)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가 재조명

ㅇ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충된 가치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 증가

* 보전측면 : 백두대간 가치 1위는 '생태축', 우선 추진정책은 '생태적 관리'('13년 한국갤럽)

* 이용측면 : 백두대간 완충구역 내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15년)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및 공동체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05년~)

나. 기본방향

ㅇ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관리 기능강화

ㅇ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16~25년) 추진과제의 내실있는 이행

ㅇ 항구적인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활성화 및 주민지원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추진과제 이행

ㅇ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확정

-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백두대간보호 거버넌스 구축, 백두대간 포럼 구성·운영 등 이행계획 마련

ㅇ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2015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2016년 시행계획 마련

2) 백두대간 및 정맥 자원실태변화조사 등 보호·관리기반 구축

ㅇ 백두대간 및 정맥 자원실태변화조사, 관리방안 연구

- 조사구간 : 백두대간 설악산 권역(3차기 1년차), 호남·금남호남정맥(2차기 2년차)
- 백두대간 및 정맥에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 산림자원실태 변화상 모니터링
- 고정조사구 지정·관리, 조사항목 조정 등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체계개선

ㅇ 백두대간 및 정맥 자원실태변화 조사자료 대국민 공개

- 백두대간('11~'15년, 2차기) 및 정맥('09~'15년, 1차기) 자원실태조사 정보 공개

3)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관리강화

ㅇ 백두대간 보전·관리 강화를 위한 보호지역 확대 지정추진

- 대부반환지(바람재 115ha) 및 사유림매수지 등 569ha를 확대 지정
- 매수 우선 대상 및 매수 후 관리방안을 담은 사유지 매수계획 수립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명확한 협의기준 마련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후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실태분석
- 개발행위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법률 개정안 마련

ㅇ 백두대간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여건 조사

- 백두대간의 생태·문화적 가치, 등재에 대한 지역여론 등 파악

4) 백두대간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보호활동 다양화

ㅇ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국민 참여형 '백두대간 사랑운동' 추진

- 민·관·주민이 함께하는 백두대간 대청소 및 백두대간 사랑 서명운동 실시

ㅇ 백두대간 이용객 안전도모 및 보호지역 정보제공을 위한 종합안내판 설치

-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이화령, 육십령 등 백두대간 주요지점 설치(10개소 이내)

5)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사업 강화

ㅇ 지역주민의 보호활동 및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지침 개정

-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한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제도 도입 검토

ㅇ 물가상승 및 금리하락에 따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침 개정

- 벌기령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 파악 및 산정방법 개선 검토

ㅇ 권역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운영활성화 지원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4개소)
- 지방교육청 자유학기제 연계 및 산림교육센터 지정 등 운영방식 다양화

라. 추진일정

ㅇ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확정 : 2016. 2월

ㅇ 2016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 2016. 3월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고시 : 2016. 3월

ㅇ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2016. 5월

ㅇ 국제보호지역 관리 선진사례 해외연수 : 2016. 5월

ㅇ 2015년 백두대간보호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작성 : 2016. 6월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 실태분석 및 법률개정안 마련 : 2016. 7, 10월

ㅇ 백두대간 마루금 종합안내판 시범설치 : 2016. 3~10월

ㅇ 백두대간 사랑운동 전개 : 2016. 10월

ㅇ 백두대간·정맥 자원실태변화조사 : 연중

ㅇ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운영 : 연중

ㅇ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운영 : 연중

〈부 록〉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

- 이 내용은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정리한 것임.
- 2015. 12월 현재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음.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임산물 수출지원 확대	<신 설>	ㅇ 식품위생 검사비 : 수출임산물의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ㅇ 해외공동물류센터 : 주수출국 현지 냉장·냉동 물류창고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16. 1월) 임업통상팀 (042-481-4086)
2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 및 운영	<신 설>	ㅇ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 및 운영 - 1개교(연간 150백만원, 5년간 지원)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교육 및 연구기반 확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6. 1월) 산림정책과 (042-481-4199)
3 밀원수림 조성	<신 설>	ㅇ 국유림을 중심으로 규모화 된 밀원단지 조성 - 아까시나무 등 주요 밀원수종 조림 (5개 지방청, 150ha)	'16년 사업계획 ('16. 1월) 산림자원과 (042-481-4185)
4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대상 품목	ㅇ 8개 품목 - 방부목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재펠릿, 목재칩, 목탄, 목재브리켓	ㅇ 11개 품목('16.1월) -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추가 ㅇ 14개 품목('16.7월) - WPC, OSB, 난연목재 추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6. 1월) 목재산업과 (042-481-4204)
5 벌채제도 개선	ㅇ 모두베기 최대 면적 : 50ha ㅇ 모두베기 존치 방법 : 단목, 군상, 수림대	ㅇ 모두베기 최대면적 : 20ha ㅇ 모두베기 존치방법 : 군상, 수림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5월) 목재산업과 (042-481-8875)
6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범위 확대	ㅇ 도지지역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 - 지역제한 없음 -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1월) 목재산업과 (042-481-420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7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 공·사유림에 보조지원	○ 경제림육성단지 안의 사유림에만 보조지원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6. 1월)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 4195)
8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 고정금리 <신 설>	○ 변동금리 적용 ○ 숲속야영장, 레포츠시설 추가	2016년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16. 1월)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2)
9 유통기반지원 사업 지원 확대	<신 설>	○ 일반 화물차량 지원기준 추가 - 도서지역의 재배면적 5ha 이상인 경우 ○ 저장・건조시설 추가 - 건조선풍기, 농업용 공기교반기 ○ 가공장비 추가 - 세절기 추가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6. 1월)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207)
10 임산물 생산 지원기준 변경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자	○ 톱밥배지 생산 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종자관리사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6. 1월)
	○ 노지원목 표고를 재배하는 자는 최소 330㎡ (100평) 이상의 면적을 소유	○ 1,500본 이상의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209, 4196)
	○ 유기질 비료 보조율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유기질 비료 보조율 - 국비 1,400원/20kg, 지방비 600원/20kg	
11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지원내용 추가	○ 집재기, 기계톱 등 임지 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운반하는 장비	○ 집재기, 기계톱, 우드그랩, 다목적 로우더 등 임지 내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운반하는 장비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6. 1월)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 4209, 419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⑫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시설 허용	<신 설>	○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 허용 *「산림휴양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16. 1월) 산지관리과 (042-481-4141)
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대상 확대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등	○ 660제곱미터 이상의 풍력발전시설 및 삭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16. 1월) 산지관리과 (042-481-4141)
⑭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 국유림 가격에 10/1000을 곱한 금액	○ 국유림 가격에 10/10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최근 공시한 해당 권역의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6월) 국유림관리과 (042-481-4094)
⑮ 산림복지 진흥	<신 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도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이용권 수탁기관(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 산림복지단지 조성 - 일정요건 충족 후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가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6. 3월)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⑯ 공·사립자연휴양림 산지전용신고 의제	○ 국유림만 해당	○「산지관리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의제처리 가능 범위를 공·사유림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까지 확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6.1월)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7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인증 기준 개선	ㅇ 산림교육 전문과정 단일과정으로 운영	ㅇ 산림교육전문과정을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으로 구분 운영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취득자는 공통과정의 교육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11.18)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시설기준 - 강의실 규모 100제곱미터 이상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시설기준 강의실 규모 완화 - 강의실 규모 49.5제곱미터 이상	산림교육문화과 (042-481-1813)
	ㅇ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심의와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심의 이원화	ㅇ 산림교육프로그램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 일원화 -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폐지하고,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18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사전협의 및 심의제도 도입	<신 설>	ㅇ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상실에 따른 지정해제 및 타 법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산림청장 사전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산림보호법 ('16. 1월)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19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허용	<신 설>	ㅇ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1·2종)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사설수목장림 설치 허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16. 1월)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2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단가 인상	ㅇ 45,000원/일	ㅇ 48,500원/일('15년 대비 7.8% 인상) *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가 인상	2016년 사업계획 ('16. 1월) 산불방지과 (042-481-4258)
21 산불방지 교육·훈련 위탁업무 처리기준 변경	ㅇ 위탁업무를 계약, 협약, 용역으로 처리 ㅇ 원가계산을 '14년까지 교육운영 실적에 따라 적용	ㅇ 계약의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처리를 간소화 ㅇ 원가계산을 '15년도 운영 실적에 따라 적용	산불방지교육훈련 위탁업무 처리기준 ('16. 1월) 산불방지과 (042-481-8852)
22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부본부장 지위 격상	ㅇ 부본부장 : 산림보호국장	ㅇ 부본부장 : 차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16. 1월) 산사태방지과 (042-481-884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3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신 설>	ㅇ 국민들이 산사태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소별 안내판 설치 ㅇ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훼손한 자에게는 과태료(50~200만원) 부과	산림보호법시행령 ('16. 1월) 산사태방지과 (042-481-8846)
24 사방지 해제 비용변상 면제 대상사업 확대	ㅇ 공익사업도 사방사업 비용변상	ㅇ 공익사업에 대한 사방사업 비용변상 면제 -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건설	사방사업법 시행령 ('16. 1월) 산사태방지과 (042-481-4272)
25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범위 확대	ㅇ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	ㅇ 1억원 이상	사방사업법 시행령 ('16. 1월) 산사태방지과 (042-481-4272)
26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	<신 설>	ㅇ 감리계약 건당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1월) 산사태방지과 (042-481-4272)
27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운영	<신 설>	ㅇ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운영 - 재선충병 발생현황 조사, 통계·추이 분석 및 품질관리 등 모니터링 기능 확대 ㅇ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방제교육 정례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 2월)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28 소나무류 이력관리 제도 개선	ㅇ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ㅇ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코드 관리 체계 시범 운영('15.12~'16.12) -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위·변조 방지 기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5. 12월) 산림병해충과 (042-481-4069)